

발간등록번호

11-1620000-000744-01

# 빈곤청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9





# 빈곤청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9. 10. 4

연구기관 : **평택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 **전 경 속**(평택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자 : **송 영 호**(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채 창 균**(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연구보조 : **하 은 솔**(서울대학교 박사과정)

: **주 수 인**(한국노동연구원 위촉연구원)



본 보고서는 연구용역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국가인권  
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제 출 문

국가인권위원회 귀하

본 보고서를 『빈곤청년 인권상황 실태조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9년 10월 4일

**평택대학교 산학협력단**



# 〈 목 차 〉

## 제 1 장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 2. 연구내용 ..... 4
- 3. 연구방법 및 절차 ..... 8

## 제 2 장 청년 관련 선행연구 및 국내 정책환경

- 1. 청년의 개념적 정의 ..... 13
  - 가. 이행기로서의 청년 ..... 13
  - 나. 청년개념의 새로운 논의-후기청소년 유예 ..... 14
  - 다. 정책대상으로서의 청년 ..... 15
- 2. 청년 관련 주요 이슈 및 특징 ..... 17
  - 가. 청년 빈곤 문제의 공론화 ..... 17
  - 나. 청년의 사회적 배제 ..... 21
- 3. 청년 및 빈곤청년 관련 현황 ..... 24
  - 가. 고용 ..... 24
  - 나. 소득 및 금융 ..... 38
  - 다. 주거 ..... 44
  - 라. 문화 및 건강 ..... 50
- 4. 청년 및 빈곤청년 지원 정책과 사업 ..... 59
  - 가. 중앙정부 ..... 59
  - 가. 지방정부 ..... 70

## 제 3 장 주요 외국의 빈곤청년 정책 우수사례

- 1. EU의 청년보장제도 개괄 ..... 93
- 2. 오스트리아의 스페이스랩 ..... 100
- 3. 핀란드의 원스톱서비스 ..... 112
- 4. 프랑스의 청년보장과 미래고용 ..... 121
- 5. 이탈리아의 통합고용기금 ..... 130
- 6. 기타 우수사례 ..... 137
- 7. 해외사례의 시사점 ..... 141

## 제 4 장 청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1. 설문조사 결과	153
가. 조사방법 및 일반적 특성	153
나. 주거관련 사항	157
다. 경제관련 사항	166
라. 고용관련 사항	175
마. 문화 및 여가관련 사항	183
바. 건강관련 사항	187
사. 청년지원 정책 욕구	194
아. 소결 및 시사점	202
2. 심층면접 및 초점집단면접 결과	207
가. 조사개요 및 분석방법	207
나. 조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207
다. 주요 분석결과	209
라. 소결 및 시사점	222
3. 현장관계자 조사 결과	225
가. 조사대상 및 내용	225
나. 청년업무 담당 공무원 대상 간담회의 주요 논의결과	227
다. 청년활동가 대상 초점집단면접(FGI)의 주요 조사결과	232

## 제 5 장 빈곤청년 지원 정책

1. 연구결과 논의	239
2. 정책제언	250
가. 기본방향	250
나. 정책추진과제	252

참고문헌	265
------	-----

부록(설문지)	273
---------	-----

## 〈 표 목 차 〉

<표 II-1-1> 청년의 연령 규정(국내) .....	16
<표 II-1-2> 청년의 연령 규정(해외) .....	16
<표 II-1-3> 빈곤청년 지표 .....	17
<표 II-2-1> 사회적 배제와 관련 개념의 비교 .....	22
<표 II-3-1> 연령별 실업률 추이(2000~2018) .....	25
<표 II-3-2>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2000~2018) .....	26
<표 II-3-3> 연령별 비경제활동인구수 추이(2003~2018) .....	27
<표 II-3-4> 가구소득분포별 비경제활동 사유 .....	29
<표 II-3-5> 첫 취업 평균 소요기간(2008~2019) .....	30
<표 II-3-6> 첫 직장 근속기간(2008~2019) .....	30
<표 II-3-7> 근로여건 불만족 이유로 퇴사한 비중(2008~2019) .....	31
<표 II-3-8> 첫 일자리 평균임금(2017~2019) .....	32
<표 II-3-9> 연도별 니트청년 현황(2008~2016) .....	34
<표 II-3-10> 청년가구 유형별 정의 .....	38
<표 II-3-11> 청년가구 유형별 분포현황(2017, 2018) .....	39
<표 II-3-12> 가구유형별 빈곤율(균등화 중위소득 50% 미만) .....	40
<표 II-3-13> 가구주 연령별 빈곤율(균등화 중위소득 50% 미만) .....	41
<표 II-3-14> 물질적 박탈 경험 여부(2017) .....	42
<표 II-3-15> 연령별 채무보유 현황 .....	43
<표 II-3-16> 학자금 대출 현황(2012~2016) .....	44
<표 II-3-17> 청년 1인가구 비율(2000~2015) .....	44
<표 II-3-18> 부모 동거여부(2016~2017) .....	45
<표 II-3-19> 연도별 청년(20-39세) 주거 점유형태 비중변화(1995~2015) .....	45
<표 II-3-20> 청년 가구주 가구의 주거점유형태 비중(2018) .....	46
<표 II-3-21> 청년 가구주 가구의 생애최초 주택마련경험 유무(2018) .....	46
<표 II-3-22> 청년 가구주 가구의 주택위치(2018) .....	47
<표 II-3-23> 청년 가구주 가구의 주택유형(2018) .....	47
<표 II-3-24> 청년 가구주 가구의 주거면적(2016) .....	48
<표 II-3-25> 가구별 주거빈곤율(2015) .....	49
<표 II-3-26> 청년 1인가구의 주거빈곤규모 변화(1995~2015) .....	49
<표 II-3-27> 연령별 하루평균 여가시간(2016/2018) .....	50

<표 II-3-28> 연령별 평일에 참여한 여가활동(복수응답)(2016/2018) .....	51
<표 II-3-29>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여가비중(2018) .....	52
<표 II-3-30> 여가생활을 위한 한달 평균 지출금액(2016/2018) .....	54
<표 II-3-31> 지난 1년간 지출한 여가비용에 대한 평가(2016/2018) .....	54
<표 II-3-32> 주관적 건강상태(2017) .....	56
<표 II-3-33> 20대 당뇨환자수(2013~2017) .....	57
<표 II-3-34> 20대 우울증 환자수(2013~2017) .....	57
<표 II-3-35> 2주 연속 우울감 지속(2017) .....	58
<표 II-3-36> 자살자 수, 사망원인 비중, 자살률(2017/2018) .....	58
<표 II-4-1> 현행 청년지원 관련법 .....	59
<표 II-4-2>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주요내용 .....	60
<표 II-4-3> 청년관련 입법발의 현황 .....	61
<표 II-4-4> 정부부처별 청년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 현황 .....	65
<표 II-4-5> 지원 영역별 사업 및 프로그램 현황(중앙정부) .....	66
<표 II-4-6> 취약계층 청년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 현황 .....	68
<표 II-4-7> 시도별 조례현황 .....	70
<표 II-4-8> 시도별 조례의 주요내용 .....	71
<표 II-4-9> 전국 시·군·구별 조례현황 .....	73
<표 II-4-10> 시도별 고용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 .....	77
<표 II-4-11> 시도별 소득금융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 .....	78
<표 II-4-12> 시도별 주거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 .....	79
<표 II-4-13> 문화 및 건강지원 프로그램 .....	80
<표 II-4-14> 지원영역별 사업 및 프로그램 현황(지방정부) .....	80
<표 II-4-15> 서울시 청년수당 변화 전후비교 .....	88
<표 II-4-16> 청년수당과 청년기본소득의 비교 .....	89
<표 III-1-1> EU 청년보장제도의 국가별 차이 .....	95
<표 III-1-2> 청년보장제도에 대한 모니터링 지표 .....	100
<표 III-2-1> 오스트리아의 청년 노동시장 정책 .....	107
<표 III-4-1> 프랑스 ‘청년보장 계획(Plan national Garantie Jeunesse)’ .....	126
<표 III-4-2> 미래고용 실행 단계와 운용 기관 .....	127
<표 IV-1-1> 설문조사 주요 내용 .....	153
<표 IV-1-2> 응답자 일반적 특성 .....	156
<표 IV-1-3> 부모 동거 여부 .....	158

<표 IV-1-4> 분가하지 않은 이유(1순위)	160
<표 IV-1-5> 분가 이후 어려움(1순위)	162
<표 IV-1-6> 거주지 실내 환경 상태(긍정 응답 비율)	164
<표 IV-1-7> 부채 유무	167
<표 IV-1-8> 부채 원인(1순위)	169
<표 IV-1-9> 지난 10년간 생활수준 변화	170
<표 IV-1-10> 생활 빈곤 경험 수준(경험 비율)	172
<표 IV-1-11>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175
<표 IV-1-12>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1순위, n=845)	177
<표 IV-1-13> 직업훈련 및 교육프로그램 참여 경험 유무	179
<표 IV-1-14> 건강보험 가입 여부	182
<표 IV-1-15> 휴가 경험 유무	183
<표 IV-1-16> 청년유형별 휴가 경험 유무	185
<표 IV-1-17> 또래 대비 휴가 빈도	186
<표 IV-1-18> 주관적 인식 수준	187
<표 IV-1-19> 정신건강(우울, 불안) 수준	189
<표 IV-1-20> 의료 관련 빈곤 경험 수준(경험 비율)	192
<표 IV-1-21> 정부나 지자체의 청년지원금 수혜 여부	195
<표 IV-1-22> 청년지원금 정책 찬반 여부	196
<표 IV-1-23> 청년지원정책의 우선 대상	198
<표 IV-1-24> 청년으로서 겪는 어려움/불편함(1순위)	200
<표 IV-1-25> 정부가 청년에게 지원해야 할 사항(1순위)	202
<표 IV-2-1> 심층면접 및 FGI 대상자	208
<표 IV-3-2> 정부 프로그램 참여경험 및 평가	220
<표 IV-4-3> 정부 프로그램 개선점에 대한 의견	222
<표 IV-3-1> 현장관계자 초점집단면접(FGI) 참여자 현황	225
<표 IV-3-2> 공무원 대상 초점집단면접 주요내용	226
<표 IV-3-3> 청년활동가 대상 초점집단면접 주요내용	227
<표 V-2-1> 빈곤청년 지원정책의 목표 및 추진과제	252

## 〈 그림 목 차 〉

<그림 I-3-1> 연구진행 절차 .....	10
<그림 II-2-1> 사회적 배제의 3가지 영역 .....	23
<그림 II-3-1> 연령별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으로 응답한 비중(2003~2018) ..	28
<그림 II-3-2> 첫 일자리 근로형태 비중변화(1년 이하, 시간제) .....	33
<그림 II-3-3> 특성별 니트청년 현황 (2016) .....	35
<그림 II-3-4> 학력별 졸업인구 대비 구직니트 비중 변화(2008~2016) .....	36
<그림 II-3-5> 학력별 졸업인구 대비 비구직니트 비중 변화(2008~2016) .....	37
<그림 II-3-6> 니트청년의 가구특성(2014) .....	38
<그림 II-3-7> 연령별 동호회 활동 경험(2016/2018) .....	52
<그림 II-3-8> 연령별 지속적 여가활동 비율(2018) .....	53
<그림 II-3-9> 가구소득별 여가활동 수(2018) .....	55
<그림 II-3-10> 가구소득별 평일, 휴일 여가시간(2018) .....	55
<그림 II-3-11> 가구소득별 여가비용 비교(2018) .....	56
<그림 II-4-1> 서울시 청년수당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 .....	90
<그림 III-1-1> EU 청년보장제도의 정책전달 경로 .....	97
<그림 III-2-1> 오스트리아의 청년 실업률과 니트 비율 .....	101
<그림 III-2-2> 오스트리아 스페이스랩 모듈 개념 .....	111
<그림 III-3-1> 핀란드의 청년 실업률과 니트 비율 .....	113
<그림 III-3-2> 핀란드 원스톱서비스센터 운영 모형 .....	116
<그림 III-4-1> 프랑스의 청년 실업률과 니트 비율 .....	121
<그림 III-5-1> 이탈리아의 청년 실업률과 니트 비율 .....	131
<그림 IV-1-1> 설문조사 설계 .....	154
<그림 IV-1-2> 조사 진행 과정 .....	155
<그림 IV-1-3> 분가하지 않는 이유(n=622) .....	159
<그림 IV-1-4> 분가 이후의 어려움(n=378) .....	161
<그림 IV-1-5> 주거 빈곤 상황 경험 유무 .....	163
<그림 IV-1-6> 청년유형별(부모동거_균등화소득) 주거 빈곤 경험 수준 .....	165
<그림 IV-1-7> 청년유형별(부모동거_주생계부양자) 주거 빈곤 경험 수준 .....	166
<그림 IV-1-8> 부채 원인(n=279) .....	168
<그림 IV-1-9> 경제적 빈곤 경험 정도 .....	171
<그림 IV-1-10> 청년유형별(부모동거-균등화소득) 경제 빈곤 경험 수준 .....	173

<그림 IV-1-11> 청년유형별(부모동거_주생계부양자) 경제 빈곤 경험 수준	174
<그림 IV-1-12> 아르바이트 하는 이유(n=845)	176
<그림 IV-1-13> 직업훈련 및 교육프로그램 평가(n=269)	180
<그림 IV-1-14> 직업훈련 및 교육프로그램 참여못하는 이유(n=731)	181
<그림 IV-1-15> 사회보험 가입 여부	181
<그림 IV-1-16> 여가활동 참여 여부	184
<그림 IV-1-17> 청년유형별(부모동거-균등화소득) 정신건강 수준 비교	190
<그림 IV-1-18> 청년유형별(부모동거_주생계부양자) 정신건강 수준 비교	190
<그림 IV-1-19> 건강 관련 빈곤 경험 정도	191
<그림 IV-1-20> 청년유형별(부모동거-균등화소득) 경제 빈곤 경험 정도	193
<그림 IV-1-21> 청년유형별(부모동거_주생계부양자) 의료 빈곤 경험 수준	194
<그림 IV-1-22> 청년지원정책 우선 대상자(중복응답)	197
<그림 IV-1-23> 청년으로서 어려움/불편한 점(중복응답)	199
<그림 IV-1-24> 정부가 청년에게 지원해야 할 사항(중복응답)	201
<그림 V-2-1> 빈곤청년 지원정책의 핵심가치와 전략목표	251



---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및 절차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단계로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기로서(transition period from school to work), 독립, 취업, 직장생활, 결혼 등을 통해 새로운 사회관계를 형성하는 시기이다(Baltes and Carstensen, 1999). 성인기로의 이행은 다수의 생애사건(life event)들이 동시에 발생하고 상호 영향을 주고 결합하는 복합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청년들이 이러한 발달과업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노동시장으로 이행과 관련된 취업 또는 실업 문제에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다(박미희 외, 2018).

2019년 1월 기준 청년층(15~29세)의 고용지표는 낮은 고용률(42.9%, 전체 59.2%)과 높은 실업률(8.9%, 전체 4.5%)로 특징지을 수 있다(통계청, 2019).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도 47.0%로 전체 평균(61.9%)보다 약 14.0% 포인트 낮다. 청년단독가구의 빈곤율은 2006년 15.2%에서 2016년 19.9%로 증가하였으며, 19~25세의 상대적 빈곤율은 2006년 8.5%에서 2014년 9.0%, 2016년 10.2%로 높아졌다(김문길 외, 2017). 문제는 저성장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청년층이 이전세대와는 달리 자립기반 형성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로 위치할 가능성이 크고, 사회 구조적으로 강요된 빈곤 세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청년층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빈곤청년’의 틀 안에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오히려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에서 청년층의 빈곤과 경제적 불안, 교육과 노동시장, 복지체계와 같은 주요한 사회체계에서 배제(social exclusion)되는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한국사회의 소득과 자산, 교육 등에서의 격차들이 증첩되고 체계화되어 나타나는 다중격차(multiple disparities)가 청년 세대에서 집약적이고 압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누적된 불평등이 체계화된다는 것은 일단 한 영역에서 낙오하게 되면 다른 영역에서조차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전병유·신진욱 외, 2016).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청년 정책도 고용 정책 위주(청년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취업아카데미,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공공기관 채용인턴제, 청년수당 등)이고, 청년들에게 수혜되는 정책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감사원, 2016; 김기현, 2017; 김형주 외, 2018). 따라서 청년의 문제를

빈곤·실업, 저소득과 같은 경제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보장·공공제도·사회적 관계, 사회심리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삶의 맥락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는 빈곤청년 인권상황 실태를 경제적 빈곤뿐만 아니라 청년이 한국사회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누적된 부정적 경험을 “사회적 배제”라는 연구 분석틀로 조망하고, 생애과정 관점에서 빈곤청년에 적합한 실질적인 정책 및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인간의 개별적인 상태와 무관하게 인간이기 때문에 무조건 향유하는 소위 ‘기본권’ 개념이 함축하는 ‘보편적 권리’를 고려하고, 사회적 배제의 틀에서 역동성(dynamics), 다차원성(multi-dimensional), 행위주체(agency) 관점에서 청년층의 고용, 주거, 교육, 노동, 문화, 건강 등의 문제를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틀에 따라 본 연구는 ‘기본권 또는 시민권’ 차원에서 한국사회의 청년을 위한 권리 체계(법/제도/정책)를 검토하고 청년들의 인권상황 실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청년의 사회적 불평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실천적인 대안과 정책을 모색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 2. 연구내용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크게 ①청년층 빈곤 현상의 특징 및 주요 이슈, ②빈곤 청년 사회적 지원을 위한 정부 정책현황 ③주요 외국의 빈곤청년 정책 우수 사례, ④빈곤청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분석, ⑤권리에 기반한 빈곤청년 정책개발로 구성된다.

### 가. 청년층 빈곤 현상의 특징 및 주요 이슈 분석

정책대상으로서 청년층에 관한 규정은 현재 명확하지 않다. 한국의 경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는 청년을 15~29세(시행령에서는 15~34세)로 보고 있다. 「고용정책기본법」은 15~29세, 「조세특례지원법」에서는 15~29세,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15~34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는 39세까지로 서로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청년(즉, youth)은 공통적으로 15~24세를 말하며, 미국 등의 비유럽권도 유사한 연령 구분을 따르고 있다. 국제연합(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노동기구(ILO), 세계보건기구(WHO) 등은 15~24세를 청년층으로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층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15~34세의 범위 중 학령기 이후에 해당하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로 한정할 것이다. 이는 학령기 이후 경제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로 청년층 빈곤과 사회적 배제의 메커니즘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빈곤층 청년을 분석하기 위해 빈곤의 기준을 다차원 빈곤 개념에 근거하여 소득, 주거, 고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빈곤청년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소득 빈곤은 가구 소득 기준 50% 미만, 주거 빈곤의 경우 물리적 주거 환경(최저 주거 기준), 주거비용 부담 비율, 근로 빈곤은 현재 경제활동 상태 및 노동시장 지위를 고려하게 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빈곤 청년층의 주요한 특징을 사회적 배제의 맥락에서 한국사회에서 경험하는 경제와 고용, 주거, 교육과 훈련, 가족 및 사회적 관계망, 사회정치적 참여, 문화/여가 영역에서 배제 경험의 실태를 살펴보고, 주요 이슈를 분석한다. 특히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이행에 따른 조건과 양태의 변화, 생애과정의 재편성 과정에서 주요한 사건사를 중심으로 청년층의 특징과 주요한 이슈를 분석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국내외 빈곤청년 관련 선행연구와 조사를 분석하고, 국내통계청과 주요 기관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빈곤청년 현황을 파악한다. 특히 사회적 배제의 주요 지표(경제, 노동, 주거, 교육, 사회적 관계망, 건강 등)에 따라 청년층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처한 어려움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한다.

## 나. 빈곤청년 사회적 지원을 위한 정부 정책 분석

현재 대표적인 청년 관련 법령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있다. 중앙정부의 청년 정책도 주로 ‘고용’에 기반을 두고 있는 한계가 있다.

20대 국회에서 ‘청년’이란 단어가 들어가 발의된 법안은 총 56건에 이르지만 더 이상 진척되지 않았다. 20대 들어 발의된 총 7건의 청년 관련 기본법안을 통합 조정한 합의안이 입법 예고를 끝마쳤지만 현실화되지 못하였다. 통합 조

정된 합의안에도 청년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가 빠져 있고 청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고용촉진뿐만 아니라 능력개발, 복지증진 등 다른 영역에서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또한, 17개 시도 지자체별로 시행되는 청년기본조례들도 청년의 범위가 달라 정책마다 청년이 포함되기도 하고 배제되기도 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중앙정부의 청년 관련 정책은 청년 정책 전반에 걸쳐 청년 정책을 추진하는 총괄조정기구가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일관된 청년 정책이 수립되지 않아서 지역마다 차별적인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일 예로 서울시와 성남시 등 청년 수당이 시행되는 지역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다. 즉 한국 정부의 청년 관련 주요 제도와 법령, 관련 사업은 추진 체계는 많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관련 정책을 통합·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부재한 상황이다. 장기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단계별로 집행하도록 규정하는 법률은 여러 차례 발의는 되었으나 현실화 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청년 지원 관련 법, 제도, 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주요 함의를 도출할 것이다. 나아가 빈곤청년 문제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원할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할 것이다.

#### 다. 빈곤청년 정책 관련 해외 우수사례 분석

영국, 프랑스, 유럽연합 등은 “신빈곤”, “불평등”, “차별”, “한계성”(marginality), “소외”(alienation), “하위계급”(underclass), “취약집단”(weak group) 등의 개념을 활용하여 사회적 취약집단의 삶의 현실을 폭넓게 설명하였다. 유럽연합은 이러한 용어들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으로서 “사회적 배제”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강신욱·김안나·박능후·김은희·유진영, 2005). 특히 전 세계적으로 고용상황이 악화된 현실에서 청년정책의 핵심 지원 대상으로 니트(NEET)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OECD는 OECD의 청년실천계획(OECD Youth Action Plan, 2014)에서 3개 우선 지원 청년 그룹의 하나로 니트(NEET)를 선정하고, 3개 그룹별로 맞춤형 고용증진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EU도 청년보장제(Youth Guarantee) 정책의 핵심대상을 니트 청년으로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니트를 포함한 빈곤청년을 위한 해외 선진국의 법제와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이 우리나라에 주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것이다. 특히 해외 주요국의 청년정책 우수사례를 통해 한국사회에 적용 가능한 정책과 제도 운영 방안을 제안할 것이다.

## 라. 빈곤청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빈곤청년을 포함한 청년 1,000명 대상 설문조사, 빈곤청년과 청년활동가 및 현장전문가 총 30명 대상 심층인터뷰 및 FGI를 진행한다. 설문 조사는 인터넷조사를 실시하며, (주)마이크로밀 엠브레인의 전국 단위 패널을 활용한다. 설문조사는 빈곤청년의 인권상황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주거, 경제, 고용, 건강, 문화·여가, 정책욕구의 6개 영역으로 범주화하여 측정 문항을 개발하였다. 설문의 주요내용은 경제적 빈곤, 물질적 결핍, 경제활동 참여, 니트 여부, 혼인 여부, 저임금, 주거 부담, 주거 면적, 낮은 취업 교육 및 훈련, 취업 유예 경험, 사회적 참여, 정치적 참여, 사회적지지, 신체적 건강, 심리적 건강 등으로 구성한다. 설문지 문항 개발은 전체 연구원이 공동으로 참여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 및 관련 전문가 자문을 거쳐 공동 작업으로 진행하였다.

한편, 빈곤청년의 인권상황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조사와 연구를 위해 빈곤청년과 청년활동가(지자체 청년네트워크 등), 정부부처 전문가 및 관계자(청년 업무 담당자) 등 총 30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 및 초점집단면접(FGI)을 실시하여 빈곤청년의 경제사회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회제도적 어려움과 진입장벽, 그에 따른 차별 등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설문조사 문항 개발과 현실적이고 전문적인 청년 정책 도출을 위해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 정책 자문을 병행할 것이다.

## 마. 권리에 기반한 빈곤청년 사회 불평등 감소 정책개발

문헌연구, 해외사례 연구, 설문조사, 심층면접 등 다양한 조사 및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청년지원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제안할 것이다. 특히 권리적 시각에서 사회적 불평등을 감

소시킬 수 있는 빈곤청년 지원 정책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청년층들의 주요 정책 욕구를 고려한 인권지향적 청년지원 정책과제와 세부사업을 제안한다. 전문가 자문, 현장조사, 정책간담회를 통해 청년의 실질적 권리 보장 방안을 모색하며, 특히 인간으로서의 기본권, 청년층 집단으로서 특수한 권리, 사회경제적 차원에 따른 평등권 사이에서 우리 사회에서 제기되는 여러 차원의 문제를 검토하고 실효적인 정책을 제안할 것이다. 무엇보다 국내 소외계층, 소수자 계층과의 사회통합과 관련한 국내외 정책, 제도, 법률을 면밀히 검토하고, 청년과 닮은 관련 다양한 해외사례를 통해 우리 사회에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청년층의 빈곤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할 것이다.

### **3.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과 절차를 거쳐 수행된다. 이러한 연구방법을 통해 빈곤청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정책 대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가. 사전조사**

사전조사는 조사개시 전, 설문조사와 질적 조사에 대한 사전검토를 통하여 실태조사 계획의 방향성 제시 및 보고서의 기초자료 준비 목적으로 실시된다. 사전조사는 파일럿 테스트의 의미와 조사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의 목적을 갖고 있으며, 설문지 검토 차원에서 그룹 포커스 미팅(10여명 수준)으로 진행된다. 사전조사는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원 전원이 참여하여 질문 문항 적합성과 조사대상자 선정, 그리고 조사 진행 과정의 점검사항을 검토하게 된다.

#### **나. 문헌조사 및 사례분석**

빈곤청년의 실태 및 주요 현황, 정책, 제도, 법률을 국내외적으로 수집하여

분석함으로써 청년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문헌조사는 정부의 청년 지원정책과 기 발간 연구보고서, 논문, 실태조사 보고서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해외사례는 주요 선진국가의 우수사례를 분석할 것이다. 특히 청년 니트를 정책 대상으로 하고 있는 EU의 청년보장제도(Youth Guarantee)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청년보장제도의 틀 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EU 국가의 여러 개별 정책 중에서 우리나라가 참고할 만한 사례라고 판단되는 오스트리아, 핀란드,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의 청년 니트 대상 특정 정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 다.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청년(만 19~34세) 대상 조사로 인터넷조사를 통해 진행한다. 설문 문항은 청년 및 빈곤 관련 선행 조사와 문헌 자료를 준거로 개발하였으며, 청년 및 사회복지, 사회정책, 사회조사 분야 전문가 자문, 국가인권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완성한다. 표본 추출은 2017 인구주택총조사(2017년 11월 기준)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인구구성비에 맞게 비례할당 하였다. 특히 연령은 3개의 구간으로 구분하여 초기(19~24세), 중기(25~29세), 후기(30~34세) 청년의 연령 구간별 특성을 파악하도록 하며, 빈곤청년(실업 또는 저임금근로자)의 생활 실태 및 사회구조적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빈곤청년 비율이 최소 40% 이상 되도록 할당한다.

#### 라. 심층인터뷰 및 초점집단면접(FGI)

청년 및 청년활동가와 현장전문가 등 다양한 대상층 총 3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FGI 포함)과 초점집단면접(FGI)을 실시한다. 청년 대상 조사는 인구학적 비율(성별), 청년층 이상 인구학적 비율(연령별), 서울·경기와 그 외 지역(지역별: 수도권-7, 그 외 지역-3)을 반영하고 빈곤층 청년 일정비율을 포함하여 총 20명을 선정, 심층면접과 초점집단면접(FGI)을 병행한다. 청년활동가는 각 지자체의 청년네트워크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 5명과 수도권 지역 청년정책 담당 공무원 및 관련 센터 실무자 5명을 대상으로 각각 초점집단면접(FGI)을 실시한다.

## 마. 정책개발

기존 문헌, 해외사례 분석,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여 빈곤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한다. 향후 정부가 수립해야 할 청년지원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기반 구축, 기본 생활권 보장, 삶의 질 제고 및 사회안전망 구축, 원활한 미래준비 등으로 정책영역을 구분하여 세부 추진과제를 제안한다.

<그림 I-3-1> 연구진행 절차

<b>연구 설계</b>	연구 설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 방향 및 내용 구성</li> <li>▷ 세부 실행계획 수립(연구방법 및 조사계획 수립 등)</li> </ul>
	자료수집 및 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행연구 검토(청년 빈곤문제 및 사회적 배제 관련)</li> <li>▷ 청년 현황 및 청년 니트 관련 국내 정책추진 현황 정리</li> <li>▷ 각종 행정자료 및 청년 관련 통계자료 수집·분석</li> <li>▷ 주요 외국의 빈곤청년지원 정책 우수사례조사 및 동향분석</li> </ul>
	전문가 자문회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내용 및 방법, 조사 설계 및 문항, 정책개발에 대한 전문가 자문</li> </ul>
<b>현장조사 및 환경 분석</b>	유관 시설 및 기관방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중력지대, 캠퍼스타운, 일자리카페 등 청년지원 관련 기관 방문</li> <li>▷ 시설 및 기관 운영 현황 파악</li> </ul>
	현장실무자 인터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관기관 실무자 대상 인터뷰</li> </ul>
<b>인권상황 실태 및 요구조사</b>	설문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대상 : 청년 및 빈곤청년 1,000명</li> <li>▷ 조사방법 : 인터넷 조사</li> <li>▷ 조사내용 : 주거, 경제, 일자리, 건강, 여가·문화, 정책욕구 등</li> </ul>
	심층인터뷰 및 초점집단면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대상 : 청년 및 청년활동가/현장전문가 총 30명</li> <li>▷ 조사방법 : 1:1 심층면접, 초점집단면접(FGI), 간담회</li> <li>▷ 조사내용 : 청년문제인식, 빈곤(경제, 주거, 고용), 권리(교육·문화권, 건강권, 사회적 안전망 등), 정책욕구</li> </ul>
<b>정책과제 도출</b>	전문가자문/정책간담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빈곤청년 정책 및 향후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청취</li> <li>▷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시사점 도출 및 정부에서 실현가능한 빈곤청년 정책방향 수립 및 세부추진과제 제안</li> <li>▷ 정책추진전략 및 정책실효성에 관한 의견수렴</li> </ul>

---

청년 관련 선행연구 및 국내 정책환경

1. 청년의 개념적 정의
2. 청년관련 주요 이슈 및 특징
3. 청년 및 빈곤청년 관련 현황
4. 청년 및 빈곤청년 지원 정책과 사업



## 1. 청년의 개념적 정의

본 절에서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청년과 빈곤청년의 개념을 살펴보고,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빈곤청년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할 것이다.

### 가. 이행기로서의 청년

일반적으로 청년은 아동이나 청소년 시기를 거쳐 성인기로 넘어가는 전환기, 또는 성인이나 어른의 출발 시기를 의미한다. Baltes와 Carstensen(1999)은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단계로 청년을 설명하였다. 즉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기로서(transition period from school to work), 독립, 취업, 직장생활, 결혼 등을 통해 새로운 사회관계를 형성하는 시기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성인기로의 이행은 다수의 생애 사건(life event)들이 동시에 발생하고 상호 영향을 주고 결합하는 복합적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한편 전상진(2013)은 성인기로의 이행에 초점을 두어 후기 청소년기를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정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학교교육과 자격증 등의 획득은 직업 세계로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전제로 본다. 그리고 이들의 성인으로서 역할을 준비시키기 위해 필수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성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전상진, 2013).

청년은 온전히 성장한 사람이 아니라 성인으로 거의 성장한 사람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기나 성인기 등은 생애과정에서 겪는 어떤 사건이나 사회관계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생물학적 연령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Jones & Wallace, 1902). Galland(1991)는 이행기 청년을 정의한다면 아동에서 성인으로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의 이행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Galland, 1991). 첫째, 학교에서 일자리로의 직업이행, 두 번째 가족의 집에서 독립적인 주거로의 주거이행, 세 번째, 원가족(family of origin)에서 새가족(family of destination)으로의 가족이행이다. 즉 세 가지 이행을 완성하지 못하면 성인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sup>1)</sup>.

1) 반면 성인이나 어른의 출발 시기로 청년을 바라보면 사회통념에 따르거나 법률상 성인이 되는 기준이 청년을 정의하게 된다.

## 나. 청년 개념의 새로운 논의-후기청소년 유예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청년들이 발달과업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노동시장으로 이행과 관련된 취업 또는 실업 문제에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다(박미희 외, 2018). 첫 단계인 취업의 과정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나머지 과정도 지연되고 있다. 공부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직장을 구하는 시점도 늦춰지고,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시간을 끌면, 그들이 맺는 사회적 관계도 미뤄지게 된다. 이러한 이행의 지연은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결코 유익하지 않다.

김홍중(2016)은 청년을 학교-직업의 자동적 연계가 파괴되어 최종 학력기관을 졸업한 이후 상당기간 비정규직 또는 잉여로 지내야 하며, 결혼과 출산을 하나의 선택으로 여기거나 포기하면서, 이전 청년들과 사뭇 다른 형태의 라이프 스타일과 가치를 만들어가는 20대에서 30대 초반의 젊은이라고 개념 정의하면서 21세기의 한국 청년들을 ‘생존주의 세대’라고 명명한다. 그에 따르면 한국 청년세대의 생존주의가 ‘서바이벌’이라는 지표를 통해 현실이 표상되어 재구성된다. 서바이벌은 물리적이고 생물학적 연명이나 죽음에서의 구제로부터 경쟁적 삶에서 배제되지 않는 상태로 전이되었다고 본다. 과거에 비해 어려워진 취업 또는 취업준비에 대한 힘듦과 주어진 상황을 개선하자는 정치적 의사표출의 부재 등을 고려해 볼 때 20대를 지칭하는 용어로 통용되는 청년을 후기청소년으로 표현해야 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조한혜정 외(2016)도 한국사회에서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전망이 부재한 세대로 규정한다. 무엇보다 삶의 불안정성이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다. 생존을 위한 불안감이 미래에 대한 삶의 계획을 불가능하게 하고, 현재의 삶을 포기하는 존재로 스스로 위치 지운다는 것이다. 3포 세대(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젊은이), N포세대라는 신조어가 이를 대변한다. 이러한 포기의 핵심은 사회 또는 사회관계의 포기이자 단절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있다.

다시 말해 과거 20대를 통칭하는 보편적인 용어가 ‘청년’이었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20대는 과거의 20대와는 차원이 다른 사회·구조적 제약을 받고, 그 상황에서 무기력한 존재로 묘사될 수밖에 없는 삶의 내용을 갖기 때문에 ‘후기청소년’의 이미지에 가깝다고 설명한다(오찬호, 2015). 전상진(2004; 2011; 2013; 2016)은 이러한 후기청소년의 이미지에 가까운 오늘날의 청년 세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생애주기 상, 후기 청소년기가 연장되고 유예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시기에 있는 20대 청년, 후기청소년들이 성인으로 성장하고 자립하여 건강한 민주시민으로서 그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부터 배제되는 상황임을 의미한다고 한다. 20세기 말부터 유행하는 청년 세대 명칭은 거의 예외 없이 수동적이며 부정적이다. 청년은 부모에게 의존하는 기생충, 경제적 어려움에 신음하는 가련한 존재, 불안정하게 살아가는 고통받는 존재일 뿐이다(전상진, 2016).

#### 다. 정책 대상으로서의 청년

정책 대상으로 청년에 대해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은 청년 취업난이 본격화된 1997년 이후로 볼 수 있다. 청년이 성인기 이행과정이라 볼 수 있는 진학-학업-취업-혼인-분가의 단계를 거친다고 할 때(성재민, 2017) 청년 개념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영역을 구분하여 볼 수 있다. 먼저, 경제적 영역에서 청년은 경제활동의 중추인 경제활동인구에 속한다. 또한, 사회적 의미에서 결혼과 출산을 통해 재생산을 위한 시작점에 위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 측면에서도 20대와 30대의 목소리가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정책 대상으로서 청년에 관한 규정은 명확하지 않다. 한국의 경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는 청년을 15~29세(시행령에서는 15~34세)로 나누고 있다. 「고용정책기본법」은 15~29세, 「조세특례지원법」에서는 15~29세,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15~34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는 39세까지로 서로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표 Ⅱ-1-1> 청년의 연령 규정(국내)

구 분	관련법 및 정책	연 령
국내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15~29세(시행령: 15~34세)
	「고용정책기본법」 「조세특례지원법」	15~29세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15~34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39세
국내조사 및 정책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15~29세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대상	19~34세
	취업성공패키지	18~34세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15~34세

유럽의 경우 청년(즉, youth)은 15~24세를 말하며, 미국 등의 비유럽권도 유사한 연령 구분을 따르고 있다. 국제연합(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노동기구(ILO), 세계보건기구(WHO) 등은 15~24세를 청년으로 구분하고 있다.

<표 Ⅱ-1-2> 청년의 연령 규정(해외)

구 분	연 령
국제연합(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노동기구(ILO) 세계보건기구(WHO) EU 청년백서	15~24세
영국 통계청	16~24세
일본 내각부와 후생노동성	15~34세

본 연구에서는 청년층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15~34세의 범위 중 학령기 이후에 해당하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로 한정할 것이다. 이는 학령기 이후 경제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로 청년층 빈곤과 사회적 배제의 메커니즘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빈곤층 청년을 분석하기 위해 빈곤의 기준을 다차원 빈곤개념에 근거하여 소득, 주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빈곤청년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특히 일차적 판별기준으로 가구소득과 개인소득 모두를 사용할 것이다. 가구소득은 가구원 전체의 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균등화 소득을 중심으로 빈곤 여부를 판별하였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기준으로 균등화 가처분소득은 평균 252.3만원이다. 그리고 개인소득은 중위임금(통계청일자리 행정통계 2017년 210만원)의 2/3 미만인 저임금근로자이거나 실업 상태에 있는 청년을 빈곤청년으로 범주화할 것이다. 개인의 고용소득(혹은 근로, 사업, 재산 등의 소득 합계)이 140만원 미만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주거상황은 조사의 한계로 부모동거 여부와 주생계부양자 여부를 고려하여 상대적 빈곤 수준을 판별하였다.

균등화소득과 저임금근로자 여부는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할당 과정에서는 개인소득 기준을 우선 적용하여 표집하였다. 이후 자료 분석 단계에서는 균등화 소득 여부를 주된 판별 지표로 사용하였다. 즉 빈곤청년은 균등화소득, 부모동거여부, 주생계부양자여부의 3가지 지표 중 2가지 변수를 조합하여 빈곤 수준을 서열화하였다.

<표 II-1-3> 빈곤청년 지표

항목	구 분
소득 빈곤	가구균등화소득 평균(252.3만원), 저임금근로자(월 소득 140만원 미만)여부
주거 빈곤	부모동거여부, 주생계부양자여부

## 2. 청년 관련 주요 이슈 및 특징

### 가. 청년 빈곤 문제의 공론화

청년 빈곤은 단순한 ‘한 시점’이 아니라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지속되는 특성을 보인다. 성인이 되어서 빈곤할 확률이 높은 집단은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빈곤했던 경우로 나타났으며(석상훈, 2007; 이상은, 2008, 변금선, 2013), 가구빈곤이 자녀에게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변금선, 2013).

2000년대 후반부터 청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초점은 주로 일자리와 주거 분야에 치중된 경향을 보였으며, 청년은 상대적으로 빈곤 취약계층으로 대표되

는 노인과 장애인보다 빈곤연구와 정책 대상으로 가시화되지 않았다. 빈곤연구에서 청년층의 경제적 곤란은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것으로 전제되고 아동이나 근로 능력이 없는 집단이 일차적인 보호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박권일(2009)은 청년 빈곤을 공론화하였으며, 불안정 노동으로 생애주기와 맞물리면서 특정 세대에 그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것을 청년 빈곤 구조로 지적하였다.

청년 문제를 IMF 경제위기 이후 10년 동안 노동 유연화, 비정규직 일자리 증가 등 한국사회에서 벌어진 급격한 변화의 산물로 보았으며, 이러한 흐름이 특정 세대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았다(우석훈·박권일, 2007).

2010년 이후, 본격적으로 청년 빈곤과 관련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는데, 김수정(2010)은 한국 청년층은 아동보다 더 빈곤 위험이 큰 집단이라고 분석하였으나, 김문길·이주미(2017)는 현재 청년의 빈곤율은 국제적으로도, 국내 다른 연령대 빈곤율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은 아니라는 다소 상반된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세대 간, 세대 내(청년 세대 내에서의 연령별 분석), 국가 간 비교 등을 중심으로 청년 빈곤의 심각성을 도출한 연구도 있다. 김문길·김성아(2018)는 지난 10년간 특히 30대까지 다차원 빈곤이 완화되다가 나이가 많아지면서 다시 악화되는 경향이 강화되었음을 밝혔다. 또한 2006년 이후 다차원 빈곤 수준은 대부분 세대에 걸쳐 완화되었지만,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초기 청년(19-24세)의 다차원 빈곤은 악화되었고 이들은 특히 고용과 안정성 차원에서 취약하다고 지적하였다.

김태완·최준영(2017)은 현세대 청년들은 과거 청년 세대보다 불리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청년 빈곤과 관련해서는 청년 세대를 세분화할 경우 19~24세와 청년으로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빈곤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밝혔다. 다른 연령층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고 비취업 상태에 놓인 경우가 많다(변금선, 2011).

김수정·김영(2013)은 한국과 일본 청년층의 경제적 곤란, 즉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청년층 가구에서도 성별, 연령, 학력, 고용 지위와 같이 노동시장 관련 요인이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력의 영향력은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OECD 주요 국가들의 청년 빈곤 연구에 따르면 청년 빈곤과 관련하여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실업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청년기에는 여러 일자리를 경

험한 후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가는 직업탐색이 활발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청년층의 실업률은 한국뿐 아니라 여타 국가들에서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나승호 외, 2013).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는 교육제도의 특성이나 노동 시장구조에 따라서 달라지고, 청년들의 소득수준도 해당 국가의 임금 관련 정책이나 복지제도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이성균, 2009). 금재호(2007)는 우리나라 청년실업의 원인으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대학에서의 전공과 일자리가 맞지 않는 문제, 임금과 고용이 경직적이어서 신규 채용 기회를 잠식하여 청년실업을 증대시키는 문제, 중견기업의 일자리 부족의 문제를 꼽았다.

### 1) 주거빈곤

청년 세대의 주거빈곤 문제는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들은 최근 들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청년세대는 주거비를 부담할 능력이 부족하여 주거빈곤에 노출되어 있으며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과도한 주거비 부담과 불안정은 주거사다리를 붕괴시키고, 이는 가구 형성을 지연시키거나 부모 부담이 연장되는 등 이행기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부족한 기숙사 수용률의 문제, 고비용의 민자기숙사 운영, 부동산 경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집구하기의 어려움과 높은 월세 등 주거와 관련한 현안은 주로 서울, 경기권 등 수도권에 집중해 있다. 한국사회·문화 특성 상 과거에는 부모와 동거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결혼을 통해 비로서 부모로부터 독립했다. 그러나 진학과 취업 등의 이유로 청년들은 수도권 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기를 원하고, 청년 1인가구의 등장으로 청년 주거 빈곤의 문제가 대두하기 시작했다. 취업 이후, 주거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주거는 청년 일자리, 고용 등의 문제 보다 덜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그러나 계속되는 높은 청년 실업률 및 고용의 불안정성 등과 날로 치솟는 수도권 지역의 주택 가격으로 청년들은 반 지하, 옥탑방, 원룸, 고시원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변창흠, 2014; 황서연, 2014). 부모로부터 안정된 주거를 확보 받지 못하는 청년들의 경우 과도한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늦추거나 포기하는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에 주거문제는 청년문제의 핵심에 있다고 볼 수 있다.

## 2) 일자리 빈곤

높은 청년 실업률은 청년빈곤으로 직결된다. 일을 해서 소득을 얻어야 할 시기에 일을 하지 못함으로써 소득빈곤에 빠질 위험이 커진다.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청년이라면 곧바로 빈곤에 빠지게 된다. 청년 고용의 문제는 한국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산업 구조 변화로 인한 ‘고용 없는 성장’의 영향은 노동시장 신규 진입자인 청년층에게 가장 먼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청년들의 일자리 곤란은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어렵게 하며, 이후 생애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결혼과 출산과 같은 생애사건들을 지연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또한 청년들의 일자리 빈곤은 이들 부모세대까지 부담을 가중시켜 한국사회 전반적인 사회문제로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또한 취업을 했다고 해도 좋은 일자리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노동시장 신규 진입자들은 저임금과 불안정 노동을 겪게 되고 잦은 이직을 반복한다.

고용형태와 고용상태 변화를 중심으로 청년 근로능력자의 빈곤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에서 정규직일수록, 취업상태를 지속할수록 빈곤을 탈출할 가능성은 높아지고 빈곤에 진입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변금선, 2012). 일자리 빈곤과 관련한 문제는 한국 뿐 아니라 OECD 국가에서도 나타나는 문제이다. 청년기에는 다양한 일자리를 경험한 후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가는 직업탐색도 활발히 진행되기 때문이다(나승호 외, 2013).

## 3) 경제적 빈곤

청년들은 사회구성원으로 자리 잡기 위해 과거에 비해 많은 비용을 치르고 있다. 높은 대학진학률과 대학 등록금의 가파른 상승으로 인해 등록금의 가계 부담률이 더욱 커지고 있다(반상진, 2012). 학자금 대출제도는 학자금 지원의 대표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는데, 정부의 재정적 부담과 교육투자의 효율성 문제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고등교육 기회의 균등을 실현하려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다(손창용·신동준, 2013). 그러나 학자금 상환에 대한 압박이 커짐에 따라 시작부터 마이너스 상태인 청년들은 저소득과 고비용 구조에 빠져있고 부족한 부분은 대출로 해결하고 있다. 물론 학자금 지원의 효과로 다소나마 실질 부담은 경감되고 있으며, 대학생들의 성적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증분석의 결과(진상기·김진영, 2014)가 보고되고 있으나 고용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증하는 학자금 대출은 청년층 신용부실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반상진, 2018). 신용상태가 떨어짐에 따라 부채문제가 더욱 악화되고, 청년들의 신용 악성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또한 채무악성화에 빠지지 않았으나 저신용으로 인해 고금리 대출과 이자 상황에 따른 부담으로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는 ‘한계’ 청년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신용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신용 사다리가 끊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경제적 어려움은 학업의 지연, 포기로 나타나고 저소득, 고비용, 저신용 문제는 자산을 형성하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 자산을 형성하지 못하는 청년들은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또한 생애주기의 과업을 지연하거나 포기하기에 이르렀다(신윤정 외, 2015).

## 나. 청년의 사회적 배제

최근에는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개념을 바탕으로 빈곤, 실업, 저소득과 같은 경제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보장, 공공제도, 사회적 관계, 사회 심리적 차원에 이르는 포괄적인 차원에서 청년층의 삶의 형태를 분석하였다.

피어슨(Pierson, 2001)은 단순한 유형과 빈곤의 보편적 개념으로의 사용을 넘어서서 개인, 가족, 집단 또는 이웃들로부터 이들이 사회·경제·정치적 활동 전반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빼앗는 일련의 과정으로 사회적 배제를 정의하였다. 실버(Silver, 1994)는 “시민권”의 개념을 통해 사회적 배제를 설명하였는데, 사회적 권리를 소유한 개인을 시민으로 간주하고 이들 시민의 사회적 권리에 노동 및 사회제도 참여, 일정 정도의 삶의 수준 보장받는 것이 포함된다.

버그만(Berghman, 1995)은 빈곤과 사회적 배제개념을 두 가지 차원(정태적 결과 vs. 동태적 과정, 소득 부족의 단일 차원 vs. 경제적 변수 이외에 다양한 차원)의 기준에 따라 관련 개념을 구분하였다(<표 II-2-1> 참조). 이러한 구분에 따르면 사회적 배제는 빈곤개념과 달리 동태적이며 다차원적 개념이다. 즉 사회적 권리의 부정이나 개인이 정치적, 도덕적 구성원으로서의 사회와 연결되는 고리가 매우 미약한 상태로 사회적 배제를 이해하기도 하며, 동태적 과정으

로써 소득 측면에서 궁핍화를 거쳐 빈곤에 이르는 과정으로 그 결과를 박탈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Room, 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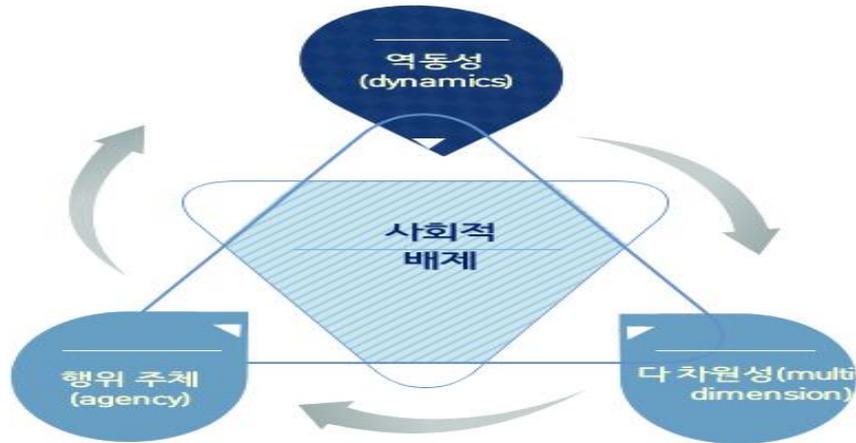
<표 Ⅱ-2-1> 사회적 배제와 관련 개념의 비교

구분	정태적 결과 (dynamic process)	동태적 과정 (static outcome)
소득 차원 (income)	빈곤(poverty)	빈곤화(impoverishment)
다차원적 요인 (multi dimension)	박탈(deprivation)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자료 : Berghman, J.(1995).

이러한 사회적 배제는 크게 역동성(dynamics), 다차원성(multi-dimensional), 행위주체(agency)를 특징으로 한다(Figueiredo and Haan, 1998; Room, 1995; Silver, 1995; 강신욱, 2006; 강신욱·김안나·박능후·김은희·유진영, 2005; 문진영, 2004). 먼저 역동적 측면에서 사회적 배제는 과거의 조건과 경험이 현재와 미래의 개인이나 집단의 조건을 형성토록 하는 누적과정을 의미한다. 즉 사회적 배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과 발생의 과정에 주된 초점을 가지고 경제적 박탈이나 사회적 고립을 통해 사회로부터 한계화(marginalization)된 개인이 겪는 상황이나 과정을 탐색하게 된다(Figueiredo and Haan, 1998; Townsend, 1979). 두 번째로 다차원성 측면에서 사회적 배제는 경제, 정치, 문화, 지리, 공간, 법적인 영역 등에 나타나는 것을 다차원적인 현상으로 본다. 즉 사회적 배제는 빈곤의 해결과 기본적 욕구 충족을 위한 재화 및 서비스의 부족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제도로부터, 사회적 정의로부터, 대표성으로부터, 시민권으로부터의 배제를 포함한다는 것이다(강신욱, 2006; 신명호 외, 2004)). 마지막으로 행위 주체성 측면에서는 사회적 배제는 개인과 집단을 주류사회의 질서와 규범으로부터 유리시키고 분리하는 행위주체가 존재한다(Atkinson, 1998; Room, 1995). 개인뿐만 아니라 개인들로 이뤄진 집단, 지역사회로부터 체계적으로 배제당하는 것을 사회적 배제의 특성으로 본다(문진영, 2004; 심창학, 2001).

&lt;그림 Ⅱ-2-1&gt; 사회적 배제의 3가지 영역



즉 사회적 배제는 누가, 누구를, 어떻게, 무엇으로 배제하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배제는 노동시장에서의 배제, 경제적 자원의 배제, 제도로부터의 배제, 문화적 기회의 배제, 사회적 관계의 배제 등을 포함한다. 청년층 중에는 빈곤 가구, 한부모가구 등이 공공교육제도에 참여하지 않으며, 이들은 사회제도로부터 낙오된 집단으로 인식된다(이성균, 2009).

또한, 노동시장에서 안정된 일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구직 활동 자체를 포기하는 청년들은 노동시장에서의 배제를 겪게 된다. 사회보험제도는 대부분 취업 상태, 임금수준 등 노동시장 지위와 연계되기 때문에, 노동시장 지위가 불안정하거나 임금수준이 낮은 청년층은 공공제도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이성균, 2009)

청년 빈곤의 문제가 소수 청년을 위한 사회복지 측면이 아니라 다수 청년의 전반적인 삶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청년 세대를 이행기적 세대로 규정하고 청년의 생애 주기적 특성 측면에서 청년 문제를 조명하고 있다. 안수찬(2011)은 통계만으로 입증되지 않는 청년들의 문제, 스스로 고립되어 살아가는 청년들의 빈곤화는 더는 방관할 수 없는 소수가 아닌 다수 청년의 문제라고 보았다.

최근 청년들의 실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거나 구체적인 환경들과 조건들, 그리고 대안을 향한 시도를 다룬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다(강정석 외, 2014; 신윤정 외, 2015). 청년의 빈곤과 불안정고용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의 개인적 특성과 청년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고용 및 사회보장정책을 기초로 양질의 일자리 공급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뤄져야 함을 제안하였다(김안나 외, 2018).

### 3. 청년 및 빈곤청년 관련 현황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는 청년층의 빈곤을 다차원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본 장에서는 고용, 소득 및 금융, 주거, 문화 및 건강의 차원에서 청년 및 빈곤청년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 가. 고용

##### 1) 청년 노동시장 현황

###### 가) 실업률

청년층 노동시장의 주요한 특징은 실업률의 증가이다. 20-34세 청년 실업률은 2012년 6.3%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다가, 그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 이후 2017년에는 최고치인 8.1%를 기록하였으며, 그다음 해 2018년에도 8%대를 유지하며 청년 고용상황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청년층을 20-24세, 25-29세, 30-34세로 구분하였을 때, 20-24세의 실업률은 2018년 10.7%로 가장 높았다. 교육에서 고용으로 이행하는 20대 초반에 상대적으로 구직의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15-64세와 비교해 보아도 청년 노동시장의 상황이 상대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 청년실업률과 15-64세 인구의 실업률은 각각 6.6%, 4.4%를 기록하여 갭이 2.2%p였으나, 2018년에는 그 격차가 4.2%p로 더 벌어졌다.

&lt;표 II-3-1&gt; 연령별 실업률 추이(2000~2018)

(단위: %)

연도	15-19세	청년(A)			15-64세(B)	A-B	
		20-24세	25-29세	30-34세			
2000	14.5	9.9	6.0	4.0	6.6	4.4	2.2
2001	14.4	9.3	6.0	3.4	6.2	4.0	2.2
2002	12.0	7.9	5.7	3.3	5.6	3.3	2.3
2003	13.0	9.6	6.3	3.4	6.4	3.6	2.8
2004	14.0	9.8	6.5	3.4	6.6	3.7	2.9
2005	12.3	9.8	6.4	3.7	6.6	3.7	2.9
2006	10.5	10.0	6.5	3.7	6.7	3.5	3.2
2007	9.3	8.6	6.3	3.7	6.2	3.2	3.0
2008	10.2	9.1	6.0	3.6	6.2	3.2	3.0
2009	12.3	9.5	7.1	4.1	6.9	3.6	3.3
2010	11.9	9.4	6.9	4.2	6.8	3.7	3.1
2011	10.8	9.4	6.4	4.0	6.6	3.4	3.2
2012	8.9	9.0	6.6	3.2	6.3	3.2	3.1
2013	10.3	9.2	7.1	3.7	6.7	3.1	3.6
2014	9.3	10.2	8.3	3.5	7.3	3.5	3.8
2015	10.6	10.5	8.1	3.3	7.3	3.6	3.7
2016	10.0	10.8	9.2	3.8	7.9	3.7	4.2
2017	8.7	10.6	9.5	4.1	8.1	3.7	4.4
2018	9.3	10.7	8.8	4.4	8.0	3.8	4.2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 나) 경제활동참가율

경제활동참가율이란 15세 이상의 인구 중 취업자 수와 실업자 수를 합산한 것의 비율로, 경제활동(가능)인구 즉, 노동시장에 참여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이다.

청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8년 68.2%이며 전체적인 추세 상 약간의 오르 고 내리는 경향이 포착되나 전반적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청년을 3개의 연령집단으로 구분했을 때, 2018년 기준 20-24세 인구는 48.9%, 25-29세는 76.9%, 30-34세는 78.9%를 기록하였다. 25세 이상 청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으며, 20-24세 청년의 경우 2004년 58.5%로 계속해서 줄어들다가, 2012년을 기점으로 반등하여 다시 회복되는 경향을 보였다. 노동시장의 악재 속에서도 청년층이 경제활동참여 자체에 대한 의욕을 잃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실업의 상황이 장기화 된다면 구직의 의욕을 잃고 취업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어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표 II-3-2>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2000~2018)

(단위: %)

연도	15-19세	청년			65세 이상	15-64세
		20-24세	25-29세	30-34세		
2000	12.0	57.9	70.3	72.6	66.9	61.2
2001	11.7	57.5	71.0	72.3	66.9	61.5
2002	10.6	58.3	71.9	72.6	67.6	62.1
2003	9.8	57.5	72.1	72.7	67.4	61.6
2004	9.8	58.5	73.4	72.6	68.2	62.3
2005	9.1	57.3	73.8	72.3	67.8	62.2
2006	7.5	54.7	73.4	73.5	67.2	62.2
2007	7.2	52.8	73.1	73.6	66.5	62.2
2008	6.5	50.1	73.0	73.5	65.5	61.7
2009	6.2	49.1	72.7	72.6	64.8	61.0
2010	7.0	48.9	73.2	73.8	65.3	61.1
2011	7.6	47.9	74.4	73.9	65.4	61.3
2012	7.7	49.0	74.1	74.7	65.9	61.6
2013	7.7	47.6	74.1	75.7	65.8	61.7
2014	8.5	49.9	75.3	76.9	67.4	62.7
2015	8.8	51.6	75.0	77.8	68.1	62.8
2016	8.8	51.6	76.6	77.6	68.6	62.9
2017	9.2	50.6	75.9	77.9	68.1	63.2
2018	8.2	48.9	76.9	78.9	68.2	63.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 다) 비경제활동인구수

비경제활동인구수의 추이는 <표 II-3-3>와 같다. 비경제활동인구란 경제활동 가능인구 중 경제활동참가인구(취업자+실업자)를 제외한 인구로, 15세 이상의 근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인구 가운데, 학업, 가사, 출산 및 육아, 군복무, 장애 등으로 현재 일할 의사가 없거나 아예 일할 의욕을 상실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지표이다. 15-64세와 20-34세 비경제활동인구 모두 2014년을 기점으로 줄고 있다. 그러나 청년 내에서 20-24세는 비경제활동인구는 2015년을 기점으로 다시 늘어나고 있다.

&lt;표 II-3-3&gt; 연령별 비경제활동인구수 추이(2003~2018)

(단위: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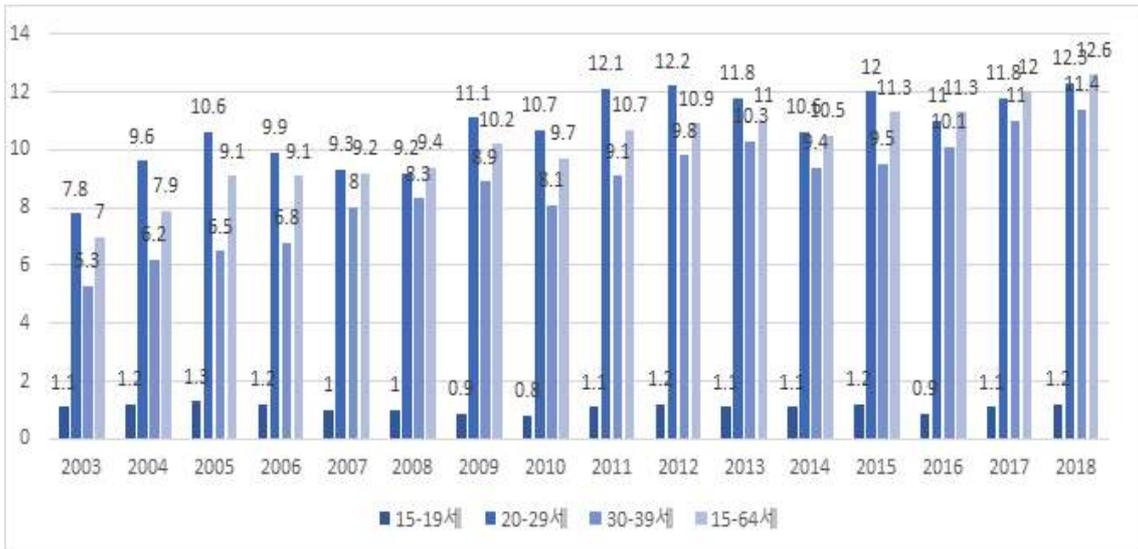
연도	15-19세	청년			15-64세	
		20-24세	25-29세	30-34세		
2003	2,850	1,430	1,085	1,210	3,725	11,556
2004	2,756	1,371	1,012	1,209	3,592	11,336
2005	2,749	1,340	996	1,197	3,533	11,374
2006	2,811	1,351	1,029	1,110	3,490	11,460
2007	2,892	1,324	1,064	1,072	3,460	11,561
2008	3,004	1,330	1,078	1,042	3,450	11,776
2009	3,096	1,320	1,073	1,054	3,447	12,114
2010	3,127	1,324	1,015	1,012	3,351	12,098
2011	3,104	1,404	923	1,024	3,351	12,114
2012	3,077	1,419	885	1,016	3,320	12,079
2013	3,023	1,515	849	981	3,345	12,054
2014	2,926	1,496	794	924	3,214	11,677
2015	2,850	1,472	805	850	3,127	11,585
2016	2,795	1,473	761	819	3,053	11,536
2017	2,652	1,492	805	769	3,066	11,340
2018	2,533	1,511	792	701	3,004	11,282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 라) 비경제활동사유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특정 사유(학업, 가사, 출산 및 육아, 군복무, 장애 등)없이 '쉬었다'고 응답한 인구의 비중을 아래 <그림 II-3-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유 없이 쉬고 있는 비경제활동인구 청년들이 늘어난다는 사실은 고용상황의 열악함으로 인해 구직에 대한 동기가 약해지거나 심한 경우에는 구직을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는 잠재적 집단이 증가한다는 것을 반증한다. 청년을 20대(20-29세)와 30대(30-39세)로 구분했을 때, 20대 청년의 노동시장의 비활성화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쉬었다'는 인구 비중은 약간의 증감을 보이나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최근 3년(2016~2018년)간은 그 비중이 꾸준히 늘었다. 2018년에는 20대의 '쉬었음' 비중은 12.3%, 30대는 11.4%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고용시장의 악조건 속에서 의욕을 잃거나 노동시장 밖으로 주변화되는 청년들이 늘어날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II-3-1> 연령별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으로 응답한 비중(2003~2018)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 마) 가구소득분포별 비경제활동사유

<표 II-3-4>는 비경제활동사유를 가구소득분포별로 정리한 결과이다. 졸업한 청년 미취업자는 취업준비 사유로 비경활상태인 경우가 모든 소득 구간에서 3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고, 평균적으로는 비경활청년 중 40.1%가 졸업 후 취업준비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졸업생 중 가구소득이 소득분포의 60%이하인 경우, 구직활동을 포기하는 비중이 12.8%로 다른 소득 구간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휴학생의 경우, 학업, 진학준비를 하는 이유로 비경활을 선택하는 비중이 41.3%로 높았고, 100% 미만의 저소득층의 경우 학업, 진학준비를 사유로 쉬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저소득층이 졸업 후 취업준비를 포기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고, 학업이나 진학을 이유로 인한 휴학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다른 소득 계층에 비하여 구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짐작해 볼 수 있다.

&lt;표 II-3-4&gt; 가구소득분포별 비경제활동 사유

(단위: %)

	졸업생						휴학생				
	육아가사	학업, 진학 준비	취업 준비	구직 활동 포기	기타	전체	학업, 진학 준비	취업 준비	구직 활동 포기	기타	전체
~60%	7.4	6.2	42.9	12.8	30.7	100	33.8	13.2	5.4	47.6	100
61%~100%	14.9	11.5	35.1	5.8	32.7	100	22.5	16.7	0.0	60.8	100
101~150%	20.9	3.8	45.1	2.4	27.9	100	43.2	29.4	0.0	27.5	100
151~200%	23.5	17.5	35	3.4	20.6	100	47.4	16.8	0.0	35.7	100
201%~	16.4	15.3	45	0	23.3	100	60.3	16.0	0.0	23.7	100
전체	17	9.1	40.1	5	28.8	100	41.3	19.6	0.5	38.7	100

자료 : 복지패널 11차(2015년), 정성미(2017) 표 재구성

주 : 비경제활동사유 중 기타는 근로무능력, 군복무, 간병, 근로의사 없음, 기타를 포함함

## 2) 청년 일자리의 질

다음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청년층(15-29세) 부가조사를 살펴봄으로써 청년 일자리의 질이 어떠한지 알아보고자 한다.

### 가) 취업 평균 소요기간 및 근속기간

아래 <표 II-3-5>는 졸업 후 취업하기까지 평균적으로 얼마의 기간이 소요되는지를 파악한 것이다. 졸업 이후 취업까지 10개월에서 11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이며, 남자의 경우 12개월(2019.5 기준), 여자의 경우는 10개월(2019.5 기준)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1년 남짓의 시간을 소요해 어렵게 취업 난관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표 II-3-6>에서 볼 수 있듯이 첫 직장 근속기간은 갓 1년을 넘긴 수준이었으며 이 또한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2019년 5월 기준 첫 일자리를 그만둔 사람의 직장 근속기간은 평균 14개월, 일자리를 지속하고 있는 경우는 평균 25개월, 전체적으로는 17개월이었다.

<표 II-3-5> 첫 취업 평균 소요기간(2008~2019)

(단위: 개월)

연월	전체	남자	여자
2008. 05	10	13	8
2009. 05	10	14	7
2010. 05	10	13	7
2011. 05	10	12	8
2012. 05	10	11	8
2013. 05	10	12	9
2014. 05	11	13	9
2015. 05	10	13	8
2016. 05	10	12	9
2017. 05	11	13	9
2018. 05	11	12	10
2019. 05	11	12	1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5월 자료

<표 II-3-6> 첫 직장 근속기간(2008~2019)

(단위: 개월)

연월	전체	첫 일자리를 그만둔 경우	첫 일자리가 현 직장인 경우
2008. 05	19	16	27
2009. 05	19	16	27
2010. 05	19	15	26
2011. 05	19	15	26
2012. 05	18	15	26
2013. 05	18	14	25
2014. 05	18	14	24
2015. 05	17	14	24
2016. 05	18	14	24
2017. 05	18	14	24
2018. 05	18	14	25
2019. 05	17	14	2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5월 자료

다) 첫 일자리를 그만둔 사유 중 근로여건 불만족의 비중 변화

첫 일자리를 그만두게 되는 사유<sup>2)</sup>중 보수나 근로시간과 같은 근로여건에 불만족하는 이유로 퇴사하는 사람의 수를 통해 청년들이 경험하는 일자리가 어떤지 간접적으로 평가해볼 수 있다. 근로여건 불만족을 이유로 퇴사한 인구는 2008년 5월 기준 전체 퇴사 청년인구 3,103명 중 43.3%에 해당하였으며,

2) 첫 일자리를 그만두게 되는 사유로 1) 보수나 근로시간 같은 근로여건에 불만족 하는 경우, 2) 건강, 육아, 결혼과 같은 개인 또는 가족적 이유, 3) 일자리가 전망이 없다고 느끼는 경우, 4) 전공, 지식, 기술, 적성 등이 맞지 않는 이유, 5) 임시직, 계절적인 일의 완료 및 계약기간이 끝난 경우, 6) 직장 휴업, 폐업, 파산과 같은 이유, 7) 그 외 이유 등이 있다.

이는 점진적으로 증가해서 2019년에는 2,711명 중 49.7%에 달하였다. 남녀 중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것은 여성으로 특히 2017년 전년 대비 5.5%p 상승하여 51%에 도달했다. 여성 퇴사자 중 과반수가 근로조건에 만족하지 못해 퇴사하는 것이다.

<표 II-3-7> 근로여건 불만족 이유로 퇴사한 비중(2008~2019)

(단위: 명, %)

	전체	남자	여자
2008. 05	3,103 (43.3)	1,306 (44.2)	1,797 (42.7)
2009. 05	2,960 (43.0)	1,208 (43.1)	1,752 (43.0)
2010. 05	2,945 (42.6)	1,212 (43.1)	1,733 (42.4)
2011. 05	2,747 (42.2)	1,130 (41.6)	1,617 (42.7)
2012. 05	2,687 (44.0)	1,127 (43.5)	1,560 (44.4)
2013. 05	2,423 (45.1)	1,042 (44.0)	1,381 (45.8)
2014. 05	2,355 (46.8)	962 (49.6)	1,393 (44.9)
2015. 05	2,445 (47.4)	1,037 (49.9)	1,408 (45.5)
2016. 05	2,411 (48.6)	1,051 (50.4)	1,361 (47.1)
2017. 05	2,516 (51.0)	1,113 (49.1)	1,403 (52.6)
2018. 05	2,574 (51.0)	1,171 (48.8)	1,404 (52.8)
2019. 05	2,711 (49.7)	1,270 (48.2)	1,501 (51.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5월 자료

#### 라) 첫 일자리 평균임금

<표 II-3-8>의 첫 일자의 평균임금을 살펴보면, 2019년 5월을 기준으로 50만원 미만의 일자리가 5.1%, 50만원~100만원 12.5%, 100만원~150만원 27.7%, 150만원~200만원 34.1%, 200만원~300만원 18.1%, 300만원 이상은 2.4%로 분포해 있다. 200만원 미만의 일자리가 79.4%에 달하여 첫 일자의 조건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근로시간, 근로형태 등을 고려하지 않고 평균임금만으로 남녀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남성은 74.2%, 여성은 84.3%가 200만원 미만의 일자리로 진입하였다.

<표 II-3-8> 첫 일자리 평균임금(2017~2019)

(단위: 개월)

	월평균 임금	2017. 05	2018. 05	2019. 05
전체	전체	4,101	4,140	4,168
	50만원 미만	3.4	4.2	5.1
	50~100만원 미만	13.3	13.5	12.5
	100~150만원 미만	37.5	31.1	27.7
	150~200만원 미만	29.7	33.8	34.1
	200~300만원 미만	13.9	15.3	18.1
	300만원 이상	2.3	2.1	2.4
남자	전체	1,849	1,912	1,975
	50만원 미만	4.3	4.2	5.4
	50~100만원 미만	12.7	12.6	12.1
	100~150만원 미만	31.9	26.9	24.6
	150~200만원 미만	30.4	33.4	32.1
	200~300만원 미만	17.5	19.6	22.3
	300만원 이상	3.3	3.3	3.6
여자	계	2,252	2,229	2,193
	50만원 미만	2.7	4.3	4.9
	50~100만원 미만	13.9	14.3	12.9
	100~150만원 미만	42.1	34.8	30.6
	150~200만원 미만	29.0	34.1	35.9
	200~300만원 미만	10.9	11.6	14.4
	300만원 이상	1.4	1.0	1.3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5월 자료

마) 첫 일자리의 근로형태 비중변화 추이(1년 이하, 시간제)

<그림 II-3-2>는 첫 일자리의 근로형태를 살펴본 것으로, 전체 근로 중 계약기간을 1년 이하로 정한 일자리는 2019년 25.3%로 계속해서 증가추세에 있다. 근로형태 중 전일제가 아닌 시간제 일자리의 비중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여 2019년에는 19.8%에 달하였다. 불안정한 일자리의 증가로 인해 청년의 노동생애의 불안정성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lt;그림 II-3-2&gt; 첫 일자리 근로형태 비중변화(1년 이하, 시간제)

(단위: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5월 자료

### 3) 니트(NEET) 청년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청년이란 일하지 않거나 교육 및 훈련제도에 참여하지 않는 청년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OECD 기준에 따르면, 니트란 미취업청년인 동시에 초·중·고등학교나 대학과 같이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해 졸업장 또는 학위를 받는 공식적 교육<sup>3)</sup>에 참여하지 않는 청년을 가리킨다. 현재 한국은 OECD 기준에 의거한 공식적 통계를 산출하고 있지는 않으며, 연구자들마다 니트를 정의하는 기준이 달라 니트 추계의 비율에서 차이가 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최근 청년층 니트의 특징과 변화』를 분석한 김종욱(2017)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현황을 제시하고자 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토대로 니트 비중의 변화를 분석한 이 연구는 니트의 정의를 15~29세의 청년 중 학생이 아니고, 취업자도 아니며, 정규교육기관이나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에 다니지 않고 있으며, 가사·육아를 주로 하지도 않는 배우자가 없는 15~29세 청년으로 다소 좁게 정의하고 있다. OECD가 산정하는 기준과 달리 실업자와 가사나 육아에 전념하는 전업주부를 제외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 비공식적 교육을 받고 있는 자는 니트에 포함한다. 비공식 교육이라 하면, 학교교육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구조화된 학습활동을 의미한다. 즉, 교육과 동일하게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며 조직화된 교수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나 국가의 '학력, 학위' 인증을 받지 않은 교육(예: 학원 수강, 인터넷 강좌, 개인교습, 문화센터 프로그램 등)을 가리킨다(윤혜준 외, 2017).

가) 연도별 니트청년(15-29세) 현황

니트는 구직니트와 비구직니트로 구분될 수 있다. 구직니트란 니트 가운데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구직기간 4주 기준) 개인을 뜻하며, 비구직니트란 니트 가운데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를 뜻한다.

<표 II-3-9>에서 보듯이 니트청년층 규모는 2008년 이후 계속 증가해 2016년에는 그 규모가 934천명에 달했고 이는 전체 청년 인구 중 9.9%에 해당한다. 2016년 평균 청년 실업자 수가 435천명인 것을 감안하였을 때 매우 큰 규모라고 할 수 있다.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비구직니트는 606천명, 구직니트는 328천명에 해당하였다. 전반적으로 니트인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 노동 시장에서 청년의 취약성이 증가하고 있다.

한편, 동일한 기준으로 NEET 인구를 추계한 KDB산업은행의 보고서에서는 2018년 NEET 인구가 전체 청년인구의 11.0%(1,008천명)라고 밝히고 있다(양서영, 2019). 아래 <표 II-3-9>의 2016년 NEET 인구(9.9%, 934천명)와 비교해 보았을 때 2년 사이 1.1%p가 늘어난 것이다. 2018년 구직니트와 비구직니트는 각각 331천명, 677천명으로 역시 2016년 대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된다.

<표 II-3-9> 연도별 니트청년 현황(2008~2016)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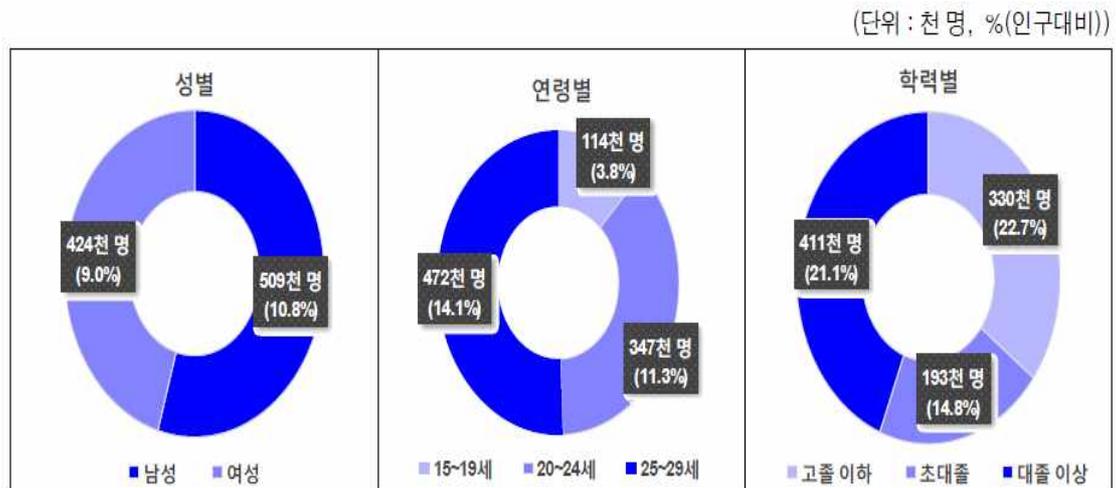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청년인구	9,822 (100)	9,780 (100)	9,705 (100)	9,589 (100)	9,517 (100)	9,548 (100)	9,503 (100)	9,486 (100)	9,427 (100)
非니트인구	9,060 (92.2)	8,992 (91.9)	8,924 (91.9)	8,804 (91.8)	8,714 (91.6)	8,707 (91.2)	8,689 (91.4)	8,622 (90.9)	8,494 (90.1)
니트인구	762 (7.8)	788 (8.1)	781 (8.1)	785 (8.2)	803 (8.4)	840 (8.8)	814 (8.6)	865 (9.1)	934 (9.9)
구직 니트	223 (2.3)	246 (2.5)	234 (2.4)	217 (2.3)	224 (2.4)	239 (2.5)	262 (2.8)	282 (3.0)	328 (3.5)
비구직 니트	539 (5.5)	542 (5.5)	548 (5.6)	568 (5.9)	578 (6.1)	601 (6.3)	552 (5.8)	583 (6.1)	606 (6.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김종욱(2017) 인용

다음으로 니트청년을 특성별로 살펴보면 <그림 II-3-3>과 같다. 니트청년은 남성 509천명(10.8%), 여성 424천명(9.0%)에 해당하여 남성이 약간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연령별로는 20대 후반(25~29세) 청년니트가 절반 이상

(472천 명)을 차지하였고, 전반적으로 고학력 니트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대졸 이상 청년니트 수가 2008년 275천명(17%)에서 2016년 411천명(21.1%)으로 크게 증가한 것이다.

<그림 II-3-3> 특성별 니트청년 현황 (2016)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김종욱(2017) 인용

#### 나) 구직니트 및 비구직 니트 학력별 비중변화

다음으로 구직니트와 비구직니트의 학력별 비중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구직니트는 적어도 경제활동에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노동시장 안에서 마땅한 활동 없이 구직 중인지를 알 수 있고, 비구직니트는 청년들의 비경제활동화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척도이다(김종욱,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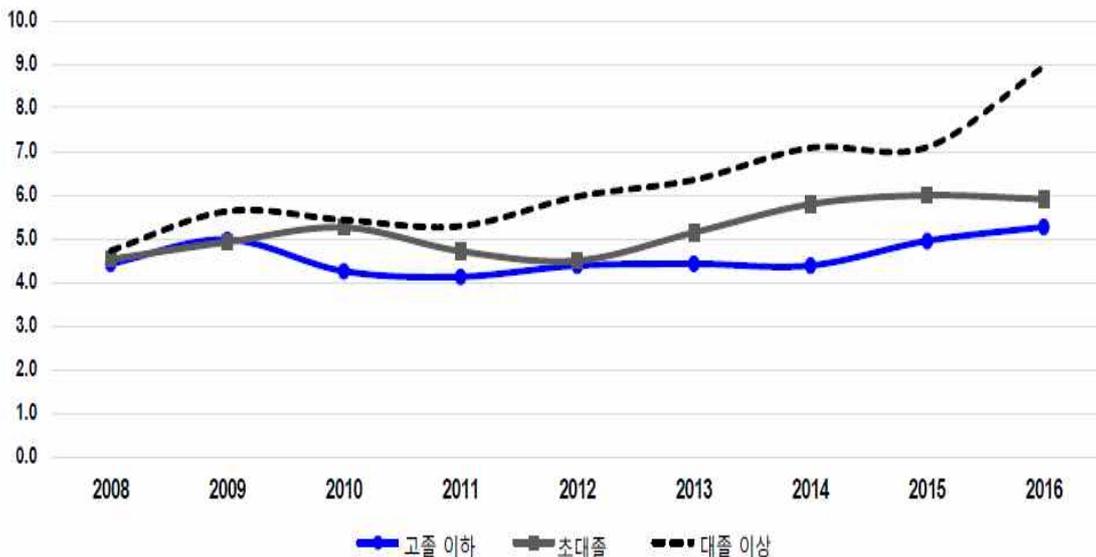
먼저, 학력별 구직니트의 비중을 살펴보면 <그림 II-3-4>와 같다. 학력별 졸업인구(=100)를 기준으로 구직니트의 비중을 구한 결과, 2012년 이후부터 고졸이하 < 초대졸 < 대졸이상 순으로 구직니트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특징적인 것은 대졸이상 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며, 2015년에서 2016년으로 넘어가면서는 약 2%p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력별 비구직니트의 비중을 살펴보면 <그림 II-3-5>와 같다. 학력별 졸업인구(=100)를 기준으로 비구직니트의 비중을 추계하면, 진학준비자를 포함한 고졸이하 인구의 비구직니트화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계과

정에서 진학준비중인 고졸이하 인구에는 재수생이 포함될 수 있어, 진학준비 중인자를 제외한 고졸인구를 추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구직니트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반면 초대졸과 대졸이상 청년층의 경우 비구직니트의 비율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구직니트의 고학력화와 고졸이하인구의 비구직니트화가 포착되고 있다. 구직니트의 고학력화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분절노동시장이론이 적용될 수 있다. 비정규직 고용비중이 확대되면서<sup>4)</sup> 청년들이 원하는 안정된 일자리가 부족하게 되었고, 대학을 졸업하여도 좋은 일자리로의 이행이 어려워진 것이다. 다음으로 고졸이하인구의 비구직니트화에 대하여는 가족 사회경제적 배경의 영향에 의한 지위대물림이라는 미시적 메카니즘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전통적인 사회이동(social mobility)이론에 의하면 부모의 학력이나 직업지위는 자녀의 교육적 성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Blau & Duncan, 1967). 이는 다시 말해 노동시장에서의 지위획득은 개인의 능력만으로는 어렵고, 가구의 자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가족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년들은 취업경쟁이 심화되고 고용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자원이 충분하지 못하여 결국엔 노동시장 밖으로 주변화 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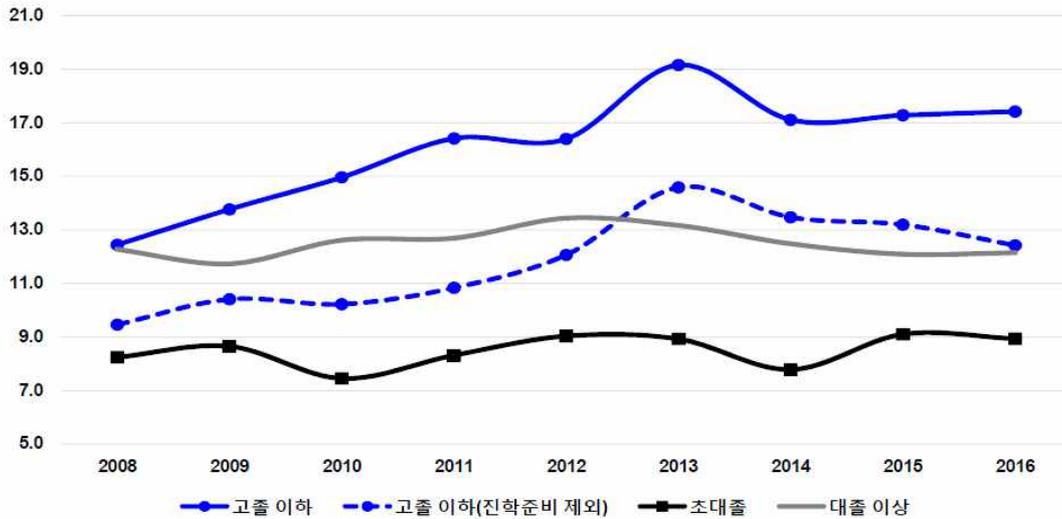
<그림 II-3-4> 학력별 졸업인구 대비 구직니트 비중 변화(2008~2016)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김종욱(2017) 인용

4) 청년취업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2009년 28.6%에서 2018년 32.6%로 증가하였다(양서영, 2019).

&lt;그림 II-3-5&gt; 학력별 졸업인구 대비 비구직니트 비중 변화(2008~2016)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김종욱(2017)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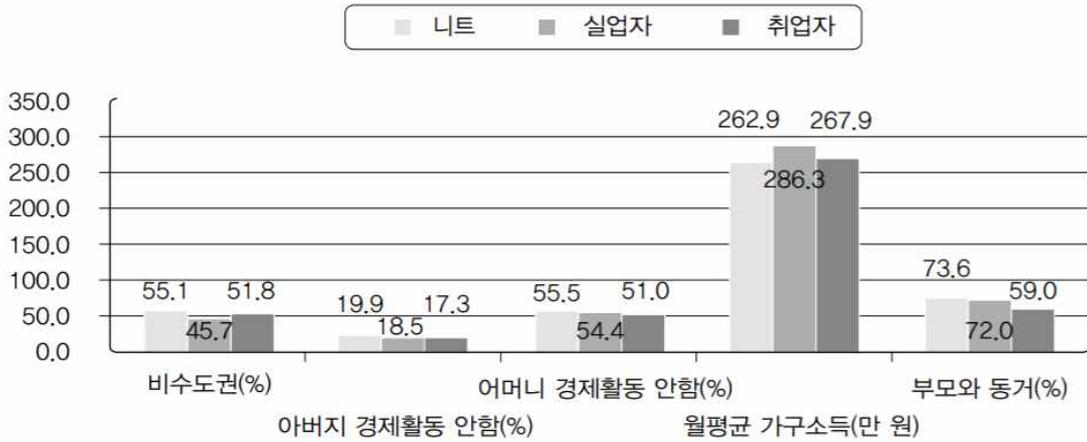
#### 다) 니트청년의 가구특성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청년 니트(NEET)의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이슈분석 보고서(2017)는 니트청년<sup>5)</sup>의 가구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림 II-3-6>에서 니트청년을 실업자와 취업자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먼저 비수도권에 사는 인구가 55.1%로 실업자(45.7%)나 취업자(51.8%)에 비해 높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경제활동을 안하는 비율은 각각 19.9%와 55.5%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았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니트청년 가구의 경우 262.9만원, 실업자 가구는 286.3만원, 취업자 가구는 267.9만원으로, 니트청년 가구가 가장 낮았고,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은 73.6%로 실업자(72.0%)나 취업자(59.0%)에 비하여 높았다.

5) 본 보고서는 니트를 다음과 같은 기준을 사용하여 정의하였다. 니트는 비경제활동자의 '지난 1개월간 구직활동을 안한 주된 이유' 문항을 통해 추출하였다. 니트의 범위를 가장 크게 접근하는 방향으로, 비경활의 명백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재학중', '군복무중')만 니트에서 제외하였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로 '진학 준비 중', '취업시험 준비 중', '자격시험 준비 중', '구직활동 의욕 상실', '일하고 싶지 않음', '결혼, 육아, 가사', '건강상 이유', '경제적 부담 없음', '사업 준비', '발령대기', '군 입대 예정', '기타'로 응답시 모두 니트로 간주하였다. 위 김종욱(2017)의 정의와 달리 결혼, 육아, 가사로 인한 비경활자를 니트 인구로 포함하고 있다.

<그림 II-3-6> 니트 청년의 가구특성(2014)



자료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채창균 외(2015) 인용

## 나. 소득 및 금융

### 1) 소득 빈곤

#### 가) 청년가구 유형별 분포

가구유형별 빈곤율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청년가구 유형을 <표 II-3-10>과 같이 구분하였다. 청년가구는 청년 1인가구, 청년 부부가구, 청년+부모가구, 기타가구로 분류하였다. 청년가구유형은 이태진 외(2016), 김문길 외(2017)의 연구<sup>6)</sup>를 참고하였으며, 만19세 이상 35세 미만의 청년이 있는 가구를 청년가구로 간주한 후 분류하였다.

<표 II-3-10> 청년가구 유형별 정의

가구유형	정의
청년 1인가구	만19세 이상 35세 미만의 청년 본인이 가구주인 1인 가구
청년 부부가구	가구주가 만19세 이상 35세 미만인 청년 부부가구
청년+부모가구	부모와 만19세 이상 35세 미만의 청년 자녀가 함께 사는 가구
기타가구	그 외 청년가구

6) 이태진 외(2016)는 청년단독가구, 청년부부가구, 청년부부와 자녀가구, 청년가구원이 부모와 생활을 같이 하는 가구, 그 외 청년가구로 구분하고 있다. 김문길 외(2017) 역시 이와 동일하게 청년단독가구, 청년부부가구, 청년부부+자녀가구, 부모+청년가구, 기타 청년가구로 분류하였다.

<표 II-3-11>은 가구유형별분포에 관한 것이다. 모든 가구원(가구주 포함)을 대상으로 한 가구유형별 분포를 보면 2018년 청년 1인가구는 2.2%, 청년 부부가구는 9.6%, 청년+부모가구는 72.1%, 기타가구는 16.1%, 청년가구는 40.3%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가구분포는 전체가구원을 대상으로 각 가구에 분류한 것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주로 어떤 가구에 속하는지 파악할 수가 없다.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여 가구유형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 2018년 청년 8,329명 중 5.2%(430명)가 청년1인 가구에, 14.3%(1,191명)가 청년 부부가구에, 67.2%(5,599명)가 청년+부모가구에, 13.3%(1,109명)가 기타가구에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11> 청년가구 유형별 분포현황(2017, 2018)

(단위: 명, %)

구 분	2017년				2018년			
	가구 전체 <sup>주1</sup>		가구 중 청년만 <sup>주2</sup>		가구 전체 <sup>주1</sup>		가구 중 청년만 <sup>주2</sup>	
	인원(명)	비중(%)	인원(명)	비중(%)	인원(명)	비중(%)	인원(명)	비중(%)
청년 1인가구	472	2.2	472	5.1	430	2.2	5.2	430
청년 부부가구	2,385	11.1	1,551	16.6	1,882	9.6	14.3	1,191
청년+부모가구	15,296	71.2	6,143	65.9	14,121	72.1	67.2	5,599
기타가구	3,334	15.5	1,157	12.4	3,157	16.1	13.3	1,109
청년가구(청년)	21,487	43.4	9,423	100	19,590	40.3	100.0	8,329
전체가구	49,518	100.0	-	-	48,590	100.0	-	-

자료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년도

주1 : 가구주를 포함한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한 가구유형별 분포

주2 :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가구유형별 분포

#### 나) 청년가구 유형별 빈곤율

다음으로 가구유형별 빈곤율을 보기 위해 균등화 중위소득 50% 미만을 기준으로 한 빈곤율을 추정하였다. 공적이전소득의 효과를 보기위해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을 구분하여 보았는데, 먼저 시장소득 기준으로 청년가구 중 청년 1인가구의 빈곤율(2018년 기준 17.7%)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의 빈곤율(2018년 기준 9.3%)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청년가구 빈곤율은 2018년 11%로 전체 빈곤율 22.4%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나, 청년가구 내 유형에 따라 빈곤의 정도가 크게 차이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세금이나 세외부담을 공제하고 사회보장금이나 연금 등을 포함한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빈곤율을 추정하였다.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빈곤율을

추정한 결과가 시장소득 기준 결과보다 낮다면 공적이전소득의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체 가구의 빈곤율은 2018년 18.4%로 시장소득 기준에 비하여 약 4%p 가량 빈곤율이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특징적인 것은 청년 1인가구의 빈곤율은 19.8%로 시장소득 기준에 비하여 오히려 상승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청년부부 가구 역시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빈곤율이 더 높아졌다. 그럼에도 2017년에 비하여 청년 1인가구의 빈곤율은 25.9%에서 19.8%로 상당 부분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표 II-3-12> 가구유형별 빈곤율(균등화 중위소득 50% 미만)

(단위: %)

균등화 시장소득	2017	2018
청년 1인가구	25.4	17.7
청년 부부가구	13.5	11.5
청년+부모가구	8.9	9.3
기타가구	16.9	17.5
청년가구	11.0	11.0
전체가구	22.4	22.4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2017	2018
청년 1인가구	25.9	19.8
청년 부부가구	14.2	12.4
청년+부모가구	8.1	8.6
기타가구	15.2	14.6
청년가구	10.2	10.2
전체가구	18.8	18.4

자료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년도

#### 다) 가구주 연령별 빈곤율

<표 II-3-13>는 가구주 연령별 균등화 중위소득 50% 미만을 기준으로 빈곤율을 추정한 것이다.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만19-24세 청년 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이 2018년 29.7%로 다른 연령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도 빈곤율의 수치가 줄어들지 않아, 20대 초반 청년가구주 가구의 높은 빈곤율에도 불구하고 공적이전소득의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였다.

&lt;표 II-3-13&gt; 가구주 연령별 빈곤율(균등화 중위소득 50% 미만)

(단위: %)

연도		청년				전체
		19-24세	25-29세	30-34세		
균등화 시장소득	2017	50.4	19.4	14.9	17.3	22.4
	2018	29.7	16.1	12.8	14.3	22.4
균등화 가처분소득	2017	48.2	19.2	15.2	17.4	18.8
	2018	29.7	17.1	13.8	15.2	18.4

자료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년도

### 라) 물질적 박탈 경험 여부

<표 II-3-14>는 물질적 박탈 경험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주거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못한 경험, 집의 냉난방 유지여부, 규칙적인 식사여부, 휴일에 놀러가거나 사고 싶은 것을 살 수 있는지 여부, TV, 냉장고, 자동차, 통신수단 소유 여부 등에 대해 적어도 3가지 항목에서 결핍을 경험한다면 물질적 박탈 상태라고 볼 수 있고, 4가지 항목에서 결핍을 경험하면 심한 물질적 박탈이라고 볼 수 있다.

주거관리 비용을 지불하지 못한 경우는 2.7%, 집의 냉난방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는 0.8%,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했을 때 지출하지 못한 경우는 7.9%, 돈이 없어서 놀러가거나 사고 싶은 것을 사지 못한 사람은 13.9%, TV가 없는 사람은 2.7%, 냉장고가 없는 사람은 0.7%, 자동차가 없는 사람은 24.6%, 통신수단이 없는 사람은 0.3%였다. 전반적으로 각 항목에 대하여 여성의 박탈률이 높았으며(TV, 냉장고, 통신수단 제외), 20대(19~29세)의 박탈률이 높게 나타났다.

15세에서 39세 청년들 중 12.3%가 심한 물질적 박탈감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럽연합이 회원국을 대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조사 발표한 수치 11.7%(2013년 기준)보다 높은 수준이었다(김기현 외, 2017).

<표 II-3-14> 물질적 박탈 경험 여부(2017)

(단위: %)

박탈기준	박탈 여부	전체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18세	19-29세	30-39세
주거관련 비용지불 (임대료, 대출금, 관리비 등)	예	2.7	1.9	3.6	0.4	2.9	3.1
	아니오	86.8	87.8	85.7	68.5	84.4	94.8
	잘모름	10.5	10.3	10.7	31.1	12.6	2.1
집의 냉난방 유지	예	0.8	0.6	1.1	0.0	1.2	0.8
	아니오	90.2	90.5	90.0	72.8	88.2	97.6
	잘모름	8.9	8.9	9.0	27.2	10.7	1.7
예상치 못한 지출 사용	예	7.9	6.8	9.1	5.7	9.2	7.3
	아니오	92.1	93.2	90.9	94.3	90.8	92.7
규칙적인 식사	예	2.2	1.7	2.7	1.5	3.9	0.8
	아니오	97.8	98.3	97.3	98.5	96.1	99.2
휴일에 놀러가거나 사고 싶은 것을 사는 행위	예	13.9	11.9	16.2	11.5	17.2	11.4
	아니오	86.1	88.1	83.8	88.5	82.8	88.6
TV 소유	예	2.7	2.7	2.7	1.7	4.3	1.3
	아니오	97.3	97.3	97.3	98.3	95.7	98.7
냉장고 소유	예	0.7	0.8	0.6	0.7	1.0	0.3
	아니오	99.3	99.2	99.4	99.3	99.0	99.7
자동차 소유	예	24.6	23.3	26.0	24.1	36.1	13.2
	아니오	75.4	76.7	74.0	75.9	63.9	86.8
통신수단(집전화, 휴대전화) 소유	예	0.3	0.4	0.2	1.1	0.2	0.1
	아니오	99.7	99.6	99.8	98.9	99.8	99.9

자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2017), 김기현 외(2017)의 표 재구성

## 2) 채무

### 가) 연령별 채무보유 현황

<표 II-3-15>의 연령별 채무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을 기준으로 전체 가구 중 65.2%가 채무를 보유하고 있고, 2017년에는 63.5%의 가구가 채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채무보유가구의 비율은 약간 줄어들었으나 채무액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체 가구의 채무액은 2012년 5,450만원에서 2017년 7,099만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한편, 음영처리가 된 부분은 채무보유 가구(=100)만을 대상으로 평균 채무액을 계산한 결과이다. 채무보유가구의 평균채무액은 2012년 8,365만원에서 2017년 11,179만원으로 증가하였다.

30대 미만 청년의 채무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54.2%가 채무를 보유하고 있고, 2017년에는 큰 폭으로 늘어 63.5%가 채무가 있었다. 채무액을 살펴보면, 채무가구의 평균 채무액이 2012년 2,367만원에서 2017년 5,021만원으로 5년 사이 약 112% 증가하였다. 전체 채무가구의 평균채무액이 약 34% 증가한 것에 비하여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었다.

&lt;표 II-3-15&gt; 연령별 채무보유 현황

(단위: %, 만원)

연도		전체	30세 미만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2012	가구 평균(만원)	5,450	1,283	4,405	6,728	7,671	3,662
	보유가구 비율(%)	65.2	54.2	73.7	75.6	73.3	44.6
	가구 평균(만원)	8,365	2,367	5,978	8,898	10,470	8,211
	보유가구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13	가구 평균(만원)	5,858	1,401	4,890	6,879	7,959	4,201
	보유가구 비율(%)	67.0	54.5	73.6	77.8	73.6	47.6
	가구 평균(만원)	8,748	2,573	6,644	8,847	10,807	8,819
	보유가구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14	가구 평균(만원)	6,051	1,481	5,257	6,922	7,982	4,406
	보유가구 비율(%)	65.9	51.8	73.1	76.4	72.1	47.0
	가구 평균(만원)	9,186	2,859	7,192	9,059	11,064	9,377
	보유가구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15	가구 평균(만원)	6,256	1,491	5,463	7,160	7,939	4,843
	보유가구 비율(%)	64.6	48.4	71.3	74.9	71.6	47.3
	가구 평균(만원)	9,679	3,084	7,663	9,554	11,091	10,242
	보유가구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16	가구 평균(만원)	6,719	1,681	5,920	8,120	8,369	5,030
	보유가구 비율(%)	64.6	44.7	71.4	76.0	71.8	47.6
	가구 평균(만원)	10,400	3,763	8,289	10,689	11,650	10,571
	보유가구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17	가구 평균(만원)	7,099	2,393	6,920	8,637	8,670	5,199
	보유가구 비율(%)	63.5	47.7	72.1	74.5	71.3	46.8
	가구 평균(만원)	11,179	5,021	9,602	11,600	12,153	11,109
	보유가구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년도

### 나) 학자금 대출 현황

2018년 교육부 산하 전국교육통계센터(NCES)가 발표한 전국 고등교육 학자금 보고서에 따르면, 2015~2016학년도에 전체 대학생의 38.5%가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고, 연간 1인당 평균 대출액은 약 7,600달러에 달할 정도로 학자금 대출은 청년층 부채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표 II-3-16>은 대학교육연구소에서 발표한 학자금 대출자 비율과 대출액 통계이다. 2016년 1학기를 기준으로 재학생 대비 13.5%가 학자금을 대출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1인당 평균 대출액은 322만원이었다.

<표 II-3-16> 학자금 대출 현황(2012~2016)

(단위: 명, %)

연도	1학기				2학기			
	대출인원	대출액 (억원)	대출자 비율	1인당 대출액 (만원)	대출인원	대출액 (억원)	대출자 비율	1인당 대출액 (만원)
2012	260,004	9,038	14.5	348	259,548	8,189	15.5	315
2013	279,966	9,779	15.5	349	278,278	9,048	16.4	325
2014	282,550	9,590	15.5	339	278,112	8,541	16.4	307
2015	265,324	8,786	14.7	331	246,617	7,218	14.7	293
2016	237,623	7,643	13.5	322	235,209	6,815	14.3	290

자료 : 「대학교육연구소」, 각년도

## 다. 주거

### 1) 가구 형태

청년이 가구주인 가구 중에서 혼자 사는 청년은 15-29세 연령을 기준으로 69.9% (2015년 기준)로 절반을 넘어가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2010년 59.2%에서 불과 5년 사이 10%가량이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상승세는 30대를 포괄한 기준과 20대 초반 기준의 연령대에서 모두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II-3-17> 청년 1인가구 비율(2000~2015)

(단위: %)

연도	전체	15-24세	15-29세	15-39세
2000	15.5	56.2	39.1	18.7
2005	20.0	63.9	52.1	27.2
2010	23.9	70.9	59.2	33.8
2015	27.2	80.9	69.9	41.0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김기현 외(2017) 인용  
 주 : 연령별 가구비율=연령별 1인 가구수/ 연령별 일반가구수\*100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2017)에 따르면, 전체 표본 중 부모와 동거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6년 60.2%에 해당하였고, 2017년은 그보다 낮아진 51.0%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수치변화에 대하여 김기현 외(2017)는 조사설계상의 차이로 설명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절반 이상의 청년들이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lt;표 II-3-18&gt; 부모 동거여부(2016~2017)

(단위: %)

연도	전체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18세	19-29세	30-39세
2016	60.2	63.4	56.7	99.5	84.1	23.9
2017	51.0	54.5	47.2	98.7	69.0	18.6

자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각 연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김기현 외(2017) 인용

## 2) 주거 형태

### 가) 주거 점유형태

<표 II-3-19>는 연도별로 청년(20-39세) 주거 점유형태의 비중변화를 추계한 것이다. 먼저 전국을 대상으로 정리한 결과, 자가의 비중은 1995년 32.6%에서 29.8%로 줄었다. 전세의 비율은 1995년 44.5%에서 2015년 25.2%로 크게 줄었다. 반면 월세의 비율은 19.7%에서 37.9%로 크게 증가하여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났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도 자가와 전세가 줄고 월세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2015년 수도권의 자가 비율은 전국보다 5.1%p 낮고, 전세 비율은 6.7%p 높으며, 월세의 비율은 0.8%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도권의 경우 순수월세에 사는 청년의 비율이 2010년 2.7%에서 2015년 4.2%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lt;표 II-3-19&gt; 연도별 청년(20-39세) 주거 점유형태 비중변화(1995~2015)

(단위: %)

구분	자가	전세	월세			무상	계	
			월세전체	보증부 월세	순수월세			
전국	1995	32.6	44.5	19.7	14.1	5.6	3.2	100
	2000	32.4	44.0	19.9	14.8	5.1	3.6	100
	2005	32.3	34.7	28.9	23.8	5.1	4.1	100
	2010	29.8	32.6	33.7	29.6	4.1	3.8	100
	2015	31.1	25.2	37.9	33.0	4.9	5.8	100
수도권	1995	29.4	50.7	17.8	15.9	1.9	2.1	100
	2000	29.8	50.2	17.6	15.6	2.0	2.4	100
	2005	30.4	41.0	25.7	23.1	2.6	2.9	100
	2010	25.4	40.2	31.7	29.0	2.7	2.6	100
	2015	26.0	31.9	37.1	32.9	4.2	5.0	100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연도, 임덕영 외(2017) 인용

주 : 사글세는 순수월세에 포함

<표 II-3-20>은 2018년 청년 주거 점유형태의 비중을 살펴본 것이다. 우선 20대 청년(20-29세)의 경우 자가 비율이 7.4%, 전세는 18.7%, 보증부 월세는 60.5%, 순수월세는 8.6%, 무상은 4.8%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에 비하여 자가의 비율이 낮고, 월세의 비율이 높은 형태이다. 사회진입을 준비하거나 이제 막 진입한 사회초년생들은 상대적으로 자산이 부족하여 주거비 부담이 높은 월세를 선택할 가능성이 타 연령층에 비하여 높았다. 30대 청년의 경우(30-39세) 자가의 비율이 42.3%로 20대 청년에 비하여 월등히 높고, 전세의 비율 역시 26.9%로 높으며, 보증부 월세와 순수월세의 비율은 각각 23.2%, 2.7%로 20대 청년에 비하여 낮았다.

<표 II-3-20> 청년 가구주 가구의 주거점유형태 비중(2018)

(단위: %)

구분	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순수월세	무상	계
전체가구	57.7	15.2	19.8	3.3	4.0	100
청년가구	18.9	24.3	45.3	6.4	5.2	100
20-29세	7.4	18.7	60.5	8.6	4.8	100
30-39세	42.3	26.9	23.2	2.7	4.9	100

자료 : 「주거실태조사」, 2018년

주 : 청년가구는 만20세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가구주 가구를 의미함

#### 나) 주택마련 경험, 위치, 유형

청년 가구주 가구의 생애최초 주택마련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20대 가구의 주택마련 경험율은 8.0%이며, 20-34세 청년의 경우는 20.5%로, 30대 초반의 가구를 포함하니 2배 이상 경험률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0대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는 46.3%가 주택마련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II-3-21> 청년 가구주 가구의 생애최초 주택마련경험 유무(2018)

(단위: %)

구분	주택마련 경험 있음	주택마련 경험 없음	계
전체가구	65.4	34.6	100
청년가구	20.5	79.5	100
20-29세	8.0	92.0	100
30-39세	46.3	53.7	100

자료 : 「주거실태조사」, 2018년

주 : 청년가구는 만20세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가구주 가구를 의미함

<표 II-3-22>는 현재 주택의 위치에 대한 응답결과이다. 20-34세 청년가구의 경우 97.6%가 지상에 살고 있으며, 2.1%가 반지하, 0.2%가 지하, 0.1% 옥탑에 산다고 하였다. 청년 연령기준 변화 시 응답결과에 큰 차이가 나지 않았으며, 전체가구 역시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표 II-3-22> 청년 가구주 가구의 주택위치(2018)**

(단위: %)

구분	지상	반지하	지하	옥탑	계
전체가구	98.1	1.7	0.2	0.0	100
청년가구	97.6	2.1	0.2	0.1	100
20-29세	97.5	2.1	0.2	0.2	100
30-39세	98.1	1.7	1.7	0.1	100

자료 : 「주거실태조사」, 2018년

주 : 청년가구는 만20세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가구주 가구를 의미함

<표 II-3-23>은 청년 가구주 가구의 주택유형의 분포이다. 분석결과 청년가구 42.4%가 단독주택, 32.6%가 아파트, 1.1%가 연립주택, 10.2%가 다세대주택, 1.0%가 비거주용 건물, 12.8%가 주택이외의 거처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외에도 30대가 20대에 비하여 단독주택 거주 비율이 낮고 아파트 거주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I-3-23> 청년 가구주 가구의 주택유형(2018)**

(단위: %)

구분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비거주용 건물	주택이외 의 거처	계
전체가구	33.3	49.2	2.2	9.3	1.7	4.4	100
20-34세	42.4	32.6	1.1	10.2	1.0	12.8	100
20-29세	55.8	16.4	0.8	9.4	1.1	16.6	100
30-39세	21.7	59.2	1.7	10.3	1.0	6.1	100

자료 : 「주거실태조사」, 2018년

주1 : 청년가구는 만20세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가구주 가구를 의미함

주2 : 비거주용건물이란 영업(상점, 학원 등)을 위주로 건축된 건물에 마련된 주거공간

주3 : 주택이외의 거처란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거공간(오피스텔, 호텔·여관, 기숙사, 판잣집 등)

### 다) 주거면적

<표 II-3-24>는 자가와 임차가구의 주거면적을 비교한 결과이다. 청년층 내에서 자거나 임차가구냐에 따라 주거면적에 차이가 있었다. 자가의 경우 77.6  $m^2$ 인 반면 임차가구는 50.6  $m^2$ 의 주거면적을 이용하고 있었다. 한편 2-30대 청년들은 4-50대와 60대에 비하여 주거면적이 좁게 나타났고, 연령이 상승할 수록 주거면적 역시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표 II-3-24> 청년 가구주 가구의 주거면적(2016)

(단위:  $m^2$ )

구분	자가	임차	계
20-39세	77.6	50.6	64.1
20-24세	33.0	27.9	30.5
25-29세	71.5	34.7	53.1
30-34세	73.9	50.9	62.4
35-39세	79.1	62.8	71.0
40-59세	86.4	61.6	74.0
60세 이상	83.0	53.3	68.2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6년, 임덕영 외(2017) 인용

## 3) 주거 빈곤

### 가) 주거빈곤 규모

가구별 주거빈곤 규모를 살펴보면, 먼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는 전체가구대비 8.2%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3-25> 참조). 시설미달가구는 3.3%, 면적미달 가구는 5.3%, 방수미달가구는 0.5%였다. 청년가구의 경우 최저주거기준 미달율은 전체가구에 비하여 3.1%p 높은 11.3%였고, 면적미달률은 9.8%로 두드러지게 높았다. 지하, 옥탑에 거주하는 사람들까지 주거빈곤에 포함하여 빈곤규모를 추정하였을 때 전체가구의 빈곤율은 9.9%였고, 청년가구의 빈곤율은 13.6%였다. 주택이외의 임시 거처에 생활하는 인구는 전체가구 대비 2.05%, 청년가구 대비 4.0%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종 주거빈곤율은 전체가구 기준 12.05%, 청년가구 기준 17.6%였다. 한편, 청년 1인가구의 주거빈곤율은 22.6%로 매우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lt;표 II-3-25&gt; 가구별 주거빈곤율(2015)

(단위: 명, %)

구분	전체가구		청년가구		청년 1인가구		
전체	19,050,324	100	2,564,568	100	1,273,608	100	
최저주거기준 미달	계	1,560,752	8.2	289,512	11.3	161,191	12.7
	시설미달	653,977	3.3	55,153	2.2	38,661	3.0
	면적미달	1,011,752	5.3	250,871	9.8	137,636	10.8
	방수미달	100,639	0.5	15,984	0.6	-	-
최저주거기준 미달+지하 옥탑	전체	1,885,317	9.9	348,728	13.6	203,294	16.0
주택이외의 기타 거처	391,245	2.05	101,837	4.0	84,591	6.6	
주거빈곤	2,276,562	12.0	450,565	17.6	287,885	22.6	

자료 : 「인구주택총조사(20% 표본)」, 2015년, 최은영 외(2017) 인용

주1 : 청년가구는 만20세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가구주 가구를 의미함

주2 : 주택이외의 거처란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주공간(오피스텔, 호텔·여관, 기숙사, 판잣집 등)

## 나) 청년 1인가구 주거빈곤율 변화

<표 II-3-26>은 청년 1인가구의 주거빈곤율 추이에 관한 것이다.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양호한 아파트의 대량공급을 통해 전반적인 주거빈곤율이 급격하게 감소해 왔음에도(최은영 외, 2017), 서울 청년 1인가구의 주거빈곤율은 상당히 높다. 1995년 전국기준 주거빈곤율은 46.6%에서 2015년 11.6%로 급감하였으나, 서울은 1995년 58.2%에서 2015년 37.2%로 상대적으로 낮은 감소폭을 보이며 2005년 이후로는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lt;표 II-3-26&gt; 청년 1인가구의 주거빈곤규모 변화(1995~2015)

(단위: 명, %)

전국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5,891,563	4,071,328	2,536,259	2,028,695	1,560,752
	46.3	28.7	16.1	11.8	8.2
주택이외의 기타 거처	42,419	62,875	56,731	128,675	391,245
	0.3	0.4	0.4	0.7	2.1
주거빈곤	5,933,982	4,134,203	3,046,332	2,550,810	2,276,562
	46.6	29.2	19.3	14.8	11.6
서울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121,439	71,419	45,428	64,057	80,155
	57.8	30.6	15.1	18.8	20.2
주택이외의 기타 거처	866	1,445	2,818	22,644	38,906
	0.4	0.6	0.9	6.6	9.7
주거빈곤	122,305	72,864	102,272	123,591	147,533
	58.2	31.2	34.0	36.3	37.2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최은영 외(2017) 인용

주1 : 1995년과 2000년의 주거빈곤에는 지하 옥탑 거주가구가 포함되지 않음(당시 조사 미 실시)

주2 : 주택이외의 거처란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주공간(오피스텔, 호텔·여관, 기숙사, 판잣집 등)

## 라. 문화 및 건강

### 1) 여가활동

#### 가) 여가시간

국민여가활동조사결과에 따르면, 2016년 전체 인구의 평균 여가시간은 3.1시간이며, 2018년에는 3.3시간으로 약간 늘어났다. 2018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60대와 70대 이상은 평균을 상회하는 여가시간을 보유하고 있고, 20대는 3.2시간, 30대는 2.8시간, 40대는 2.9시간, 50대는 3시간의 하루 평균 여가시간을 확보하고 있다. 20대와 30대의 여가시간이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낮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 II-3-27> 연령별 하루평균 여가시간(2016/2018)

(단위: 명, %, 시간)

연도	구분	전체	15~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2016	3시간 미만	41.4	51.8	44.6	46.3	48.1	43.4	30.1	18.6
	3~5시간 미만	42.1	38.3	44.4	44.3	41.7	44.7	43.4	32
	5~7시간 미만	12.4	9	9.6	7.8	8.8	9.7	19.4	29.4
	7~9시간 미만	3	0.6	1.2	0.9	1.1	1.8	5.9	12.5
	9시간 이상	1.2	0.3	0.2	0.6	0.2	0.4	1.1	7.5
	전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평균	3.1	2.7	2.9	2.8	2.8	2.9	3.6	4.7
2018	3시간 미만	36.3	44.2	32.9	43.8	43.4	39	30.4	15.9
	3~5시간 미만	45.6	46	51.8	46.5	45.2	48	44.7	33.2
	5~7시간 미만	14.1	8.7	13.6	8.9	10.1	10.6	18.9	32.6
	7~9시간 미만	2.9	1.1	1.5	0.7	1.2	1.7	3.7	12.9
	9시간 이상	1.1	-	0.2	0.1	0.1	0.7	2.3	5.3
	전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평균	3.3	2.8	3.2	2.8	2.9	3	3.6	4.8

자료 : 통계청, 「국민여가활동조사」, 각년도

#### 나) 여가활동 내용

다음으로 평일에 참여한 여가활동 내용을 살펴보면, 전 연령은 2018년 휴식활동(98.8%), 취미오락활동(94.6%), 사회 및 기타활동(90.8%), 스포츠 관람활동(55.5%), 스포츠 참여활동(52.5%), 관광활동(50%), 문화예술 관람활동(41.8%), 문화예술 참여활동(28.3%) 순으로 여가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3-28>참조).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스포츠 관련활동을 더 많이 하고

있고, 사회 및 기타, 관광, 문화예술 관련 활동비율은 여성이 더 높았다. 20대, 30대 청년들은 전체연령에 비교하였을 때 여가활동 비중이 전반적으로 높았으며, 특히 스포츠, 문화 관련 활동에서의 비중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났다.

<표 II-3-28> 연령별 평일에 참여한 여가활동(복수응답)(2016/2018)

(단위: 명, %)

	활동내용	전체	남성	여성	15~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2016	휴식활동	97.6	97.1	98	96.4	96.7	96.4	98.2	97.9	98.5	99
	취미오락활동	92.8	94.2	91.4	97.2	97.3	95.7	93.6	92.8	87.4	83.2
	사회 및 기타활동	89.4	88	90.7	89.5	92	89.2	89.1	89.4	86.9	88.8
	스포츠관람활동	50	55.4	44.6	56.8	62.8	56.6	54.4	47.7	37.9	25
	스포츠참여활동	46.9	63.8	30.3	44.1	55.3	53.3	52.6	46.8	38.4	25.9
	관광활동	50.6	47.3	53.9	47.3	52.4	48.3	50.4	49.6	56.1	49.9
	문화예술관람활동	39.5	35.4	43.5	49.5	64.4	47	40.9	29.8	25.8	13.6
	문화예술참여활동	20.4	17.5	23.3	34.1	28.2	20.5	18.9	16.1	17.3	13.7
2018	휴식활동	98.8	98.8	98.8	98.5	97.9	98.3	98.8	99.1	99.3	99.8
	취미오락활동	94.6	95.3	93.9	98.1	98.2	96.1	94.2	93.5	93	89.9
	사회 및 기타활동	90.8	89.2	92.4	93.4	94	90.7	90.4	89.8	90.1	88.3
	스포츠관람활동	55.5	72.4	38.6	57.7	64.5	60.5	59.9	55	47.2	37.1
	스포츠참여활동	52.9	57.4	48.5	61.3	64.3	60.6	57.6	50.4	44.1	27.7
	관광활동	50	47.2	52.7	46.6	49.8	48.9	48.5	49	52.7	54.5
	문화예술관람활동	41.8	38.8	44.9	51.1	63.1	48.9	43.9	35.7	29.6	17.5
	문화예술참여활동	28.3	25.9	30.7	42.9	37.1	29.7	25	24.4	26.6	19.8

자료 : 통계청, 「국민여가활동조사」,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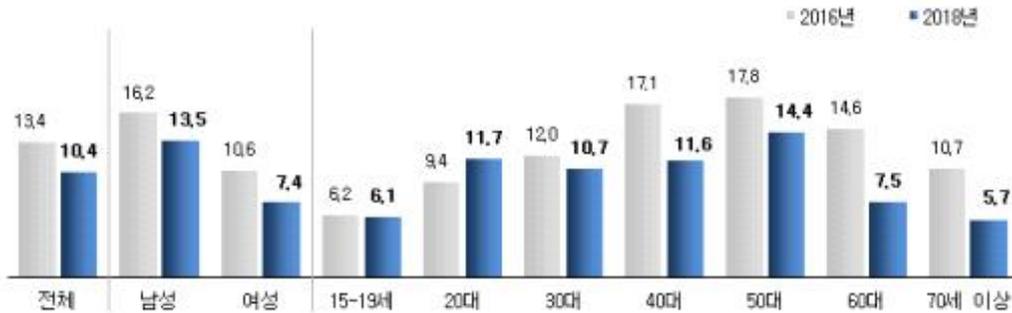
#### 다) 청년층 여가의 특징

청년층 여가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연령별 동호회 경험, 스마트기기활용 여가비중, 지속적 여가활동 비율을 살펴보았다.

<그림 II-3-7>은 연령별 동호회 활동경험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전체적으로 동호회 활동경험이 2016년 13.4%에서 2018년 10.4%로 줄었다. 한편, 20대는 2018년 11.7%로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2.3%p 증가하였다. 30대는 2016년 12.0%에서 2018년 10.7%로 줄었고, 40대의 경우 2016년 17.1%에서 2018년 11.6%로 큰 폭으로 줄었다. 동호회 활동은 ‘농구, 배구, 야구, 축구, 족구(14.0%)’, ‘등산(11.1%)’등의 스포츠 관련 활동이 주를 이루었다<sup>7)</sup>.

7) 문화체육관광부. (2019-01-29) 「국민여가활동조사」 보도자료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7085](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7085)

<그림 II-3-7> 연령별 동호회 활동 경험(2016/2018)



자료 : 통계청, 「2018년 국민여가활동조사 보도자료」, 2018

<표 II-3-29>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여가에 대한 것이다. 평일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 시간은 전체 여가시간 중 40.3%, 휴일의 경우 33.4%를 차지하여 사람들이 여가시간의 2/3 이상을 스마트기기를 이용하여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성보다 남성의 스마트기기 활용 비중이 높았다. 또한 전 연령층(10대 제외) 중에서도 20대의 스마트 기기 활용 비중이 평일 63.7%, 휴일 49.6%로 가장 높았으며, 30대는 평일 56.6% 휴일 43%로 두 번째로 높았다.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여가활동 유형은 웹서핑(31.3%), 모바일 메신저(17.9%), SNS활동(14.6%), 게임(14.1%), TV 시청(4.4%), 쇼핑(3.9%), 음악감상(3.8%), 인터넷 방송시청(2.7%), 드라마/영화보기(2.7%), 웹소설/웹툰읽기(2.0%) 순으로 높았다(국민여가활동조사 보도자료, 2018).

<표 II-3-29>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여가비중(2018)

(단위: 시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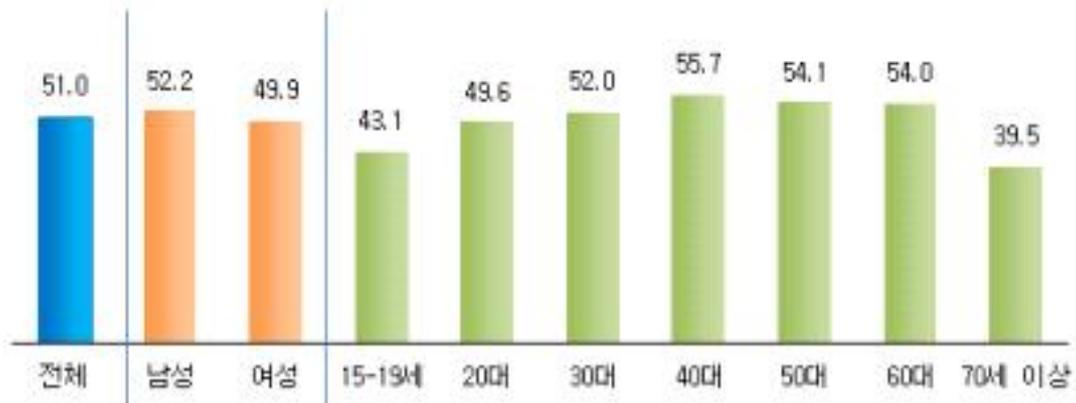
		평일			휴일		
		여가활동 시간	스마트기기 활용시간	스마트기기 활용 비중	여가활동 시간	스마트기기 활용시간	스마트기기 활용 비중
전체		3.3	1.3	40.3	5.3	1.8	33.4
성별	남성	3.1	1.4	44.1	5.3	1.9	35.1
	여성	3.4	1.2	36.7	5.2	1.7	31.8
연령대	15-19세	2.8	1.9	67.8	5.1	2.8	55.6
	20대	3.2	2.0	63.7	5.7	2.8	49.6
	30대	2.8	1.6	56.6	5.0	2.2	43.0
	40대	2.9	1.4	47.2	5.0	1.8	36.0
	50대	3.0	1.1	35.0	5.1	1.4	27.6
	60대	3.6	0.8	23.3	5.4	1.1	19.7
	70세 이상	4.8	0.4	8.2	5.8	0.5	8.2

자료 : 통계청, 「국민여가활동조사」, 2018년

<그림 II-3-8>은 연령별 지속적 여가활동 비율을 살펴본 것이다. 지속적 여가활동이란 휴식활동을 제외한 여가활동 중 일, 주, 월, 년 단위로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여가활동을 의미한다. 지속적 여가활동은 남성(52.2%)이 여성(49.9%)에 비하여 더 많았고, 20대(49.6%)와 30대(52.0%)는 40, 50, 60대에 비하여 지속적 여가의 비율이 낮았다.

<그림 II-3-8> 연령별 지속적 여가활동 비율(2018)

(단위: %)



자료 : 「2018년 국민여가활동조사 보도자료」, 2018

### 라) 여가비용

<표 II-3-30>은 지난 1년 동안 여가생활을 위해 사용한 한 달 평균 지출금액의 분포이다. 2018년 전체 인구는 평균적으로 15.1만원을 여가에 사용하였고, 2016년에 비하여 여가비용이 전 연령대에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30대 청년은 각각 평균적으로 16.7만원, 17.8만원을 사용하였고, 이들 중 50%이상이 월평균 15만원 이상을 여가에 사용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일과 여가의 균형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지닌 젊은 세대들이 적지 않은 비용을 여가에 투입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II-3-31> 여가비용에 대한 주관적 평가 결과이다. 2018년 여가비용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평균 4.2점(7점 만점)으로 2016년 대비 0.3점 하락하였다. 20대와 30대는 2018년 기준 각각 4.2점, 4.1점으로 평균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난 1년간 지출한 여가비용이 부족하지도 충분하지도 않은 보통 수준이라고 응답하고 있었다.

<표 II-3-30> 여가생활을 위한 한달 평균 지출금액(2016/2018)

(단위: %, 만원)

	활동내용	전체	남성	여성	15~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2016	3만원 미만	5.9	4.9	6.9	18.7	3.1	2.2	2.6	3	6.9	17.7
	3~5만원 미만	8.9	7.8	10	25.5	7.1	4.7	4.6	6.1	11	17.5
	5~7만원 미만	16.1	14	18.2	23.6	13.2	12.7	12.9	15.6	17.8	25.5
	7~9만원 미만	6.9	6.4	7.4	7.5	7.7	5.6	8.3	6.6	7.6	4.6
	9~15만원 미만	24.7	24.4	24.9	11.5	27.1	27.4	23.5	28.3	24.8	20.9
	15만원 이상	37.5	42.6	32.6	13.2	41.7	47.4	48	40.4	31.9	13.8
	전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평균(만원)	13.6	15.4	11.8	7.4	14.3	15.9	15.9	14.7	12.4	7.8	
2018	3만원 미만	5.1	4.3	5.8	13.4	2	2.5	2.1	3.1	5.6	16.5
	3~5만원 미만	7.8	6.9	8.6	19.2	4.6	5.9	4.3	6.5	7.7	16.7
	5~7만원 미만	14.8	13.8	15.8	29.1	12.3	10.1	11.2	12.3	18.7	23.3
	7~9만원 미만	6.4	5.8	7	8.6	6.4	5	6.8	6.7	7.3	5
	9~15만원 미만	22.3	22.3	22.3	16.4	23.5	22.9	22.4	24.9	24	16.9
	15만원 이상	43.6	46.8	40.4	13.3	51.3	53.6	53.1	46.6	36.7	21.7
	전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평균(만원)	15.1	16.3	13.9	8.0	16.7	17.8	17.2	16.1	13.6	8.9	

자료 : 통계청, 「국민여가활동조사」, 각년도

<표 II-3-31> 지난 1년간 지출한 여가비용에 대한 평가(2016/2018)

(단위: %, 점)

연도	구분	전체	15~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2016	매우부족	0.7	1.9	0.5	0.6	0.7	0.4	0.8	1.3
	부족	3.7	5.4	3.9	3	3.3	3.7	4.2	4
	다소부족	12.5	16.7	13.3	13.1	13	11.3	11.1	9.9
	보통	35.7	36.1	34.6	37.9	37.2	34	34.1	35.1
	다소충분	29.7	25.3	30.5	29.7	29.2	31.2	30.9	28.5
	충분	15.2	10.9	14.2	14	14.2	17.3	16.7	17.9
	매우충분	2.5	3.6	3	1.7	2.4	2.3	2.1	3.3
	전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평균	4.5	4.2	4.5	4.4	4.4	4.5	4.5	4.5	
2018	매우부족	1.3	1.7	1.3	2	1.2	0.6	1.2	1.8
	부족	5.1	7.6	6	5.4	4.9	4.5	4	5.1
	다소부족	19.2	25.6	20.1	21.2	19.7	17.2	17.6	16.2
	보통	38.1	32.5	34.4	37	38.8	39.6	39.5	42.2
	다소충분	23.4	21.4	24.6	23.3	23.7	25.1	23	19.8
	충분	10.4	9.5	11.4	8.8	10.2	10.1	11.7	10.9
	매우충분	2.5	1.6	2.2	2.3	1.4	2.8	3	4.1
	전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평균	4.2	4.0	4.2	4.1	4.2	4.3	4.3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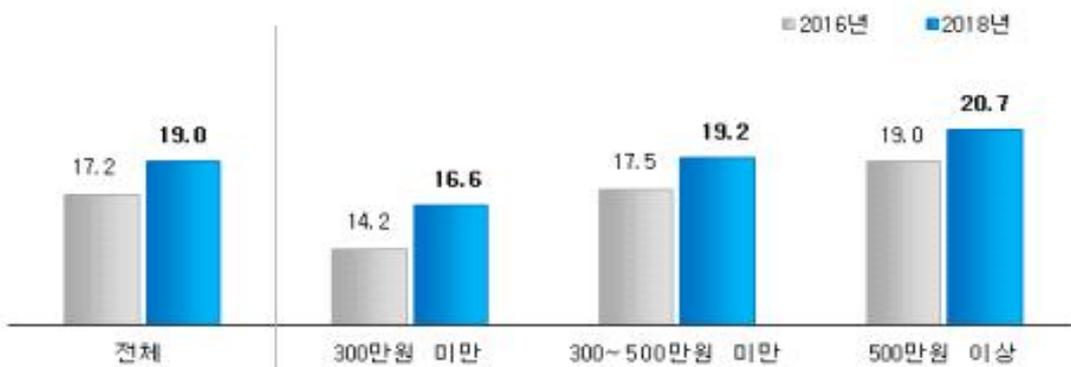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국민여가활동조사」, 각년도

### 마) 가구소득에 따른 여가활동 비교

다음으로 가구소득에 따른 여가활동의 개수, 여가시간, 여가활동 비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II-3-9>는 가구소득별 여가활동의 개수를 비교한 결과이다. 2016년 여가활동의 개수가 17.2개에서 2018년 19.0개로 늘어났으며, 300만원 미만, 300~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의 모든 소득구간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증가에도 소득에 따라 여가활동의 개수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300만원 미만의 가구에서는 2018년 16.6개로 전체 평균보다 약 2개 이상 부족한 여가활동을 누리는 것으로 보였다. 여가의 개수와 달리 여가시간은 상반된 결과를 보이는데, <그림 II-3-10>의 가구소득별 여가시간 분포를 살펴보면 가구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오히려 여가시간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3-9> 가구소득별 여가활동 수(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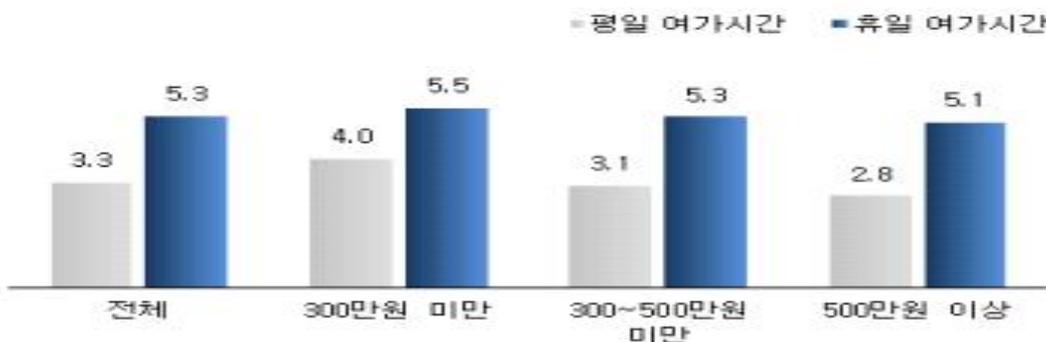
(단위: 개)



자료 : 「2018년 국민여가활동조사 보도자료」, 2018

<그림 II-3-10> 가구소득별 평일, 휴일 여가시간(2018)

(단위: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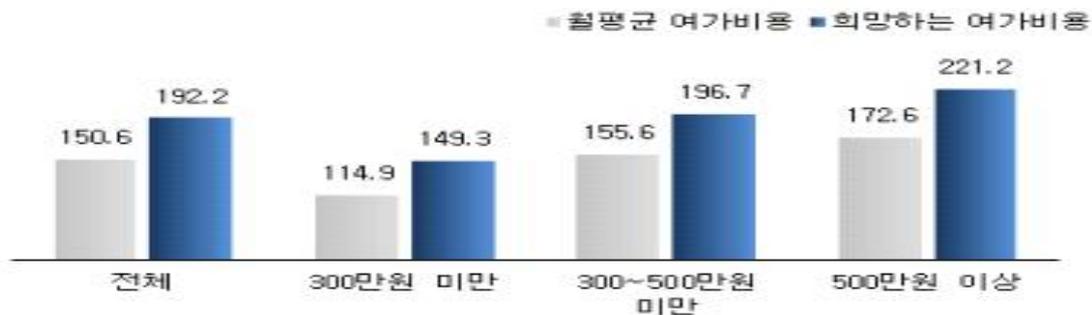


자료 : 「2018년 국민여가활동조사 보도자료」, 2018

가구소득별 여가비용을 보면, 가구소득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월평균 여가비용은 114.9천원으로 500만원 이상이 가구의 172.6천원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5만 8천원을 더 적게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I-3-11>참조). 희망여가비용에서도 300만원 미만의 가구는 월평균 149.3천원을 희망하고 있어 실제 여가비용보다도 적었다. 한편 희망여가비용의 경우 오히려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실제 여가비용과 희망 여가비용의 격차가 더 커짐을 알 수 있다.

<그림 II-3-11> 가구소득별 여가비용 비교(2018)

(단위: 천원)



자료 : 「2018년 국민여가활동조사 보도자료」, 2018

## 2) 건강

### 가) 주관적 건강상태

<표 II-3-32>은 국민건강영양조사(2017)의 연령별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응답결과이다. 주관적인 건강상태는 전체적으로 2.7점(5점 만점)으로 보통 이하 정도 수준에 머물렀으며, 20대와 30대 역시 이와 비슷한 수준인 2.8점에 머물러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표 II-3-32> 주관적 건강상태(2017)

(단위: 명, 점)

	전체	여성	남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매우나쁨	590	328	262	134	42	33	36	43	48	254
나쁨	1,996	995	1,001	320	183	248	285	247	176	537
보통	3,565	1,582	1,983	262	351	466	603	669	548	666
좋음	975	392	583	28	77	106	131	162	201	270
매우 좋음	239	75	164	3	3	5	10	35	70	113
평균	2.7	2.8	2.3	2.7	2.8	2.8	2.9	3.1	2.7	2.8

자료 : 통계청, 「국민건강영양조사」, 2017년

## 나) 당뇨 환자수

<표 II-3-33>는 20대 당뇨환자수 통계이다. 당뇨는 대표적인 노인질환으로 인식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대 당뇨환자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3년 20대 당뇨환자수는 1만 7,359명에서 2017년 2만 4,106명으로, 5년 새 38.9% 증가하였다.

&lt;표 II-3-33&gt; 20대 당뇨환자수(2013~2017)

(단위: 명)

	2013	2014	2015	2016	2017
평균	17,359	18,390	19,780	21,927	24,106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 각년도

## 다) 우울증 환자수

20대 우울증 환자 수 증감추이를 살펴보면, 20대 우울증 환자는 2013년 4만 7,721명에서 2017년 7만 5,602명으로 지난 5년간 58.4% 증가하였다. 청년 정신건강 증진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는 결과이다.

&lt;표 II-3-34&gt; 20대 우울증 환자수(2013~2017)

(단위: 명)

	2013	2014	2015	2016	2017
평균	47,721	47,879	52,275	63,436	75,602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 각년도

## 라) 우울감 지속여부

<표 II-3-35>는 국민건강영양조사의 2주 연속 우울감 지속여부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전체인구의 12.1%가 2주 연속 우울감이 지속되었다고 응답하였고, 20대는 14.5%가 우울하다고 응답하여, 전 연령층 중에서도 가장 우울감이 높은 것(70대 이상 제외)으로 나타났다.

<표 II-3-35> 2주 연속 우울감 지속(2017)

(단위: %)

	전체	여성	남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예	12.1	14.3	9.3	8.5	14.5	9.6	7.8	11.1	14.4	17.7
아니오	87.9	85.9	90.7	91.5	85.5	90.4	92.2	88.9	85.6	82.3
전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 통계청, 「국민건강영양조사」, 2017년

마) 자살률

<표 II-3-36>은 자살자수, 사망원인 비중, 자살률에 대한 통계이다. 2018년 자살률은 20-24세의 경우 15.3%, 25-29세는 19.9%, 30-34세는 25.6%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2018년 기준 사망원인 중 자살(고의적 자해)로 인한 죽음은 20-24세가 46.1%, 25-29세가 48.0%, 30-34세가 44.4%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령별로는 25-29세의 자살률, 사망원인 중 자살비중이 가장 높으며, 전 연령대에서 전년도에 비하여 상승하였다.

<표 II-3-36> 자살자수, 사망원인 비중, 자살률(2017/2018)

(단위: 명, %)

연도	20-24세			25-29세			30-34세		
	자살자수	사망원인 중 자살 비중	자살률	자살자수	사망원인 중 자살 비중	자살률	자살자수	사망원인 중 자살 비중	자살률
2017	467	43.0	13.3	639	46.2	19.6	789	42.7	23.3
2018	527	46.1	15.3	665	48.0	19.9	827	44.4	25.6

주 : 자살률 = 인구10만명당 자살자 수

## 4. 청년 및 빈곤청년 지원 정책과 사업

### 가. 중앙정부

#### 1) 청년지원 관련법

중앙정부의 청년지원 관련 단독법률로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유일하나 「고용정책기본법」을 비롯한 여러 법률에서 청년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세특례지원법」에서는 청년창업 및 청년고용기업의 세액감면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지원특별법」은 청년실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촉진을 위한 고용장려금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도 청년상인 육성을 규정하고 있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는 청년창업을 촉진하는 내용을 명시하였다.

<표 II-4-1> 현행 청년지원 관련법

법령명	연령	주요내용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15~29세 (시행령: 15~34세)	- 청년미취업자에 대한 고용확대 및 직업지도(제5조~제8조) - 청년 미취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제9조~제13조)
고용정책기본법	15~29세	- 청년고용촉진지원(제25조)
조세특례지원법	15~29세	-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6조1항)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15~34세	- 청년실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지원(제12조)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 재직 촉진지원(제12조의2)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설치(제35조의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39세	- 청년상인 육성(제16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39세	- 청년창업촉진(제14조의2제5항)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하 ‘동법’)은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2009년 제정되었으며,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이 설정되어있는 한시법이다.

<표 II-4-2>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주요내용

법령	구분	내용
청년 고용촉진 특별법	연령	15세 이상 29세 이하
	목적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
	주요 내용	1.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고용 확대 및 직업지도 2.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3. 정부의 행정지원체계

동법은 청년의 고용촉진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청년 고용촉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및 평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산하에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두도록 정하였다.

동법은 크게 3가지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먼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고용확대 및 직업지도에 관한 부분이다. 공공기관에서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하며, 공공부문(안보, 국방, 치안, 소방, 사회복지서비스 및 환경보전)에 청년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을 정하고 있다. 또한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중소기업체에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청년 미취업자에게 직장체험 기회, 직업지도 프로그램, 고용지원 서비스 등을 제시할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청년 미취업자 또는 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것이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수요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원칙을 정하고 있고,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직업훈련기관이나 기업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때 이에 대한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행정지원체계에 관한 부분에서는 실태조사, 인력수급 및 취업정보에 대한 통합전산망 구축, 직업훈련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청년 관련 정책은 청년의 ‘고용’ 문제에 주안점이 맞춰져 있었다. 현재 청년 문제의 핵심이 고용과 직결되어 있기는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청년 문제는 고용, 소득 및 금융, 주거, 문화 및 건강과 같이 다양한 차원에 걸쳐져 있어 일자리 중심의 현행법 체계로는 많은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 식에서 20대 국회에서도 청년관련 의안들이 다양하게 발의되고 있으며, 그 내용은 <표 II-4-3>에 정리되어 있다.

## 2) 청년관련 입법발의 현황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청년관련 의안은 2019년 6월 20일을 기준으로 총 18건이며, 청년 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하면 총 65건의 의안이 발의되었다. 그 중 청년기본법(청년정책기본법) 6건, 청년발전지원(기본)법안 3건, 청년농업인 및 어업인 지원관련 법안 각각 1건, 청년 창업 및 일자리 관련 법안 3건, 청년(미래)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건 있으며, 그 외 청년기본소득법안, 청년세법안, 청년주거안정지원 특별법안 발의되었다.

지금까지 가장 빈번하게 발의되었던 청년기본법 또는 청년발전지원법안은 청년이 기존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소외되었으며, 청년문제 해결을 당사자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통해 해결하자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이다. 그리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의무적으로 할당하거나, 청년위원회(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어 청년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권리와 책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여 청년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을 정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외에도 청년의 생활, 주거, 건강, 문화예술참여, 청년단체 및 공간 지원 등 생활 전반의 복지향상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표 II-4-3> 청년관련 입법발의 현황

법안명	발의일 (최신순)	연령	주요내용
청년발전지원법안 (신보라의원 등 14인)	2018.11.30	19세~ 34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도별 시행계획 청년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li> <li>- 청년정책조정위원회</li> <li>- 청년관련 기초조사, 여론조사 실시, 정보체계 구축</li> <li>- 위원회 청년참여비율 할당, 정책결정과정 청년참여 확대</li> <li>- 청년단체 지원, 청년관련시설 설치 운영</li> </ul>
청년기본법안 (이명수의원 등 18인)	2018.02.19	18세~ 34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3년마다 수립, 시행</li> <li>- 청년정책 수립 위한 실태조사, 여론조사, 연구</li> <li>- 청년의 권리 보호 및 신장 위한 방안 마련</li> <li>- 청년정책 결정과정 청년의 참여 확대, 청년 정치참여 활성화</li> <li>- 청년 고용촉진, 청년 교육프로그램개발, 훈련비용 지원금제도 마련</li> <li>- 청년 생활 안정, 주거안정, 심리상담지원, 금전지원</li> <li>- 청년 문화예술역량 향상, 참여기회 확대</li> <li>- 청년단체, 청년시설 설치 운영 지원</li> <li>- 청년지원기금을 설치함</li> <li>- 청년정책 연차보고서</li> </ul>
청년어업인 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2017.11.17	15세~ 39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정권 호감도</li> <li>- 북핵 문제 해결 전망</li> <li>- 통일의 필요성 인식</li> </ul>

<표 II-4-3> 청년관련 입법발의 현황

(계속)

법안명	발의일 (최신순)	연령	주요내용
청년미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국회운영위원장)	2017.11.09		- 청년미래 특별위원회 구성
청년주거안정지원 특별법안 (김현아의원 등 29인)	2017.10.30	19세 ~39세	- 청년지원주택을 청년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에 제공하는 주택으로 정의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청년에 대한 주거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시사가 청년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청년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자원 확보 - 청년지원주택에 대한 최저주거기준 마련, 청년주거안정에 대한 통계 작성 - 청년에 대한 주거실태조사 실시, 청년주거복지센터 설치 - 일정금액 이하의 보증금에 대한 임대인과 청년임차인간의 보증기관의 신용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지원 - 청년지원주택을 임대하기 위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거환경 개선비용 등 지원
청년농업인 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 (김종희의원 등 25인)	2017.09.13	15세 ~39세	- 청년농업인에게 청년농업인 직불금 지급
청년발전지원 기본법안 (강창일의원 등 12인)	2017.06.30	18세 ~39세	- 매년 7월 청년의 달 지정 - 청년정책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 청년정책 관련 문제 실태조사, 여론조사 및 연구 실시 - 청년정책에 미칠 영향을 분석 및 평가 - 대통령 소속으로 청년발전지원위원회 구성 - 청년 권리 보호 및 신장을 위한 방안 마련 - 청년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청년 참여 - 청년일자리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고용유지를 위한 대책 수립 - 청년 교육훈련비용 지원금 제도 수립 시행 - 청년 주거안정지원금 지급 - 청년 문화활동 참여 기회 확대 - 청년의 정치활동 지원 - 청년단체의 행정적 지원 - 청년발전지원기금 설치 - 청년정책 연차보고서 작성
청년기본법안 (박주민의원 등 26인)	2017.04.13	19세~ 34세	- 5년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 대통령 소속으로 청년위원회 설치 - 청년지원금 지급 -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 청년정책 연차보고서 작성
청년기본소득법안 (김부겸의원 등 21인)	2017.01.31	19세~ 29세	- 비정규직 취업자 및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을 신고하고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등에게 지급 - 청년기본소득액은 청년 한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월 생활비용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급여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 보건복지부에 청년기본소득위원회 구성

<표 II-4-3> 청년관련 입법발의 현황

(계속)

법안명	발의일 (최신순)	연령	주요내용
청년발전기본법안 (김해영의원 등 12인)	2016.12.02	19세~ 34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기본계획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li> <li>-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회의, 청년정책임관 지정</li> <li>- 청년과 관련된 문제의 기초조사와 여론조사 실시, 청년주간 지정</li> <li>-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 참여 확대</li> <li>- 청년 참여 촉진과 발전을 위한 활동 지원, 청년관련 시설 설치·운영</li> </ul>
청년세법안 (정세균의원 등 108인)	2016.11.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국법인 및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청년세를 부과</li> </ul>
청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원욱의원 등 12인)	2016.10.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문제해결을 위한 법안 심사·처리 등을 위한 청년특별위원회 구성</li> </ul>
청년 첫일자리 지원 특별법안 (박홍근의원 등 15인)	2016.10.24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 (15-29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첫일자리 지원의 종류는 취업알선 지원, 청년직업훈련 지원, 중소기업 청년인턴, 창업지원, 해외취업 지원 등으로 정함</li> <li>- 지원대상자를 최종학교 졸업예정이거나 졸업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이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로 한정</li> <li>- 구직지원수당, 취업장려수당, 근속장려수당 지원</li> <li>- 첫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한 조사 연구 및 평가 진행</li> <li>- 조세감면</li> </ul>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청년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경수의의원 등 16인)	2016.10.24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 (15-29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창업자 양성을 위한 청년창업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li> <li>- 대학내 창업휴학제도, 창업실적평가 제도 등 운영 권장</li> <li>- 청년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포럼 및 세미나 개최</li> <li>-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 수립 및 운용</li> <li>-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청년기업제품 구매계획 포함</li> <li>- 영세청년창업자 지원</li> <li>- 청년창업기업 활동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li> <li>- 청년창업 활성화 및 청년창업기업 진흥기금 설치</li> </ul>
청년기본법안 (이원욱의원 등 10인)	2016.08.24	19세~ 39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 선언</li> <li>- 매년 중 1주년을 지정하여 청년주간 지정</li> <li>-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li> <li>- 청년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 및 평가</li> <li>- 국무총리 소속의 청년정책위원회</li> <li>-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년정책관 지정</li> <li>- 청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 매년 실시</li> <li>- 청년 참여확대 방안 강구, 청년 정치 참여 기회 확대</li> <li>- 청년의 능력, 재능, 기술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저소득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및 융자</li> <li>- 청년 고용 촉진 및 청년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대책 수립, 지역청년인재 및 취약청년의 취업 촉진 및 자립 지원</li> <li>- 청년 주거환경 개선</li> <li>- 청년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결혼, 임신, 출산, 양육 지원</li> <li>- 청년문화의 특수성과 청년의 여가 수요를 고려한 여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li> <li>- 창의적인 청년문화 창고 및 육성</li> <li>- 청년생활지원금 지급</li> <li>- 청년시설 및 청년지원센터 설치, 운영</li> <li>- 매년 청년정책 수립 및 추진실적 보고서 등 작성, 국회 제출</li> </ul>

<표 II-4-3> 청년관련 입법발의 현황

(계속)

법안명	발의일 (최신순)	연령	주요내용
청년정책기본법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2016.08.17	19세~ 34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li> <li>- 청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기초조사와 여론조사 실시</li> <li>- 청년발전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분석 및 평가, 정책 분석 및 평가</li> <li>- 국무총리 소속의 청년발전위원회</li> <li>- 각종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증진 및 확대방안 강구</li> <li>- 청년수당 지급</li> <li>- 청년 능력개발, 사회참여, 문화복지증진, 고용확대 및 창업 지원</li> <li>- 청년시설 설치 운영</li> </ul>
청년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조경태의원 등 15인)	2016.06.13	대 통 령 으 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 (15세-29 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창업과 청년창업기업의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li> <li>-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 및 청년창업과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li> <li>-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청년창업자 및 청년창업기업 우대</li> <li>- 중소기업제품 구입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청년창업기업제품 구매 계획 포함</li> <li>- 청년의 창업 및 청년창업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한 신용보증제 도입</li> <li>- 소규모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지식서비스 거래의 활성화, 우수한 아이디어의 사업화 및 기술의 개발 등 지원</li> </ul>
청년기본법안 (신보라의의원 등 122인)	2016.05.30	19세~ 39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의 권리와 책임 선언</li> <li>- 청년정책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li> <li>- 청년관련 실태조사 매년 실시</li> <li>-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li> <li>- 중앙 및 지자체 장이 소속 공무원 중 청년정책책임관 지정</li> <li>- 청년 참여증진 및 확대방안 강구</li> <li>- 청년단체 행사 지원</li> </ul>

자료 :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 김문길 외(2017)의 정리를 바탕으로 재구성 및 최신 정보 업데이트

### 3) 사업 및 프로그램

#### 가) 정부부처별 사업 및 프로그램 현황

<표 II-4-4>는 중앙정부의 청년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을 부처별로 정리한 것이다. 해당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17 한 권으로 통하는 대한민국 청년지원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다.

고용노동부는 미취업 청년의 취업을 지원하는 각종 직업훈련 및 구직촉진 프로그램, 산학 간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직무경험 프로그램, 중소기업 취업 촉진 프로그램, 각종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청년 인력의 역량제고와 취업이행 지원을 목적으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관련 사업, 대학생 등록금 부담경감 및 장학금 지원 프로그램, 직업교육 확대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는 2017년부터 취업사관학교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능력훈련개발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각 부처들은 해당 부처의 특성에 맞게 전문인력을 교육 및 양성하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청년을 지원하고 있다.

<표 II-4-4> 정부부처별 청년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 현황

부처별	프로그램명
고용노동부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 취업성공패키지, 내일배움카드제,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기술·기능인력 양성 훈련,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취업아카데미, 고용디딤돌 프로그램(대기업·공공기관 교육훈련), 중소기업탐방 프로그램,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재학생 직무체험, K-Move (해외취업지원), 청년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일학습병행제, 대학일자리센터(대학내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지원관, 대학청년고용센터, NCS 기반 능력중심 채용 확산,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자치단체 일자리 창출),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기업대학,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 청년친화강소기업.
교육부	대학 특성화 사업,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 (ACE+),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 BK21 플러스 사업, 대학생 등록금 부담경감, 중소기업 취업 연계 희망사다리장학금 지원, 글로벌 현장 학습 프로그램 운영, 일반고 직업교육 확대, NCS 기반 고교 직업교육과정 개편·적용 체계 구축, 특성화고 등 기업 맞춤형반 운영, 사내대학, 지역혁신 창의인력 양성사업, 재직자 후진학 지원, 대학창업교육 체계 구축, 학교기업 지원 사업, 대학창업펀드 조성
여성가족부	취업사관학교
미래창조과학부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 연구개발서비스 전문인력양성,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육성 지원사업, ICT 분야 재도전 창업 사업화 지원, 창조경제타운 구축·운영,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문화예술교육활성화, 박물관 진흥지원(학예·교육인력 지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예술인력육성(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교육 및 배치,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지원, MICE산업 유성지원(MICE산업맞춤형교육프로그램), 관광전문인력 양성, 문화창조융합벨트구축(문화콘텐츠 인재양성), 관광사업 창업 지원 및 벤처 육성
외교부	월드프렌즈코리아(해외봉사단) 사업, ODA 영프로페셔널 사업, 다자협력전문가(KMCO)파견사업
법무부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사업(O.K.프로젝트)
행정안전부	자원봉사활성화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 청년 해외 개척단(AFLO) 운영,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신진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사업, 에너지인력양성 산업전문 인력역량강화, 산업전문인력 역량강화사업, 지역 중소·중견기업 R&D 인턴지원사업(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생물자원 전문인력 양성사업, 물산업 프로젝트 매니저 양성, 화학물질평가 전문인력 양성
국토부	글로벌청년리더 양성, 항공전문인력 양성사업, U-City 인력양성, 물류전문인력 양성지원,
해양수산부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 산학연계 지원, 오션폴리텐 양성,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 수산계고교 특성화 사업, 해양수산 취업박람회, 해양관광 창업 지원,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

국방부	유급지원병(군 특성학교) 양성
중소기업청 (현 중소벤처기업부)	맞춤형 연수사업, 벤처기업 공동채용·훈련사업, 청년창업사관학교(창업성공패키지), 본글로벌액셀러레이팅(창업사업화지원), 스마트 벤처 창업학교(창업사업화지원), 창업선도대학 육성, 창업보육센터(창업인프라 지원), 대한민국 창업리그(창업저변확대), 창업대학원 지원사업(창업저변확대), 청년전용 창업자금(창업기금 자금)
병무청	취업맞춤특기병 제도 확대 및 내실화, 산업기능요원 보충역 배정 확대
농촌진흥청	글로벌 농업인재 양성
산림청	해외산림인턴지원
기상청	기상기후산업 청년창업 지원사업

자료 : 고용노동부, 「2017 한 권으로 통하는 대한민국 청년지원 프로그램」, 2017

주 : 위의 보고서에는 보건복지부 청년지원프로그램은 미포함됨

### 나) 지원 영역별 현황

부처별 사업 및 프로그램을 지원영역별로 정리한 현황은 <표 II-4-5>와 같다. 한국고용정보원이 2019년 3월 오픈한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에 의하면, 2019년 5월 29일을 기준으로 총 165건이 등록되어 있으며, 그 중 취업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이 105건으로 가장 많았다. 세부내용으로는 1) 교육훈련, 체험, 인턴 프로그램, 2)중소기업 취업지원, 3)전문분야 취업지원, 4) 해외진출 영역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으로 주거금융에는 37건, 창업지원에는 19건, 생활복지에는 5건의 프로그램이 등록되어 있어 생활복지 영역의 사업이 상대적으로 미흡함을 알 수 있다. <표 II-4-5>는 고용(취업), 고용(창업), 소득금융, 주거, 문화건강의 영역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표 II-4-5> 지원 영역별 사업 및 프로그램 현황(중앙정부)

지원영역	사업 및 프로그램명
고용(취업) 교육훈련, 직업체험, 인턴	청년구직활동지원금(구 청년구직촉진수당), 청년취업성공패키지, 내일배움카드(실업자, 구직자), 내일배움카드(근로자),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탐방 프로그램,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 사업, 중소기업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청년 훈련사다리,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대학일자리센터, 편견없는 채용, 블라인드 채용 확산,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중소기업 취업연계 장려금), 여성새로일하기센터(청년여성 내일역량 개발지원1),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 개선, 단기집단상담프로그램,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석박사 연수사업,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 기업대학,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 빈곤청년에 대한 근로인센티브 확대, 지역 중소·중견기업 R&D 인턴 지원사업,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재학생 직무체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일반고 특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4차 산업혁명 선도 인력 양성 사업, 직업심리검사, 청년취업아카데미, 청년 취업역량 프로그램, 청년장병 진로/취업지원강화, allA(청년진로역량강화)프로그램, 취업특강, 군 복무 자기개발 지원, CAP+(청년직업지도)프로그램, Hi(고졸청년취업지원)프로그램, 일학습병행제,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취업지원(내일이룸학교), 청년여성멘토링(청년여성 내일역량 개발지원2)

제 2 장 청년 관련 선행연구 및 국내 정책환경

중소기업 취업지원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청년동행카드),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능력중심 채용 모델 개발 및 확산 사업, 청년고용증대세제	
전문분야 취업지원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청년동행카드),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능력중심 채용 모델 개발 및 확산 사업, 청년고용증대세제, 항공조종사 선선발 후교육제도, 항공분야 취업지원,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 신진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지원, 일자리성공패키지, 물류전문인력양성2(글로벌물류인력양성사업), 취업맞춤특기병 모집제도,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활성화 사업, 관광전문인력 양성,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인력양성1(2년제 학위과정), 빅데이터 청년인재 양성 및 일자리 연계,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인력양성2(직업훈련과정), 항공정비인력양성채용, 청년귀농장기교육, 물류전문인력양성1(물류기능인력양성사업),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 청년농업인 육성정책(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청춘마이크’ 사업을 통한 청년문화예술가 지원, 해운항만물류전문인력양성 산학연계 지원, 생물자원전문인력양성사업2(생물다양성협약 대응 전문인력 양성 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 산업기능요원(보충역), 산업전문인력 역량강화사업, 에너지 R&D 전문인력양성(에너지 인력양성 사업), 오프라인 청년센터, 생물자원전문인력양성사업1(미개척 생물분류군 전문인력 양성), 자원봉사관리자 일자리 제공, 물산업 프로젝트매니저(PM) 양성사업, 스마트시티 혁신인재육성,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구 화학물질 유·위해성 정보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	
해외진출	WFK-청년봉사단(Korean University Council for Social Service, KUCSS),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WFK-KOICA UNV 대학생봉사단, WFK-청년봉사단(The Pacific Asia Society, PAS), WFK-ICT 봉사단(Korea ICT Volunteers, KIV), WFK 봉사단 코디네이터, 해외취업정착지원금, KOICA 해외사무소/재외공간 영프로페셔널, 해외인턴사업(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ODA 사업수행기관 영프로페셔널, 농식품 청년 해외개척단(AFLO), K-Move 스쿨, 청년 해외진출 멘토링, 해외산림인턴사업, WFK-청년봉사단(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KOICA 다자협력전문가(KOICA Cooperation officer, KMCO), World Friends Korea 해외봉사단, WFK-과학기술지원단, 월드프렌즈 청년 중기봉사단, WFK-KOICA NGO봉사단, 개발협력코디네이터, WFK-한방봉사단(KOMSTA), KF 글로벌 챌린저(청년 해외진출 활성화), 한상 청년채용 인턴십	
고용 (창업)	경영지원	고속도로 청년휴게소(청년창업, 푸드트럭), 청년전용창업자금, 벤처기업 공동채용 지원,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청년창업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내 희망상가 제공, 청년창업기업 세금 면제, 대학창업펀드 조성, 외식창업인큐베이팅(청년키움식당), 글로벌액셀러레이팅(본글로벌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R&D지원	스마트 벤처 캠퍼스,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민간투자주도형 TIPS과제(TIPS프로그램), 생활혁신형 창업가 지원, 초기창업패키지(구. 창업선도대학 육성),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 창조경제혁신센터 원스톱서비스존, 대한민국 창업리그, 소셜벤처 아이디어 경연대회, 재도전 성공 패키지
소득 금융	생활비 지원 및 금융혜택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청년 보충부 월세대출, 희망키움통장 I, II, 내일키움통장,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군복무기간 이자 면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청년 금융교육 지원, 청년 신용회복 지원(대학생 미취업청년지원), 청년희망키움통장
	학자금	국가근로장학금, 국가장학금 I 유형(학생직접지원형), 인문 100년 장학금,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지역인재 장학금,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다자녀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II 유형(대학연계지원형), 대학 입학금 부담 완화, 희망사다리장학금 II(고졸 선취업 후학습자 장학금),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희망사다리장학금 I(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 대통령 과학장학금,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경감
주거	주거지원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행복기숙사(사립), 행복기숙사(연합), 청년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공급, 청년 주거급여 지원 강화, 청년 주거정보제공 및 교육 강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를 통한 청년주택 확대, 청년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청년 사회적 주택), 대학생 기숙사 확충 지원(대학기숙사 용적률 완화 등 추진), 민간기부형 대학생 연합기숙사
문화건강		관광두레 청년 참여 지원,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 대한민국 해양영토 대장정, 병무청 어플리케이션, 청년층에 대한 정신건강 지원(마음건강버스/마인드링크)

자료 : 온라인청년센터(<https://www.youthcenter.go.kr/>)를 바탕으로 작성

다) 취약계층 청년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

<표 II-4-6>은 중앙정부 사업 중에서도 빈곤청년과 관련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각 지원영역별로 지원 대상, 지원내용, 소관부처로 구분하여 정리한 것이다. 고용(취업)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빈곤청년에 대한 근로인센티브 확대 프로그램이 있고, 고용(창업)에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소득금융에는 희망키움통장 I II,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 경감, 주거에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문화건강에는 마음건강버스 등이 있다.

<표 II-4-6> 취약계층 청년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 현황

영역	프로그램명	지원대상 (2019년 기준)	지원내용	소관부처
고용 (취업)	청년구직 활동지원금	만18-34세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구직활동지원금: 월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 지원(카드지급) -취업성공금: 취업후 3개월 근속한 경우 현금 50만 원 지급 -고용서비스 지원: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의 취업지 원 프로그램 안내, 취업특강·멘토링·직무교육 *구직활동인정기준: 취업관련 스티디 등 기타 개인 적인 취업준비 활동을 폭넓게 인정	고용 노동부
	취업성공 패키지	만18세~ 34세 청년, (유형1) 만18세~34세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영세업자(연간매출액 1억 5천만원 미만) 및 특정취약계층 (유형2) 청년(18~34세, 소득무관)	-유형1: [1단계] 상담 및 진단 (3주~1개월간 수당 최대 25만원) -> [2단계] 직업능력향상(훈련비 300 만원 내일배움카드로 지급+참여수당 6개월간 최대 40만원) -> [3단계] 취업알선 (취창업성공축하금 최 대 150만원 지급) -유형2: [1단계] 상담 및 진단 (1주~1개월간 수당 최대 20만원) -> [2단계] 직업능력향상(훈련비 200 만원 내일배움카드로 지급+참여수당 6개월간 최대 40만원) -> [3단계] 취업알선	고용 노동부
	빈곤청년에 대한 근로인센티 브 확대	만 18세 이상~34세 이하 재직자 및 자영업자 및 기초생활수급가구 청년	-근로소득공제확대: 월 40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하는 것으로 확대 -근로인센티브강화: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 희 망키움 통장을 통해 근로인센티브 확대 -취업에 따른 자립지원별도가구 보장: 취업 후 가족 과 동거 유지 시 소득·재산 분리기간을 고교 졸업 후 7년, 대학 졸업 후 5년으로 연장 -부양부담 경감: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중인 부양 의무자로서 월 소득 258만원 이하인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1인 가구에 대해서는 부양비를 면제 -학비 대출 지원, 근로빈곤층 취업우선 지원제도 개선	보건 복지부
고용 (창업)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 1~2등급으로 가입된 영세 소상공인	-월 고용보험료(1등급 월 34,650원 2등급 38,920 원)의 50%를 최대 2년(24개월)간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비(비용의 40~ 100%) 지원	중소 벤처 기업부
소득	희망키움 통장 I, II	(희망키움통장1) 만15~39세의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가구 전체 총	(희망키움통장)1 -내용: 가입자 본인저축액(5만원 또는 10만원) + 근 로소득장려금(월 평균 26만원) 3년간 적금 -혜택 내용: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정부 지원금	보건 복지부

제 2 장 청년 관련 선행연구 및 국내 정책환경

		<p>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인 가구</p> <p>(희망키움통장2) 만15-39세의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p>	<p>월 평균 33만원(3년 만기 시 총액 평균 1,550만원+이자) 적립 후 수령</p> <p>-지급 방법: 만기 후 일시 목돈 지급</p> <p>-지급 요건: 3년 만기 이전 탈수급(생계 및 의료급여 중지)</p> <p>(희망키움통장2)</p> <p>-내용: 가입자 본인저축액(1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본인저축액 1:1) 3년간 적금</p> <p>-혜택 내용: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정부 지원금 월 정액 10만원(3년 만기 시 총액 최대 720만원+이자) 적립 후 수령</p> <p>-지급 방법: 만기 후 일시 목돈 지급</p> <p>-지급 요건: 가입기간 근로활동하며 본인 저축액 납입하고 4회 이상 관련 교육 이수</p>	
금융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만24세 이하 한부모	<p>-아동양육비: 생계급여 수급자가 아닌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에게 월 18만원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법 상 아동양육비로 월 13만원을 받고있는 경우에는 차액으로 월 5만원만 추가지급)</p> <p>-복지시설 입소가구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이하인 가족에게 가구당 월 5만원의 생활보조금 지원</p> <p>-검정고시 학습비: 교육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에게 연 154만원 이내 지원</p> <p>-고교생 교육비: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고교학비지원자, 교육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기준 중위소득 52%초과~60%이하에게 학교계좌로 실비입금</p> <p>-자립촉진 수당: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에게 월 10만원 지원</p>	여성가족부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경감	일반상환학자금대출 대상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자	<p>-일반상환학자금자체 프리워크아웃 제도: 분할상환 지원, 지연배상금 감면</p> <p>-손해금(지연배상금)감면제도: 기한 이익상실 후 발생한 지연배상금 감면</p> <p>-분할상환제도: 장기연체로 채무 일시 상환 상황에서 10년 이내의 장기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p> <p>-학자금 유예대출: 대학졸업 후 경제적으로 곤란한 청년에 대하여 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 일정을 최장 3년 동안 일정기간 유예</p> <p>-지자체 이자지원: 한국장학재단과 협약한 지자체 또는 기관이 기준에 따라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p>	교육부
주거	주거안정 월세대출	(우대형) 무주택자로 취업준비생/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사회 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p>-대출금리: [우대형] 연1.5%, [일반형] 연2.5%</p> <p>-대출한도: 매일 최대 40만원씩 2년간 총 960만원 한도로 대출</p>	국토교통부
문화건강	청년층에 대한 정신건강지원(마음건강버스)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에 제한적인 지역주민,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취약계층, 재난현장 주민, 청년 구직자 등	<p>-직접 찾아가는 출장 진료 서비스</p> <p>-심리/정신건강 상태 점검 및 검사 무료 제공</p> <p>-심리 치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무료 제공(정신과 전문의 무료상담 및 힐링 프로그램</p>	보건복지부

자료 : 온라인청년센터(<https://www.youthcenter.go.kr/>)를 바탕으로 작성

## 나. 지방정부

### 1) 광역시·도 조례 현황

전국 시·도 단위의 지방정부의 청년 관련 조례는 2019년 6월 20일 기준으로 총 52건이 제정되어 있다. 그 내용으로는 청년 기본 조례, 취창업 및 일자리 촉진 관련 조례, 농어업인 지원에 관련된 조례 등 다양하다. 각 시·도별 조례 제정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II-4-7> 시도별 조례현황

시도(개수)	조례명
강원(2)	청년 기본 조례,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경기(5)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청년 기본 조례,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청년배당 지급 조례
경남(3)	청년 발전 기본 조례,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경북(4)	청년 기본조례, 청년 미취업자 등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청년창업지원 조례, 청년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광주(4)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 조례, 청년정책 기본 조례
대구(2)	청년 기본조례, 청년 취업지원 등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대전(2)	청년 기본조례, 청년취업희망카드 조례
부산(1)	청년 기본 조례
서울(7)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청년 기본 조례,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청년주거 기본 조례
세종(2)	청년기본 조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울산(2)	청년 기본 조례, 청년창업 지원 조례
인천(2)	청년 기본 조례, 청년창업 지원 조례
전남(5)	청년 기본 조례, 청년구직지원 조례, 청년이 돌아오는 전라남도 농어촌 만들기 조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청년창업 지원 조례
전북(2)	청년 기본 조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주(4)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청년회 등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충남(3)	청년 기본 조례, 청년농수산인들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충북(2)	청년 기본 조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표 II-4-8>는 시도 단위 별로 주요 조례의 내용을 정리한 결과이다. 가장 보편적으로 대다수의 시도에서 제정하고 있는 청년 기본조례, 청년 일자리 창출 조례, 청년 창업지원조례를 살펴본 후, 경기도의 청년배당 지급조례, 서울 특별시의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와 청년주거 기본조례, 대전광역시 청년취업희망카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의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살펴보았다.

<표 II-4-8> 시도별 조례의 주요내용

조례명	조례내용
청년 기본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 보장,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li> <li>- 기본이념: 청년 당사자가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li> <li>- 내용: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시행, 청년정책연구,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청년 정책결정과정에 참여, 청년 능력 개발, 청년의 고용 확대, 청년 주거안정, 청년 생활안정, 청년 문화의 활성화, 청년의 권리보호, 청년지원사업단 설치 및 운영, 청년시설·단체 설치 및 지원</li> </ul>
청년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고용정책 기본법」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데 필요사항을 규정함</li> <li>- 청년의 정의: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li> <li>- 내용: 매년 청년인력수급계획 수립,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교육기관과 연계, 관계기관·단체와 협력, 취업지원, 청년고용확대, 청년 일자리 사업을 수행한 기관 지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의 후생복지지원</li> </ul>
청년 창업지원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해당 시도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해 일자리 문제 해소 및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li> <li>- 청년의 정의: 20세이상 39세 이하인 자</li> <li>- 내용: 청년창업지원계획 수립, 청년창업 지원사업, 오디션 개최, 관련기관 협력, 투자 유치,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청년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등</li> </ul>
청년배당 지급 조례 (경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배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li> <li>- 청년의 정의: 만19세 이상 만24세 이하의 사람</li> <li>- 청년배당의 정의: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취업과 소득에 관계없이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함</li> <li>- 지역화폐의 정의: 해당 시군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하여 발행·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등에게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함</li> <li>-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대상)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청년, (방법) 시장(군수)이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분기마다 지역화폐로 지급함</li> </ul>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대중교통중심 지역의 효율적 개발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층의 주거안정 도모</li> <li>- 청년주택의 정의: 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민간임대사업자가 만19세이상 만39세 이하로서 무주택자인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역세권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li> </ul>

<p>청년주거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청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창업활동에 수반되는 주거지원 등 청년을 위한 주택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시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과 자립기반 강화에 기여함</li> <li>- 기본이념: 청년을 주택시장의 독립된 주거서비스 소비주체로 정의하고 청년의 주거수준을 향상시켜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li> <li>- 청년의 정의: 민법상 미성년자가 아닌 만39세 이하인 자</li> <li>- 청년주거정책의 기본원칙: 1) 부담 가능한 수준의 주거비 유지, 2) 준주택(기숙사, 고시원 등) 등 비정상적인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을 위한 주택공급, 3) 우선공급·지원을 통한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수준 향상, 4) 창업지원주택(청년 창업인에게 공급하기로 지정한 주택) 공급 촉진</li> <li>- 기타 내용: 청년주거기본계획의 수립, 청년주거기준 설정, 청년주거사업(융자지원, 주택공급, 임대료보조, 주거정보제공 등), 청년주거실태조사 실시, 관련기관 단체 지원</li> </ul>
<p>청년취업희망카드 조례 (대전광역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대전광역시 청년에 대한 구직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청년취업희망카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 고용촉진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li> <li>- 청년의 정의: 만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대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li> <li>- 지원내용: 구직활동과 관련된 교육비, 교통비, 자격증 취득 접수비용, 사진촬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함</li> </ul>
<p>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 및 청년 문화역량 강화를 통해 새로운 지역 문화 창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문화예술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li> <li>- 청년의 정의: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제주도에 거주하는 사람</li> <li>- 내용: 매년 시행계획(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발굴 개발 등) 수립, 청년 문화예술 사업(문화예술 관련 자료 수집, 정보제공,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프로그램,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인프라 구축 및 공간 조성, 문화예술 거점 및 특화지구, 커뮤니티 조성, 일자리 연계, 교류 및 네트워크 활성화사업 등), 제주청년문화예술기획단 구성 및 운영, 재정지원, 실태조사 실시</li> </ul>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2) 기초자치단체 조례현황

시군구 단위의 청년 관련 조례는 2019년 6월 20일 기준으로 총 294건이 제정돼 있다(<표 II-4-9>참조). 경기도가 30개 시·군에서 총 81개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서울(38개), 전남(31개), 충남(21개), 부산(17개) 순이었다. 경기도 오산시의 경우 규모가 작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5개 조례(청년 근로지원금 등 지급 조례, 청년기본조례, 청년배당 지급 조례, 청년의 시정참여 활성화 조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조례를 제정한 도시로 꼽혔다.

<표 II-4-9> 전국 시·군·구별 조례현황

시군구(개수)	조례명	
강원 (14)	강릉시	청년 기본 조례,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고성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양구군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인제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정선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철원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춘천시	청년발전 지원 조례
	태백시	청년 기본 조례
	평창군	청년 기본 조례
	홍천군	청년창업 지원 조례
	횡성군	청년일자리창출 지원 조례
	경기 (81)	가평군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청년배당 지급 조례, 청년을 위한 사회주택 지원 관한 조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과천시		청년 기본 조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 청년배당 지급 조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광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구리시		청년 기본 조례,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군포시		청년 기본 조례
김포시		청년 기본 조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청년배당 지급 조례
동두천시		청년 기본 조례,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청년배당 지급 조례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청년배당 지급 조례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청년배당 지급 조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수원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청년 기본 조례,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청년배당 지급 조례, 청년협업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청년배당 지급 조례
안성시		농업발전 청년농업인 포럼 지원 조례, 청년 기본 조례, 청년배당 지급 조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청년배당 지급 조례, 청년상 조례
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청년배당 지급 조례
양평군		청년 기본 조례, 청년배당 지급 조례
여주시		청년 기본 조례,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청년배당 지급 조례
오산시		청년 근로지원금 등 지급 조례, 청년 기본 조례, 청년배당 지급 조례, 청년의 시정참여 활성화 조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의왕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청년배당 지급 조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이천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청년지원 기본 조례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 청년배당 지급 조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평택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청년배당 지급 조례
하남시		청년 기본 조례, 청년배당 지급 조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 청년배당 지급 조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경남 (15)		거제시
	거창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김해시	청년 기본 조례,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남해군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빈곤청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밀양시	청년 기본 조례
	산청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진주시	청년 기본 조례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청년취업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통영시	청년 기본 조례
	하동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합천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경북 (15)	경산시	청년 기본조례
	고령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군위군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김천시	청년 기본 조례
	문경시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봉화군	청년 기본 조례
	상주시	청년 기본 조례
	성주군	청년 기본 조례
	안동시	청년 기본 조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영주시	청년기본 조례
	예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의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포항시	청년 기본 조례
	광주 (10)	광산구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북구		청년인턴제 운영에 관한 조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청년친화도시 기본 조례
대구 (8)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달서구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청년 기본 조례
	달성군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북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대전 (7)	수성구	청년 기본조례
	대덕구	청년 기본 조례
	동구	청년 기본 조례
부산 (17)	서구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 청년지원 기본 조례,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유성구	청년 기본조례, 청년일자리 창출 및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금정구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기장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동구	청년 발전 지원 조례
	동래구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진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북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사상구	청년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
	사하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 (38)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연제구	청년 기본 조례,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청년창업 지원 조례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강동구	청년 기본 조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관악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 2 장 청년 관련 선행연구 및 국내 정책환경

	광진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구로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
	동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동작구	청년일자리 촉진에 관한 조례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 청년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송파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청년정책 기본 조례
	양천구	청년 기본 조례, 청년인턴제 운영 조례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용산구	청년 기본 조례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
	종로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조례
	중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조례
	중랑구	청년 기본 조례
울산 (5)	동구	청년 기본 조례
	북구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울주군	청년 기본 조례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 (9)	강화군	시간제 청년근로자 장려금 지급 조례, 청년창업 지원 조례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동구	청년 기본 조례
	미추홀구	청년 기본 조례
	부평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전남 (31)	강진군	청년층 활성화 및 기업승계인 지원에 관한 조례
	고흥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곡성군	청년농림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청년발전 기본 조례,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조례
	광양시	청년 기본 조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구례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나주시	청년 기본 조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담양군	청년 기본 조례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무안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보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신안군	청년 지원 조례
	여수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영암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완도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장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장흥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진도군	청년 발전 기본 조례
	함평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해남군	청년 발전 기본 조례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	

전북 (14)	군산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김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
	부안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
	익산시	청년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전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정읍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충남 (21)	진안군	청년 기본 조례
	계룡시	청년 정책 기본 조례
	공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청년정책 기본 조례
	금산군	청년지원 조례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당진시	청년 기본 조례
	보령시	청년지원 조례
	부여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서산시	시간제 및 청년근로자 취업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청년 기본 조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서천군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청년지원 기본 조례
	아산시	청년 기본 조례,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청양군	청년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홍성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충북 (9)	괴산군	청년 기본 조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단양군	청년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청년부부 정착 지원 조례
	옥천군	청년 기본 조례
	제천시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충주시	청년 기본 조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3)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현황

다음은 지방정부의 사업 및 프로그램 중 특색 있게 추진되고 있는 일부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지원 영역별로 사업 및 프로그램을 살펴본 후 전체 현황을 총 망라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 가) 고용지원

<표 II-4-10>은 지방정부의 고용지원 프로그램을 지원 대상, 지원내용,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리한 것이다. 광주광역시에는 니트(NEET)청년과 발달장애청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경남에서는 경남 소재 1인 사업장에 취업하는 청년과 해당 소기업을 지원하는 “경남형 뉴딜일자리사업”

을, 경북은 중소기업 재직청년의 복지활동비용을 제공하는 경북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대구광역시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멘토링 경험을 제공하는 “청년 내일학교”를, 대전광역시는 청년 3인 이상이 모인 비영리 단체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청년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청년 필(Feel)살기” 사업을, 부산광역시에서는 진로지도 및 관련 정보 어플리케이션인 “취업준비땅”을 제작하여 청년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도 제도금융권에서 소외된 저소득 청년들의 창업기회를 제공하는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사업”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공공기관 일경험을 제공하는 “제주 청년 일 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충북에서는 충북 내 중소기업의 인건비 지원을 통해 정규직 채용을 장려하는 “청년 임금격차해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표 II-4-10> 시도별 고용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지원대상 (2019년 기준)	지원내용	지역
NEET 청년 발굴 및 지원	만19세~39세 청년 중 졸업 후 취업을 위한 교육참여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광주 청년	-NEET 청년발굴 -심리 분석 및 안정지원 (심리상태 진단, 모니터링 및 지속적 상담) 사회 진입 지원 및 취업 역량 강화	광주
발달장애청년 자립능력향상 교육	만19세~39세	-성인기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거주 훈련 및 직업체험 등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자립 활동 및 지역사회 활동 지원	광주
경남형 뉴딜일자리사업	만18세~39세 졸업한 미취업자와 경상남도 소재 상시근로 1인 이상 사업장	-일경험 제공, 진로설계, 직무적응 지원, 교통복지, 주거정착금 지원 -청년 인건비 90% 지원	경남
경북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	만15~39세 중소기업 재직자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복지활동 비용(자기개발, 여가, 건강관리) 지원, 1인당 연간 100만원	경북
청년 내일 (My job&Tomorrow) 학교	만19세 이상~34세 이하의 미취업자 중 취업준비 및 사회활동 참여 의지가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	-취창업을 준비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창업CEO와 취업선배들과의 경험담 공유와 직업현장 체험을 통해 직업에 대한 사전 정보 취득과 안정적 사회진입을 지원 -진로탐색기회 제공, 내일학교 수료 청년들에게 최대 150만원 청년수당 지원	대구
청년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청년 필(Feel)살기"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청년 3인 이상의 비영리 단체, 법인	-청년들이 함께하는 관계 안에서 지역사회와 어우러져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청년 커뮤니티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단계적 지원 -커뮤니티 활동 및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	대전
취업준비땅 (청년 취업역량 향상 프로그램 앱)	-	-취업준비생들의 진로탐색, 취업준비 안내 및 상담(나에게 맞는 직무 직업찾기, 맞춤형 계획서 작성, 자기소개서 및 포트폴리오 완성)	부산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사업	만20세 이상의 저소득층 청년	-제도금융권에서 소외된 저소득 자영업자에게 창업자금, 창업교육, 사후관리 등 지원 -지원금액: 예비창업자 및 창업 6개월 이내 인 자에게 한해 최대 3,000만원 지원	서울

제주청년 일 성장 프로그램	만19세~39세	-청년들이 도내 공공기관에서 실제 업무를 6개월간 체험하는 프로그램 -생활임금 기준 월2,027,300원 지급	제주
청년 임금격차해소 지원사업	만18세~39세 청년 근로자 중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충북에 거주하는 자	- 청년층 근로자 채용 및 고용유지에 상대적으로 어려움 겪는 성장촉진지역 내 소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일자리창출 지원 -1인당 월30만원/ 최대 12개월 360만원 한도로 지급	충북

자료 : 온라인청년센터(<https://www.youthcenter.go.kr/>)를 바탕으로 작성

## 나) 소득금융지원

광역시도의 소득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서울특별시의 청년수당,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대표적이다.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경기도의 청년배당은 보편적으로 청년들의 소득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다만,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만 19~34세의 서울시 거주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취업활동 및 생활비 지원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고, 경기도의 청년배당은 만24세에 해당하는 경기도 거주 청년에게 취업여부와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지원액의 크기 면에서도, 서울시 청년수당은 최대 6개월간 50만원씩 총 3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반면, 경기도 청년배당은 분기별로 25만원씩 1년간 100만원을 지원받는다라는 점이 다르다. 또한 경기도의 청년배당은 서울시와 달리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를 통해 지급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둔다.

경기도는 일하는 청년통장을 발급하여, 저임금 근로청년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학자금 대출 상황이 어려운 제주출신 대학생들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동 사업은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상당수 지역에서 추진 중에 있다.

<표 II-4-11> 시도별 소득금융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지원 대상 (2019년 기준)	지원내용	지역
서울시 청년수당	만19~34세의 서울시 거주 미취업자 청년(졸업 후 2년 경과자)	-미취업 청년의 취창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최소 3개월~최대 6개월 간 매월 50만원의 현금(클린카드)을 지급 -취업준비 활동과 생활비에 사용 가능	서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24세의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한 청년	-연간 최대 100만원(분기별 25만원)을 경기 지역화폐의 형태로 지원	경기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근로청년 중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매달 10만원 저축하면 3년 후 경기도지원금 등으로 약1,00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 발급	경기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사업	만19~39세 제주시 거주자로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신용유이자로	-제주출신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이자를 보전함 -한국장학재단과의 분할상환약정체결에 따	제주

	등록된 자	른 분할상환약정 체결에 따른 원리금의 5% (초입금) 지원, 약정 체결후 초입금 지원을 통해 신용유의정보등록 해제	
--	-------	---	--

자료 : 온라인청년센터(<https://www.youthcenter.go.kr/>)를 바탕으로 작성

#### 다) 주거지원

<표 II-4-12>는 일부 지역의 주거지원 주요 사업을 정리한 것이다. 대구광역시 는 저렴한 임대료의 청년 행복주택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대전광역시와 부산 광역시는 주택임차보증금을 위한 용자 및 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지방정부 중 유일하게 저소득 청년 1인가구의 월세를 매달 10만원 씩 지원하는 사업을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표 II-4-12> 시도별 주거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지원대상 (2019년 기준)	지원내용	지역
청년 행복주택 사업	만19세~39세의 대구시 거주 청년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 또는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저렴한 임대료를 제공하는 행복주택 제공	대구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용자지원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1.5억원 이하인 전·월세 보증금 대출 알선 (5천만원 이내) 및 대출이자(3.6%) 지원	대전
머물자리론	만19세~34세 부산시 거주 청년	-주택임차보증금을 위해 용자 최대 한도 3천만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범위 내) 지원 -이차보전금리로 3% 이자지원 -대출2년만기 일시상환방식(2년 단위로 1회 연장가능, 최장 4년 이내)	부산
청년 월세 지원	만18세~34세 부산에 거주하는 1인가구 청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월세 60만원 이하	-월 임대료 중 10만원 지원(연 최대 90만원)	부산

자료 : 온라인청년센터(<https://www.youthcenter.go.kr/>)를 바탕으로 작성

#### 라) 문화 및 건강지원

최근 지방정부는 청년들의 문화 및 건강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추세이다. 각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은 <표 II-4-13>과 같다. 충청남도는 예비 청년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생애최초창작지원사업을, 광주광역시 는 청년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청년들의 심리적 건강 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광주광역시는 무료 심리상담서비스 마인드링크를, 충북 은 위기상담 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표 II-4-13> 문화 및 건강지원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지원대상 (2019년 기준)	지원내용	지역
생애최초창작지원 사업	만29세 이하의 예술 대학졸업 예정자로 공공지원금 수혜경험이 없는 자	-예비 청년예술가의 예술계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새로운 실험과 도전이 가능하도록 역량강화, 창작활동에 500만원 이내의 지원금 지원	충남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만19세~39세 이하 광주 청년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모임	-커뮤니티 형성지원(모임결성시 활동지원금 10만원) -커뮤니티 활동지원(활동지원금 60만원, 네트워킹, 역량강화, 홍보콘텐츠 제작 지원) -커뮤니티 프로젝트 지원(지원금 200만원)	광주
마인드링크	만14세~29세 정신건강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광주거주 청(소)년과 그 가족	-무료 심리상담 및 치료 -무료 심리 및 정신건강 진단 -전문요원 및 의사면담서비스 제공 -심층상담 및 치료서비스제공 -주말 및 위기상담(24시)	광주
마음챙김 정신건강 상담서비스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학업, 취업준비, 근로활동을하고 있는 청년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 24시 운영 -초기상담후 치료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충북

자료 : 온라인청년센터(<https://www.youthcenter.go.kr/>)를 바탕으로 작성

마) 지원영역별 사업현황 총괄

지방정부의 프로그램은 검색일(2019년 6월 20일) 기준 총 766개의 사업(중복포함)이 운영되고 있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취업관련 프로그램은 401건, 창업관련 지원은 164건, 소득 및 금융 지원은 64건, 주거 45건, 문화건강은 89건으로 취·창업 지원 사업이 전체의 3/4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표 II-4-14> 지원영역별 사업 및 프로그램 현황(지방정부)

지원영역	지역	사업 및 프로그램명
고용(취업)	강원	2019년 행정인턴, 강원도형 청년일자리 사업(민간취업연계형), 강원청년지도자 리더십 과정, 강원지역 공공기관 합동설명회, 청년 희망일자리 버스원정대 운영 지원, 사회혁신 청년활동가 일경험 지원사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현장 홍보요원
	경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형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경기도 청년해외봉사단 공모, 2019년 해운물류 청년 취업 아카데미, 송파학사 운영, 2019년 경기도 청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 브리지
	경남	경남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향만 기능인력 양성지원 사업, 청년 EG사업, 경남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 경남 교육소의계층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청년일자리플랫폼(프렌즈), 경남형 뉴딜일자리사업, 경남청년 장인프로젝트, 대학생 단기 해외학연수, 의료기기 업종전환 취업연계 게이트웨이사업[기업 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경남 지역인재육성사업, 대학일자리센터, 청년 취업 멘토링 콘서트, 지능형로봇인력양성센터 운영, 농촌체험휴양마을 청년사무장 채용지원 사업, 고졸예정자 취업 특화과정, 의료기기 업종전환 취업연계 게이트웨이사업 [청년 컴퍼니스테이(Company Stay) 지원 사업], 무인화 선박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 경남 청년구직활동지원사업
	경북	구직자 고용촉진을 위한 면접비 지원, 청년기업일자리사업, 경북 청년근로자 행복카

제 2 장 청년 관련 선행연구 및 국내 정책환경

	드 지원사업, 대학생 공공기관 직무체험, 농업6차산업 경영체 활성화지원 사업, 권역별 대학연합 취업캠프, 청년무역 전문인력 양성 지원, 1사-1청년 더 채용 지원, 취업지원센터, 문화산업 청년인재 양성지원 사업, 농민사관학교, 대경혁신인재양성 프로젝트(Hustar 프로젝트), 경북형 산학관 일자리 한마당, 축산물(쇠고기) 이력제 인턴 지원, 지역기업-청년 희망이음 프로젝트, 경북일자리종합센터지원, 경북 혁신벤처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청년연구인력, 구직자 잡(job)클리닉 운영, 청년-기업맞춤형 인력매칭 사업, 손에 잡(job)히는 취업캠프, 경상북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광주	발달장애청년 자립능력향상 교육, 워킹맘 자녀 청년여성 멘토링 사업, 청년취업 광주나래 서비스, 대학일자리센터 운영지원, GTEP :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 청년 JOB희망팩토리 사업
대구	지역대학 협력강화 사업, 대구청년 소셜리빙랩, 대구청년 응원카페 상생사업,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금, 청년 내일(My job&Tomorrow)학교, 대구청년NGO활동 확산사업, 대학생 국내인턴 사업, 청년사업장&청년 잇기 프로젝트 'YES!매칭', 대구청년 도시탐험대, 대구청년상화학교, 취업새내기 지원사업 희망옷장
대전	청년취업 희망카드, 대전형 코업(co-op)청년뉴리더 양성사업, 대전일자리카페"꿈터" 운영,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청년 일자리 매칭지원 내손을 잡아, 청년진로 콘서트, 청년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청년 펴(Feel)살기", 청년정책연구 공모사업, 청년의 학교 운영, 2019 청기올려 사업, 청년인력관리센터 운영,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청년 거점 공간 운영, 일자리 종합 박람회,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근로자 채용, 대청넷 운영
부산	B-스타트업 청년인재 발굴 매칭 사업, 대학 학과별 맞춤형 취업지원,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부산 공공기관 지역인재 육성 및 취업지원, 부산 청년일자리 해커톤 아이디어 경진대회, 부산일자리정보망, 부산청년 청고마비 사업, 부산청년 파란일자리 사업, 부산청년주간 운영, 정장대여서비스(드림옷장), 창업기업 인턴지원, 청 장년 실업해소 맞춤형사업, 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사업, 청년두드림센터, 취업연수생 고용사업, 취업준비당 (청년 취업역량 향상 프로그램 앱)
서울	공공근로일자리, 기술교육원 청년대상 직업훈련 확대, 문화예술매개자 육성, 사회혁신 청년활동가, 서울 MICE 뉴딜일자리, 서울시 청년수당, 서울시 청년허브 운영, 서울시+센터 통합지원서비스 강화, 서울시청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서울형 뉴딜일자리, 시민사회 활동가 양성 프로젝트, 여성복지시설 현장활동가, 지역공동체일자리, 청각장애인 취업면허 지원, 청년 프로젝트 투자사업, 청년 활력 프로그램 운영, 청년교류공간,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 청년인생설계학교, 청년일자리 아이디어 공모전, 청년활동지원, 청년활력공간 무중력시대 운영, 체류형 귀농지원사업, 취업날개 서비스 지원, 한양도성 청년 홍보순성관
세종	세종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 찾아가는 일자리 채용설명회, 세종시 일자리창출 코디네이팅, 2019년 여성장애인교육지원사업, 아트컬리지 문화기획학교 운영
울산	청년 취업지원 캠프, 울산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함께놀자공동체, 지역기업-청년교류 활성화 사업, 희망이음 프로젝트 울산서포터즈
인천	구직청년을 위한 '드림체크카드', 대학일자리센터 운영지원, 부업대학생 운영, 인천 Young MICE 리더 육성, 인천 청년 면접지원 서비스, 인천청년공간 유유기지 운영, 진로심리상담센터 운영지원,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청운대 인천캠퍼스, 취업률 향상 프로그램 운영
전남	청년 농수산 유통 활동가 육성 사업, 산학협력 취업패키지 과정운영, 2019년 여성취업 창업교실 운영, 전남 청년 내일로 사업, 청년 일자리카페, 전남산업 선도인재 육성 아카데미,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전남 청년 창직 전문가 양성사업, 청년의 목소리,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청년형) '청년행복캠프 30days', 지역맞춤 면접비 지원사업, 전남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 사업, 여성 일자리박람회, 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사업, 꿈사다리 공부방 운영, 찾아가는 청년희망버스
전북	청년 내일도움터 운영, 대학 산학관 커플링 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청년소통프로그램 지원, 청년정책포럼운영,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사업, 전북일자리종합센터 운영, 지역대학연계 농식품창업 교육, 취업박람회 개최, 농산어촌 청년리더 육성 교육, 공공기관-대학교 잡멘토링,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 전북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전라북도 대학일자리센터, 대학생 직무인턴
제주	청년 연구 공모사업, 청년다락 운영, 대학생 학업+기업 현장체험 지원사업, 채용 박람회 운영[도민행복 일자리박람회], 제주 오픈칼리지 운영사업,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 제주 청년 갭이어(Gap year)체험 사업, 고용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청년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 대학 일자리센터 운영사업, 청년우수인재 집중지도사업, 해양구조물관리 취업지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대학 핵심역량 강화 지원사업, 지역선도대학육성 사업, 전문직업상담사 취업지원 프로그램, 단기 취업특강, 제주청년 자활 실태조사, 고용유지지원금,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운영, 제주청년 뉴딜 일자리사업, 수출기업 인력뱅크 지원,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 일하는 청년 제주로 프로젝트, 제주형 일학습병행 사업, 제주형 청년 Factory 시범사업, 민간기업통합 정기채용 지원사업, 청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생활과학지도자 양성과정, 청년취업 역량강화 아카데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 제주 ICT 전문인력 양성센터 운영, 제주청년 일 성장 프로그램
	충남	지역착근형 청년프로그램 (청년학교, 커뮤니티), 충남 지역대학 인재의 장학금 및 취업지원 사업, 청년 문화예술기획자 양성 아카데미 운영, 도시청년 초보농부 플랫폼 조성, 사회적경제 청년 활동가 육성, 희망이음 프로젝트(중소기업 인식개선 프로젝트), 일자리종합센터 운영, 사회적경제기업 청년 도제 육성, 도시청년 농업 농촌캠프 운영
	충북	청년세대를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대학생 취업역량 강화교육, 제4기 충북청년광장(포럼) 구성·운영, 충청북도 학생근로활동 지원, 대학생 재능나눔 지원, 취업동아리 취업연계 활동 지원사업, 청년 취업 직무역량강화 특강, 청년 대상 구인 구직만남 행사(2030 취업연계서비스 지원), 충청북도 취업박람회, 청년(단체, 자조모임)활동 지원, 청년정책 디자인 경진대회 운영,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채용 합동채용설명회, 충청북도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청년종합정보 사이트 "충북청년포털"이용 지원, 찾아가는 고교생 취업역량 강화 교육, 2019년 일+경험 청년일자리 사업, 2030 취업연계서비스 지원, 민 관 협력활성화, 대학생 장학금 지원, 2019년 찾아가는 충청북도명장 강연, 대학 일자리센터 운영 지원, 충북 청년희망센터 운영
중 소 기 업 취 업 지 원	강원	강원도형 청년일자리사업(지역정착지원형),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
	경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송파학사 운영, 2019년 청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경기도 청년공간 내일스퀘어, 청년 마이스터 통장,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기숙사 운영, 창업 프런티어 창업 지원사업, 경기도형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사업,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경남	청년채용 중소기업 근무환경개선 지원사업
	경북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특성화고 맞춤형 취업지원,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월급받는 청년농부제
	광주	광주청년 일경험 드림사업, 청년고용 우수 중소기업 지원, NEET 청년 발굴 및 지원, 마을기업 청년취업 지원, 특성화고 맞춤형 취업약정, 新광주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청년창업 청년취업 winwin 프로젝트
	대구	청년 소셜벤처 육성사업, 2019년 맞춤형 취업지원사업, 기능기술인력 청년 취업지원사업, 대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스타기업 히어로 양성사업
	대전	대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전형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 지원
	부산	부산청준드림카 지원사업
	서울	사회적 경제일자리 창출(지역주도청년일자리-1유형),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사업
	세종	청사진 프로젝트
	울산	2030 U-Dream, 울산청년 일+행복카드 지원사업, 캠퍼스 리크루트 투어, 일자리창출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인천	1석5조 인천 청년사랑 프로젝트, 2019 국제기구-MICE 커리어 페어, 인천 마이스업체 청년 인턴쉽 운영,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무환경개선 지원, 청년인턴 취업연계 지원사업
	전남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 지역 중소기업 청년취업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사업, 지역인재 채용지원 사업,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전북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제주	중소기업 기술사관육성 프로그램 지원,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산학협력 및 인력양성사업 지원, 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
충북	충청북도 우수 중소기업 취업탐방, 중소기업 신입사원 맞춤형 직무교육, 중소기업 신입사원 연수,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지원,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사회적기업 맞춤형 청년여성 일자리 사업, 청년 임금격차해소 지원사	

제 2 장 청년 관련 선행연구 및 국내 정책환경

		업,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청년채용 지원 계획, 청년여성 일자리 종합플랫폼 사업, 지역주도형 2019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체험지원, 지역주도형 2019 스타트업 청년일자리 지원, 충북 청년 기(氣)-업(UP)프로젝트
전문분야 취업 지원	강원	청년창업농 선발 및 지원사업,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경기	경기 글로벌 게임센터 운영
	경남	경남청년예술인 파견지원<청년예술路 소통>,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차세대 유망예술인 지원, 경남형 스마트 일자리 전문인력 양성 사업
	경남	자원봉사코디네이터지원사업,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경북 환경살리미 운영
	광주	청년 비엔날레 인력 양성 사업, 청년 체육 인재 육성, 예비 청소년지도자 발굴 육성, 청년예술인창작지원사업, 마을청년활동가 운영, 청년문화기획자 양성학교 운영, 청년 예술인지원센터운영, 청년문화 일자리 지원사업
	대구	신진예술가 육성 Ten-Topic Project, 청년예술가 육성 지원, 차세대 문화예술기획자 양성, 미래산업 맞춤형 로봇엔지니어 양성사업
	대전	2019 DJAC 청년 오케스트라 운영, 청년예술인 정착 및 양성프로젝트, 청년예술인 창작 및 대관료 지원, 대전드림(Dream) 과학인재양성, 차세대 아티스타 지원, 맞춤형 코디네이터 운영, 취업연계 IP지역인재양성, 예술창작활동 지원
	부산	동남권 대학생 CAM기술 경진대회, 청년예술가 창작활동 지원
	서울	도시청년 이동식플라워마켓 창업지원(청년일자리-2), 마장축산물시장부처스 육성(지역주도청년일자리-1), 문화예술매개자 육성, 유망예술지원사업
	세종	지역청년 인적자원 특화 취창업 지원, 선도적 농업리더 영농정착 지원사업
	인천	e스포츠 등 게임콘텐츠산업 육성, 의료코디네이터 양성 및 지원 사업, 청년예술인 생애처음 지원사업
	전남	영농승계 청년농 창업지원 시범사업, 양식어장 청년취업지원
	전북	전북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 한식전문인력 양성지원사업,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 연료전지 시스템 전주기 R&D 고급 트랙,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 ICT기업 맞춤형 전문인력양성,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제주	숙련기술인 양성지원, 제주 대표 청년문화사절단 지원사업, 안마사 교육사업,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청년일자리 사업, 조련사(승마지도사) 양성교육, ICT 인재 경쟁력 확보사업,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산업섹터별 클러스터 제주형 지역인재육성 사업, 풍력관련 전문 인력양성, 스마트그리드 및 청정 에너지 전문인력 양성,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 지원사업, 청년농업인 육성
	충남	GTEP: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
충북	유기농 청년농업인 인턴 지원,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2019년도 청년연구자 역량 강화 지원 사업, 청년 예술가 창작환경 지원사업,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전통시장 청년상인 마케팅교육지원, 웹툰 창작 체험관 운영사업, 충북 젊은 작가 창작작품 페스티벌, 2019년도 충북전략산업 전문연구인력 채용지원, 농촌창업 청년농업인 정착지원, 바이오기업 인력양성 일학습병행 사업	
해외 진출	경남	경남청년해외인턴사업
	경북	경북청년 해외취업지원 사업, 해외자문위원기업연계 청년해외인턴 지원, 2019 경북청년 일본취업지원사업
	광주	글로벌 청년취업 지원
	대구	청해진대학 지원사업, 대학생 해외인턴 지원사업
	대전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 해외취업 멘토링 콘서트, 청년 해외교류 지원 사업
	부산	청년 해외취업 지원, 청년문화 네트워크
	인천	국제기구 청년인턴십(직업체험) 프로그램
	전남	전라남도 청년 해외인턴사업
	전북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 청년해외취업지원
	제주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인턴십, 대학생 해외대학 연수지원 사업
충남	해외인턴십, 해외복수학위제(Dual Degree Program)	
고용 (창업)	강원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핸드메이드 기반 지역상생 사업, 해외탐방 지원 사업 SEEKER:S, 예비 기술(지식)청년창업자 육성사업
	경남	스타트업 아이디어 고도화 지원사업, 청년창업아카데미 운영사업
	경북	청년농부 참여형 마을영농육성사업,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창업사관학교 운영, 경북북

**빈곤청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부권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경상북도 청년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 경북청년 키친랩 인큐베이팅 사업, 창업기업 일자리사업, 시군청년 예비창업지원, 경북청년CEO심화육성지원사업, 청년커플창업지원
	광주	공유재산활용 사회실험 청년창업 지원, 토닥토닥 청년일자리(job) 카페 운영
	대구	청년 팝업레스토랑, 재창업 지원사업, 콘텐츠코리아랩(단계별 맞춤형 창업지원), 기업 애로해결 디자인코디네이터 양성사업, 4차 산업혁명 청년체험단, 의료창업 및 취업지원 사업, 053창업카페, C-corridor, 데이터기반 기술 지역주도형 스타트업 발굴, 청년 소셜벤처 육성사업, 전통시장 창업 인큐베이팅 팝업스토어(누구나가게)
	대전	고교창업 인재육성 특성화사업
	부산	부산청춘 희망카, 청년농업인 양성교육, 크리에이티브샵 운영, 엔젤스타트업카페 운영, 부산창업카페 운영
	서울	핵심사업 홍보콘텐츠 제작 참여 청년 스타트업
	세종	2019 세종농업 영리더 아카데미 과정
	울산	청년CEO 육성사업, 지식기술 청년 창업지원사업, 톡톡팩토리 운영, 톡톡스트리트 운영
	인천	인천콘텐츠코리아랩, 기술혁신IP창업기업청년취업연계프로젝트, 창업카페 운영
	전남	청년 사업자 지원 특별 보증 사업, 향토자원 활용 청년창업 지원사업, 농촌청년 사업가 양성사업, 지역기반형 전남콘텐츠코리아랩 운영사업, 학사 농업인 육성사업, 2019년 전남 여성 창업동아리, 소상공인·전통시장 및 청년상인 디자인개발 지원, 대학생 농산업 체험캠프 운영, 창업지원 종합 플랫폼 운영
	전북	전라북도 콘텐츠코리아랩 운영 지원, 창업선도대학 육성, 청년 드림스퀘어 조성, 청년 리턴패키지 지원, 도시청년 농촌 스타트업 육성, 청년상인 창업지원(청년몰), 시군청년혁신가 예비창업 지원, 전라북도 청년 육성 프로젝트, 지식기반 서비스창업 육성,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운영, 청년희망(간편형) 스마트팜 확산사업
	제주	중소기업 창업프로젝트 지원사업, 제주청년 강사지원 사업,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 창업지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역량강화 지원, 청년문화 매개특성화사업,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지원
	충남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1839청년창업프로젝트, 충청남도 청년농업인 창농스쿨, 작은 브랜드 100개 찾기 사업,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 청년농업인 창농 공모사업,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기술연수, 문화산업 분야 청년 인재 양성 및 창업지원
	충북	ICT디바이스랩 활용 창업 지원, 2019년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 청년농업인 스마트 팜 기반 조성, 지역혁신 창업프로젝트, 대학거점 창업선도대학 육성 지원,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 ②창업 우수기업 발굴·육성, 농업기술대학『청년농업인 미래농업 아카데미』운영
R & D 지원	경기	경기도형 청년예술인 자립지원금 지원 사업
	대구	의료분야 연구자 창업 지원사업, C-Seed 청년 스타트업 육성사업, 대구스타트업리더스포럼
	부산	창업지원주택 건립, 기술창업지원, 메이커스튜디오(Maker Studio) 운영
	인천	청년창업 챌린지, 예비디자이너 창업랩 ‘창작하는대로’운영, 기술혁신IP창업기업청년취업연계프로젝트, 인천관광 콘텐츠 공모
	전남	전통공예품 해외 역지구 창업 지원, 청년 창업농장 조성, 대학 벤처동아리 지원
	전북	창업꿈나무 지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제주	제주 IP창업존 운영, 1인 창조기업 육성사업, 중소기업 창업프로젝트 지원사업, 창업기업 성장 단계별·맞춤형 지원사업, 향토자원 활용형 창업 지원, 벤처기업 육성사업, 제주 창업카페(창작마루) 운영, 아이디어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역량강화 지원
	충북	ICT디바이스랩 활용 창업 지원, 대학거점 창업선도대학 육성 지원, 충북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사업,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사업:③우수 창업동아리 활동 지원
자본금지원	강원	청년참여형 마을기업 모집, 강원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경기	창업 프런티어 창업 지원 사업
	경남	청년창업농 영농정책 지원사업,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창원국가산단 청년 기술창업 특성화 사업
	경북	도시청년 시골파견, 청년농부 육성지원사업, 청년마을일자리 뉴딜사업, 창업기업지원 서비스 바우처, 청년농업CEO 농어촌진흥기금, 경상북도 청년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

제 2 장 청년 관련 선행연구 및 국내 정책환경

		, 2019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		
	광주	청년창업 특례보증, 광주청년창업펀드 운영지원		
	대구	청년 팝업레스토랑, 업사이클아트 청년 창업프로젝트, 전통시장 창업 인큐베이팅 팝업 스토어(누구나가게), 청년 소셜벤처 육성사업, 청년창업형 후계농업인 주요 지원사업		
	대전	청년창업 지원카드		
	서울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사업,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사업		
	울산	세종 청년창업 챌린지랩 운영		
	인천	창업 동아리 지원, 기술혁신IP창업기업청년취업연계프로젝트, 청년창업 일자리창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전남	2040세대 희망디딤 프로젝트		
	전북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청년 어촌정착 지원, 내수면 양식 청년창업 붐업 조성, 전라북도 농림수산물발전기금 청년농 무이자 지원		
	충남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 1839청년창업프로젝트		
	충북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 ① 청년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청년 창업지원자금 융자 지원,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운영, 영농4-H 활력화 기반구축 지원, 충북 청년창업베 이스캠프		
생활비 지원 및 금융 혜택	경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남	경남 청년내일채움공제, 경남 상생공제		
	경북	청년행복결혼 공제사업		
	광주	청년13(일+살)통장 드림사업, 광주청년 금융복지지원 (청년드림은행), 청년농업인 영 농정착 지원		
	대구	대학생 학자금 대출 부담경감 지원, 시민행복보장사업추진, 청년희망적금		
	대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청년희망통장		
	부산	청년 디딤돌 카드, 청년부비론		
	서울	서울시 청년수당, 청년미래투자기금 사업, 건강한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활 성화, 꿈나래 통장, 서울시 학자금대출 신용유이자 해제(신용회복), 한지봉세대공감,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서울 한강론),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세종	농기계임대사업		
	울산	청년이 만드는 우리 울산 프로젝트,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차지원		
	인천	인천 청년 면접지원 서비스, 청년희망키움통장, 드림 For 청년통장		
	전남	농업인 월급제 지원,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사업		
	전북	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대학입학금 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청년희망 키움통장 지원		
	제주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사업, 내일채움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사업, 청년 역량강화 사업, 청년수당(자기계발비) 지원사업, 제주일자리 재형저축(53+2통장), 학자금 대출 이차 지원사업, 주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거비 지원사업,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 증금 지원		
	충남	2019년 시군 열혈청년 패키지		
	충북	충북행복결혼공제, 충북형 청년내일채움공제		
	학자금	경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경남	대학생 학자금 이차지원, 서민자녀 대학입학장학생 장학금	
		경북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	
광주		대학(원)생 학자금대출 이차지원		
대전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사업,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차지원 사업		
부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울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차지원		
울산		울산인재육성재단 우수인재 장학금 지원		
인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차지원		
전남		인재육성장학금지원		
전북		대학생 학자금 이차지원사업		
제주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사업		
충북		청년 학자금 대출 부실채무자 신용회복지원, 대학생 학자금 이차 지원		
주		주	경기	경기도 기숙사 운영, 경기도 송파학사 운영

**빈곤청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거 거 지 원	경남	남명학사(창원관, 서울관)운영	
	광주	남도학숙 운영 지원, 청년 주거서비스 지원	
	대구	청년 행복주택 사업, 청년매입임대주택사업	
	대전	청년희망통장,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급, 청년기숙사(가칭청년하우스) 조성	
	부산	머물자리론, 청년 월세 지원,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행복주택, 드림아파트, 햇살동지	
	서울	자치구 청년 맞춤형 주택 공급,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사업,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공급, 청년매입임대주택 사업, 한지봉세대공감, 셰어형 기숙사 모델 개발 및 공급 (두레 주택), 공동체주택 사업, 서울형 주택바우처(임대료 보조지원), 신혼부부 임차보	
	세종	세종 서창 행복주택, 세종형 쉐어하우스	
	인천	기존주택매입임대사업	
	전남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남도학숙 · 전남학숙 운영	
	전북	전라북도장학숙(서울/전주) 운영, 청년주택 임대 지원	
	제주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 청년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공급,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조금 지원, 주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거비 지원사업, 탐라영재관 운영	
	충남	지역사회 청년쉐어하우스 운영, 충남학사 운영(대전, 서울), 청년 전월세보조금 용자 지원	
	충북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고용환경개선사업), 충북학사 운영 (서울관·청주관)	
	문 화 건 강	강원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피스타치오 청춘 버스킹 청년예술가 모집
경기		경기청년공간 내일스퀘어, 2019년 경기도 청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광주		2019 청년교통수당드림, 광주청년위원회 운영(제5기), 청년문화 생태계 조성, 청년정책 실험실, 청년예술인지원센터운영, 시설토소 청년 자립기반지원 연구용역,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2019 세계청년축제 개최(2019 World Youth Festival), 광주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알바지킴이 노동법률상담	
대구		청년 마더박스 지급 대학생 멘토링사업(꿈나무 멘토링), 대구광역시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신나는 예술여행(청년예술형) 사업, 청년문화특화거리, 대구청년 알바돌봄 사업, 대구 스마트시티 시민 홍보단 교육 및 활동	
대전		청춘공간 운영지원, 청년터전 지정 운영, 대전인디음악축전, 파리아용노래지던스 입주작가 모집, 이응노미술관 청년작가 전시 프로젝트, 지역관광 청년일꾼 채용, 2019 대전청년주간, 대전을 알리다, 대전청년유니브연극제	
부산		청년위원회, 청년문화 인프라, 공간 지원, 청년문화박람회, 부산관광 드림투어, 청년 문화 인력양성, 2019대학패션페스티벌, 청년정책 네트워크	
서울		청년허브 운영을 통한 청년정책 실행기반 강화,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 아르바이트 권리보호, 온라인 고민상담소 hi,there, 노인 이야기 들어주는 청년예술가 프로젝트, 마을예술창작소	
세종		세종청년네트워크, 세종거리예술가 모집, 2019년 지역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사업, 2019년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지원사업,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사업, 2019년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 2019년 예술동아리 교육지원사업	
울산		울청아티스트 지원, 울산청년문화기반 구축 담론 조성, 울산청년문화기반 구축 사업, 청년자치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사업, 2019 청년울산대장정 u-road	
인천		도시철도 청년고객의 예술·문화활동 지원, 청년문화창작소 조성·운영	
전북		청년문화의 날 운영, 전북청년 2019, 청년축제	
제주		제주청년 도일주 문화체험, 한라·백두 청년지도자 육성 프로그램, 청년 리뉴얼 프로젝트(제주청년 다시 학교), 제주청년 동아리활동 지원사업, 청년 체인지메이커 아카데미	
충남		신진예술창작지원사업, 충남 청년네트워크, 생애최초창작지원사업	
충북		2019 충북 청년주간 운영, 청춘마이크 사업을 통한 충청도 청년문화예술가 지원, 대학생 토론대회 운영, 제8회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공모전, 충북 젊은 작가 창작작품 페스티벌, 충북 E-스포츠 대회 개최, 웹툰 창작 체험관 운영사업	
건 강		경북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채용검진비
		광주	2019 청년교통수당드림, 청년 건강검진, 청년 정신건강 지원(마인드링크), 외국인 유학생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청년 마음건강 상담소
		대전	대전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청싹환-청년들의 쉼 처방전), 청년 마음건강 상담창구 운영

	부산	청년 마음건강 증진
	인천	I-Mom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I-Mom 출산축하 지원
	전남	금연대학교 운영 지원
	전북	청년 건강검진 지원
	제주	온오프라인 청년 고민상담 및 교육사업
	충북	마음챙김 정신건강 상담서비스

자료 : 온라인청년센터(<https://www.youthcenter.go.kr/>)를 바탕으로 작성  
 주 : 두 가지 이상의 영역에 속하는 프로그램은 중복하여 기재

#### 4) 핵심 사업에 대한 평가

최근 화두가 되는 청년 소득지원 프로그램으로 청년수당과 청년배당이 있다. 청년수당은 미취업청년들의 소득보장을 통해서 청년들이 생계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취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조건 없이 지원하는 일종의 구직활동 촉진 프로그램이다. 한편 청년배당은 청년수당보다 권리적인 성격이 강하며 미취업 청년뿐만 아니라 만24세의 모든 청년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사업이다. 이 또한 청년 구직의 어려운 현실에 착안하여 시행되는 정책이지만 직접적으로 구직을 촉진한다는 명목으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 가) 서울시 청년수당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촉진하는 정책으로 고용과 연계된 방식 말고 직접적으로 현금을 지원해주는 정책 대안이 논의되면서 2016년 청년수당 1기가 출범하였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19~29세 청년들에게 사회활동 참여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사회활동참여비란 미취업 청년들이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명목으로 지급된다. 즉,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생계형 아르바이트에 매몰되지 않고 구직에 집중하여 생계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청년수당은 매월 50만원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간 지급된다. 수당은 직접적으로 구직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구직활동비(학원 수강료, 시험응시료 등)와 간접비(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나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특급호텔,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안마시술소, 주점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서울시는 미취업 청년 중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청년에게 수당을 지급하다가 현재는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구직중인 모든 청년에게 수당을 지급

하는 것으로 조건을 확대하였다. 한편, 서울시는 청년수당을 기본소득방식으로 전환하는 방향도 검토 중이다. 지금과 달리 구직조건을 없애고 지원기간이나 지원액 역시 확대시키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sup>8)</sup>.

<표 II-4-15> 서울시 청년수당 변화 전후비교

구분	변화 전	변화 후
목적	미취업 청년 취창업활동 촉진	
연령	만19~29세	만19세~34세
지원액	매월 50만원	매월 50만원
지급조건	중위소득 150%	없음
지급기간	최대 6개월	최대 6개월
지급형태	현금(카드)	현금(카드)
지급범위	취업(준비)활동+생활비	취업(준비)활동+생활비

#### 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역시 현금지원 사업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24세 청년들에게 1년간 분기별로 25만원씩 총 100만원을 지원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취업준비 중인 청년들이 공정한 출발선에서 경쟁할 수 있게 하겠다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일반 수당과 달리 지역화폐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소득기준이나 미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만24세의 청년이면 모두에게 지급한다는 측면에서 보편적 급여이다.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은 지역화폐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지역경제 특히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장을 살리기 위한 효과를 고려한 것이다. 이 점은 양면적인 성격을 갖는데, 지역 내 자영업자들의 환영을 받는 측면은 있으나 현금처럼 어디서나 쓸 수 있는 서울시와 비교해 사용지역에 제한을 받는다. 한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취업여부에 상관없이 지원하며, 계속 지원에 대한 조건도 없으나 그 급여가 1년간 100만원(분기별 25만원)이라는 점에서 소득보장으로서의 충분성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지닌다. 청년수당과 청년기본소득의 주요한 차이를 정리하면 <표 II-4-16>와 같다.

8) 세계일보. (2019-07-21) 「청년층에 또 '현금복지'?... 박원순의 구상은 실현될까」

&lt;표 II-4-16&gt; 청년수당과 청년기본소득의 비교

구분	서울시 청년수당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자산조사	없음	없음
요건	구직활동계획서(심사)	없음
급여	300만원(6개월)	100만원(12개월)
사용처	전국	경기도
대상	미취업대상	만 24세 청년대상

#### 다) 사업성과 및 향후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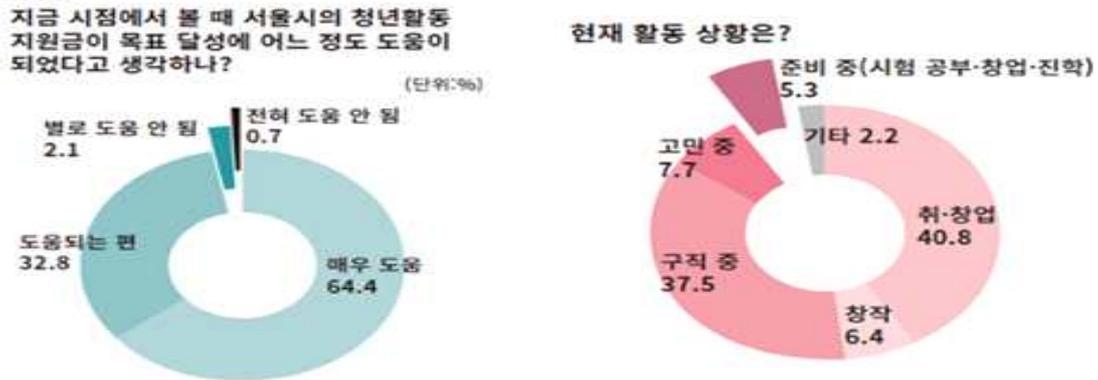
서울시 청년수당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이행기 청년들에게 현금성 지원을 하여 청년들이 취업준비기간 동안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생계를 안정시키고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로의 이행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청년기본소득은 지급액이 청년수당에 비하여 낮게 설정되어 있어 생계안정의 효과를 나타내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그러나 구직중인 청년 외에도 24세의 모든 청년에게 지원하여 일하고 있는 청년 중에서도 근로여건이 열악한 환경에 있는 청년들에게 직업 및 자기탐색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서울시와 성남시(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모델) 모두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후평가를 실시하였다. 먼저 서울시는 1기 수혜자 일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FGI를 실시하였다. 사업참여자 4,910명 기준 40.8%(2,002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응답자 97.2%가 목표달성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응답자의 40.8%가 취업 및 창업을 했다고 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는 청년배당(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모델) 참여자 중 49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응답자는 구성은 소득이 없다고 답한 청년은 40.8%, 아르바이트생 21.3%, 정규직 직장인 20.7%, 인턴을 포함한 비정규직은 11%였다. 1기 배당 참여자에게는 25만원이 아닌 12만 5천원 상당의 상품권이 주어졌으며, 이들은 마트가게(167명), 재래시장(95명), 식당(87명), 서점(42명)에 사용했다고 응답했다. FGI 분석결과 청년배당을 받으면서 “실질적 도움을 받았다”, “내 삶을 배려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반응들이 나왔다. 현재는 모집단이 아닌 참가자 일부를 대상으로 팔로업 스터디를 하는 것에 그쳤지만,

추적 조사 뿐만 아니라 사전사후 설계를 통한 실험 또는 준실험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림 II-4-1> 서울시 청년수당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



출처: 2017년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2018년 추적조사 분석(2018). 시사IN에서 재구성.

청년수당 또는 청년기본소득에서 가장 우려되고 있는 점은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라고 할 수 있다. 고용과 연계하지 않은 소득 지원(직업훈련프로그램 참여나 구직을 조건으로 지급)은 선심성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청년들의 자립심보다는 복지의존성을 기를 것이라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sup>9)</sup>. 한편,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청년수당과 청년기본소득은 기존의 취업 연계 고용활성화 정책이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에서 새로이 대안적으로 제시된 정책이라는 점, 청년의 생계불안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보장성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아직 두 프로그램 모두 초동단계라는 점에서 효과성을 판단하기 이른 상황이지만, 향후에는 비용효과분석, 추적조사, 실험설계 등을 통해 효과성을 평가하고 프로그램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환류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9)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무분별한 현금 살포 행위가 현실화된 것이며 청년의 어려운 현실을 이용해 그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한 바 있다(강완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 2016. 8. 3. 브리핑).

---

주요 외국의 빈곤청년 정책 우수사례

1. EU의 청년보장제도 개괄
2. 오스트리아의 스페이스랩(Spacelab)
3. 핀란드 원스톱서비스센터
4. 프랑스의 청년보장과 미래고용
5. 이탈리아의 통합고용기금
6. 기타 우수사례
7. 해외사례의 시사점



이 장에서는 먼저 청년 니트를 정책 대상으로 하고 있는 EU의 청년보장제도 (Youth Guarantee)를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이러한 청년보장제도의 틀 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EU 국가의 여러 개별 정책 중에서 우리나라가 참고할 만한 사례라고 판단되는 오스트리아, 핀란드,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의 청년 니트 대상 특정 정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기로 한다. 또한 이러한 검토를 토대로 해서 이들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정리한다.

## 1. EU의 청년보장제도(Youth Guarantee) 개괄<sup>10)</sup>

2000년대 후반의 경제위기로 많은 EU 국가의 청년들이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데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2013년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비율은 13%(15~24세 청년 인구 대비 비율)에 달하였고, 절대 숫자는 730만 명에 이르렀다. 이에 EU에서는 청년들에 대한 기존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넘어서는 보다 강력한 정책수단을 들고 나왔다. 그것이 바로 청년보장제도이다(European Commission, 2016).

EU차원에서 청년보장제도를 도입하기 이전에 이미 몇몇 북유럽 국가에서 유사한 제도를 실시했던 경험이 있다. 스웨덴에서는 1984년, 노르웨이는 1993년, 그리고 덴마크와 핀란드는 1996년에 청년보장제도를 실시했다. 이들 국가가 도입했던 정책은 청년들이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에 있는 시간을 단축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고, 개인별로 요구 사항을 평가하고 고용 계획을 수립하는 맞춤형 지원에 그 특징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PES가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Eurofound, 2012).

이들 국가에서 실시했던 청년보장제도는, 청년들이 보다 현명한 선택(informed decision)을 하도록 도와주었고, 청년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과 속도를 개선하였으며, 청년들의 상황이 악화(노동시장 장기 이탈, 낙인, 정서적, 육체적 건강 문제, 반사회화)되기 전에 문제 해결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한 당국과 청년 간 신뢰관계 구축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청년들에게 보다 효과적이었던 반

10) 본 절의 내용은 채창균 외(2017)의 내용을 재정리한 것임.

면, 그렇지 않은 청년들의 경우 이 정책이 그다지 성공적이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청년보장제도의 성공 여부는 다른 정부 정책(PES의 역량, 입학 정원, 훈련, 도제자리, 인턴십 제공 등)과 광범위한 노동시장 상황에 의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단기 해결책(quick-fix)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최소 3달을 기다려야 하는 개입 시점의 문제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에서 실시되었던 청년보장제도의 비교적 성공적 경험이 EU 차원에서 청년보장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배경으로 작용하였음은 분명하다(Eurofound, 2012).

EU의 청년보장제도는 '25세 미만 청년들이 실직하거나 정규교육을 마친 4개월 이내에 계속 교육, 도제, 훈련이나 고용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European Commission, 2012). 이 정책의 주된 대상은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이다.

그러나 나라마다 대상 연령대, 고용이나 교육훈련 보장 기간이 약간 상이하다. 개별 국가의 상황에 따라 유연한 적용이 가능한 것이다. 다수 EU국가들은 25세 미만의 청년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은 30세 미만, 네덜란드는 27세 미만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European Commission, 2016).

고용이나 교육훈련 보장 기간의 경우 17개국 4개월, 오스트리아는 가능한 빨리, 핀란드는 3개월, 스웨덴은 90일, 덴마크와 네덜란드의 경우 지원 유형에 따라 기한을 달리하고 있다. 헝가리와 벨기에(플란더스, 브뤼셀 지역)는 6개월로 EU의 원칙보다 길다. 또한 실제 보장 기간도 당초 EU의 원칙과 달리 실직하거나 정규교육을 마친 시점부터가 아니라 PES(Public Employment Service)에 등록된 시점부터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European Commission, 2016).

청년보장제도에서의 정책 전달은 주로 PES를 통해 이루어진다. PES와 더불어 다른 기구나 조직이 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그런 국가는 많지 않은 편이다. 에스토니아, 핀란드, 룩셈부르크 등은 PES와 더불어 별도의 청년센터를 두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지자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PES나 청년센터, 지자체 등을 통해 오프라인 상으로 등록을 해

야 청년보장제도가 개시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많은 국가에서는 on-line 등록도 가능하다(European Commission, 2016).

청년보장제도의 주무 부처는 많은 경우 고용부이다. 그러나 핀란드처럼 교육문화부(교육과 청년 담당 부처)가 담당하는 경우도 있고, 라트비아처럼 몇 개 부처가 책임을 공유하는 경우도 있다(복지부와 교육과학부)(European Commission, 2016).

청년보장제도 예산은 우선 유럽사회기금(ESF, European Social Fund: 청년 및 취약계층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과정 등 지원을 통해 실업문제를 해결하고자 EU 차원에서 마련한 기금)을 통해 지원된다. 여기에 해당 국가의 자체 예산이 더해진다. 이들 예산에 더해 청년 실업률이 높은 나라의 경우(1개 이상 지역에서 25% 이상의 실업률을 기록한 회원국)에는 YEI(Youth Employment Initiative)를 통한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European Commission, 2016).

<표 III-1-1> EU 청년보장제도의 국가별 차이

국가	목표 집단	서비스 제공 시한	주무 부처	등록 기관	온라인 등록	YEI 지원 (백만 유로)
오스트리아	25세 미만	가능한 빨리	Ministry of Labour, Social Affairs and Consumer Protection	PES	Yes	-
벨기에	25세 미만	최대 6개월 (지역에 따라 상이)	Regional PES	PES	Yes	42.44
불가리아	30세 미만	4개월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Policy	PES	No	55.19
크로아티아	30세 미만	4개월	Ministry of Labour and Pension System	PES Centres for Lifelong Career Guidance	No	66.18
키프로스	25세 미만	4개월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Insurance	PES	No	11.57
체코	25세 미만	4개월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Affairs	PES	No	13.60
덴마크	30세 미만	4개월 미만 (목표집단과 서비스에 따라 상이)	Ministry of Employment	PES	Yes	-
에스토니아	30세 미만	4개월	Ministry of Social Affairs	PES Open Youth Centres	Yes	-
핀란드	25세 미만 (최근 졸업생은 30세 미만)	3개월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PES One-stop-shops (youth centres)	Yes	-
프랑스	25세 미만	4개월	General Delegation for Employment and Vocational Training Federal Ministry for Labour and Social Affairs	PES Local mission	No	310.16
독일	25세 미만	4개월	Federal Ministry for Labour and Social Affairs	PES	Ye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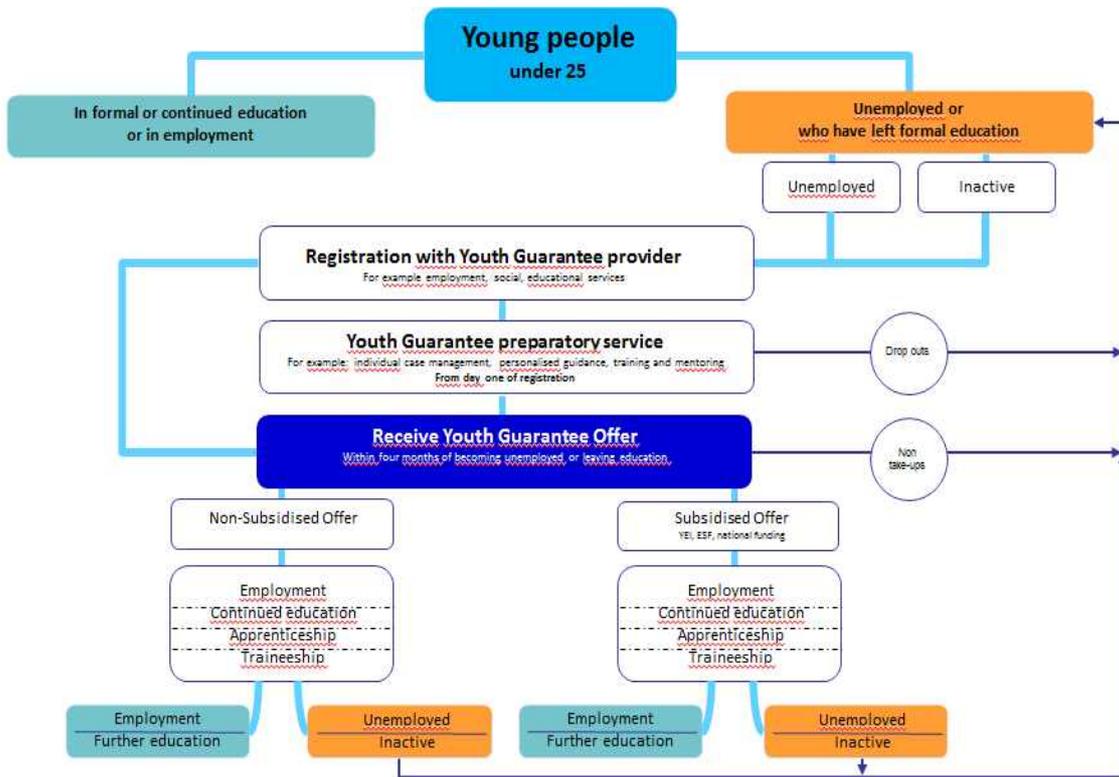
**빈곤청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	목표 집단	서비스 제공 시한	주무 부처	등록 기관	온라인 등록	YEI 지원 (백만 유로)
그리스	25세 미만	4개월	Ministry of Labour	PES	Yes	171.52
헝가리	25세 미만	4개월(2016년 이후)	Ministry for National Economy	PES	No	49.77
아일랜드	25세 미만	4개월	Department of Social Protection	PES	Yes	68.14
이태리	30세 미만	4개월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Policy	YG online platform PES	Yes (YG platform)	567.51
라트비아	30세 미만	4개월	Ministry of Welfare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PES State Education development agency Agency for International Programmes for Youth	No	29.01
리투아니아	30세 미만	4개월	Ministry of Social Security and Labour	PES	Yes	31.78
룩셈부르크	25세 미만	4개월	Ministry of Labour, Employment and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PES, the National Youth Service, and the Local Action for Youth.	No	-
말타	25세 미만	4개월	Ministry of Education and Employment	Dedicated info point at Ministry for Education and Employment	No	-
폴란드	30세 미만	4개월	Ministry of Family, Labour and Social Policy	PES Voluntary labour Corps	Yes	252.44
포르투갈	30세 미만	4개월	PES	YG online platform PES	Yes (YG platform)	160.77
루마니아	25세 미만	4개월	Ministry of Labour, Family, Social Protection and Elderly	PES YG Centres	No	105.99
슬로바키아	30세 미만	4개월	Central Office of Labour, Social Affairs and Family	PES	No	72.17
슬로베니아	30세 미만	4개월	Ministry of Labour, Family, Social Affairs and Equal Opportunities	PES	Yes	9.21
스페인	30세 미만	4개월	Ministry of Employment and Social Security	YG on line platform PES, regions, Chambers, Youth Organisations	Yes (YG platform)	943.50
스웨덴	25세 미만	90일	Ministry of Employment	PES	Yes	44.16
네덜란드	27세 미만	4개월 미만 (목표집단과 서비스에 따라 상이)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Employment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and Science	Municipalities PES Education providers	Yes	-
영국	25세 미만	4개월 미만 (목표집단과 서비스에 따라 상이)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PES Education providers	Yes	206.10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6), pp. 118-119

청년보장제도의 정책 전달 경로는 <그림 III-3-1>과 같다. 니트 상태의 25세 미만 청년들이 PES 등 청년보장제도 전달기구에 등록하면, 사전 서비스로서 개별사례관리나 맞춤형 진도지도, 훈련과 멘토링 등이 등록 첫날부터 제공되며, 니트 상태에 처한 시점부터 4개월 이내에 고용이나 계속교육, 도제나 수습 등과 같은 기회(청년보장오퍼)가 제공된다. 청년보장오퍼에는 보조금이 수반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사전 서비스 과정에서 탈락했거나 청년보장오퍼를 수용하지 않은 경우 재등록을 통해 동일한 프로세스가 다시 진행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청년 입장에서 보면, 등록, 어드바이저 면담, 청년보장 오퍼 수용의 3단계로 구분된다(European Commission, 2016).

<그림 III-1-1> EU 청년보장제도의 정책전달 경로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6), p.7

청년보장제도에서는 청년에게 제안하는 오퍼의 질적 측면을 매우 중요시한다. 양질의 오퍼는 ① 지속가능한 오퍼(A sustainable offer, 결과 중심), ② 맞춤형 오퍼(A tailored-made offer, 투입 중심), ③ 최소 질적 기준을 상회하는 오퍼(Minimum quality standards offer,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에서는 62일 이하의 훈련은 quality offer로 간주하지 않음), ④ 본질적으로 중시되는

양질의 오퍼(Intrinsic quality offer, 건강, 안전, 적절한 통근시간, 사회보험 제공, 정규 고용, 개인의 발전 기회 등이 제공되는 일자리), ⑤ 수요 주도 오퍼(demand-led offer), ⑥ 주관적으로 판단할 때의 양질의 오퍼(subjective quality offer) 등의 6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하며, 개별 국가들이 청년들에게 오퍼를 제공할 때 이들 요소를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16).

EU에서는 이러한 청년고용보장제도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에 대한 철저하고도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강조하고 있다. EU 차원의 공통 모니터링 지표는 집계 모니터링 지표, 청년보장제도의 전달에 대한 직접 모니터링 지표, 청년보장제도 준비단계를 벗어난 청년에 대한 추적 지표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European Commission, 2015).

먼저 집계 모니터링 지표는 주로 청년노동시장의 거시적 상황에 관한 것으로, 청년보장제도와 직접적 연관은 제한적이다. 주 지표는 니트 비율(15-24세, %)이다(European Commission, 2015).

보조 지표1은 노동시장 상태별(실업/비경활) 니트 비율(15-24세, %), 고용률(15-24세, %), 인구 대비 실업자 비율(15-24세, %), 성인 실업률(25-74세) 대비 청년 실업률(15-24세) 비율(%) 등이며, 보조 지표2는 인구 대비 고교졸업자 비율(20-24세), 실업률(15-24세, %), 25-29세 니트비율(%), 25-29세 고용률(%), 기준년 전 3년 이내에 교육훈련을 마친 최근 졸업자(20-34세)의 고용률(%), 인구 대비 고교중퇴 이하 비율(20-29세, %), 대학졸업자 비율(30-34세, %), 추가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중학교 중퇴자 비율(18-24세, %)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European Commission, 2015).

청년보장제도의 전달에 대한 직접 모니터링 지표는 청년보장제도로의 유입 및 탈출에 관한 지표이다. 주 지표는 목표 기간(4, 6, 12개월) 이후에도 청년보장제도 준비 단계에 있는 청년 비율이며, 이는 '목표 기간(4, 6, 12개월) 이후에도 청년보장제도 준비단계에 있는 청년의 연평균 스톱'을 '청년보장제도 준비단계에 있는 청년의 연평균 스톱'으로 나눈 값이다. 여기에서 연평균 스톱은 월 스톱의 평균을 의미한다. 이 지표는 청년보장제도 준비단계의 지속기간을 측정함으로써 청년들이 오퍼를 받아들일 때까지 소요된 기간을 모니터링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이다(European Commission, 2015).

보조 지표는 청년보장제도 준비단계에서 긍정적 방향(고용, 계속 교육, 도제나 훈련)으로 적시 탈출한 비율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4개월 내에 긍정적 방향으로 청년보장제도 준비단계에서 탈출한 청년 수'를 '청년보장제도 준비단계에서 탈출한 청년 수'로 나눈 값이며, 이는 주 지표의 한계, 즉 청년보장제도 준비단계에서 부정적 방향으로 탈출한 청년을 포착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청년보장제도 준비단계에 있는 청년의 연평균 스톡을 니트 인구(연평균)로 나눈 값도 보조지표로 활용하는 데, 이는 청년보장제도에 등록된 니트의 비율을 파악하기 위함이다(European Commission, 2015).

청년보장제도 준비단계를 벗어난 청년에 대한 추적 지표 중 주 지표는 청년보장제도 준비단계를 벗어난 청년들의 6, 12, 18개월(청년보장제도 준비 단계 탈출 이후부터 계산) 뒤 상황을 보여준다. 즉, 청년보장제도 준비단계를 벗어나 6, 12, 18개월 뒤 긍정적 상황(고용, 계속교육, 도제, 훈련), 부정적 상황(실업, 비경활), 추적 불가 상황에 있는 청년 수를 각각 청년보장제도 준비 단계 탈출 청년 수로 나눈 값이다(European Commission, 2015).

보조 지표로는 오피 유형별 청년보장제도 준비단계를 벗어난 청년들의 6, 12, 18개월(YG 준비 단계 탈출 이후부터 계산) 뒤 상황을 보여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① 고용 오피를 받고 청년보장제도를 떠난 청년 수 대비 6, 12, 18개월 뒤 긍정적 상황(고용, 계속교육, 도제, 훈련), 부정적 상황(실업, 비경활), 추적 불가 상황에 있는 청년 수의 비율, ② 계속교육 오피를 받고 청년보장제도를 떠난 청년 수 대비 6, 12, 18개월 뒤 긍정적 상황(고용, 계속교육, 도제, 훈련), 부정적 상황(실업, 비경활), 추적 불가 상황에 있는 청년 수의 비율, ③ 도제 오피를 받고 청년보장제도를 떠난 청년 수 대비 6, 12, 18개월 뒤 긍정적 상황(고용, 계속교육, 도제, 훈련), 부정적 상황(실업, 비경활), 추적 불가 상황에 있는 청년 수의 비율, ④ 수습(Traineeship) 오피를 받고 청년보장제도를 떠난 청년 수 대비 6, 12, 18개월 뒤 긍정적 상황(고용, 계속교육, 도제, 훈련), 부정적 상황(실업, 비경활), 추적 불가 상황에 있는 청년 수의 비율로 측정된다(European Commission, 2015).

<표 III-1-2> 청년보장제도에 대한 모니터링 지표

집계 모니터링 지표	주 지표	- 니트 비율(15-24세, %)
	보조 지표 1	- 노동시장 상태별(실업/비경활) 니트 비율(15-24세, %) - 고용률(15-24세, %) - 인구 대비 실업자 비율(15-24세, %) - 성인 실업률(25-74세) 대비 청년 실업률(15-24세) 비율
청년보장제도의 전달에 대한 직접 모니터링 지표	주 지표	- 인구 대비 고교졸업자 비율(20-24세) - 실업률(15-24세, %) - 25-29세 니트비율(%), 25-29세 고용률(%) - 기준 년 전 3년 이내에 교육훈련을 마친 최근 졸업자(20-34세)의 고용률(%) - 인구 대비 고교중퇴 이하 비율(20-29세, %) - 대학졸업자 비율(30-34세, %) - 추가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중학교 중퇴자 비율(18-24세, %)
	보조 지표	- 목표 기간(4, 6, 12개월) 이후에도 청년보장제도 준비단계에 있는 청년의 연평균 스톡 / 청년보장제도 준비단계에 있는 청년의 연평균 스톡
청년보장제도 준비단계를 벗어난 청년에 대한 추적지표	주 지표	- 4개월 내에 긍정적 방향으로 청년보장제도 준비단계에서 탈출한 청년 수 / 청년보장제도 준비단계에서 탈출한 청년 수
	보조 지표	- 청년보장제도 준비단계를 벗어나 6, 12, 18개월 뒤 긍정적 상황(고용, 계속교육, 도제, 훈련), 부정적 상황(실업, 비경활), 추적 불가 상황에 있는 청년 수를 각각 청년보장제도 준비 단계 탈출 청년 수로 나눈 값 - 고용 오퍼를 받고 청년보장제도를 떠난 청년 수 대비 6, 12, 18개월 뒤 긍정적 상황(고용, 계속교육, 도제, 훈련), 부정적 상황(실업, 비경활), 추적 불가 상황에 있는 청년 수의 비율 - 계속교육 오퍼를 받고 청년보장제도를 떠난 청년 수 대비 6, 12, 18개월 뒤 긍정적 상황(고용, 계속교육, 도제, 훈련), 부정적 상황(실업, 비경활), 추적 불가 상황에 있는 청년 수의 비율 - 도제 오퍼를 받고 청년보장제도를 떠난 청년 수 대비 6, 12, 18개월 뒤 긍정적 상황(고용, 계속교육, 도제, 훈련), 부정적 상황(실업, 비경활), 추적 불가 상황에 있는 청년 수의 비율 - 수습(Traineeship) 오퍼를 받고 청년보장제도를 떠난 청년 수 대비 6, 12, 18개월 뒤 긍정적 상황(고용, 계속교육, 도제, 훈련), 부정적 상황(실업, 비경활), 추적 불가 상황에 있는 청년 수의 비율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5) pp.4-12에서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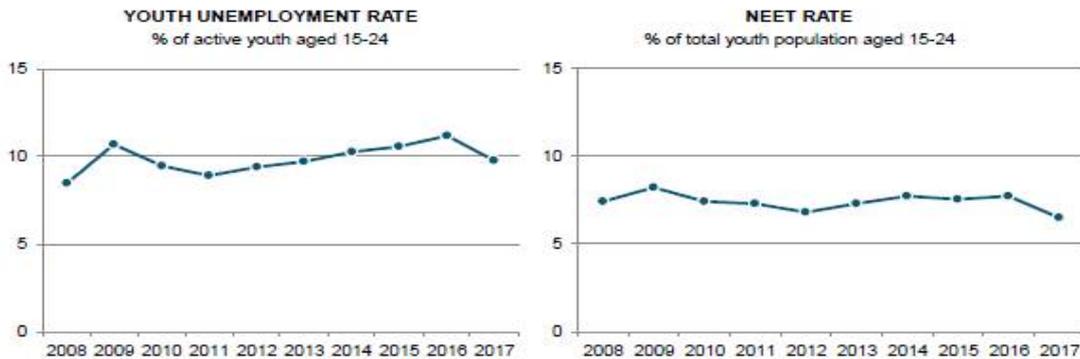
## 2. 오스트리아의 스페이스랩(Spacelab)

오스트리아는 경제 회복에 힘입어 2016년 고용률이 증가(1.2%p)하였고, 실업률이 2016년 6.0%, 2017년 5.5%로 떨어져 하락세를 보였다. 15-24세 청년 실업률은 몇 년간 증가하다가 9.7%로 감소하였다. 이는 EU 평균인 18.7%를 크게 밑도는 수치이다. 인구고령화에도 불구하고 노동공급이 증가하였는데, 여

성, 고령층, 해외이민자들의 노동 공급이 증가였기 때문이다. 반면에 장기 실업자 비율은 2016년 1.9%까지 증가하였고, 이는 부분적으로 조기 퇴직을 제한하였기 때문에 발생하였다.

2017년 청년 니트 비율은 6.5%로 EU 평균인 10.9%와 차이를 보였다. 오스트리아의 청년 니트 비율은 2014~2016년 동안에는 상대적으로 변동이 없었지만, 2016~2017년에는 1.2%p 상승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EU의 청년 니트 비율은 2014년 이후 점차 개선되어 같은 기간 동안 총 1.6pp 감소하였다 (EUROPEAN Commission, 2018, p. 4).

<그림 III-2-1> 오스트리아의 청년 실업률과 니트 비율



출처: EUROPEAN Commission, 2018, p.5. 인용

EUROPEAN Commission(2018)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14세의 약 25%가 국가시험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초 능력에 완전히 도달하지 못하였으며, ICT, 공학 등의 STEM 분야의 졸업생, 특히 박사 학위 취득자가 적다고 한다. 이러한 오스트리아의 교육 결과는 미래의 경제에 성장에 필요한 능력(skill)을 제한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는 다양한 정책과 법적 이니셔티브를 통해 이민자와 청년을 지원하려고 한다. 최근 채택한 ‘교육훈련 법률(Education and Training Act, Ausbildungspflichtgesetz)’은 조기 중퇴자를 줄이고, 취약 계층 청년의 능력(skill)을 향상시키는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2017년 7월부터 18세 이하 모든 청년들은 의무적으로 교육, 훈련, 고용 상태에 있어야 한다. 2017년 6월의 통합법(Integration Act)은 이민자에게 언어, 문화, 가치관

(value) 등의 강좌를 수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는 유아교육에서 초등학교로 이행에 대해서도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기로 하였다(EUROPEAN Commission, 2018, p. 4-5).

## 가. 니트 정책<sup>11)</sup>

오스트리아의 청년보장에 대한 2017년 12월 유럽 고용위원회 다자간 심사(Employment Committee's multilateral surveillance)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노동시장이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상황이지만, 비유럽 출신과 숙련도가 낮은 사람들은 실업에 처할 위험이 높다고 한다. 오스트리아는 종합적인(comprehensive) 청년보장 제도를 마련하여, 정부 당국(public authorities)과 사회적 파트너 간에 광범위하고 효과적인 파트너십을 확립하였다. 정책 프로그램에는 '18세까지 교육과 훈련(Education and Training until 18)' 프로그램, '초기업(supra-company) 도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는 종합적으로 상호 연결된 행정 자료를 토대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숙련도가 낮은 청년과 이민자에 관한 지원과 아웃리치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고 한다(EUROPEAN Commission, 2018, p. 5).

오스트리아의 '청년보장 실행계획(Youth Guarantee Implementation Plan)'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훈련보장'과 '청년행동을 위한 미래'는 청년보장의 두 가지 핵심 조치이며, 청년보장에는 '청년코칭', '도제코칭', '생산학교' 등이 포함된다. 또한 직업교육 정보 제공(직업교육 정보센터 포함)을 위한 서비스, 도제를 위한 전국적인 PES 배치 서비스, 기업 기반 도제를 위한 보조금 지급, PES의 개별 홍보 활동 등도 포함된다. 그리고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수월하게 하고, 중퇴자를 줄이는 전략이 강조된다. 여기에는 국가전략과 오스트리아 청년전략이 있고, 이중 국가전략은 조기중퇴를 막는 것이다. 노동부(Federal Ministry of Labour), 교육여성부(Ministry of Education and Women, BMBWF), 사회복지부, 과학기술경제부(BMWF), 가족청년부(BMF) 등 경제와 청년과 관련된 정부부처, PES(AMS), 사회복지 서비스, 사회적 파트너, 지방정부 등이 정책 추진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

11) EUROPEAN COMMISSION(2015)의 내용을 정리함.

‘훈련보장(Ausbildungsgarantie, training guarantee)’은 8세 이하, 사회적 약자, 학습부진아(slow learners), 중퇴자, 도제 지위에 있는 24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견습직을 찾을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초기업(supra-company) 견습 훈련 기관에서 견습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다. 이런 형태의 견습생들은 회사에 기반을 둔 견습생과 완전히 동일하다. 2013년 12월 현재, 약 9,000명이 초기업 견습생으로 등록되었고, 이는 전체 견습생 중 7.6%에 해당한다. 전체 견습생 중 92.4%가 기업에서 도제 훈련을 이수한다.<sup>12)</sup>

‘청년 행동을 위한 미래(Aktion Zukunft Jugend), future for the youth action) 프로그램’은 2009년에 시작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장기 실업의 위험에 처한 19-24세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편입되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훈련 조치, 고용보조금 지원 일자리(subsidised employment), PES에 배치 노력 등을 포함하고 있다. 청년 실업자는 3개월 이내에 일자리, 훈련이나 재훈련, 고용보조금 지원 일자리를 제공받는다.

청년코칭(Ausbildungsgarantie, youth coaching)은 의무교육에서 상위 중등교육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퇴나 조기 중퇴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소외될 위험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더 이상 교육시스템에 있지 않는 19세 미만 청년, 특수교육이 필요하거나 작업장에서 도움이 필요한 25세 미만 청년, 학교 밖에 있는 청년(NEET), 훈련 조치 중이지만 중퇴의 위험이 있는 청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프로그램이다.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s)가 채용한 청년코칭 상담사는 대상이 되는 그룹과 연락하고, 상담, 조언, 진단 등의 지원을 제공한다. 청년코칭은 3단계 모듈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1단계는 초기 인터뷰 단계로 여기에서 청년들이 일반적인 정보를 획득하며, 필요하다면 2단계나 3단계로 더 진행할 수 있다. 2단계는 1단계보다 더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며, 청년은 학교를 계속 다닐지, 관심 있는 직업군이 무엇인지, 교육받거나 일하는 데 어려움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조언을 구한다. 3단계는 사례관리(case management)를 설정한 지원이 제공되며, 최대 1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 청년은 실제적인 경험을 하고, 자신의 미래에 관한 조언을 담은 보고서를 받을 수 있다. 2014년에 약 28,000명의

12) 상동 p. 3

청년이 최소 하루 정도 청년코칭에 참가하였고, 이 프로그램에 2,450만 유로가 지출되었다.

‘도제 코칭(Coaching für Lehrlinge und Lehrbetriebe, apprenticeship coaching)’은 니트와 도제 훈련생의 중퇴를 막는 프로그램으로 2012년에 시작되었다. 도제 훈련기간 중 고용주와 견습생 모두 ‘코칭 지원(supportive coaching)’을 요청할 수 있다. 일정한 자격을 갖춘 코치는 견습생과 함께 소통을 하고, 필요한 곳에서는 중개자로 행동한다. 그리고 코치는 단기 재교육(refresher), 숙련도 향상이나 사전 훈련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고, 최종 도제 시험을 준비하도록 훈련생을 지원한다. 도제 코칭 외에도 도제를 위한 예비과정과 훈련 기업 내에서 품질지향 조치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이 있다.<sup>13)</sup>

생산학교(Produktionsschulen, production schools)는 학교와 고용의 접점에서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좋은 예이다(오스트리아 실행계획, p3). 생산학교의 목표는 의무교육을 이수한 후에 사회적·기본적 기술이 부족한 청년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상위 중등교육이나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데 필요한 스킬을 획득하게 하는 것이다. 생산학교는 훈련모듈, 코칭, 지식 워크숍, 신체활동(스포츠, 창의/실험 학습)의 4개의 축으로 구성되었다.

생산학교의 예로 후술하는 비엔나의 ‘스페이스랩(Spacelab)’이 있다.<sup>14)</sup> 스페이스랩은 25세 이하 소외계층의 청년에게 제공되는 문턱이 낮은 노동시장이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안정성(stabilisation)을 제공하고, 동기를 진작하며, 직업진로 지도를 제공하는 것이다. 스페이스랩을 통해 원예, 창작워크숍, 미디어 워크숍 등에서 시간 단위로 작업하여 경험을 쌓을 수 있게 한다. 여기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구속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개별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

13) 상동 p 3 & EUROPEAN COMMISSION(2015) 정리

14) Youth Guarantee Implementation Plan. p 5,

<https://www.sozialministerium.at/cms/siteEN/attachments/8/0/1/CH3839/CMS1459340234319/youth-garantee-implementation-plan.pdf>

**생산학교<sup>15)</sup>**

## ○ 주요내용

생산학교는 2016년 7월에 ‘교육훈련(Education and Training)에 관한 연방 법률’의 채택으로 기존 생산학교의 개념이 현대화되고 확장되어, 의무교육과 노동시장 이행 시스템을 통합하였다. 2013년부터 ‘18세까지 교육훈련 준비(Ready for Education and Training until the aged 18, AusbildungsFit)’라는 시범사업이 시작되었다. 시범 사업과 이전의 생산학교의 개념이 2016년에 새로운 생산학교의 개념으로 통합되었다.

생산학교는 9년간의 의무교육을 마치고 지속적인 교육이나 전문 훈련을 위해 ‘개별적 훈련의 완성(individual training maturity)’을 추구하는 청소년이나 청년에게 제공한다. 그래서 이것은 형식교육 시스템이 아니다. 생산학교는 ‘문턱이 낮은 제안(offer)’으로 직무 현장 관련 능력(집중력, 근면성, 시간엄수, 독립성), 사회적 능력(매너, 외관, 비판과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 등을 계발하게 하고, 이러한 오퍼를 이수한 이후에 독립적으로 자신의 진로선택을 하게 한다.

프로그램 대상 집단은 의무교육을 마친 21세까지의 청년이다. 만약에 특수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거나 장애, 개인적 장애나 사회적 소외계층이라면 24세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데, 이들은 능력이 결핍(skills deficiencies)되어 도움을 필요하거나 직업훈련을 받기 어려운 청년들이다. 참가자들은 청년코칭을 통해 입학허가를 받은 후에 입학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생산학교는 4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참가자들은 생산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미래 지도(future map)’라는 다음 단계를 위한 구체적 목표 계획(targeted plan)을 부여받는다.

**생산학교의 4가지 축**

- 교육모듈: 교육 모듈은 활성화(도입), 연습(훈련, 직업적 오리엔테이션 등), 전문화(구체적인 직업적 훈련)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코칭: 코치는 참가자들이 생산학교에 머물러 있는 내내 참가자들과 함께 하고, 3개월마다 진행상황을 검토한다. 그리고 기업 등에서의 인턴십을 포함한 과정 중에 참가자들을 감독한다.
- 지식 워크숍: 교육, 훈련의 다음 단계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훈련한다.
- 스포츠 활동: 스포츠와 운동은 생산학교에서 중요한 요소이며, 다양하게 제공된다.

## ○ 이해관계자 및 자원

노동사회 및 보건소비자보호부(Ministry of Labour, Social Affairs, Health and Consumer Protection)가 생산학교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고, 사회부 서비스(Social Ministry Service), PES가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ESF와 연방 예산을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 결과 및 평가

2017년 49개 생산학교에 참가자 3,776명이고, 이중 62%는 남자, 38%는 여자였다. 연령에 따른 참가자 비율은 15세 14%, 16세 29%, 17세 24%, 18세 14%, 19세 7%, 20세 5%, 21세 이상은 8%로 평균 참가자 연령은 17.2세였다. 참가자의 60%가 성공적으로 생산학교를 졸업하였고, 평균 참가기간은 10개월이었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도제를 시작하는 추천서를 받고 생산학교를 졸업하였다.

생산학교의 성공 요인은 이 프로젝트에 남아 있으려는 동기 부여와 재정적 인센티브이다. 이에 따라 청년코칭은 청년들이 이 프로젝트에 남아있으려는 동기를 갖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생산학교는 '학습'뿐 아니라 사회적 이슈, 그룹 활동, 스포츠, 집단관계 역학 등에 초점을 둔다. 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청년들의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고 이를 이수하게 할 수 있다.

---

15) <https://ec.europa.eu/social/BlobServlet?langId=en&docId=20471&>를 정리한 것

&lt;표 III-2-1&gt;오스트리아의 청년 노동시장 정책

정책	정책 대상	재원	책임 기관
훈련 보장/ 초기업 훈련 프로그램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적당한 기업 기반 훈련을 찾지 못한 등록된 도제-구직자 (apprenticeship-seekers), 도제 중퇴자. 18세 이하, 사회적 취약계층 청년, 학습지진아, 교육 중퇴자와 19세-24세 청년	초기업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PES를 통해 이루어짐. 직업훈련과 직업훈련을 위한 예비조치는 ESF와의 공동 기금 활용 가능	PES
청년 행동을 위한 미래 프로그램	19-24세 청년	PES 펀드	PES
청년코칭	소외될 위험이 있는 9학년생, 물리적, 심리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청년, 어떤 도움없이 작업장에서 일자리를 얻거나 유지할 수 없는 인지 장애가 있는 청년(이 그룹에는 학습지진아나 사회적, 정서적 장애가 있는 청년을 포함함), 학교 밖 시스템에 있는 청년(니트), 훈련을 받고 있지만 훈련에서 중퇴할 위험이 있는 청년	기본적으로 연방 기금이나 보상분담금기금 (Compensatory Levy Fund, Ausgleichs taxfonds)이며, 필요한 경우에 현재 적용가능한 운영 프로그램에 기초하여 유럽사회기금 (ESF) 제공	사회보장 서비스 (Social Affairs Ministry Service)
도제에 관한 보조금	사회적 취약계층의 도제구직자 (apprenticeship-seekers). 예를 들어,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 사회적 문제가 있거나, 특수 학교 졸업자,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청년 등임. 여성 비율이 낮은 직업에 종사하는 여성 청년(예를 들어 전년도 모든 훈련생 중에서 40% 이하의 여성 도제생 비율). 스킬이 부족하여 고용가능성에 문제가 있고, 도제 훈련으로 해결할 수 없는 청년(18세 이상 도제 입학생), 통합 직업훈련 프로그램 ckaduwk	보조금은 실업보험 (고용주와 근로자가 기여)과 ESF에서 지원	PES
생산학교	취업 장애가 있거나, 사회적 소외계층이거나 적응 장애가 있는(특히 도제와 학교 중퇴자) 기초 교육과 훈련을 이수하지 못한 15세 청년. 의무교육을 이수하였지만 직업교육이나 훈련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자격을 수여하는 직업훈련에 진입하는 데 필수적인 사회적 기술과 기초 기술을 습득하지 못한 청년	PES, ESF	사회보장 서비스

출처: EUROPEAN COMMISSION, 2015, p. 8 인용

## 나. 스페이스랩(Spacelab)

오스트리아는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을 돕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략 전체 재원의 40% 이상을 지출하였고, 이는 OECD 평균을 웃도는 수치이다.

초기업(supra-company) 견습 훈련, 청년 코칭, 스페이스랩이 속해 있는 생산 학교는 소기의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되는 프로그램으로 다양하고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초기업 훈련 참가자의 50%가 중퇴하는 등, 다수의 청년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에서 중도하차한다. 이에 대하여 비엔나 지역에서는 17-24세 니트를 대상으로 하여 스페이스랩을 운영하고 있다. 스페이스랩 참가자들의 책무(commitment)는 단계적으로 구축되며, 청년들은 독립적으로 그들의 책무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만약에 참가자들이 원한다면, 이전 단계로 되돌아갈 선택권이 있다.

### 1) 운영<sup>16)</sup>

스페이스랩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교를 졸업하지 않았거나 의무교육만 이수하고,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다음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스페이스랩에 참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이 어려움.
- 학교를 졸업하지 않았거나 의무교육만 이수함.
- 고용(gainful employment) 경험이 없거나 부족함.
- PES를 이용할 수 있는 기준에 도달하지 못함.
- 미래직업과 직업관점에 대해 모호하거나 비현실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음.
- 여러 문제 영역에 노출되어 있음.
- 사회복지 혜택(social welfare benefits)을 받고 있음.

스페이스랩의 정책 집단은 15-24세이며, 17세-24세는 집중적인 정책 대상이다. 노동시장 진출이 어려운 비엔나 청년을 위하여 스페이스랩은 기술 습득과 직업훈련은 물론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중요한 목표는 청년의 미개척 잠재력을 개발하고 공동의 노력으로 그들이 해 볼만 한 일(challenge)을 정의하는 것이다. 프로젝트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16) Eurofound(2017) 및

[https://spacelab.cc/fileadmin/storage/Seiten/Projekt/Project%20Description\\_2017\\_20170109\\_web.pdf](https://spacelab.cc/fileadmin/storage/Seiten/Projekt/Project%20Description_2017_20170109_web.pdf) 를 정리한 것임

## 스페이스랩 프로젝트 목표

- 그룹 활성화
- 참가자의 안정화(경제적, 정신적 측면)
- 지원 시스템과 고용 시스템에 통합
- 개인적 전망을 개발
- 맞춤형 경력 개발 계획 작성
- 기술 잠재력 개발
- 추가 교육 시스템(further education system)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촉진
- 실무 중심의 직업 지도를 제공
- 역량 확장
- 기초 교육에 대한 지식 습득과 강화

스페이스랩은 비엔나 전역에 4곳이 있다. 스페이스랩은 앞서 언급한 조건 중 하나를 갖춘 청년 누구나에게 열려있다는 점에서 문턱이 낮고, 참여가 용이하며, 의무적인 출석이 요구되지 않는다. 전통적인 채널인 PES이나 온라인 아웃리치 외에도 청년지도사(youth worker)를 통해 청년들이 모집된다. 또한 매주 화요일 오후 한 시에 설명회가 열리며, 여기서는 별도로 등록하는 절차가 없다. 만약 공석이 있다면 청년들은 언제든지 스페이스랩에 합류할 수 있다. PES 어드바이저도 설명회가 있는 날에 직접 청년을 초대할 수 있다.

스페이스랩의 핵심 특징 중의 하나는 청년들이 의무를 완수하고 책임감에 익숙하여 지도를 돕기 위해 느끼고, 단계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청년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여 본인이 원하는 스킬을 결정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스페이스랩이 제시하는 모듈 순서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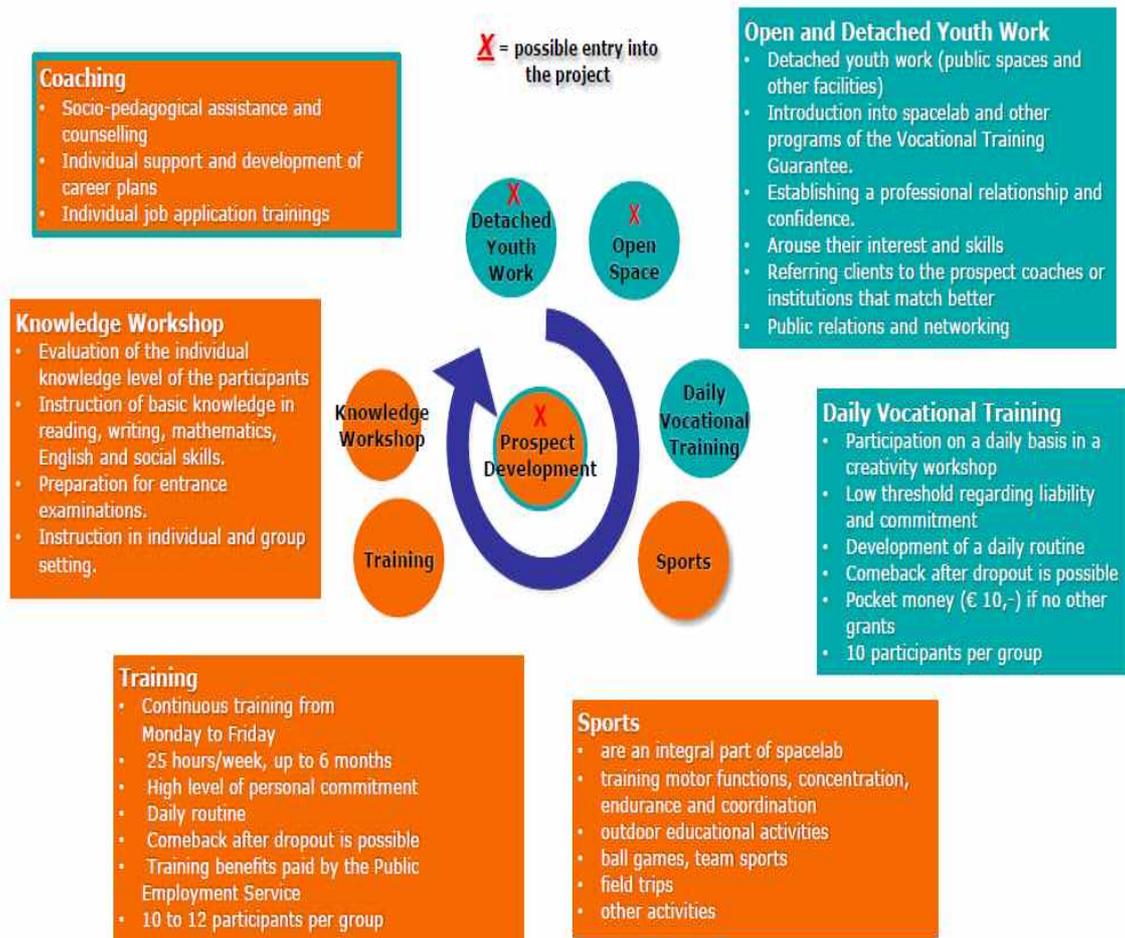
첫 번째 모듈은 ‘열린 공간(open space)’이다. 청년들은 스페이스랩 공간에 방문하여, 이곳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고 개별적 상담을 받는다. 참가자들이 직원과 프로그램에 친숙해지고 참가자들 자신이 훈련 받기 원한다고 확신하게 되면, 참가자들은 점차 더 구조화된 단계로 나아간다. 점차 구조화된 단계로 나아가면서 두 번째 모듈인 ‘코칭’ 모듈이 시작되며, 이는 동시에 참가자의 현재 상황, 과제, 자원을 고려한 개별적 진로경로 계획이 만들어지는 기간이다. 약물 문제와 같이 필요할 경우에 다른 기관에 조회가 이루어진다. ‘코칭’ 모듈 프로그램 과정 동안 코치들은 참가자들을 지속적으로 감독하기 때문에 ‘코칭’

모듈은 모든 스페이스랩 모듈들 간에 연결 고리 역할을 한다. 코치들은 참가자들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소년들을 지원하며, 청년들이 자신의 사생활과 직업적 생애를 적극적으로 설계하도록 격려한다. 참가자들은 세 번째 단계인 '일상적인 직업훈련(Daily Vocational Training)' 모듈로 이동한다. 이 모듈에서 제시하는 책임감과 책무에 관한 기준은 낮은 수준이다. 청년들은 작업장에 매일(월-ahr) 참여할 수 있다. 만약 조건이 이행되면, 참여자들은 하루 10 유로의 용돈을 받는다. 네 번째 단계인 '훈련(Training)' 모듈에서는 훈련이 매일 이루어진다. 연속적인 일자리 경험(월-금)은 '훈련' 모듈에서 주당 25시간,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며, 참가자들은 PES가 주는 수당을 받는다. 4곳의 스페이스랩에서 제공하는 훈련모듈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환경(spacelab\_umwelt, 1210 비엔나): 정원 가꾸기와 생태
- 창의성(spacelab\_kreativ, 1100 비엔나): 미디어 프로젝트 및 창의적 기술
- 소녀(spacelab\_girls, 1150 비엔나): 수공예 및 건강 주제
- 디자인(spacelab\_gestaltung, 1220 비엔나): 문화와 기술

마지막으로 '지식 워크숍' 모듈에서 교육자는 참가자의 지식 수준을 평가하고, 읽기, 쓰기, 수리, 사회적 스킬 등의 기초지식을 가르친다. 참가자들은 프로그램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시기를 결정할 수 있고, 원한다면 이전 단계로 돌아갈 수도 있다. 그리고 스포츠는 스페이스랩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여기서 활동은 주로 현장에서 이루어진다.

<그림 III-2-2> 오스트리아 스페이스랩 모듈 개념



## 2) 이해 관계자 및 자원

비엔나 청년 센터는 스페이스랩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며, 대상자를 발굴하고 이들을 스페이스랩에 참여하게 한다. 그리고 비엔나 청년 센터는 여러 관련 NGO들과 함께 스페이스랩을 운영한다(‘열린 문화와 워크숍 하우스의 창조(Creation of Open Culture and Workshop Houses, Werkstätten- und Kulturhaus)’, ‘사람들의 도움이 있는 고용(Volkshilfe Beschäftigung)’, ‘소녀를 위한 발판(Sprungbrett für Mädchen)’, 지역대학(Volkshochschulen, community college)’ 등).

오스트리아 스페이스랩에는 75명의 직원들이 참가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연간 예산은 3.5백만 유로이며, 사회봉사서비스(SozialinitiumService)와 와프

(Vienna Employment Provision Fund, waff)의 자금을 지원받는다. 비엔나 시의 13부(Education and Youth Work)도 이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금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며, 기금 부족으로 시설 확충, 장소 확대, 교육 모듈의 추가 등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3) 결과 및 평가

결과적으로 스페이스랩을 통해 2015년에 청년 11,000명과 접촉하였으며, 이들 중 824명은 ‘코칭과정’, 488명은 ‘일상적인 직업훈련’, 202명은 ‘훈련’(평균 160일), 276명은 ‘지식 워크숍’ 모듈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예상한 수요보다 높아서 초기 계획을 초과하는 수치였다. 2015년에 ‘코칭과정’ 참가자의 34.7%(286명), ‘훈련’ 참가자의 69.8%(141명)가 니트 상태를 벗어났다. 정책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기 어려운 청년들과 접촉하며, 참가하는 청년의 약점이 아닌 강점에 초점을 두고 광범위한 지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스페이스랩이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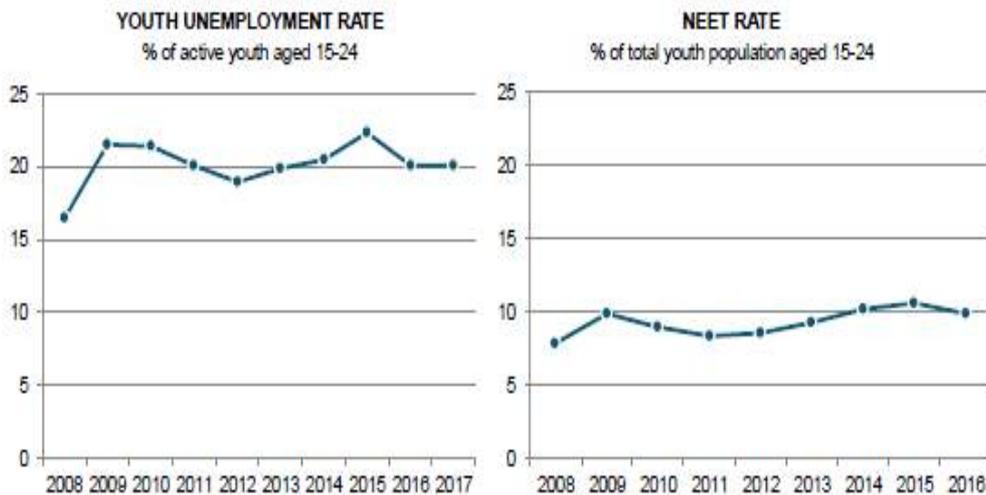
## 3. 핀란드의 원스톱서비스센터

핀란드는 2018년 현재 직업교육훈련(VET) 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개혁은 새로운 스킬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고, 평생학습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적인 개혁이면서, 일부 산업에서 발생하는 기술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청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VET를 통합하여, VET의 운영(steering), 규정, 재원조달 모델을 갖춘 하나의 시스템을 형성하고 VET는 역량 기반, 고객 지향적으로 될 것이다. 다시 말해, 학생 개인별로 완전한 자격이나 보충적 기술 모듈을 이수하는 적당한 경로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re-skilling) 능력(skill)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하며, 한편으로 디지털학습과 현장학습도 증가할 것이다. 새로운 재원조달 모델은 VET 제공자들로 하여금 학습 효과와 질을 개선하게 할 것이다.

핀란드 노동시장 상황은 2016년부터 개선되고 있다. 2016년과 2017년 모두

0.5%p까지 취업 인구가 증가하였고, 실업률은 2016년 8.8%에서 2017년 8.7%로 감소하였다. 취업률은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68.5%에서 2017년 70%까지 근접하였으나, 이는 여전히 다른 노르딕 국가들보다 낮은 수치이다. 2016년에 청년 실업률은 20.1%로 2.3%p 감소하였으나, EU평균인 18.8% 보다는 높은 상황이다. 15-24세 청년 니트 비율은 2015년에 10.6%, 2016년 9.9%로 점차 개선되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18, p. 4).

<그림 III-3-1> 핀란드의 청년 실업률과 니트 비율



Source: Eurostat, LFS (une\_rt\_a, lfsi\_neet\_a)

### 가. 니트 정책<sup>17)</sup>

핀란드에서 청년보장은 실업자가 된지 3개월 이내에 24세 이하 청년과 최근 졸업한 30세 미만 졸업생에게 직업, 현장 연수, 학습장, 재할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핀란드 청년보장은 고용경제부(MEE)와 사회보건부(MSH)가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다. 청년보장제도는 취업 보장, 교육·훈련, 청년 스킬 프로그램, 청년 워크숍, 아웃리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핀란드의 청년 고용은 ‘산시 카드(Chance Card)’라는 임금보조로 뒷받침된다. 임금보조금은 도제 훈련에도 사용되었다. 이제 막 종합학교를 졸업한 청년

17) EUROPEAN COMMISSION, 2015, p. 3-5 정리하였음

에게 도제자리(apprenticeship)를 제공하는 고용주들에게 임금보조금이 지원된다. 임금보조금은 청년 니트가 아닌 직업 자격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의 스킬 프로그램(Young adults' skills programme)은 단지 그들의 종합학교(comprehensive school)를 졸업한 20-29세 사이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교육이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에게 학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높은 수준의 자격을 얻는 직업 교육과정(vocational courses)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청년 니트를 위한 프로그램은 청년 워크숍(youth workshops)이다. 이것은 학습 환경으로 일자리 경험, 상담 및 훈련, 특히 시작 코칭(start-off coaching)과 같은 다양한 측면을 결합한 것이다. 워크숍에서 제공하는 시작 코칭은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중독, 정신 건강 문제, 학습 부진, 생활 관리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시작 코칭(start-off coaching)은 자신의 삶을 관리하고 향후 계획을 수립하는 데 포괄적인 지원이 필요한 청년에게 각기 다른 전문 분야에서 접근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핀란드 청년보장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서비스는 청년 니트와 접촉하는 아웃리치(outreach)이다. 아웃리치는 교육이나 노동시장 밖에 있고,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회적 배제의 위험에 처한 29세 미만의 사람들을 돕는 것이다. 아웃리치 작업 방법은 거리 작업, 찾아가는 청소년 지도(youth work), 모바일 청소년 사업 등 다양하다. 이러한 방법은 대상 그룹과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아웃리치 청소년 지도(youth work)는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준비하거나 다른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준비할 수 있다.

핀란드 청년보장에 대한 2017년 12월 유럽 고용위원회 다자간 심사(Employment Committee's multilateral surveillance)에 따르면, 핀란드 청년보장은 개별화된 가이드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었다고 한다. 핀란드 청년 니트의 3/4이 청년보장제도 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최근 니트의 수가 약간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고 있다고 한다. 핀란드는 원스톱숍의 성과뿐만 아니라 기존 파트너십 강화와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에도 노력하고 있음을 인정받았다 (EUROPEAN Commission, 2018, p 5).

## 나. 원스톱서비스센터

### 1) 운영<sup>18)</sup>

원스톱서비스센터(Ohjaamo<sup>19)</sup>)들은 핀란드 청년보장제도 정책 실행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공공-개인-민간-파트너십(4P)을 추구하며, 원스톱서비스는 핀란드 전역에 40개 지방 센터가 있다. 원스톱서비스는 생애 전환 단계에서 지원과 지도를 제공하여 청년 실업률을 감소시키는 것을 일반적 목표로 하지만, 좀더 구체적으로는 청년의 장기 실업과 사회적 배제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센터들은 30세 미만 청년에게 자기소개서 작성과 일자리 지원에 관련된 지원과 안내, 경제적 문제에 대한 상담, 보건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PES에서 실업자로 등록된 청년들은 PES를 통해 특정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 정책이 도달하기 어려운 그룹은 PES에 등록하지 않은 청년 니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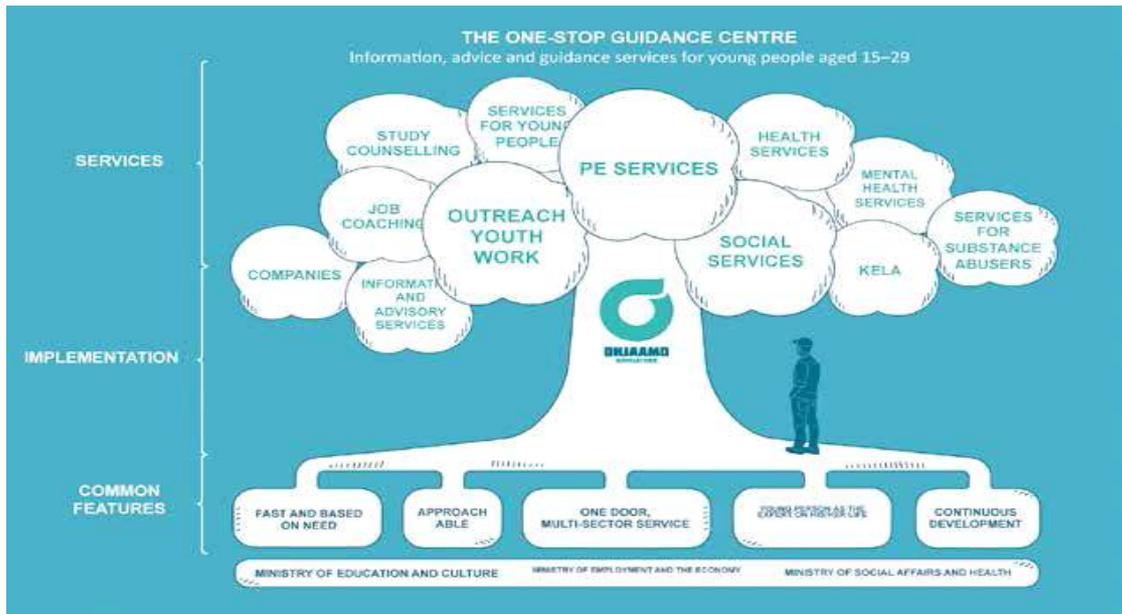
원스톱서비스센터는 청년에게 원스톱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원스톱서비스센터는 재정적 측면, 청년과 서비스 제공자들 측면에서 통합의 이점을 가져다준다. 다시 말해 건물 임대료, 간접비, 비영업 부분 사무실을 공유함으로써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청년들은 동일한 정보를 여러 번 기입하는 등의 서류상의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고, 자신이 받고 있는 서비스의 시스템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들 간에 권한과 책임이 명백해지며, 서비스 제공자들이 필요할 때 청년들을 동료에게 인계하거나, 평가과정에서 동료를 참여시키는 등, 원스톱서비스는 업무 수행을 원활히 하게 한다.

원스톱서비스센터에 일단 등록하면, 개별적으로 심층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고용, 훈련이나 재활에 맞춘 개별 통합 협약을 마련한다. 참가자들은 생계, 주거 및 의료와 같은 종류의 지원을 받는다. EU의 권고에 따라 이러한 협약은 단일한 접촉지점(contact)을 통해 전달된다. 이러한 조치는 고용경제부, 공공고용서비스, 지방정부, 지방 고용주, 교육기관과 여러 비영리 기관의 광범위한 협력을 필수로 한다.

18) Eurofound, 2017, p. 53과 European Union, 2018, p. 8-18 내용을 정리하였음.

19) Ohjaamo는 핀란드어로 'cockpit'을 의미하는데, 이는 청년이 운전석에 앉아서 그들의 생애와 미래를 아주 잘 통제한다는 숨은 뜻이 있다고 함.

<그림 III-3-2> 핀란드 원스톱서비스센터 운영 모형



자료: european Union, 2018. p 15.

원스톱서비스센터는 서비스 이용에 문턱을 낮추어, 이용자가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게 하고, 불필요한 요식행위도 줄였다. 센터 직원들은 제복을 입거나 배지를 착용하지 않아, 관공서나 은행과 같은 특수한 목적이 있는 기관과 다른 느낌을 준다. 실내 배치가 대형 커피숍과 같아서 정부기관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는다. 이는 원스톱서비스센터의 설계에 청년을 참여시킨 결과이다.

센터에 들어오면 직원과 첫 대면을 하고, 이 직원은 이용자의 문제를 처리하거나 필요할 때 다른 동료를 소개해 준다. 원스톱서비스센터는 전문가와 서비스 이용자인 청년 간에 면대면 관계를 중요시 한다. 청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당사자 간 신뢰구축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웹기반 지원보다 대면접촉을 지향한다. 원스톱서비스센터의 진로지도 전문가가 진행하는 비형식적인 가벼운 평가 결과를 토대로 추가적인 개입 여부를 결정한다. 이용자의 90%는 별도의 추가 개입이 없는 지원을 받지만, 10%는 좀 더 구조적인 지원패키지를 지원하기 위해 인계된다. 진로지도 전문가는 교육, 취업 목표, 청년 개인이 처한 상황, 재정 상태, 건강 및 사회적 연결망 등에 초점을 맞추고 평가한다.

헬싱키의 원스톱서비스센터는 27가지 각기 다른 전문 영역을 배경으로 하는 직원들이 5개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헬싱키 원스톱서비스센터는 비영리기구

가 주거, 이주, 스포츠와 관련된 안내·지침을 제공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한편으로 간호사는 보건 관련 상담을 진행한다. 그러나 다른 대도시에서와 마찬가지로 헬싱키에 있는 청년들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보건 서비스와 돌봄 서비스를 항상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European Union, 2018).

원스톱서비스센터의 문턱을 낮추어도 센터에 방문하지 않은 취약 계층 청년을 찾아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시 공무원과 협력하여 조기 중퇴나 소외 계층 청년을 찾거나, 많은 청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이벤트성 행사를 개최한다. 물리적 방법뿐 아니라 소셜미디어도 이용하는데, 소셜미디어는 아웃리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헬싱키에 거주하는 청년 청각장애자는 한 소셜미디어를 접속하여 원스톱서비스센터를 알고 청각장애자를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에 참석하였다. 이 청년은 전기(electrician)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고, PES 지원을 무시한 채로 일자리를 찾으려고 고군분투하는 중이었다고 한다.

원스톱서비스센터 운영에 고용주의 협력도 중요하다. 기업 홍보를 통하여 원스톱서비스센터는 고용주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며, 청년 고용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기업이나, 청년이 취업할 만한 곳을 파악한다. 그리고 원스톱서비스센터의 비즈니스 코디네이트의 주도하에 고용주와 청년이 만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포럼도 개최한다. 2018년 현재까지 이 행사에 참여한 청년 중 40%가 일자리를 찾았다. 이 센터는 새로이 설립한 지원 기관의 네트워크와도 연계한다.

원스톱서비스센터 운영의 근거는 통합적·포괄적 서비스 지원에서 오는 이점에 있다. 재정적 측면에서 건물 임대료, 간접비를 절약하고 비영업 부분 사무실을 공유함으로써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센터를 이용하는 청년들은 동일한 정보를 여러 번 기입하는 등의 서류상의 번거로움을 피하고, 자신이 받는 서비스의 시스템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인 원스톱서비스센터의 전문가들 간에 권한과 책임이 명백해 진다. 청년들을 다른 동료에게 인계하거나, 평가 과정에 다른 동료를 참여하게 하는 등 서비스 제공자들은 업무를 원활하게 처일 할 수 있다.

원스톱서비스센터 운영상의 가장 큰 문제는 데이터 공유와 관련이 있다. 서비스 제공자 간에 고객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청년의 기본 정보를

여러 번 요청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헬싱키의 데이터보호법은 제3자로부터 시민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되어 있고 이 법 때문에 기본적인 정보 이외의 공유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국가 차원에서 공유 데이터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아직은 불충분한 상태로 남아 있다.

## 2) 재원 및 이해관계자

반타(Vantaa)시에서 설립한 원스톱서비스센터의 전신인 Petra의 예산은 2013-2014년에 연간 444,000유로였다. 이후에 Petra의 활동은 반타(Vantaa)시의 원스톱서비스 활동으로 통합되었고, 결과적으로 원스톱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 실시되게 되었다. 대다수 원스톱서비스센터들은 재원의 일부를 EFS로부터 지원받는다. EFS 자금은 3년 동안 총 850만 유로였다. 총 공공기금(ESF와 지방자치단체 자금)은 약 1,900만 유로(반타시의 경우 120만 유로)이다. 이 금액에는 지방자치 단체가 직접 조달한 기금으로 설립한 원스톱서비스센터 예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Eurofound, 2017, p. 63).

원스톱서비스센터 비용은 위치, 서비스 규모에 따라 다르다.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PES, ESF에서 일정한 액수가 투입되지만, 재원도 핀란드 전역에서 원스톱서비스센터마다 다르다. 헬싱키 원스톱서비스센터는 전국에서 가장 크고 재원도 풍부하다. 수도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필연적으로 건물과 서비스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헬싱키의 원스톱서비스센터는 연간 약 180만 유로의 운영 예산을 보유하고 있다. ESF와 헬싱키 시당국이 130만 유로를 제공한다. 전체 직원 27명 중 15명의 급여를 ESF에서 부담하고 하고 있고,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약 80%를 차지한다(European Union, 2018).

국가 정책 수준에서 여러 정부 부처에서 원스톱서비스센터를 지원하며, 그 중심에는 고용경제부(Ministry of Economic Affairs and Employment)가 있고, 교육문화부(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와 사회평등보건부(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는 고용경제부를 지원하지만, 이들 정부 부처 간에 국가 법률이나 협약(agreement)은 없다. '국가 조정 프로젝트(national coordinating project, Kohtaamo)'에서는 센터와 센터 관련 웹 기반 지침을 개발하고 운영을 지원한다(European Union, 2018).

원스톱서비스센터의 파트너는 지역별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지만, 지역 당

국과 PES가 주요한 역할을 맡는다. 원스톱서비스센터는 PES, 국가연금기관(Kela), 지방정부와 지방정부협회(Kuntaliitto) 등의 긴밀한 협조를 기초로 하며, 지방 고용주, 지방 교육기관과 여러 비영리기관들도 참여한다. 이를 테면, 원스톱서비스센터는 지방 이민 기관(local migrant organisations)과 긴밀한 협력 하에 일하며, 여기서 지방 이민 단체는 실업 상태인 청년 이민자가 센터에 방문하도록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은 핀란드 정신건강협회와 같은 여러 다른 기관과도 협력하고 있다(European Union, 2018, p. 59).

### 3) 결과 및 평가

원스톱서비스센터의 전신인 Petra는 35개의 신규 기업 창출 관련 부분을 제외하고 당초의 목표치를 모두 초과했다. 2010~2014년까지, Petra를 통해 1,000명 이상의 청년이 고용되었고, 500명 이상이 일자리를 경험할 수 있는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받았으며, 250명 이상이 공인된 자격을 획득하는 교육을 받았다. 청년 총 4,000명과 기업 200개 이상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아직까지 원스톱서비스센터의 수혜자에 대한 종합적인 통계는 없으며, 2017년 초부터 체계적으로 정보가 수집되고 있다. 대부분의 센터들은 서비스를 이용한 청년 수를 기록했지만, 이용한 이후의 결과에 대한 정보는 수집되지 않았다. 그리고 청년들은 약속을 하지 않고도 익명으로 원스톱서비스센터를 이용할 수 있어서, 청년들은 어떤 등록도 없이 청년이 필요로 하는 도움과 조언을 받을 수 있다.

2017년 4월부터 이용 가능한 정보에 따르면 2016년에 핀란드 전역에서 청년 8만 명이 원스톱서비스센터를 이용하였다. 원스톱서비스센터는 개별화된 안내 및 조언을 약 5만회 제공하였다. 이 서비스를 이용한 청년 중 남성은 53%, 여성은 46%이며, 18세 미만은 10%, 18~24세 63%, 25세 이상이 14%였다. 그리고 그룹에 기반을 둔 조언과 안내는 약 60,000회 제공하였다. 청년들은 대부분 고용과 기업가정신, 교육, 재정 문제, 건강과 주택 문제에 대한 조언과 지원을 구하였다.

원스톱서비스센터는 고수준 지원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리더십, 확고한 의지, 분명한 목표 공유 등을 통해 협력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다. 따라서 횡적 부문 간 협력 관계가 효과적이려면 높은 수준의 노력과 자원의 투자가 필

요하다. 그러나 서비스의 통합이 주로 비용 절감 의제에서 시작된다면 통합의 성공 가능성은 낮아진다. 원스톱서비스센터 모델은 핀란드에서 국가 정부 부처 전반의 지지를 받고 있다. 여기에는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를 반영한 의사결정의 위임이 중요해진다.

서비스가 한 곳에 모여 있다는 점은 서비스 제공에서 중요하지만, 같은 장소에의 집합과 서비스 통합은 같은 말은 아니다. 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다양한 학문적, 직업적 경험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특정 직업 문화와 관행에 익숙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별도의 ESF 프로젝트를 마련하여 복합조직 문화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또한 센터 직원들은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조직에 명령 받는 것이 아닌 봉사자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센터 내에 직원의 급여, 휴가 등을 관리하는 중간 관리자를 상주시켜 서비스의 일상적인 관리를 담당하게 하고, 이들에 대한 다른 직원들의 신뢰를 구축하고 있다.

원스톱서비스센터의 입지가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에 핵심적인 요소로 꼽힌다. 핀란드의 수도에서 도심 상점은 좋은 교통 연결망을 가지고 있어서 접근성이 높다. 그러나 지역 상황과 지원 대상 그룹에 따라 최적의 지리적 위치는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장 취약한 계층의 거주지가 취약한 계층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이다. 어쨌든 위치가 중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결론으로 센터 기획 단계에서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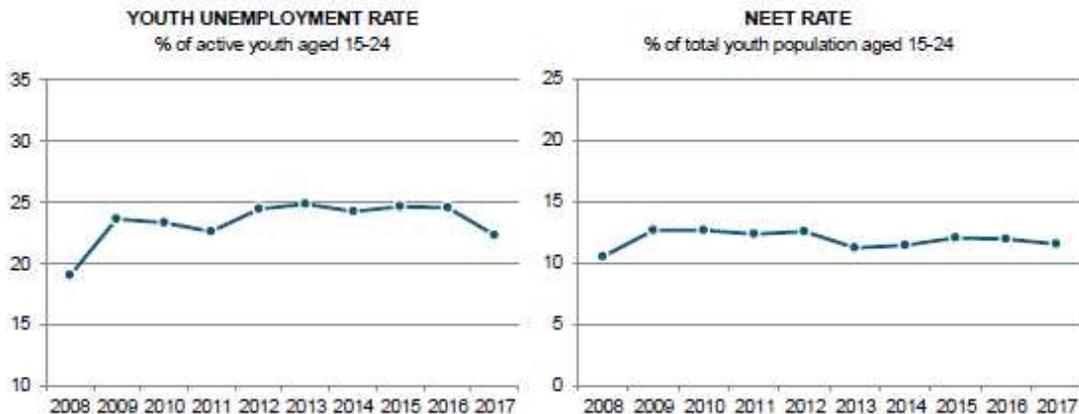
서비스 통합이 취약 계층에 효과적으로 작용하였는지 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과 평가 프레임워크의 설계 및 구현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토대 위에 협업이 잘 이루어지고 각 부서간 팀워크에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견고하고 구조화된 프레임워크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공유와 실행 가능한 시스템 개발의 어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다. 서비스 수혜자에 대한 추적 조사는 모니터링 및 평가와 관련되어 있다. 헬싱키 모델에서 많은 고객들이 추적조사에 잡히지 않고 있고, 추적 조사 수가 적어지면, 궁극적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울 수 있다.

## 4. 프랑스의 청년보장과 미래고용

프랑스 노동시장 상황은 점차 개선되고 있다. 2016년 EU 평균 고용률이 71.1%일 때, 프랑스 20-64세 고용률은 2016년에 70%였고, 2017년에는 EU 추세와 같이 개선되었다. 실업률은 2015년 10.4%, 2016년 10.1%, 2017년 9.5%로 점차 감소하였다(2017년 EU 평균 실업률은 각각 7.7%, 유로존 평균 실업률은 9.1%). 청년실업은 2016년 24.6%, 2017년 22.6%로 감소하였지만, 2016년 EU와 유로존 평균 실업률이 각각 16.8%, 18.9%로 프랑스 청년 실업률이 EU 평균이나 유로존 평균보다 높았다.

프랑스 청년들이 노동시장으로 통합되는 것은 아직 제한적이어서 청년 니트 비율이 11.9%였다. 15-19세의 학교 중퇴자 수는 감소하였지만, 2017년 20-24세 실업률은 여전히 높게 나타난다. EU 평균 청년 니트 비율이 감소하는 가운데, 프랑스 청년 니트 비율은 11.9%를 유지하고 있다. 18-34세 청년 니트 중에서 1/3이 외국 태생이거나, 부모의 출신지가 프랑스 이외의 국가이다.

<그림 III-4-1> 프랑스의 청년 실업률과 니트 비율



Source: Eurostat, LFS (une\_rt\_a, lfsi\_neet\_a)

유럽 추세와 마찬가지로 직업교육훈련에 등록된 상위 중등학교 학생 비율은 감소되었다. 학교 기반이든 현장 기반이든 직업교육훈련(VET)은 2013년 상위 중등교육 총 학생 수의 43%를 차지하였고, 2015년은 41.5%로 나타났다. 도제(Apprenticeship)는 중등수준 직업 교육 등록의 1/4을 차지하였다. 2015년

말과 2016년 말 견습생 수의 증가(1.7% 증가)는 대학 수준 견습생들이 빠르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이들은 현재 모든 견습생의 37%를 차지하고 있다.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학사 학위 과정으로 진학한 비율은 2000년 이후 2배로 증가하였지만, 고등교육을 이수한 비율은 6%로 나타나,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등교육 이수율인 약 50%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EUROPEAN Commission, 2018, p. 3).

## 가. 프랑스 청년보장<sup>20)</sup>

프랑스 당국은 2013년 4월 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2013년 12월 ‘청년보장 국가계획(Plan national Garantie Jeunesse)’을 발표하였다. 청년보장 국가계획은 청년 고용 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접근법을 제시하였으며, 기존의 개입 조치를 강화하고, 정책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러한 정책 패키지에 프랑스 ‘청년보장(Garantie Jeunes)’이 포함되어 있다. 프랑스 청년보장은 정부가 2013년 1월 채택한 ‘빈곤퇴치 및 사회적 포용’의 틀에서 만들어진 실험적 제도이다. 청년보장의 주된 목표는 불안정하고 취약한 조건에 있는 청년이 자율성을 확보하고, 노동시장으로 통합되도록 하는 것이다.

청년보장의 정책 대상은 ① 18-25세 청년, ② 청년 니트이며, ③ 취약계층이다. 만약 16-18세 청년이 처한 상황이 매우 취약하고 이들이 사회적으로 배제될 위험이 크다면, 이들도 청년보장의 대상에 포함된다. 그리고 국가 ‘개입’ 정책 실행에 청년 니트가 처음으로 나타났지만, 실제적 실행에서는 차이가 없는데, 이러한 조치를 담당하는 ‘지역청년고용서비스(Missions locales)’가 학교를 떠나 구직활동이나 훈련 받기를 원하는 청년과 함께 일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이다. 정책 대상에 ‘취약 계층’이라는 기준은 새롭게 도입된 것이다. 지역청년고용서비스가 실행하는 취업이나 학교-일자리 이행 정책은 청년과 청년 가족의 재원과 부분적으로 관련된 ‘취약성’ 기준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지금까지 노동시장과 관련된 개인적 어려움만을 정책 대상으로 고려되었으나 프랑스 청년보장은 가족의 재원도 파악한다. 청년의 취약성이나 위태로운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평가항목을 만들었다.

20) European Commission(2016)을 정리한 것임.

## 청년의 취약성을 판단하기 위한 평가 항목

- ① 자금취약성(Financial vulnerability): 최저소득기준 미만인 가정에서 사는 청년
- ② 가족취약성: 가정을 떠났거나, 가족의 지지 없이 가정에 살고 있는 청년
- ③ 사회적 취약성: 자격 취득 없이 학교를 중퇴하였거나, 형사법의 통제를 받는 중인 청년

한편 프랑스 청년보장은 두 가지 요소를 기초로 한다. 첫 번째는 청년에게 일자리 경험과 훈련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첫 번째 요소는 2013년 위원회 권고에 명시된 타국의 청년보장과 일치하며, PES와 청년 간의 계약이 원칙이다. 쌍방은 상호간의 의무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이 계약은 일 년간 유지되며, 한 번 갱신할 수 있다. 지원과 그 후속조치는 지역 기관인 지역청년고용서비스(Missions locales, ML)가 제공한다. 지역청년고용서비스는 교육받고 있지 않는 16-25세 청년에게 열린 원스톱 서비스이며, 지역청년고용서비스는 지역 당국과 국가의 자금을 지원받는 자율적 독립체이다. 이 기관들은 PES의 일부로 청년에 관한 취업과 '개입' 정책을 실행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지역청년고용서비스는 취업과 훈련에서 보건의, 주거, 시민권 등까지 여러 분야의 지원과 조언을 제공한다. 청년보장의 맥락에서, 지역청년고용서비스는 지역 파트너의 도움과 함께 목표 집단과 일치하는 청년을 선정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 계약기간 1년 내내 맞춤형 지원과 후속 조치를 정의하고 조직해야만 한다. 수혜자들은 자신의 질의에 응답하고 정기적으로 조언하는 상담사와 함께한다. 프랑스 청년보장의 지원과 후속조치는 '일자리 우선'이며, 이것은 다양한 직업 경험의 제공과 훈련 경험의 이수를 말하는 것이다. 기업에서 진행되는 '몰입교육(immersions)'은 전문적, 직업적 경험을 통해 청년의 의지와 역량에 가장 적합한 경로를 구축하게 한다. 기업에서의 몰입교육은 이른바 '직업 경험기간(PMSMP, périodes de milliu professional)'으로 불리며 2014년 법률에서 정한 지위에 의존한다.

두 번째 요소는 재정 지원으로 다른 유럽 국가의 청년보장에서 존재하지 않은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요소이다. 청년들은 최대 300 유로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별도로 2016년 기준 461 유로<sup>21)</sup>에 달하는 자산조사수당(mean

tested allowance)을 매월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금액의 총액이 최저임금의 80%<sup>22)</sup>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총액은 감소할 수 있다. 최소한 2년 이상 일했거나 자녀가 있는 부모를 제외하고, 최근까지 25세 이하 청년들은 최저 소득(RSA)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수당 지급에 의의가 있으며, 수당의 총액은 1인당 최저임금에 가깝다.

한편으로 청년에 대한 사회적 보호 제도 개혁으로 2016년 1월 1일 이후, 18세 이상의 모든 노동자들은 경제활동 추가수당(prime d'activité)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시간제 일자리에 해당하는 246 유로(2016년 최저임금의 0.5배) 근로연계복지(welfare-to-work) 인센티브이다. 이전의 근로연계 복지와 달리 청년 근로자에게 자격을 부여하여, 청년 수혜자에게 일자리를 찾게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지역 수준에서 청년보장(Garantie Jeunes) 실행과 밀접하게 연관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보장에 관한 모니터링은 고용부와 지역 수준에서 지방 공공 기관(DIRECCTE, 고용부와 경제재정부의 권한 아래 지방의 명령)이 실시한다. PES에 소속된 지역청년고용서비스(ML)는 청년보장을 실행하며,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 관련 정책도 시행하였다. 또한 청년보장은 지역적 제후를 기반으로 제도적 틀이 구축되어 있다. 지방위원회는 청년들이 계약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내리는 벌칙(배제 또는 중단 등)뿐만 아니라 그 계획에 대한 승인을 결정한다. 각 위원회에서는 최소한 도지사(Prefect, département에서 국가 권한을 나타냄), 도 단위 지방자치단체(département) 기관 및 지역청년고용서비스의 대표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지역에 따라 다른 행위자와 파트너도 포함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다른 지역 당국, 프랑스 PES(Pôle Emploi), 국가 교육(National Education) 대표,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대표자, 사회복지사 대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위원회는 단순히 참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보장의 잠재적 수혜자를 선별하고 이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프랑스의 청년보장은 개별적 지원과 집단적 지원이 결합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청년보장이 개별적 접근에 기초한 PES의 지원이라는 점에서 대조적이다. 집합적 지원은 6주 그룹 형식이며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후속 조치가 뒤를

21) 2018년 기준 484.82 유로

22) 2018년 기준 월 1,198.77유로

잇는다. 실제적인 측면에서 지역청년고용서비스는 청년 12명의 코호트를 조직하며, 그룹의 크기는 더 크거나 작을 수 있고, 새로운 그룹은 6주마다 형성된다. 6주의 집합적 지원 기간에 청년은 기본적인 지식과 글쓰기, 말하기, IT 기반 기술, 시간 운용과 같은 사회적 기능 등을 계발할 수 있다. 프랑스 노동부는 세부 사항, 도구(tool), 가이드라인을 준비하여 지역청년고용서비스가 청년보장을 실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역청년고용서비스에게 약간의 자율성이 있어 자체적으로 워크숍을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집합적 지원은 청년의 자존감 향상, 취업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에게는 사회적 자원과 기능을 높여준다. 또한 집단 활동은 개별 인터뷰보다 상담사와 청년 간의 관계를 증진하고, 신뢰를 구축하게 한다. 1년 계약 기간 중 6주간 집합적 지원을 마치면 남은 계약 기간에는 개별적 지원이 따른다. 이 모든 기간에 청년보장은 청년과 지역 고용주 간의 연결고리를 가능한 한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프랑스 청년보장(Garantie jeunes)은 최저 소득 지원(minimum income grant)과 함께 집중 상담을 제공하며, 부분적으로 '청년고용계획(Youth Employment Initiative)'에서 자금을 지원한다. 이러한 청년보장은 2017년에는 정책 대상 인원이 계획되지 않았지만, 2018년에는 10만 명의 수혜자를 목표로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2016년에는 25세 미만 니트의 68.9%가 유럽 청년보장제도에 등록되었다. 청년 니트에게 빠르게 일자리를 찾아주는 PES의 능력은 아직 과제로 남아있다. 유럽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보장에 등록된 청년 니트의 80%가 4개월 이상 어떠한 오퍼(offer)도 받지 못했다. 2018년 1월에 청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수혜자를 모니터링하는 새로운 통계 도구(TRAJAM)가 도입되었고, 청년 니트를 위한 새로운 아웃리치 이니셔티브도 시작되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는 '그랜드기술투자계획의 새로운 기술투자계획(the new Plan d'Investissement dans les Compétences of the Grand Plan d'Investissement 2018-2022)'에서 자금을 지원한다(European Commission, 2018, p. 4).

<표 III-4-1> 프랑스 '청년보장 계획(Plan national Garantie Jeunes)'

청년의 선별 - PES, 지역청 년 고용 서비스 (ML)i - 교육제도 - Defense Day - 사법기관 - 사회복지사 - 기타	- 4개월 이내에 해결 방안 제공 - 동행(accompaniment), 자격, 취업알선(placement)에서 기존 조치의 활용		
	지역별로 기금을 지원하는 훈련	프랑스 PES가 실행하는 조치들, 특히 대안적인 취업알선 방법들(alternative placement methods)	지역청년고용서비스가 실행하는 조치들, 특히 일자리와 관련되거나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한 안내 강화
	장애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안내		
	기타		
- 기존 일자리 관련 제도와 조치들을 활용			
	도제	임금 보조를 받는 일자리	고용주 대상 일자리 인센티브
	기업가 정신 인센티브	자원 봉사 서비스	기타
- '청년보장(Garantie Jeunes)'은 초기에 청년 니트 18-25세 대상, 10개 시범지역(2014년)으로 시작하였음. - 1년 계약, 처음 6주는 지역청년고용서비스(ML)에서 조직된 그룹 지원과 일자리 관련 경험을 청년에게 제공하는 것이 초점 - 재정지원(자산조사수당 2018년 월484.82 유로, 최대 300유로와 결합되며, 총액이 일정액 이상이면 감소)			

출처: European Commission(2014) p. 4

## 나. 미래고용(Emplois d' Avenir, EA)

미래고용 정책은 취약계층을 위해 2012년부터 2017년 12월 31까지 실행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다<sup>23)</sup>. 미래고용 정책은 교육 수준이 낮거나, 복지우선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청년, 장애가 있는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는 제도이다. 이 정책은 주로 비영리 부문 일자리에 보조금을 제공하고, 비숙련·저숙련 청년이 직업 훈련 과정을 이수함으로써 관련 자격을 취득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에 고용되도록 한다.

### 1) 운영

정책 대상은 16~25세(장애가 있으면 30세 이하)이며, 하위 중등교육과 동등하거나 낮은 경우로 프랑스 자격체계 '레벨 V(ISCED 2)'에 해당하는 청년이

23) 채창균 외(2018) p. 141

다. 앞서 언급한 대로 복지우선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도 미래고용 정책 대상에 해당하며, 이들은 학사학위자 등 교육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더라도 참여가 가능하다. 미래고용은 낮은 교육 수준의 청년을 주요 정책 대상으로 삼지만, 낙후 지역에 거주하는 고학력 청년도 참여 가능하다.

프랑스 고용부(Ministry of Employment)는 미래고용의 실행 단계를 8단계로 나누었다(표 참조). 정책을 운용하는 기관은 현지 고용주와 접촉하여, 일자리 오퍼(job offers) 탐색, 자격 기준(eligibility criteria)에 부합하는 청년 선별, 고용주와 구직자 간의 매칭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European Commission, 2013, p. 13).

<표 III-4-2> 미래고용 실행 단계와 운용 기관

단계	운용 기관
1. 잠재적 고용주를 탐색(Prospecting potential employers)	지역청년고용서비스(Missions locales), 프랑스 PES(Pôle Emploi), 장애인 취업알선 전문기관(Cap emploi)
2. 일자리 제공 자격(자격기준과 일부 최소 수준의 약속을 준수하는지 검증)	
3. 오퍼에 부합하는 청년 식별	
4. 고용주와 지원자 간의 중개	
5. 업무 내용, 기술 교육 등의 측면에서 협약과 책무를 고용주와 협상	지역청년고용서비스(Missions locales) 또는 장애인 취업알선 전문기관(Cap emploi)
6. 국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행정 서류에 서명	
7. 계간기간과 계약 관리 기간에 청년과 고용주의 동행/동반(Accompaniment)	
8. 고용주가 청년을 고용을 유지할 수 없으면 다른 일자리로 이직 준비	

출처: European Commission(2013) p. 13.

지역 수준에서 지역청년고용서비스, PES(Pôle Emploi), 장애인 취업알선 전문기관(Cap emploi), 고용부 지방 대표자들이 모이는 ‘운영위원회(operational committees)’를 설치하여, 여러 관계자 간에 원활한 조정이 이루어지게 한다. ‘운영위원회’의 모임 주기와 장소는 일정하지 않지만, 고용주로부터 수집한 일자리 오퍼 조건과 공공보조금에 관한 자격 기준을 정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실제 직업적 프로젝트(professional project)가 없거나, 자격 수준이 낮거나, 취업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들은 지역청년고용

서비스로 위임되며, 장애 청년들은 장애인 취업알선 전문기관(Cap Emploi)으로 위탁된다. 따라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청년은 PES(Pôle Emploi)의 서비스 혜택을 받고, 그렇지 않은 청년들은 지역청년고용서비스의 서비스를 이용한다. 다시 말해 PES(Pôle Emploi)가 고용 정책에 주된 역할을 수행하지만, 미래고용의 실행을 위임받은 기관은 지역청년고용서비스인 것이다. 한편 지역 수준에서 PES(Pôle Emploi)는 일자리 질에 근거하여 고용주를 선정하여야 한다.

지역청년고용서비스는 보건, 주거, 사회복지 등을 담당하는 지역 당국과 PES(Pôle Emploi)<sup>24</sup>, 장애인 취업알선 전문기관(Cap emploi)과 긴밀하게 파트너십을 유지하면서 이 정책이 특정 그룹의 청년에게 잘 도달하도록 한다. 지역청년고용서비스는 청년을 위한 원스톱 스톱으로 이곳에서 개별적 ‘동반(accompaniment) 지원’을 청년에게 제공한다. 2001년부터 지역청년고용서비스와 PES는 청년실업자의 동반 지원(accompaniment)에 대해 ‘공동 계약자(co-traitance)’의 역할을 하며, 이러한 계약은 문서를 통해 이루어진다.

미래고용은 영리 부문보다 비영리 부분의 고용주와 계약이 주를 이룬다. 이들 계약은 보조금을 받는 일자리이고, 계약의 90%가 협회, 행정, 지방당국 등의 비영리 부문에서 이루어진다. 나머지 10%만이 영리 부문에서 계약이 맺어진다. 미래고용 실행 과정에서 프랑스의 도 단위 지자체 명령을 통하여 우선시되는 분야를 성문화하고 상세하게 규정하였다. 이들 분야는 일자리 창출에 잠재력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회, 환경 분야이거나 채용 전망이 밝은 녹색, 디지털 산업, 사회복지 분야의 일자리이다(Eurofound, 2017).

미래고용은 고용주가 청년을 채용하는 대가로 재정적 지원을 받는 일자리(subsidised job)를 제공한다. 비영리 부문에는 프랑스 최저임금의 75%, 영리 기업에는 최저임금의 35%를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재정 지원은 매달 이루어지며, 재정 지원을 받기 전에 채용이 이루어질 수 없다. 고용 기간은 최대 3년간 지속될 수 있고, 최소 고용 기간은 1년이다. 일반적으로 전일제로 청년을 채용하지만, 청년의 상황에 따라 시간제 일자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24) 일하지 않은 청년이 PES(Pôle Emploi)에 자동으로 실업자로 등록되지 않음.

## 2) 자원 및 이해관계자

미래고용 정책은 국가가 전액 지원하며, 연간 약 12억 유로가 투입된다. 게다가, 지역청년고용서비스센터는 미래고용의 수혜자를 추적하기 위해 거의 1억 5천 5백만 유로의 보조금을 받는다(Eurofound, 2017). 한편 이 정책의 설계와 전달에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을 망라된다. 여기에는 PES, 지역청년고용서비스센터, 프랑스 전역의 지자체에 있는 장애인 취업알선 전문기관(Cap Emploi) 뿐만 아니라, 사회적 파트너인 APEC(경영자고용협회), CFDT(프랑스의 주요 노동조합 중 하나)와 MEDEF(프랑스의 주요 고용주 단체)도 포함한다.

## 3) 결과 및 평가

매년 약 9만 명의 젊은이들이 미래고용에 참가하고 있으며, 2014년에 15만 명에 도달하는 초기 목표가 달성되었다. 이 조치는 자격 미달 청년층 공약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가자 중 41%가 학위가 없고(도시 우선구역에 사는 사람 중 31%, 여기에 살지 않는 사람 중 47%), 83%가 학사학위가 없었다(도시 우선구역에 사는 사람 중 60%, 여기에 살지 않는 사람 중 96%). 이 조치는 또한 장기 실업자들을 참여하게 하는 데 성공했는데, 도시 우선구역에 사는 청년의 37%와 그 안에 살지 않는 청년의 26%는 미래고용에 등록하기 전에 적어도 1년 동안 실직 상태였다.

미래고용의 핵심 요소인 훈련과 관련하여 계약의 36%에 기술 훈련이 제공되었다. 계약한지 1년 후, 청년의 3/4이 어떤 형태로든 교육을 받았고 수혜자의 절반이 전문(specialised) 교육을 받았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훈련 혜택을 받는 젊은이들 중

- 86%가 새로운 역량과 능력 획득을 위한 교육을 받음
- 83%가 작업장 적응을 위한 지원을 받음
- 36%가 기술 교육을 받음
- 13%가 자신의 교육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 7%가 사전 자격 훈련을 받음
- 11%는 회사의 신입사원 교육에 참여했다.

Eurofound(2017)에서는 프랑스에서 시행된 보조금이 지급되는 일자리 제도와 비교하여 일부 불가피한 ‘한계점 효과(threshold effects)’나 ‘포장 효과(pavement effect)<sup>25)</sup>’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정책과 달리 미래고용은 명백한 자격 기준을 두었고, 자격 수준이 낮은 청년과 소외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 실업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미래고용은 법률로 개별 훈련 계획의 정해진 훈련 요소를 규정하고 있으나, 각 훈련 계획 내용에 관해서는 약간의 융통성이 허용된다. 여기에는 형식 자격 훈련 및 비형식 훈련과 제도를 보완하는 무형식 자격 훈련을 포함한다. 또한 고용주는 청년에게 멘토링을 실시한다. 미래고용 계약은 전일제이고 청년들이 지속가능한 경로를 구축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장기간 계약으로 맺는다. 이러한 멘토링과 장기의 계약기간은 수혜자의 고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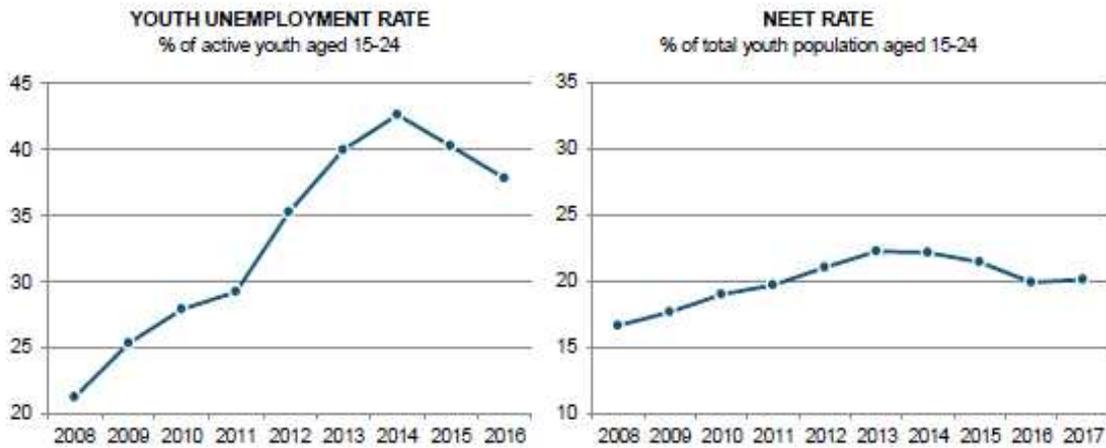
## 5. 이탈리아의 통합고용기금

이탈리아는 경제 회복과 노동시장 개혁으로 경제 위기 이전으로 고용수준이 돌아왔다. 고용이 2016년 1.4%, 2017년 1.0% 성장하였는데, 이는 고용 장려 정책에 힘입은 것이다. 그러나 총근로시간은 경제 위기 이전 수준 이하로 남아 있다. 고용 증가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실업률도 2019년까지 10.5%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성별 고용 격차가 높고, 전체 고용률도 낮으며, 소득 불평등성도 높다. 청년 실업률은 2014년 43.4%에서 2017년 12월 32.2%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다. 청년 니트 비율도 2012년 22.2%, 2016년에 20.0%로 약간 감소하였으나, 이는 여전히 EU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며, 지역 간 격차도 크게 나타난다.

---

25) 청년들이 ‘ZUS’ 경계에 있는 것으로 분류된 도로의 특정 쪽에서 살 경우, 그 조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lt;그림 III-5-1&gt; 이탈리아의 청년 실업률과 니트 비율



Source: Eurostat, LFS (une\_rt\_a, lfsi\_neet\_a)

## 가. 청년정책

2014년에 15-24세 실업률이 42.7%로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최근 몇 년 청년 노동시장에 관한 지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2016년에는 4.9%p 감소). European Commission (2017)에 따르면 이는 이탈리아 교육 시스템과 일자리와 관련된 구조적 위기가 주요한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탈리아 교육 시스템은 전통적으로 일반 교육의 역할만 수행하고 실용적인 교육이 아니다.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학교를 졸업하기 때문에 지역 기업이 요구하는 역량이나 능력이 부족하다. 이는 직업훈련 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고, 현장학습프로그램 수가 적어서 발생한 결과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탈리아는 최근 ‘학교 개혁(Buona scuola, Law N. 107/2015)’을 단행하였다. 이 개혁의 목표는 도제 관련 정책을 간소화하고, 중등교육에서 현장학습을 실시하며, 고등교육(대학)과 일자리 간에 대안적 경로를 촉진하는 것이다. 기술적, 전문적 교육 기간에 현장훈련(on-the-job)을 의무화(alternanza scuola-lavoro)하였고, 교육적인(didactic) 기업 시범사업을 확대하여 실험적 훈련 경험을 강화하였다(European Commission, 2015, p. 3-4).

이탈리아는 적극적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지출이 매우 낮으며, 특히 PES, 공공 훈련, 고용 보조금과 관련하여 그러하다. 적극적노동시장 정책은 일반적으로 고용 기회를 증진하고, 구직활동을 촉진하며, 실업기간을 단축하고, 일자리

와 구직자 간 매칭을 돕는다고 알려져 있다. PES는 적극적노동시장 정책의 전달에 중추적 역할을 하여, 청년 실업과 기술 부족을 개선하는 데 주된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간주된다. 그런데 이탈리아는 PES의 보장 범위가 낮고 비효율적이다. 청년 실업자들은 PES의 역할을 불신하고, PES 등록을 꺼려서 다른 경로를 통해 일자리를 찾는다. Istat에 따르면 2015년 1분기에 실업자의 87%가 친구, 가족, 친척에게 구직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PES에 등록한 비율은 30% 미만이었다. Eurostat에 따르면 2012년 PES가 최근 채용에 참여한 비율은 3% 미만이었다고 한다. 이에 비해 헝가리, 핀란드 등은 15%를 초과하였다.

2014년 5월에 시작한 15-24세 청년 니트에게 고용, 훈련, 추가적인 교육 기회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탈리아 청년보장은 EU 의회의 지원으로 실행되었다. 그러나 비효율적인 PES 탓에 수혜자들에게 청년보장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전달될 가능성을 낮춘다. 청년보장이 적절하게 실행된다면, 실행과정에서 PES 개선 및 재편을 촉진하고 비정부 기관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청년 실업자를 지원하는 국가의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탈리아에서 ‘지역’은 훈련과 고용을 위한 통합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개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청년보장 프로그램은 지역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청년보장 전략은 지역 수준에서 실행할 책임이 있다.

이탈리아 청년보장이 시작된 이래로 2018년 1월에 청년 150만 명이 청년보장제도에 등록하였다. 100만 명 이상을 PES나 민간 기관이 담당하였고, 52만 명이 적극적노동시장 정책을 이수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4개월 이상 오퍼를 받지 못하고 프로그램에 남아 있는 청년 비율이 75.2%에 달한다. 청년보장제도가 보장하는 청년 비율은 13.1%로 매우 낮다.

## 나. 통합고용기금(DUL: Dote Unica Lavoro, Unified Employment Endowment)<sup>26)</sup>

이탈리아는 경제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많은 개혁들을 연속적으로 시도하였다. 이 중 ‘일자리 법률(JOB ACT(2015))’은 적극적노동시장 정책에 관한 국가 기관인 ANPAL(National Agency for Active Labour Market Policies)의 설

26) <https://www.ippr.org/files/publications/pdf/nsaw-case-study-dente-vergani-may2016.pdf?noredirect=1>를 정리

립을 통하여 적극적노동시장 정책 운영의 분권화를 계획한 개혁 조치이다. 공공기관과 민간기관간의 협력 증진, 원스톱 센터의 설립, 서비스의 개별화, 결과지향적 예비교육(orientation) 등을 포함하고 있다(2017). 사람들이 더 효과적이고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영리나 비영리 기관 간의 경쟁을 촉진하는 개혁이었다. 이 법률의 다른 중요한 요소는 기간제 계약을 보호하려는 개방형 노동계약(open-ended labour contracts), 보편적 실업 보험제도의 도입, 육아휴직과 같은 일과 생활의 균형 강화 등이다(2015).

이러한 개혁은 2013년 10월부터 시작한 DUL의 경험을 참고하여 만들어졌다. DUL은 이탈리아 우수 사례로 꼽히는 정책으로 정책 대상이 아니라 실업자나 청년실업자와 관련된 구조적인 문제 해결과 연관되어 있다(EUROPEAN COMMISSION, 2016, p. 49). DUL은 노동시장에서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광범위한 개혁이다. 이것의 핵심 목표는 개별화된 훈련과 현장훈련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함으로써 롬바르디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효과성을 증진하는 것이다. 또한 DUL은 숙련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고 학교-노동시장이행을 촉진하며, 직업교육훈련 시스템의 경직성을 줄이는 모듈 서비스를 제공한다.

## 1) 운영

롬바르디아는 고용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노동시장 정책 모델을 점진적으로 개발하였다. DUL은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 옵션을 제공하여 유연하고 개별화된 지원을 제공한다. DUL은 공공 기관과 공인받은 민간 서비스 기관 간에 경쟁을 유도하면서, 유연하고 포괄적인 방법으로 고객 친화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적시에 영향 평가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이것은 덴마크와 네덜란드의 비슷한 프로그램을 참고한 제도로써 바우처 활용이 중요한 요소이다(2016).

DUL의 목표는 서비스 공급<sup>27)</sup>이 아니라 공공 기금을 수요 기반으로 전환하고, 서비스 공급에 공공 기관과 민간 사업자 간에 준시장(quasi-market) 구축하는 것이다. DUL은 재원과 서비스를 개인에게 분배하여 참여자들이 훈련과

27) 보건과 교육 분야에서 이미 실행되고 있음.

고용서비스에 접근하도록 한다. 이 시스템의 4가지 핵심 축은 다음과 같다. ① 잠재적 수혜자들이 취업하는 데 필요한 지원 금액과 질적 수준에 따라 이들을 4개 그룹으로 분할, ② 청년의 고용가능성과 특정한 예산제약에 따라 참가자가 조합하여 이용하는 바스켓(묶음) 서비스의 이용가능성, ③ 구조화된 개별 경로, ④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표준 결제 시스템 등이다.

언제나 개별화된 서비스를 전달하지만, 지원자들을 4개 그룹으로 범주화하고, 직업적 지위, 고용가능성, 교육 자격, 성별과 연령에 따라 프로파일링 된다. 4개 그룹은 ① 취업 경험이 전무한 15-29세 청년 실업자, ② 취업 경험이 전무한 30세 이상 청년 실업자, ③ 30세 이상 청년실업자(이전에 롬바르디아 내 지역에 고용된 적이 있는 롬바르디아 비거주자도 포함), ④ 가까운 장래에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 등이다.

프로파일링에 따라 개인은 다른 수준의 서비스를 받는다. 1수준 수혜자들은 일자리를 찾는데 아주 적은 지원을 받으며, 2수준은 중간 수준, 3수준은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받는다. 4수준은 일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한다. 개인별 예산은 1, 2, 3수준 서비스에 상한선이 있으며, 4수준은 추가 예산으로 보장받는다.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① 기본 서비스(접촉 기회, 초기 인터뷰, 개인별 계획 작성), ② 방문 및 안내(개인적 숙련도 매핑, 네트워크 지원 창출, 구직을 위한 안내 및 훈련, 튜터링), ③ 숙련도 개발(코칭, 직무 내 훈련(on-the-job), 직무 외 훈련(off-the-job training), 튜터링, 기술 인증), ④ 보완책(임금보조, 개별 수당, 서비스 바우처, 장애인 대상 지원), ⑤ 자영업 지원을 포함한 직무배치 서비스(job-placement services) 등이다.

잠재적 수혜자는 지역적으로 인가된 고용 제공업자(employment provider)의 목록에 등재된 제공업자를 통해 DUL에 접근할 수 있으며, 4수준 서비스는 공인된 훈련 제공자에게 허가된다. 표준 절차에 따라 자동적으로 평가됨으로써, 평가 받은 사람들은 개인 특성과 고용가능성에 따라 특정 서비스 수준에 배정한다. 개인과 제공기관이 함께 개별화된 계획을 정하며, 이 계획은 개인이 예산 내에서 접근할 수 있는 훈련과 고용서비스를 제시한다. 이러한 계획은 180일 이내 시행되며, 서비스 강도 수준이 1수준과 같이 최저 수준이면 90일 이내에 시행된다. 실행과정은 수혜자가 고용되었거나 개인적으로 다른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종료한다. 수혜자들이 동일한 서비스를 재이용하지 않고, 서비스 제공기관이 성과급만 받는다면 수혜자들은 두 번, 세 번째 DUL 프로그램을 반복할 수 있다. 여기서 고용이라 함은 개인이 취업하여 최소 180일이 지속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것은 기간제 일자리 계약과 다른 계약과의 결합도 포함된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3가지 요소의 구체적 예산을 배정받는다. 다시 말해, ① 모든 제공자에게 동일한 고정금액으로 기본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는 금액, ② 표준 단위 비용에 기초하여 서비스 강도 수준에 따라 계산되는 서비스 관련 금액, ③ 서비스 제공기관의 성공률과 연계된 금액 등이다. 2014년 1월 31일부터 롬바르디아 지역은 모든 제공기관의 지출과 성과 수준을 90일마다 검증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의 예산을 갱신하였으며, 필요한 경우이거나 사용가능한 경우 추가 자원을 배분하였다.

서비스 제공기관들은 두 가지 재정적 메커니즘을 통해 인센티브를 받는다. 첫째, 과정 지급 논리와 결과 지급 논리를 조합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몇 해 동안 현장 시험에서 과정지급 논리나 결과 지급 논리의 둘 중 하나만 선택하는 것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낳지 않았음을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제공기관이 성과급만 받으면 가장 어려운 사례를 맡지 않으려고 한다. 긍정적 지렛대로써 두 번째 재정적 메커니즘은 서비스 제공기관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성과와 연계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고용의 측면에서 우수한 수행 결과를 보이는 제공기관은 가용 예산이 급속하게 증가하게 된다.

## 2) 이해관계자 및 재원

잠재적 수혜자는 등록된 제공자를 통해 DUL을 이용하며 자신의 교육과 고용에 가장 적합한 제공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2016년에는 PES와 민간 고용 대행 기관은 특정한 조건에 따라 대학들이 제공하는 대학원 졸업장도 다루기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 비용에 관하여 제약이 있지만, 2013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1억4300만 유로가 배정되었고, 7만7645명이 DUL 프로그램을 신청하였다. 서비스 이용 후에 일자리를 찾은 수혜자 수(5만1663명)를 기준으로 하면,

취업자 1인당 평균 비용은 약 2,768유로이다. 만약 180일 후에도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만 계산하면, 취업자 1인당 4,000유로이다.<sup>28)</sup>

### 3) 결과 및 평가

2015년 10월 자료에 따르면, 모든 수혜자(51,663명) 중 77.7%가 프로그램을 실행한 후 고용되었다. 다시 말해 수혜자 중 31.4%가 180일 이상 동안 고용되었고, 3.8%가 도제로 고용되었다. 그러나 42.5%는 프로그램을 마친 후 180일 미만 동안만 고용되었다. 완전히 고용된(fully employed) 사람들 중에서 65.7%는 기간제(fixed-term contracts), 19%는 정규직, 15.2%는 도제였다. 한편 수혜자 중 48%가 고강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범주에 속해 있었다.

2013년 10월 10일과 2012년 2월 2일 사이에 DUL으로 들어간 1, 2, 3수준 서비스의 수혜자 15,700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중 80%는 실업자, 15%는 한 번도 고용된 적이 없는 사람, 5%는 소득통합제도(Income Integration Schemes)<sup>29)</sup>에 속해 있었다. 이들의 고용 상태를 매월 말에 측정하였는데, 프로그램 종료 후 12개월에 수혜자의 고용률은 비수혜자보다 높았고, 프로그램 종료 후 0-12개월에는 비수혜자보다 고용률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DUL은 한 번도 고용된 적이 없는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다. 청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일자리를 얻었지만, 12개월 이후 수혜자와 비수혜자의 고용 비율은 거의 비슷하였다. 실업자에게 이 제도는 큰 차이를 만들었는데, 실업자 중 55%가 프로그램 이후 12개월 내에 채용되었지만 통제그룹은 그 비율이 20%에 불과하였다. 소득통합제도(Income Integration Schemes)에 속해있는 이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점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 프로그램을 통한 남녀간 성공비율 역시 별 차이가 없었다. 또한 높은 수준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DUL 수혜자이든 비수혜자이든 모두 성공적인 결과를 보였다.

지역이 DUL의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즉, 서비스 수요(잠재적 수혜자)와 공급(공인된 제공자) 사이의 '전송 벨트'로 작용하였다. 바스켓 서비스 개념과 전달 과정을 통해 효율적인 개별화 과정을 달성하였다. 한편 롬바르

28) 유로 파운드(2017)는 2013-2015년 DUL의 전체 예산은 1억5500만 유로가 넘었으며, 2016년에는 약 870만 유로가 추가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29) 일시적으로 직장을 중단하거나 근로 시간이 단축된 직원을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공공제도

디아 지역의 경험은 EU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과 일관성이 있고, 발전된 지역의 경험으로 고용 지원 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시스템의 실행은 목적 달성을 위한 정치적 이해당사자의 헌신과 지역 행정의 역량을 필요로 한다. 또한 롬바르디아의 DUL은 국가청년보장 프로그램(national Youth Guarantee Program)과 같이 고용서비스를 설계하고 제공하는 방식의 구조적인 변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하였다. 비록 그 성과가 전국적으로 균질하지는 않더라도, 개별화된 접근법이 성공적인 고용 정책을 달성하는 핵심 요소로 간주된다.

여러 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DUL의 주된 항목은 공공제공기관과 민간제공업체 간의 경쟁이다. 경쟁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수준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 많은 민관 파트너십이 구축되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단일한 제공업체가 모든 서비스를 공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이러한 파트너십이 단일한 제공업체보다 수혜자에게 더 매력적이다. 일부 협력 관계는 PES도 포함되어 있다. 다른 기관과 함께 PES는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뿐만 아니라 다른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기본적인 서비스에 대해 보장된 것 이외에 추가 기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제공자 간의 경쟁 유형은 예상되는 취업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제공기관의 이익과 이상적인 원칙의 구현 사이에서 실용적으로 균형을 맞추고 있다. 제공업자들이 급여를 받는 기준(공정급여(process-paid)와 성과급 서비스의 균형)도 수혜자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성공적이었음이 입증되었다.

## 6. 기타 우수 사례

청년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 대상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때의 경우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니트를 정책 대상으로 분명히 설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고용상태에 있지도 않고 교육을 받고 있지도 않는 청년층을 무업자라는 개념의 NEET 대신에 사회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단절청년(disconnected youth)라는 용어로 부르고 있다(Brett, 1996). 인종과 관련된 교육 및 경제 불평등 문제가 만연한 미국적 맥락에서 1960년대부터 사

회와 단절되어 있는 청년층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이들을 재교육시키고 다시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에 미국 정부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흑인 남성 청년층 중에서 10% 이상이 수감 중이고, 니트 상태에 있는 흑인 남성 청년 중 25%가 수감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다시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Treskon, 2016).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 정부는 니트라는 용어 대신에 단절청년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Office of Career, Technical, and Adult Education, 2016). 니트와 단절청년 사이에 용어의 차이는 있지만 교육 및 고용에 참가하지 않는 상태를 지칭한다는 점에서 두 용어 사이의 정의는 본질적으로 같다. 다만 니트는 15세에서 29세 사이에 있는 광범위한 청년에 대하여 관심을 두고 있지만, 단절청년은 16세에서 24세 사이에 있는 청년층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 다른 점은 단절청년은 1년 이상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1년 이상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활인구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이에 따라 니트보다는 단절청년 비율 또는 단절률이 더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공통의 목적을 위해 동원하는 파트너십의 구축이 청년보장제도의 성공적 전달을 위해 중요하다. 특히 조기개입 및 진로지도를 위한 PES와 학교/훈련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 학교나 훈련기관이 중도탈락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PES에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예를 들어 벨기에에서는 마지막 학년에 PES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하며(독일어사용권), 학교와 PES간의 자료 교환을 중시하고 있다(플란더스). 에스토니아에서는 8학년과 12학년생을 대상으로 PES가 직업 탐색, 고용기회 등에 대한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다. 노르웨이에서는 PES 직원을 고등학교에 어드바이저로 파견하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16).

파트너십의 구축과 관련하여 청년이나 청년조직을 관여시키는 것도 중요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청년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 수립, 투명성 제고, 정책이 쉽게 도달하기 힘든 청년층에 대한 접근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니트를 파악하고 니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기 개입 노력이 있어야 하며, 니트가 정책을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니트를 찾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니트에 대한 실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불가리아에서는 PES에 등록하지 않은 니트의 발견 및 활성화를 위해, 대학 졸업 실업 상태의 청년(101명)을 청년중재자(Youth mediators)로 육성한 후, 이들이 니트와 PES 등 공공기관을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폴란드에서는 자발노동단(the Voluntary Labour Corps)을 구축하였다. 전국적으로 738 개의 유닛이 구성되어 있으며, 가족·노동·사회정책부 소속으로 되어 있다. 자발노동단은 학교, 교육청, 지방정부, 교회 등과 협력하여 노동시장에서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을 찾아내고 교육과 고용 측면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아일랜드에서는 길거리상담사(Street Counsellors)를 두고 있는데, 이들의 역할은 저녁시간에 거리를 다니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청년들을 찾아 상담하며, 이들과의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스웨덴에서는 PES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12-17명의 PES 직원, 2명의 지자체 직원으로 다능팀(multi-skilled team)을 구성하여(고용 전문가, 심리학자, 카운슬러, 교육전문가, 사회복지사 등), 장기 실업 상태에 있거나 그럴 위험이 높은 청년들 지원하고 있다. 청년 눈높이에서 보다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미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접근과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16).

룩셈부르크에서는 2,500명 니트에 대한 심층 조사 후, 이를 행정DB와 종단적으로 연결하는 니트 연구(NEET Study)를 통해 니트에 대한 동학적 파악(누가 왜 니트에서 탈출하고, 누가 왜 그대로 머무르는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니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니트에 대한 접근성과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있다. 몰타의 경우에는 니트 센서스를 통해 니트에 대한 전수 면접 조사를 시행함으로써, 니트를 핵심 니트, 유동적 니트, 중간적 니트로 구분하고 있다. 영국 웨일스에서는 니트위험성지수(a set of Risk of NEET Indicators, RONIs)를 개발하였다(OECD, 2014a). 이를 통해 학교 단계에서 니트 위험성이 높은 학생들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고교 선생과 PES 직원 등이 활용하고 있다. 니트위험성지수에 따르면, 낮은 학업성취도, 무단결석, 비행, 약물 문제, 혼전 임신, 저소득 가구 자녀, 사회적 성취 욕구가 낮은 가구 자녀 등이 니트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16+ data Hub의 구축을 통해 학교와 지자체, 계속교육기관과 대학, 고용연금국(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등이 니트를 추적하고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Edwards, 2017).

니트를 찾아가는 노력과 더불어, 청년 친화적 채널 구축을 통해 청년들의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EU 국가 중 스페인, 이태리, 포르투갈 등 15개 나라가 온라인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접근성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이동성을 갖춰 지역을 찾아다니며 등록을 받는 것도 청년들의 접근성 제고 측면에서 유용하다. 리투아니아나 루마니아, 독일에서는 접근하기 힘든 니트들을 정책에 끌어들이기 위해 홍보 이동차를 운영 중인데, 이는 의미 있는 시도로 받아들여진다(EZA, 2015).

청년 니트의 삶의 다양한 측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되는 여러 부처들의 협력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부처간 높은 칸막이로 연계와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

미국의 경우 이러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미국의 청년정책 담당 중앙정부 조직체계는 청년정책 범부처 합동 그룹(the Interagency Working Group on Youth Programs: 이하 IWGYP)이다. 이는 2008년 2월 조지 부시 대통령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3459호에 의하여 설립된 범부처 합동기구이다. 미국 청년정책은 크게 보건복지부, 교육부와 노동부가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청소년 약물 문제 및 소년범 증가와 같은 청년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소외계층에 있는 청년들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하여 각 행정부처가 각 자의 독립적인 정책을 수행하기보다 여러 행정부처의 자원을 조율하고 함께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취지 아래에 범부처 합동기구를 설립하였다. 또한 청년을 단순히 교육이나 고용정책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나 상공부, 심지어 교통부까지 참가하여 소외 청소년 정책을 다각면에서 검토·실시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청년정책은 독립적인 정책이 아닌 통합적인 정책으로 추진된다. IWGYP는 12개의 연방 부처와 다수의 연방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sup>30)</sup>. 이 기구의 수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겸임하고 있고, 연방 부처와 다수의 연방기관의 관리들이 겸직하거나 파견 나와 있다<sup>31)</sup>. 이 기구가 중점적으로 바라보는 대상은 10-24세의 청소년·청년이다.

30) 농무부, 상무부, 국방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토안보부, 주택도시개발부, 내무부, 사법부, 노동부, 국무부, 교통부, 국가지역사회봉사단, 국립과학재단, 국립마약통제정책사무국, 환경보호청, 중소기업행정처 등이 참여주체이다.

31) 자세한 사항은 IWGYP(2016)의 보조문서 C에 서술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또 다른 특징은 증거에 기반한 정책 추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이를 위해 정책에 대한 엄밀한 성과 평가가 가능하도록 행정DB 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다양한 실험적 접근을 중시하고 있다. 정책이 결국 성과로 연결되어야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대로 된 성과평가가 가능하도록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엄밀한 정책 평가를 시도하는 것은, 정책만이 있고 성과평가가 미약한 우리의 정책 추진 환경, 어떤 정책이 왜 확대되고 어떤 정책이 왜 사라진 것인지 알기 힘든 우리의 정책 추진 환경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또한 정책의 전면적 추진보다는 시범사업 형태로 먼저 정책을 추진하고, 그 성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다. 우리의 경우 정책 성과에 대한 평가나 검증 없이 처음부터 대규모로 시행되는 사업이 적지 않다. 이는 결과적으로 재원의 낭비로 연결될 우려가 크다. 시범 사업으로 실시 후 확대 여부를 판단하는 미국식의 단계적 접근에서 우리의 정책 담당자들이 배울 바가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 7. 해외 사례의 시사점

### 1) 정책 대상의 명확한 설정

우리가 살펴본 대부분의 국가들은 니트를 청년고용문제의 해결을 위한 주요 정책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만 OECD의 정의에 따른 니트 중에서도 사회로의 복귀에 애로가 더 심각한 그룹, 소위 단절청년에 정책을 집중하고 있다.

정책 대상으로서 니트의 중요성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실업자만이 정책 대상일 경우 비경제활동 상태의 많은 청년이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교육을 받는 청년들의 경우 실업 상태이거나 교육 이외의 이유로 비경제활동 상태인 청년들에 비해 문제가 덜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생이 아닌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교육 참여자 제외)가 고용정책의 주된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때 니트는 취약계층부터 보통의 실업자까지 다양한 청년층을 포괄한다. 문제는 우리의 경우에도 OECD 기준에 따른 니트 모두를 정

책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EU의 청년보장제도는 니트를 정책 대상으로 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OECD 정의에 따른 니트 모두를 정책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대졸 고학력 청년이 대기업이나 공공부문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 이들 모두가 니트로 분류되지만, 이들이 직면한 문제의 성격은 교육이나 훈련 기회의 부족이 아니라 미스매치라는 구조적 문제이므로 청년 개인에게 기회 제공의 확대를 통한 문제 해결은 필요하지도, 가능하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정된 재원으로 가장 취약한 청년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청년보장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취약한 특정 계층에 정책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구의 소득계층을 기준으로 저소득 청년층에게 우선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하거나 채창균 외(2017)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순수고졸자의 니트화 확률이 특히 높으므로 고졸자를 특별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대기업이나 공공부문 취업준비생에 대한 지원은 이들의 취업 기간을 더 장기화하거나 새로운 취업준비생의 유입 확대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소지가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들 취업준비생이 대기업이나 공공부문 취업준비를 중단하고 눈높이를 현실화하여 중소기업 취업 등을 희망할 경우에는 한국형 청년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취업을 희망하는 기혼여성의 경우 노동시장 재진입이 용이한 상황이 아니므로, 이들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따라서 한국형 청년보장 제도의 지원 대상은 크게 ① 취업준비 저소득 가구 출신 청년, ② 고졸 니트, ③ 대기업이나 공공부문 취업준비를 포기하려는 취업준비생, ④ 기혼여성의 네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에 대한 우선적 지원에 정책의 초점이 두어져야 한다.

## 2) 부처간 협업 체계 강화

청년 니트 문제는 교육문제, 노동시장 문제, 건강 문제, 사회복지 차원의 문제, 사회적 일탈 행위의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특정 영역만을 담당하는 특정 부처의 개별적인 노력만으로 해결하기가 어렵다. 부처 간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책임과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청년 관련 정책의 중복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는 한편, 일관성 있는 정책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관련 부처 간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부처 간 칸막이가 높아 의도한 대로 협력의 이루어지는 것이 쉽지 않다.

단절청년 문제의 해결이라는 공통 목표 속에 여러 부처들을 하나의 조직아래 끌어 모은 미국의 시도는, 부처 간 협력이 쉽지 않은 우리 현실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로 판단된다. 또한 미국처럼 특단의 조치는 아니더라도, 핀란드의 원스톱 안내 센터처럼, 같은 목표아래 여러 부처가 협업할 수밖에 없도록 공통의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시도도 매우 유용할 것이다.

### 3) 지자체의 역할 강화

우리가 사례 연구한 모든 나라에서는 청년 니트에 대한 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지역의 역할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파트너십 구축이 중요한 것이다. 일자리는 결국 개별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지역 실정에 맞는 고용 창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역 차원에서의 정책 설계와 집행이 중요하며 정책 전달의 유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하나의 표준적인 틀을 모든 것에 일괄 적용하는 ‘one size fits all’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 핀란드에서 최근 강조되고 있는 ‘청년보장에서 지역보장으로’라는 슬로건은 지역의 역할 강화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 4) 기업과 노동조합, NGO, 청년단체 등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

청년 니트에 대한 정책이 효과적으로 수립, 집행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 간의 파트너십을 강화하여야 한다. 각 파트너들의 역할, 책임, 명확한 목표와 타깃 설정, 충분한 자원 확보, 정기 모임 및 상호 관심과 목적에 따른 보다 작은 규모의 워킹 그룹 운영, 인센티브 구조(재원 등) 설계 등과 같은 파트너십 디자인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기업과 노동조합, NGO와 청년단체 등 민간부문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핀란드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핀란드 청년보장은 공무원, 민간 기업, 사회·시민조직, 청년들의 협력을 토대로 하는 민관 참여 모델(public-privit-person-model)이다. 핀란드의 청년보장 제도를 설계하는 역할을 하는 국가 청년보장 워킹 그룹에는 교육문화부, 고용경제부 등 중앙 부처뿐 아니라, 전국교육위원회, 노조, 고용주 협회, NGO, 청년단체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120여 개의 청년 단체를 청년연합으로 조직하여 청년을 대표하게 함으로써 이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었으며, 청년연합이라는 단일 창구를 통해 정책입안자에게 청년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게 하였고, 청년연합이 청년보장의 정책 설계 및 평가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보다 실제적인 정책 대응 방안의 모색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보다 양질의 오피 제공을 위해 기업들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서 PES 내 기업과의 콘택트 포인트로서 고용주 담당 직원(Employer Engagement Officer) 임명, 고용주단체의 전국 및 지역 차원의 청년보장제도 운영위원회(Youth Guarantee steering committees) 참여, 청년보장제도에 협조적인 기업 인증,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환기, 기업의 다양한 참여 메뉴 제공(채용박람회 참여와 같은 쉬운 것에서부터 양질의 고용 기회나 도제 제공 등과 같은 어려운 것까지) 등과 같은 복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보다 양질의 오피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적절히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핀란드의 사례처럼 보조금 종료와 더불어 기업의 고용 의무도 면제시키는 것은 사중손실이 커질 우려가 있어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보조금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일정 기간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조건부로 제공하거나, 보조금 지원 시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요하다. 사중손실과 대체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 집단을 적절히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노동시장에서 어려움이 많은 층(대부분 경우 저숙련 청년, 그러나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고숙련 구직자일수도 있다.)에 타겟팅하여야 한다. 일을 배울 기회를 제공(이상적으로는 실제 경험과 이론 교육의 결합 제공)하는 것과 보조금을 연계하여야 하며, 적절한 프로파일링, 컨설팅과 코칭이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보조금 지급 시 기업에서 청년이 자기 가치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을 정도의 지속 기간이 보장하여야 한다.

## 5) 성과에 기반한 점진적 사업 확대 추진

사업의 효과성 여부에 대한 검증없이 처음부터 사업을 대규모로 실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가 사례 연구로 파악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청년 니트 정책을 추진할 때, 일단 파일럿 형태로 사업을 추진한 뒤, 그 성과를 판단하여 사업의 성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정책의 전면적 추진보다는 시범사업 형태로 먼저 정책을 추진하고, 그 성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는 관행이 명확히 존재한다. 우리의 경우 정책 성과에 대한 평가나 검증 없이 처음부터 대규모로 시행되는 사업이 적지 않은데, 이는 결과적으로 재원의 낭비로 연결될 우려가 크다. 시범 사업으로 실시 후 확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적 접근을, 우리 정책 당국자들이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다.

## 6) 증거 기반 정책 추진

모든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체제의 구축과 활용을 통한 증거기반정책(evidence-based policy)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명확하게 양적, 질적 성과 지표를 설정하고, 이런 성과 지표의 주기적 파악이 가능하도록 후술하는 바와 같이 관련 DB를 구축하여야 하며, DB 구축 시 가능하면 행정 DB를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미국 등의 사례에서 확인되듯이 다양한 (준)실험적 접근을 통해 보다 엄밀한 정책 평가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 7) 니트에 대한 종합적 실태 파악

니트의 내부 구성은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하나의 단일한 정책적 접근만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니트의 빈곤 실태도 니트 유형별로 상이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 후술하는 것처럼 니트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개별 니트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대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상담 단계에서 개별 니트의 특성을 철저히 파악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지원 제도의 틀을 올바르게 설계하기 위해서는 니트의 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니트의 유형화와 유형별 특성 파악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일본의 취업구조기본 조사는 그런 점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라고 판단된다. 앞서 언급한 룩셈부르크나 몰타의 사례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 8) 조기 개입

정책지원의 시점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조기 개입이 중요한 만큼 주요 선진국의 경우처럼 니트가 된 시점부터 바로 정책 개입이 이루어져서 니트 상태의

장기화를 막아야 한다. 니트 상태가 장기화되면 낙인 효과로 인해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보다 바람직하게는 학교 교육 단계에서부터 니트화 가능성을 사전 인지하여 니트가 되기 전에 학교 교육을 통해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가칭)‘니트 위험성 지수’와 같은 것을 개발하여 중고등학교에서 니트화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을 진단, 파악하고, 이들 학생을 대상으로 사전에 예방적 교육을 충실히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 9) 니트를 찾아가는 노력

많은 니트가 청년보장제도의 바깥에 존재하고 있어 이들을 정책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European Commission, 2016). 아직도 청년보장제도에 등록된 니트는 전체 니트의 37.5%에 불과하며(2015년), 특히 가장 취약한 청년들의 등록이 더 미흡한 상황이다. 니트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니트가 정책을 찾아오기만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니트를 먼저 찾아가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상당수 니트의 경우 그 특성상 사회 활동 자체를 기피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핀란드의 경우 전체 니트의 70% 이상이 정책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는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이다. 핀란드가 이렇게 니트 발굴에 있어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배경에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청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청년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 원스톱의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지원 원스톱 안내 센터의 활약이 큰 영향을 미쳤겠지만, 청년 아웃리치 활동, 즉 니트를 찾아가는 활동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 또한, 앞서 언급한 불가리아나 폴란드, 아일랜드 등의 사례도 우리가 참조할만한 좋은 사례로 판단된다.

## 10) 개인 맞춤형 세밀한 제도 설계와 PES의 역량 강화

청년 니트들의 특성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단일한 정책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쉽지 않다. 따라서 앞서 언급했던 니트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 분석을 전제로 한 니트의 유형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개별 니트의 세부 특성은 가정환경, 경제적 상황, 역량 정도, 정신적 또는 육체적 건강 상태, 교육 수준, 생활 습관,

구직 의지, 취업 희망 여부, 사회적인 고립 정도, 범죄 유무 등 여러 변수들의 조합만큼이나 다양하기 때문에, 유형별 대책만으로도 불충분하다. 개별 니트의 상황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개인 맞춤형의 세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한 것이다.

개인 맞춤형 세밀한 제도 설계와 관련하여 오스트리아의 스페이스랩의 사례를 참조할만 하다. 취약 청년의 특성에 맞는 유연한 프로그램의 설계를 통해 취약청년의 중도 이탈을 막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개인 맞춤형의 세밀한 지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1차 콘택트 포인트가 중요하다. 1차 콘택트 포인트에서 상담, 진단 등을 통해서 개별 청년에게 가장 적합한 정책이나 지원책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PES나 후술하는 원스톱 청년 지원 센터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PES나 이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할 기구의 확충 및 역할 강화가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프랑스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프랑스의 청년보장제도에서는 특별히 훈련된 개인 카운슬러를 통해 상담이 이루어지는데, 카운슬러 1명당 연간 50명 이내 청년 니트를 담당하게 되며, 이러한 업무 부담은 청년 고용지원을 위한 지역 센터(Mission Locale)의 카운슬러들이 통상 담당하는 인원의 절반 수준이다. 그만큼 니트에 대한 상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들 상담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그들이 충분히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여건 조성에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기관과 민간기관간의 적절한 경쟁과 협력을 통해 취약 청년층에 대한 서비스의 질 제고에 성공한 이탈리아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기존의 공공 PES의 역량이 부족할 경우 민간의 역량까지 동원하는 문제, 즉 민관 파트너십의 구축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민간부분의 활용이 취약 청년층에 대한 서비스의 부족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탈리아에서처럼 적절한 인센티브 구조를 설계하여 민간기관들이 취약청년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기피하도록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 11) 청년의 삶의 질 전반에 초점을 둔 전달체계 혁신

청년의 삶의 질 전반에 초점을 맞춘 청년 전용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이 니트 청년들의 정책 접근성 제고에 매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PES는 고용과 교육문제에만 주로 초점을 두고 있으며, 청년만이 아닌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드나들기에는 문턱이 다소 높고 거부감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시장, 교육 및 훈련, 건강, 사회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들이 결합하여 청년 니트라는 문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응 방안도 이러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

기존 PES의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2015년부터 핀란드는 고용경제부 주도로 청년을 위한 원스톱 안내 센터를 운영 중이다. 청년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50개의 지방자치단체에 센터를 설치하고, 타 기관(PES,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무소, 교육기관, 시민단체, 청년단체 등) 소속 여러 전문가를 같은 센터에 두었으며, 이들 기관은 장소적 통합을 넘어 동일한 목표와 브랜드로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물론 센터의 위치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청년들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였다. 프랑스도 지역 청년센터를 설치해서 고용, 훈련, 건강, 주거 문제 등에 대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일본의 지역청년 서포트 스테이션, 히키코모리 지역지원센터도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핀란드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일본의 경우 출입 대상자가 니트나 히키코모리로 명확히 정해져있다는 점이다. 반면 핀란드의 경우 꼭 니트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청년들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오히려 니트 청년들이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참고로 룩셈부르크나 루마니아도 청년 전용 센터를 구축하였다.

## 12) DB구축 및 정보공유

정책에 대한 엄밀한 성과 평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DB 구축이 중요하다. 또한 DB 구축 시 가능하다면 DB의 정확성 제고와 DB 구축에 따른 비용 최소화를 위해 행정 DB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여러 행정 DB를 연결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정보를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장기적인 성과 평가가 가능하도록 니트들을 장기 추적하는 형태의 DB 구축도 요구된다.

청년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파트너들간의 청년 니트에 대한 정보공유도 중요하다. 청년니트에 대한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가 필요한 청년을 식별하는 자료 확보가 전제 조건이며, 이런 민감한 자료의 기관 간 공유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했던 기관 간 강한 파트너십과 상호 신뢰관계가 중요할 것이다. 이런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특히 개인정보에 대한 지나친 규제가 완화될 필요가 있다.

핀란드에서는 기초교육을 이수했지만 이후 교육 단계로 진학하지 않은 청년과 직업교육이나 일반 상위중등교육에서 중퇴한 25세 미만의 청년에 대한 정보를 교육제공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신체검사 결과 군복무·비군복무를 면제 받았거나, 중단한 25세 미만의 청년에 대한 정보를 국방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 이는 청년 니트의 파악과 접근을 위해 매우 중요한 조치라고 할 것이다.

### 13) 상호 의무의 원칙에 기반한 적정 지원 제공

청년들에게 개별화된 진로 지도 및 실행 계획(Action Plan)과 더불어 적절한 지원(금전적 지원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을 활성화하려는 노력도 중요하다. 이러한 지원은 상호 의무(mutual obligation)의 원칙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EU국가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청년보장제도는 결과의 보장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야심 찬 정책이지만, 이런 정책은 자칫 대중의 실망과 좌절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 훈련 등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개인의 책임감 있는 행동도 동시에 강조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프랑스는 ‘청년을 위한 보장제도’를 운영 중인데, PES와 사회복지센터, 교육부, 빈곤방지협회 등이 협력해서 적정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들의 자산조사를 거친 후 수당을 제공한다. 동시에 ‘상호의무(mutual obligation)’의 원칙에 기반을 둔 1년 계약이 이루어진다. 그 계약에 따라 6~8주에 걸친 기본 스킬 함양 이후에 맞춤형 상담이 제공되고, 여러 차례의 일경험과 경우에 따라서는 훈련을 제공하는데, 지역 고용주와의 유기적 협력 속에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상호의무의 원칙이 강조되어, 만일 지원받는 청년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당 지급은 중단된다. 핀란드의 경우 PES에 등록된 청년을 대상으로 진단 평가를 수행한 후, 이를 바탕으로 PES 등록 2주 이내에 PES 상담사와 함께 개별 고용계획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 계획에 대해 PES

상당사와 청년 모두가 책임이 있고, 상호 구속력을 가진다.

스웨덴도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활성화 조치에 참여하여야 한다. 몰타는 니트에 대한 활성화 조치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사회급여(Social benefits)를 제공한다. 아일랜드는 훈련을 받는 경우 더 높은 소득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2020년부터 도입될 예정으로 있는 한국형 실업부조의 경우에도 수혜 대상에 대해 적절한 의무를 부과해야 하며, 특히 빈곤한 취약청년층이 주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에 맞는 제도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청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1. 설문조사결과
2. 심층면접 및 FGI 조사결과
3. 현장관계자 조사결과



## 1. 설문조사 결과

### 가. 조사방법 및 일반적 특성

#### 1) 자료 및 조사방법

설문조사는 앞서 제2장에서 조작적 정의를 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 문항은 청년 및 빈곤 관련 선행 조사와 문헌 자료를 준거로 개발하였다. 설문지 문항 개발은 전체 연구원이 공동으로 참여하였으며, 청년 및 사회복지, 사회정책, 사회조사 분야 전문가 자문, 국가인권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완성하였다.

조사의 주요 항목 및 내용은 빈곤 청년층의 빈곤 및 사회적 배제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크게 <주거 관련 사항>, <경제 관련 사항>, <고용 관련 사항>, <건강 관련 사항>, <청년지원정책육구>로 구성하고, 총 33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표 IV-1-1> 참조).

<표 IV-1-1> 설문조사 주요 내용

항목	주요 문항	
주거 관련 사항	-부모와 동거 여부 -분가하지 않는 이유 (동거자) -주거비 조달 방법 (비동거자)	-분가 이후 어려움 (비동거자) -주택 유형 (일반단독주택~기타) -거주지 환경 평가
경제 관련 사항	-한달 평균 소득 및 지출 -가구소득, 본인 소득 -지출액 -지출 비중 우선순위	-채무 여부 -채무 원인 -채무 부담 정도 -경제적 형편으로 인한 어려움
고용 관련 사항	-경제활동 상태 -일한 경험 유무 -일한 기간 -구직활동 없이 쉬는 이유 -구직활동 없이 쉬 기간 -고용 지위	-일주일 동안 일한 기간 -구직(취업/창업) 기간 어려움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아르바이트 이유 -아르바이트 향후 구직/창업 영향 정도 -일상생활 영역별 시간 빈곤 정도
건강 관련 사항	-주관적 건강 인식 수준 -스트레스 정도 -규칙적 식생활 정도	-정신적 건강(우울) 정도 -불안 정도 -진료 및 치료 어려움 경험
청년지원정책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포기 영역 -결혼 관련 인식 -청년수당/배당 경험 및 인식	-청년정책 우선 지원 대상 -일상생활 청년으로서 불편함/어려움 -청년 관련 우선 정책 우선순위

표본 추출은 2017 인구주택총조사(2017년 11월 기준)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인구구성비에 맞게 비례할당 하였다. 특히 연령은 3개의 구간으로 구분하여 초기(19~24세), 중기(25~29세), 후기(30~34세) 청년의 연령 구간별 특성을 파악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빈곤청년(실업 또는 저임금근로자<sup>32)</sup>)의 생활 실태 및 사회구조적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빈곤청년의 비율이 최소 40% 이상 되도록 할당하였다. 그리고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읍면/동부별 할당은 읍면부의 비율을 더 많게 하였다. 빈곤청년의 인권 실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청년층 모집단에 따른 확률표집보다 빈곤청년에 많은 비중을 둔 비례 할당 표집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본 조사의 표집이 청년층 전체 집단을 대표하지 않기 때문에 조사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실사는 전문조사기관인 (주)마이크로밀 엠브레인이 담당했다. 조사대상은 (주)마이크로밀 엠브레인이 보유하고 있는 패널<sup>33)</sup>을 활용하였으며, 조사는 인터넷 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인터넷 조사의 진행 절차는 온라인 조사 페이지를 구축하고, 조사 대상자 선별, 조사 참여 요청, 조사 진행 및 데이터 DB 축적, 사후 데이터 검증 단계를 거치게 된다. 특히 빈곤청년 범주의 경우 (주)마이크로밀 엠브레인이 이미 구축하고 있는 패널 DB(소득, 고용, 주거형태, 직업 관련 정보)와 비교함으로써 빈곤청년 범위에 해당하는지 엄밀히 판별하였다. 조사기간은 6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 <그림 IV-1-1> 설문조사 설계

조사 대상	• 전국 거주 만 19세~34세 남녀
표본수	• 총 1,000 표본
오차한계	• 95% 신뢰수준, ±3.1%p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표본추출방안	• 전국 17대 도시의 조사 대상 연령별/성별 인구비례에 따른 할당 후 마이크로밀 엠브레인 보유 온라인 패널 중 조사 대상 선정하여 조사 참여 메일 발송

32) 저임금근로자의 비율은 임금소득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이다. 일반적으로 중위임금의 2/3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경우를 저임금으로 규정한다(국가지표체계, 2019). 본 연구에서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 중 실업 상태에 있거나 저임금근로자를 빈곤청년으로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통계청 일자리행정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월평균 소득(개인 기준)은 287만원, 중위소득(개인 기준)은 210만원으로 저임금근로자(개인소득 기준)의 기준은 140만원이다.

33) (주)마이크로밀 엠브레인 패널은 기존조사 응답자, 무작위 전화, 이메일, 소개 등을 통해 모집한 응답자 패널로 2019년 3월 현재 전국기준 약 130만명이며, 20~34세에 해당하는 청년층은 약 60% 정도이다.

<그림 IV-1-2> 조사 진행 과정



## 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IV-1-2> 참조). 먼저 성별로는 남성 52.8%, 여성 47.2%로 남성이 여성보다 다소 많다. 연령별로는 19~24세 38.5%, 25~29세 30.6%, 30~34세 30.9%로 비슷한 분포를 보인다. 거주지별로는 경기/인천 30.8%, 서울 21.6%, 부산/울산/경남 14.7%, 대전/세종/충청 11.2%, 대구/경북 9.2%, 광주/전라 8.8%, 강원/제주 3.7% 순이었다. 동부와 읍면으로 구분하면 동 지역(83.5%)이 읍면 지역(16.6%) 거주자보다 약 5배가량 많았다. 혼인지위별로는 미혼이 85.1%로 가장 많고, 기혼 14.1%, 사실혼 .6%, 이혼 및 사별 .2% 순이었다.

경제활동 여부는 학생 25.9%, 일하지 않고 있음(취/창업준비, 진학준비, 가사/육아 중, 가족 병간호 중, 구직활동 없이 쉬는 중)가 23.5%, 일하고 있는 경우가 50.6%이다. 소득별로 살펴보면 가구소득 수준은 500만원이상이 42.8%로 가장 많고, 400~499만원미만 13.6%, 300~399만원미만 17.2%, 200~299만원미만 17.5%, 200만원미만 8.9% 순이었다. 개인소득은 저임금 근로소득의 기준인 140만원이상(53.8%)이 140만원미만(46.2%)보다 7.6%p 많았다. 가구원 수는 4인 이상이 52.0%로 가장 많고, 2~3인 35.8%, 1인가구는 12.2% 순이었

다. 주생계부양자를 살펴보면 부모 63.9%, 본인 26.5%, 기타 9.6%로 부모가 가장 많았다. 주거형태별로는 자가 56.7%로 가장 많고, 전세 20.3%, 월세 20.3%, 기타 2.7% 순이었다.

<표 IV-1-2> 응답자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

항목		N /%
전체		1,000
성별	남성	52.8
	여성	47.2
연령별	19~24세	38.5
	25~29세	30.6
	30~34세	30.9
거주지별	서울	21.6
	인천/경기	30.8
	대전/세종/충청	11.2
	광주/전라	8.8
	대구/경북	9.2
	부산/울산/경남	14.7
동/읍면별	강원/제주	3.7
	동지역	83.4
혼인지위별	읍면지역	16.6
	미혼	85.1
	기혼	14.1
	사실혼	.6
주거형태별	이혼/사별	.2
	자가	56.7
	전세	20.3
	월세	20.3
경제활동 여부	기타	2.7
	학생	25.9
	일하지 않음	23.5
가구소득별	일하고 있음	50.6
	200만원 미만	8.9
	200~299만원 미만	17.5
	300~399만원 미만	17.2
	400~499만원 미만	13.6
개인소득별	500만원 이상	42.8
	140만원 미만	46.2
주생계부양자	140만원 이상	53.8
	본인	26.5
	배우자	7.3
	부모	63.9
기타(형제, 자매 등)		2.3

## 나. 주거 관련 사항

### 1) 부모동거 여부

현재 부모와 동거 여부를 살펴보았다. 응답자의 62.2%가 ‘현재 같이 살고 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37.8%는 ‘현재 따로 살고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부모와 동거 여부를 성별, 연령별, 거주지역별(동지역, 읍/면 지역), 소득별(가구소득<sup>34</sup>), 개인소득, 주생계부양자별로 살펴보았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비교를 하였다.

성별(남성 63.6%, 여성 60.6%)과 거주지역별(읍면지역 60.2%, 동지역 62.6%)별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하지만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부모와 동거 비율(19~24세 76.6%, 25~29세 62.7%, 30~34세 43.7%)이 낮아졌다. 그리고 개인소득 수준별로는 140만원미만(76.2%)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50.2%)보다 부모동거 비율이 26.0%p 높았다. 다음으로 주생계부양자가 본인인 경우는 24.2%, 그 외 가구원인 경우는 75.9%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가에 따라서도 그 비율의 차이가 확연하였다.

종합할 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부모에게서 독립하는 비중이 증가한다. 하지만 경제적 형편에 따라 부모동거 여부가 달라지는 특징이 뚜렷하였다.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가구소득(가구원 1인당 소득)보다 개인 소득에 따라 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이 달라졌다. 이는 부모에게서 독립 또는 자립에 필요한 기반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주거 독립보다 부모와의 동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부모동거가 본인의 주체적 선택이기보다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귀결로 해석될 수 있다.

34) 가구소득은 가구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균등화 소득을 기준으로 하였다. 가구소득이 가구원 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균등화 작업을 통해 가구원 수를 통제하였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자료는 월평균 소득 482.6만원, 평균 가구원 수 3.05명이다. 하지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는 2인이상의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치로 1인 가구가 빠지는 한계가 있다. 김태완(2019)은 같은 자료를 사용하여 1인가구를 포함한 소득분배표를 제시하였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분기 기준 월 평균 소득은 395.0만원, 평균 가구원 수는 2.45명이다. 균등화 처리를 통한 균등화 가처분소득은 평균 252.3만원이다. 본 조사에서는 청년 대상 조사로 1인 가구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1인가구를 고려한 균등화 소득을 기준으로 2분 변수(높음/낮음)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표 IV-1-3> 부모 동거 여부

(단위 : %)

항목		현재 같이 살고 있다	현재 따로 살고 있다
전체		62.2	37.8
성별	남성	63.6	36.4
	여성	60.6	39.4
연령별	19~24세	76.6	23.4
	25~29세	62.7	37.3
	30~34세	43.7	56.3
동/읍면별	동지역	62.6	37.4
	읍면지역	60.2	39.8
혼인지위별	미혼	71.8	23.8
	기혼/사실혼	50.0	50.0
	이혼/사별	100.0	0.0
개인소득	140만원 미만	76.2	23.8
	140만원 이상	50.2	49.8
가구소득 (균등화 소득)	낮음	61.8	38.2
	높음	62.8	37.2
주생계부양자	본인	24.2	75.8
	그 외(부모/형제 등)	75.9	24.1

## 2) 분가하지 않은 이유

현재 부모와 함께 사는 응답자(n=622)를 대상으로 분가하지 않은 이유(중복 응답)를 살펴보았다.

1순위는 ‘독립하는데 필요한 주거비를 부담할 능력이 안 돼서’가 46.5%로 가장 많고, ‘분가할 생각을 해본 적 없음’ 13.5%, ‘부모님 등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좋아서’ 9.2%, ‘생활비(식비, 공과금 등)가 부담돼서’ 7.4% 등의 순이었다.

1순위부터 3순위를 종합하면 ‘독립하는데 필요한 주거비를 부담할 능력이 안 돼서’가 65.1%로 가장 많고, ‘생활비(식비, 공과금 등)가 부담돼서’ 47.6%, ‘부모님 등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좋아서’ 26.5%, ‘목돈 마련을 위해서’ 25.9%, ‘결혼 계획이 없어서’ 16.7%, ‘취사·세탁 등 가사 부담이 힘들어서’ 15.9% 등의 순이었다. 독립에 필요한 주거비 마련과 생활비부담과 같은 경제적 어려움이 부모에게서 독립을 유예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단순히 부모와 함께 지내는 것을 선호(26.5%)한다거나 미래 대비를 위한 목돈 마련(25.9%)과 결혼 계획이 없다는 점(16.7%) 또한 분가를 미루게 되는 요인이 된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부모 부양(5.8%) 또는 가족 건강 돌봄(4.3%) 등과 같

은 부양자로서 역할이나 부모님의 형편이 넉넉하므로(6.3%) 분가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미비하였다.

<그림 IV-1-3> 분가하지 않는 이유(n=622)

(단위 : %)



분가하지 않는 이유의 1순위 중 ‘주거비 부담’과 ‘생활비(식비/공과금 등) 부담’의 경제적 요인이 연령별, 거주지역별(동지역, 읍/면 지역), 혼인지위별, 소득별(가구소득, 개인소득), 주생계부양자별로 상이한 분포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우선 ‘독립에 필요한 주거비 마련 부담 때문에’ 분가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연령대별로, 그리고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가 확연하였다.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주거비 마련 때문에 분가하지 않는다는 비중은 줄어들었다. 특히 개인 월소득 140만원 미만인 빈곤 청년층(53.1%)이 그렇지 않은 청년(37.8%)보다 독립에 필요한 주거비 부담으로 분가하지 않는 비율이 15.3%p 많았다. 그리고 가구소득이 낮은 집단(49.4%)이 높은 집단(42.6%)보다 주거비 마련 부담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빈곤층 청년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주거 독립에 대한 진입 장벽이 더욱 큰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더욱 주생계부양자가 본인인 경우보다 그 이외의 가구원일 때 독립

에 따른 주거비 마련 부담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의 생계를 부모나 배우자, 형제 등이 책임지는 경우 그만큼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독립에 따르는 주거비 마련 부담을 더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분가 이후 생활비부담 때문에 분가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연령과 주생계부양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집단 간 격차를 보였다. 연령이 25~29세에 해당하는 중기 청년이 여타의 집단(19~24세 7.1%, 25~29세 9.4%, 30~34세 5.2%)보다 높았다. 그리고 가구소득이 낮은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분가 이후 생활비 부담감을 더 많이 느끼고 있다. 주생계부양자가 본인(10.9%)인 경우가 부모(7.0%)라고 응답한 경우보다 3.9%p 응답 비율이 더 높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거 독립의 경우 경제적 요인이 주된 고려 사항이 되고 있다. 개인의 경제적 형편뿐만 아니라 가족의 경제적 형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부모와 동거 지속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 향후 청년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적 차원의 개별적 접근보다 개인과 가구원 모두를 고려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IV-1-4> 분가하지 않은 이유(1순위)

(단위 : %)

항목		독립하는데 필요한 주거비를 부담할 능력이 안 돼서	생활비(식비, 공과금 등)가 부담돼서
전체		46.5	7.4
성별	남성	47.3	8.3
	여성	45.5	6.3
연령별	19~24세	49.8	7.1
	25~29세	46.9	9.4
	30~34세	38.5	5.2
거주지별	동지역	46.2	7.7
	읍면지역	48.0	6.0
혼인지위별	미혼	47.0	7.2
	기혼/사실혼	22.0	22.0
	이혼/사별	0.0	.0
개인소득	140만원 미만	53.1	7.4
	140만원 이상	37.8	7.4
가구소득 (균등화 소득)	낮음	49.4	8.8
	높음	42.6	5.6
주생계부양자	본인	31.3	10.9
	그 외(부모/형제 등)	48.2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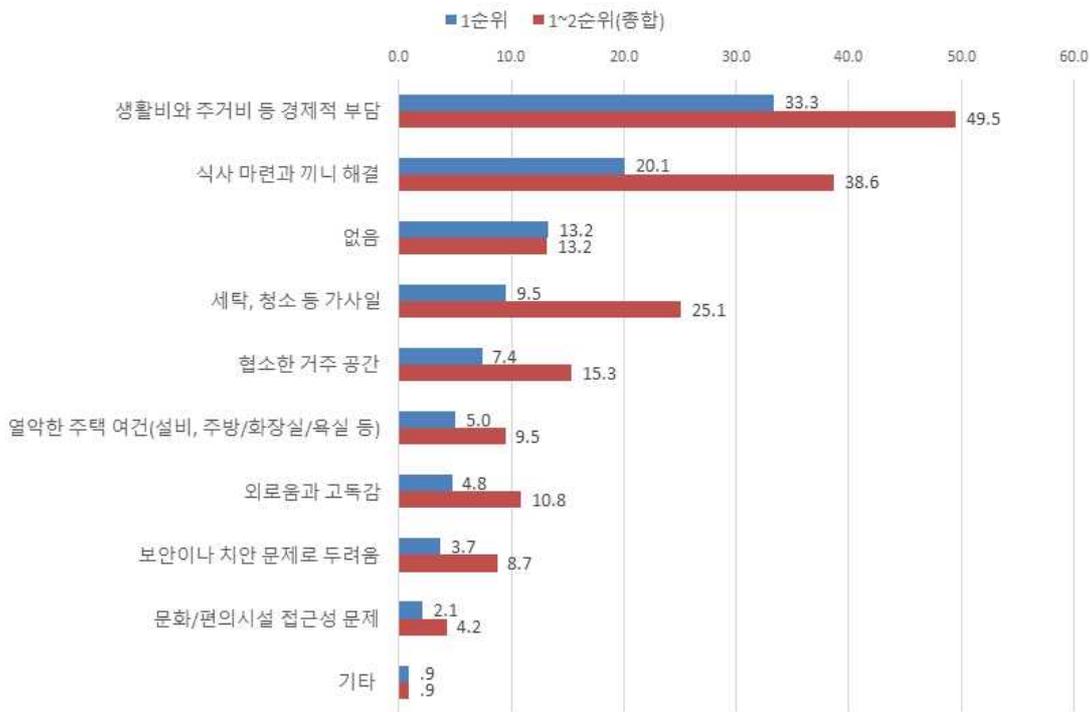
### 3) 분가 이후 어려움

현재 부모와 따로 살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n=378)만을 대상으로 분가 이후 어려움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로 2개까지 응답하게 하였다.

1순위는 ‘생활비와 주거비 등 경제적 부담’(33.3%)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손꼽았다. 다음으로 ‘식사 마련과 끼니 해결’ 20.1%, ‘없음’ 13.2%, ‘세탁, 청소 등 가사일’ 9.5%, ‘협소한 거주 공간’ 7.4%, ‘열악한 주택 여건(설비, 주방/화장실/욕실 등)’ 5.0%, ‘외로움과 고독감’ 4.8%, ‘보안이나 치안 문제로 두려움’ 3.7% 등의 순이었다. 이는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주거비, 식사 마련 등의 문제가 주거환경의 열악함, 보안 및 치안의 취약성 등 심리 정서적인 어려움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분가 이후에 별다른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도 13.2% 정도이다. 즉 부모로부터 분가 이후 자립과 독립에 따른 어려움 없이 잘 적응하는 청년이 10명 중 1명꼴로 모든 청년이 어려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여전히 청년들은 긍정적 형편보다 열악한 처지에 있는 청년이 다수를 차지한다.

<그림 IV-1-4> 분가 이후의 어려움(n=378)

(단위 : %)



1순위와 2순위를 종합한 결과도 1순위와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생활비와 주거비 등 경제적 부담’이 45.9%로 가장 많고, ‘식사 마련과 끼니 해결’ 38.6%, ‘세탁, 청소 등 가사일’ 25.1%, ‘협소한 주거 공간’ 15.3%, ‘없음’ 13.2%, ‘외로움과 고독감’ 10.8%, ‘열악한 주택 여건(설비, 주방/화장실/욕실 등)’ 9.5% 등의 순이었다.

종합하면 부모와 따로 사는 응답자들은 분가 이후 주거비, 식생활 등 기본적인 생활 안정성에서 불안정한 상태이다. 즉 당장의 생계유지를 위한 생존 욕구가 협소하고 열악한 주거환경, 안전에 취약한 인프라 개선, 심리적 안정에 대한 욕구보다 앞선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분가한 이후 어려움의 1순위 중 ‘생활비와 주거비 등 경제적 부담’의 요인이 연령별, 거주지역별(동지역, 읍/면 지역), 혼인지위별, 소득별(가구소득, 개인소득), 주생계부양자별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모든 항목에서 공통적으로 생활비와 주거비 등의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집단 간 차이가 크지 않았다. 다만 주생계부양자가 본인(31.3%)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그 외(35.6%)라고 응답한 경우보다 생활비, 주거비 등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5> 분가 이후 어려움(1순위)

(단위 : %)

항목		생활비와 주거비 등 경제적 부담
전체		33.3
성별	남성	33.3
	여성	33.3
연령별	19~24세	32.2
	25~29세	34.2
	30~34세	33.3
거주지별	동지역	33.7
	읍면지역	31.8
혼인지위별	미혼	32.1
	기혼/사실혼	34.5
	이혼/사별	.0
개인소득별	140만원 미만	38.2
	140만원 이상	31.3
가구소득 (균등화 소득)	낮음	33.0
	높음	33.8
주생계부양자	본인	31.3
	그 외(부모/형제 등)	35.6

#### 4) 주거 빈곤 수준

현재 거주하는 주택이나 거주지 환경을 통해 주거 빈곤 수준을 살펴보았다. 주거 빈곤 수준은 본 연구에서는 빈곤과 결핍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주거 박탈 지표를 활용하여 주거 빈곤 수준을 측정하였다. 주거 박탈 지표는 주택 유형 및 위치, 필수 설비시설 구비, 적정 점유 정도, 실내 환경 등 총 7개 문항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6년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인식조사」에서 제시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응답자의 80% 이상이 현재 사는 주거지가 각 항목에서 제시한 조건에 부합한다고 긍정적 평가를 하였다. 구체적으로 ‘춥지 않도록 난방이 적절히 갖춰진 곳에서 생활하고 있다’에 대한 긍정 응답은 97.1%로 가장 높고,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습기가 차지 않거나 이로 인해 벽이나 바닥에 손상이 없다’가 83.1%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주거 박탈과 관련한 7개 항목의 긍정 응답 비율은 ‘현재 사는 집의 내부 환경(거주지의 습기 및 환기, 방음, 채광 상태)’과 ‘적정 점유 공간(가족 수나 연령에 적합한 방 사용)’의 평가가 여타의 항목보다 낮았다. 즉 현재 사는 주거지가 외부의 물리적 조건이 양호하지만, 내부 환경 및 쾌적성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림 IV-1-5> 주거 빈곤 상황 경험 유무

(단위 : %)



주거 빈곤 정도가 성별, 연령별, 거주지역별, 혼인지위별, 부모동거여부, 소득수준(균등화 개인소득), 주생계부양자별로 차이가 있는지 ‘현재 사는 집의 환경’과 ‘방(공간)의 적정 공유 수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주거 빈곤은 연령과 부모동거 여부, 소득수준, 주생계부양자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뚜렷하였다. 연령별로는 ‘방의 적정 공간 공유’(19~24세 86.5% 25~29세 82.4%, 30~34세 90.6%) 항목에서 30대가 20대보다 방의 공간을 더욱 넉넉하게 나눠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가 독립한 경우보다 ‘방음/채광/환기’(동거 89.7%, 독립 76.2%)와 ‘벽/바닥 상태’(동거 87.1%, 독립 76.5%)가 보다 양호하였다. 주생계부양자가 본인인 경우가 타인인 경우보다 ‘방(공간)의 적정 공유(본인 81.5%, 타인 88.3%)’과 ‘방음/채광/환기(본인 78.9%, 타인 86.7%)’, ‘벽/바닥 상태(본인 79.2%, 부모 83.1%)’ 열악하였다.

<표 IV-1-6> 거주지 실내 환경 상태(긍정 응답 비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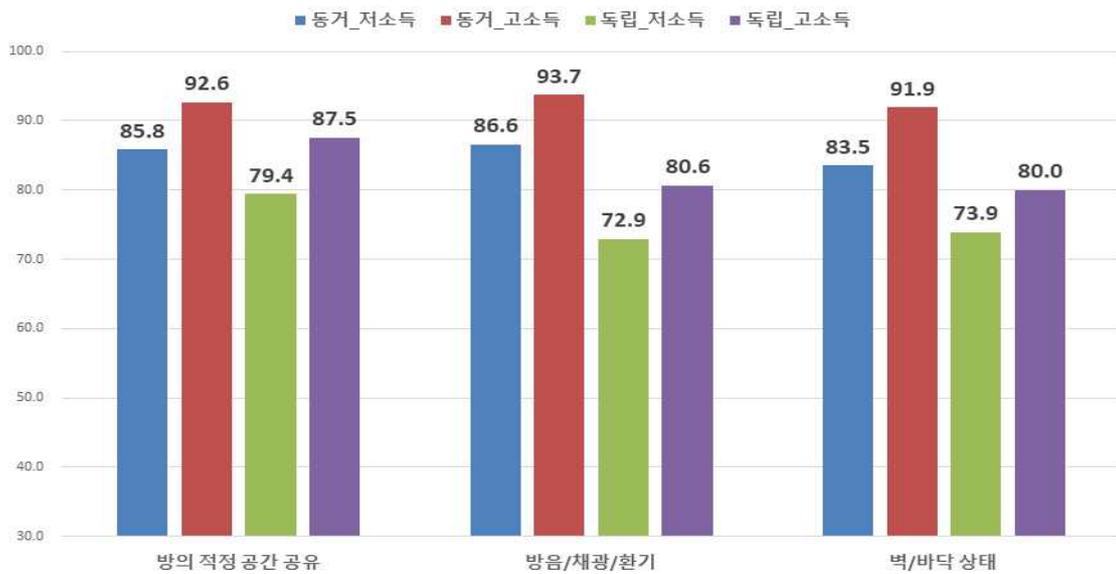
항목		방의 적정 공간 공유	방음/채광/ 환기	벽/바닥 상태
전체		86.5	84.6	83.1
성별	남성	87.5	84.7	83.9
	여성	85.4	84.5	82.2
연령별	19~24세	86.5	83.9	84.4
	25~29세	82.4	83.3	80.4
	30~34세	90.6	86.7	84.1
거주지별	동지역	86.2	85.0	83.8
	읍면지역	88.0	82.5	79.5
혼인지위별	미혼	86.2	84.0	83.4
	기혼/사실혼	89.1	87.8	81.0
	이혼/사별	100.0	84.6	100.0
부모동거 여부	동거	88.7	89.7	87.1
	독립	82.8	76.2	76.5
개인소득	140만원미만	87.7	84.8	84.2
	140만원이상	85.5	84.4	82.2
가구소득(균등화 소득)	낮음	83.3	81.4	79.8
	높음	90.7	88.8	87.4
주생계부양자	본인	81.5	78.9	79.2
	그 외(부모/형제 등)	88.3	86.7	83.1

주거 빈곤 수준은 경제적 요인과 가구 구성에 따라 그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가구소득(균등화소득), 주생계부양자, 부모동거의 주요 요인을 교차하여 청년 집단을 유형화하였다. 그리고 집단별에 따른 주거 빈곤 수준을 살펴보았다.

먼저 부모동거 여부(동거/독립)와 가구소득(낮음/높음)을 교차하여 4가지 유형화(동거-저소득, 동거-고소득, 독립-저소득, 독립-고소득)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3가지 항목(방의 적정 공간 공유, 채광/방음/환기, 벽/바닥 상태) 모두에서 청년 집단 유형 간에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대체로 부모와 동거하면서 소득이 높은 집단(동거\_고소득)의 주거환경이 가장 쾌적하였으며, <부모에게서 독립하였지만 소득이 낮은 집단(독립\_저소득)>이 가장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 두 집단 간의 격차도 항목별로 10~20%p 내외로 주거의 질적인 차이를 보였다.

<그림 IV-1-6> 청년유형별(부모동거\_균등화소득) 주거 빈곤 경험 수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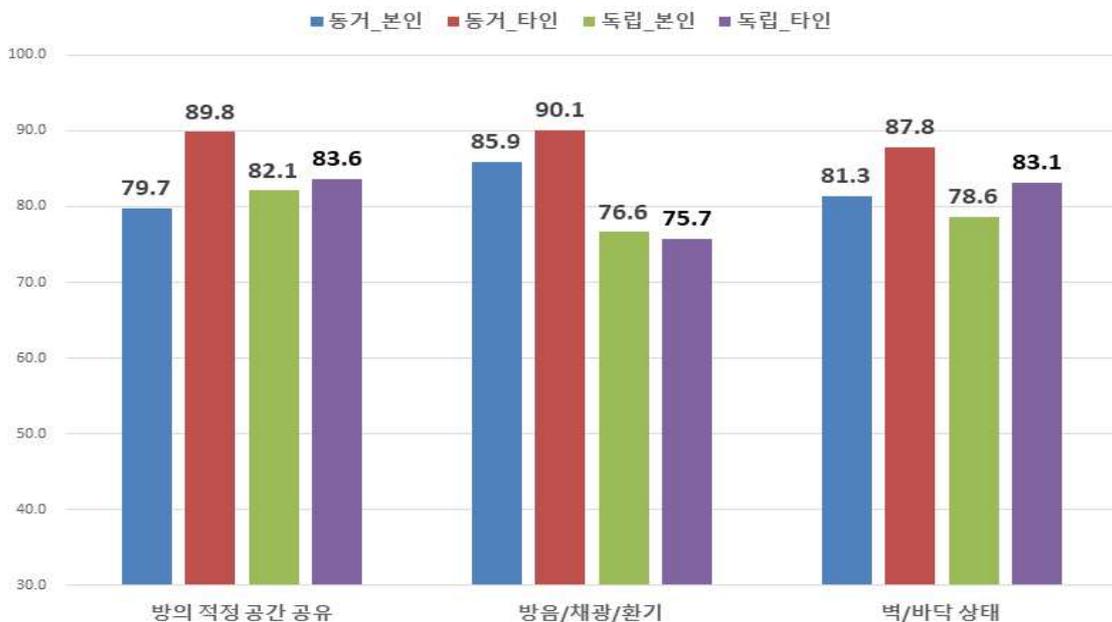


다음으로 주거 빈곤은 부모동거 여부와 맞물려 본인이 주생계부양자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부모동거 여부(동거/독립)와 주생계부양자(본인/그 외 가구원)를 교차한 청년유형화(동거-본인, 동거-타인, 독립-본인, 독립-타인)를 하였다. 분석결과 '방의 적정 공간

공유'는 부모와 동거하지만 생계를 본인이 책임지지 않는 경우(동거-타인)가 89.8%로 주거의 질이 가장 양호하였고, 부모와 동거하면서 본인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동거-본인)가 79.7%로 가장 열악하였다. '방음/채광/환기' 상태는 부모와 독립하고 생계를 본인(76.6%) 또는 타인(75.7%)이 책임지는 경우 모두 열악하였다. '실내 벽이나 바닥상태'는 부모에게서 독립하였지만 생계를 주로 본인이 책임지고 있는 경우(78.6%)가 환경이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1-7> 청년유형별(부모동거\_주생계부양자) 주거 빈곤 경험 수준

(단위 : %)



## 다. 경제 관련 사항

### 1) 부채 유무

현재 부채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았다. 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7.9%로 없다고 응답한 비율(72.1%)의 1/3 정도이다. 이는 응답자 10명 중 3명가량은 부채가 있는 것으로 적은 수치가 아니다.

부채 유무를 성별, 연령별, 거주지역별(동지역, 읍/면 지역), 혼인지위별, 부모동거, 소득수준(개인소득, 가구소득), 주생계부양자별로 살펴보았다.

연령별, 혼인지위별, 개인소득별, 주생계부양자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두드

러졌다. 연령이 증가(19~24세 16.4%, 25~29세 28.8%, 30~34세 41.4%)함에 따라, 미혼자(21.9%)보다 기혼자(63.1%)가, 개인소득이 140만원이상(34.9%), 주생계부양자가 본인(43.0%)인 집단이 부채가 많았다. 흥미로운 점은 개인소득이 적은 경우보다 많은 경우에 부채가 많았다. 이는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결혼, 직장 등으로 삶의 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드는 비용 충당을 위한 부채가 발생하기 때문에 후기 청년과 기혼자 집단(특히 외벌이 부부)에서 특히 부채가 많은 것이라고 해석된다. 다른 한편으로 빈곤층에 해당하는 140만원미만인 집단의 경우 5명에 1명 정도(19.7%)가 부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집단에 학생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자금 대출 등의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판단된다.

<표 IV-1-7> 부채 유무

(단위 : %)

항목		있음	없음
전체		27.9	72.1
성별	남성	27.5	72.5
	여성	28.4	71.6
연령별	19~24세	16.4	83.6
	25~29세	28.8	71.2
	30~34세	41.4	58.6
거주지별	동지역	28.2	71.8
	읍면지역	26.5	73.5
혼인지위별	미혼	21.9	78.1
	기혼/사실혼	56.6	43.4
	이혼/사별	50.0	50.0
부모동거	동거	20.6	79.4
	독립	39.9	60.1
개인소득	140만원미만	19.7	80.3
	140만원이상	34.9	65.1
가구소득(균등화 소득)	낮음	26.0	74.0
	높음	30.8	69.2
주생계부양자	본인	43.0	57.0
	그 외(부모/배우자 등)	22.4	7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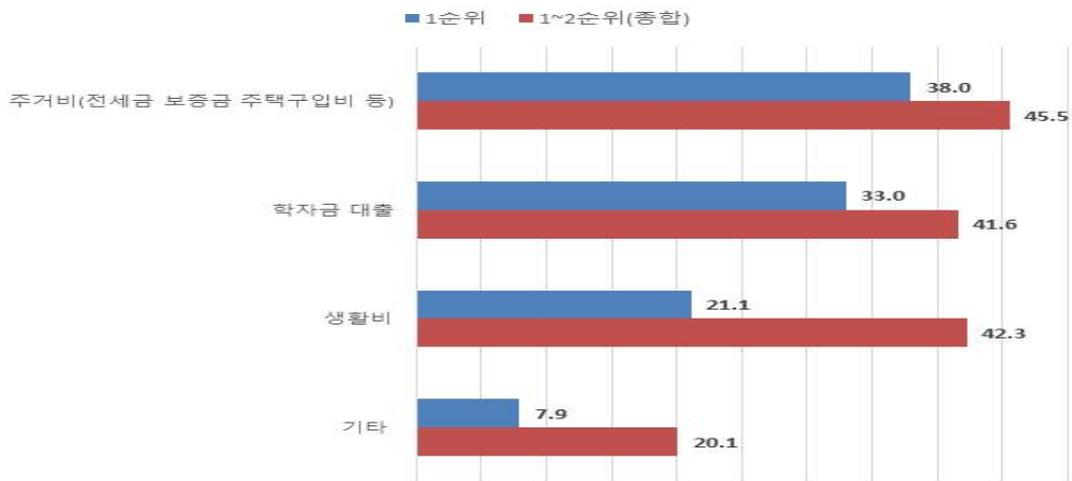
## 2) 부채 원인

현재 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n=279)를 대상으로 부채의 원인이 무엇인지 응답(다중응답)하게 하였다. 부채 원인의 1순위는 주거비(전세금 보증금,

주택구입비 등)가 38.0%로 가장 많았고, 학자금 대출 33.0%, 생활비 21.1% 등의 순이었다. 1순위와 2순위를 종합한 결과도 1순위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주거비 45.5%, 생활비 42.3%, 학자금 대출 41.6%, 취업 및 창업 비용 4.3% 등의 순으로 분포한다. 즉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필수 기반 요인인 주거와 생활비를 위한 부채 비율을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학자금 대출 상황이 주요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V-1-8> 부채 원인(n=279)

(단위 : %)



부채의 원인(1순위) 중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 학자금 대출, 생활비 항목이 성별, 연령별, 거주지역별(동지역, 읍/면 지역), 혼인지위별, 부모동거, 소득수준, 주생계부양자별로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주거비와 학자금 대출이 생활비 항목보다 집단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우선 주거비의 경우는 성별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집단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연령별(19~24세 11.1%, 25~29세 34.1%, 30~34세 53.9%), 거주지역별(동지역 41.3%, 읍면지역 20.5%), 부모동거 유무(독립 55.6%, 동거 17.2%), 혼인지위별(미혼 21.0%, 기혼/사실혼 69.9%, 이혼/사별 0%), 주생계부양자(본인 52.6%, 그 외 27.9%)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졌다.

다음으로 학자금 대출은 주거비와 상이한 경향을 보인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그 비중이 작았다. 그리고 부모와 동거보다 독립한 경우, 미혼자가 기혼/사실혼보다,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모두 낮을수록, 주생계부양자가 본인이 아니면 상대적으로 부채의 비중이 높았다.

생활비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이 부채 비율이 다소 높았으며, 중기 청년에 해당하는 25~29세 구간에서 25.0%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거주지별로는 동지역보다 읍면지역이 약 7% 가량 높았다.

<표 IV-1-8> 부채 원인(1순위)

(단위 : %)

항목	주거비	학자금 대출	생활비
전체(n=279)	38.0	33.0	21.1
성별	남성	36.6	35.9
	여성	39.6	29.9
연령별	19~24세	11.1	60.3
	25~29세	34.1	33.0
	30~34세	53.9	19.5
동/읍면별	동지역	41.3	33.2
	읍면지역	20.5	31.8
혼인지위별	미혼	21.0	45.7
	기혼/사실혼	69.9	3.9
	이혼/사별	0.0	0.0
부모동거	동거	17.2	50.0
	독립	55.6	18.5
개인소득	140만원미만	19.8	50.5
	140만원이상	46.8	24.5
가구소득(균등화 소득)	낮음	32.0	38.1
	높음	44.7	27.3
주생계부양자	본인	52.6	18.4
	그 외(부모/배우자 등)	27.9	43.0

### 3) 지난 10년간 생활수준 변화

지난 10년 동안 생활수준이 어느 정도 바뀌었는지 살펴보았다. ‘상당히 나빠졌다’부터 ‘상당히 좋아졌다’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수준이 좋아진 것으로 해석하였다.

분석결과 지난 10년간 생활수준 변화에 대한 평가는 평균 3.15점(5점척도)으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생활수준이 ‘나빠졌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8.3%, ‘거의 차이가 없다’ 49.0%, ‘좋아졌다’ 32.7%로 생활수준의 변화가 없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 정도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좋아졌다’가 ‘나빠졌다’보다 14.4%p 많았다.

생활수준 변화 평가를 성별, 연령별, 거주지역별(동지역, 읍/면 지역), 혼인지위별, 부모동거, 소득수준, 주생계부양자별로 살펴보았다. 주로 연령대가 증가

할수록, 부모와 동거보다 독립한 경우가, 소득(개인소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주생계부양자가 본인일 때 생활수준이 좋아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표 IV-1-9> 지난 10년간 생활수준 변화

(단위 : %)

항목		나빠졌다	변화 없다	좋아졌다
전체		18.3	49.0	32.7
성별	남성	18.6	48.9	32.6
	여성	18.0	49.2	32.8
연령별	19~24세	18.4	53.8	27.8
	25~29세	19.6	46.7	33.7
	30~34세	16.8	45.3	37.9
동/읍면별	동지역	18.8	50.1	31.1
	읍면지역	15.7	43.4	41.0
혼인지위별	미혼	17.9	50.9	31.3
	기혼/사실혼	20.4	38.8	40.8
	이혼/사별	50.0	0.0	50.0
부모동거	동거	18.2	51.9	29.9
	독립	18.5	44.2	37.3
개인소득	140만원미만	22.3	53.0	24.7
	140만원이상	14.9	45.5	39.6
가구소득(균등화 소득)	낮음	22.8	51.8	25.4
	높음	12.3	45.3	42.3
주생계부양자	본인	18.1	44.2	37.7
	그 외(부모/배우자 등)	18.4	50.7	30.9

#### 4) 경제적 빈곤 경험 정도

현재 경제적 빈곤 정도를 경제적 박탈 지수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최근 3개월을 기준으로 제시된 7가지의 생활고 상황에 대한 경험 여부(경험한 적 없다, 과거 그런 적 있었다, 현재 그렇다, 과거와 현재 모두 그렇다)를 응답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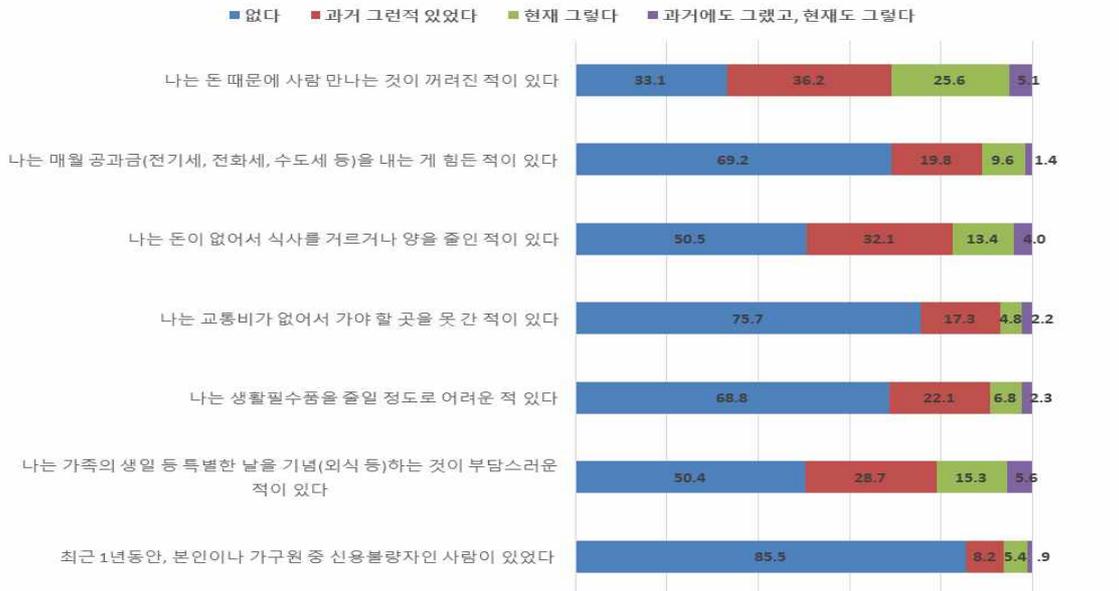
분석결과 사람을 만나는 것이 꺼려진 적이 있다고 응답이 66.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가족 생일 등 기념일을 챙기는 것이 부담스럽거나(49.6%) 돈 때문에 식사를 거르거나 줄인 적이 있는 경우(49.5%)는 응답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그리고 응답자의 10명 중 3명 정도는 생활필수품을 줄이거나(31.2%) 매월 공과금을 내는 것이 어려운 적이 있다(30.8%)고 응답하였다. 반

면 본인이나 가족 중에 신용불량자가 있거나(14.5%) 교통비가 없어서 가야 할 곳을 못가는 경험(24.3%)은 상대적으로 그 빈도가 낮았다.

경제적 빈곤 경험은 대부분 3개월 이전에 경험한 것이 가장 많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빈곤 상태가 지속하여 ‘빈곤의 일상화’를 경험하는 경우는 5% 미만으로 드물었다. 즉 과거나 현재를 중심으로 경제적 빈곤을 분절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극한 빈곤 상태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지속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IV-1-9> 경제적 빈곤 경험 정도

(단위 : %)



경제적 빈곤 정도가 성별, 연령별, 거주지역별, 혼인지위별, 부모동거여부, 소득수준(균등화 개인소득), 주생계부양자별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빈곤 경험 비율이 가장 높은 상위 3가지(사람 만나는 것이 꺼려짐, 기념일을 챙기는 것이 부담됨, 식사를 거르거나 양을 줄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빈곤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수치를 기준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경제적 형편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것이 꺼려진 적이 있는 경우’는 남성(63.1%)보다 여성(71.2%)이 많았고, 25~29세 중기 청년(71.6%)이 가장 많았다. 특히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64.1%)보다 독립한 경우(71.4%)가 경험 정도가 많았고, 주생계부양자가 본인(72.8%)인 경우가 그 외의 경우보다 약 10% 가량 경험 비율이 높았다.

다음으로 ‘기념일을 챙기는 것이 부담된 적이 있다’의 경우 연령별(19~24세 37.1%, 25~29세 56.2%, 30~34세 58.6%), 혼인지위별(미혼 46.1%, 기혼/사실혼 69.4%)로 격차가 컸다. 또한, 부모동거 여부에 따른 차이(동거 44.1%, 독립 58.7%)도 뚜렷하였다. 그리고 주생계부양자가 누구인지에 따라(본인 60.4%, 그 외 45.7%) 약 15%가량 차이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식사를 거르거나 양을 줄인 경험’은 19~29세 청년층이 30~34세보다 20%가량 많았으며, 미혼(51.9%)이 기혼/사실혼(35.4%)보다 그 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거주지역별로 동지역(51.9%)이 읍면지역(42.2%)보다 빈곤 경험 빈도가 높았다.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도 형편이 좋지 않은 경우가 좋은 경우보다 빈곤 경험을 10%가량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빈곤 경험은 대체로 부모동거 여부와 주생계부양자에 따른 차이가 공통으로 발견된다. 두 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볼 때, 즉 부모에게서 독립한 경우가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열악한 경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거 독립이 곧바로 경제적인 자립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표 IV-1-10> 생활 빈곤 경험 수준(경험 비율)

(단위 : %)

항목		사람 만나는 것이 꺼려짐	기념일 챙기는 것이 부담됨	식사 거르거나 양을 줄임
전체		66.9	49.6	49.5
성별	남성	63.1	46.2	51.9
	여성	71.2	53.4	46.8
연령별	19~24세	63.4	37.1	54.5
	25~29세	71.6	56.2	54.6
	30~34세	66.7	58.6	38.2
거주지별	동지역	67.6	50.8	51.0
	읍면지역	63.3	43.4	42.2
혼인지위별	미혼	66.0	46.1	51.9
	기혼/사실혼	71.4	69.4	35.4
	이혼/사별	100.0	100.0	50.0
부모동거 여부	동거	64.1	44.1	48.7
	독립	71.4	58.7	50.8
개인소득	140만원미만	66.7	42.9	55.8
	140만원이상	67.1	55.4	44.1
가구소득 (균등화 소득)	낮음	71.6	52.5	53.9
	높음	60.7	45.8	43.7
주생계부양자	본인	72.8	60.4	49.4
	그 외(부모/형제 등)	64.8	45.7	49.5

경제적 빈곤 수준을 가구소득(균등화소득), 주생계부양자, 부모동거의 요인을 교차하여 집단별로 앞서 살펴본 3가지 생활 빈곤 상황(사람 만나는 것이 꺼려짐, 기념일을 챙기는 것이 부담됨, 식사를 거르거나 양을 줄임)을 경험한 정도를 살펴보았다.

부모동거 여부(동거/독립)와 가구소득(낮음/높음)을 교차하여 4가지 유형화(동거-저소득, 동거-고소득, 독립-저소득, 독립-고소득)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돈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것이 꺼려짐’과 ‘기념일을 챙기는 것이 부담됨’의 두 가지 항목에서 집단별 차이가 명확하였다. <부모와 동거하면서 가구소득이 높은 유형(동거-고소득)>이 생활고 경험 정도(사람 만나는 것이 꺼려짐 53.9%, 기념일 챙기는 것이 부담됨 40.0%)가 가장 낮았다. 반면 <부모에게서 독립하였지만 가구소득이 낮은 유형(독립-저소득)>이 빈곤 상황(사람 만나는 것이 꺼려짐 77.5%, 기념일 챙기는 것이 부담됨 61.0%)을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사를 거르거나 양을 줄임’의 경우는 부모동거 요인보다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가 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동거-저소득> 유형과 <독립-저소득> 유형이 각각 53.1%, 55.0%로 유사하고 <동거-고소득> 유형과 <독립-고소득>이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종합하면 가구소득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독립한 경우가 가장 열악한 상황으로 각 상황에 따르는 빈곤 경험도 그만큼 많아지게 된다. 독립한 청년 중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 지원과 돌봄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IV-1-10> 청년유형별(부모동거-균등화소득) 경제 빈곤 경험 수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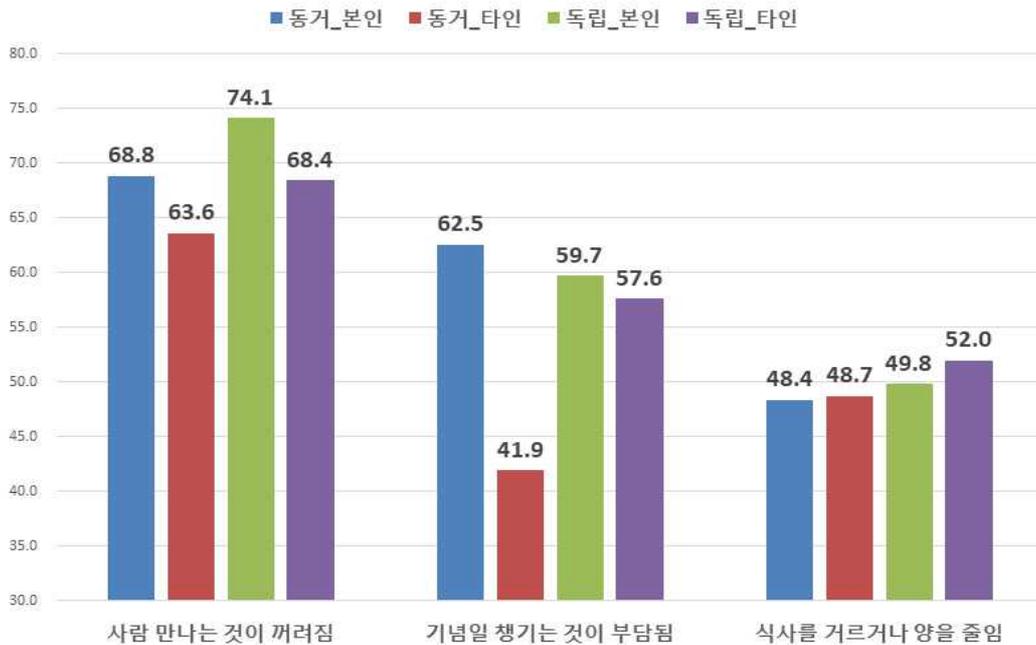


다음으로 경제적 빈곤 상황 경험 정도가 부모동거 여부(동거/독립)와 주생계 부양자(본인/그 외 가구원) 요인을 교차한 유형별(동거-본인, 동거-타인, 독립-본인, 독립-타인)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돈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것이 꺼려진 경험’은 <부모에게서 독립하고 본인이 주생계부양자>인 유형이 가장 많은 빈곤 경험(74.1%)을 하였다. ‘기념일을 챙기는 것이 부담된 적이 있다’의 경우 <부모와 동거하고 본인이 주생계부양자가 아닌 경우(동거-타인)>가 여타의 유형보다 빈곤 경험 정도가 현격히 낮았다. 그리고 ‘식사를 거르거나 양을 줄임’의 경우는 집단별 차이가 뚜렷하지 않았다.

종합하면 가족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상태에서 독립하였거나, 자신이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경우는 생계에 대한 부담감과 심리적 위축이 가중되어 주변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소극적으로 임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사회적 지지망과 지원 시스템이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IV-1-11> 청년유형별(부모동거\_주생계부양자) 경제 빈곤 경험 수준

(단위 : %)



## 라. 고용 관련 사항

### 1)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현재 또는 과거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지/한 경험 여부를 살펴보았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경우가 84.5%, 그렇지 않은 경우가 15.5%로 다수의 응답자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를 성별, 연령별, 거주지역별(동지역, 읍/면 지역), 혼인지위별, 부모동거, 소득수준(개인소득, 가구소득), 주생계부양자별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대체로 개인소득과 주생계부양자 여부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지고 그 이외의 항목은 공통적인 수치로 큰 차이가 없었다. 즉 개인소득이 140만원 이상(88.8%)인 경우가 140만원 미만(79.4%)인 집단보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약 10%가량 많았다. 그리고 주생계부양자가 본인이면 아르바이트 경험은 87.5%로 그 외 가구 구성원이 생계부양자인 경우(83.4%)보다 다소 높은 수치를 보였다.

<표 IV-1-11>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단위 : %)

항목		있음	없음
전체		84.5	15.5
성별	남성	85.2	14.8
	여성	83.7	16.3
연령별	19~24세	81.0	19.0
	25~29세	87.3	12.7
	30~34세	86.1	13.9
동/읍면별	동지역	84.4	15.6
	읍면지역	84.9	15.1
혼인지위별	미혼	83.8	16.2
	기혼/사실혼	88.4	11.6
	이혼/사별	100.0	0.0
부모동거	동거	83.3	16.7
	독립	86.5	13.5
개인소득	140만원미만	79.4	20.6
	140만원이상	88.8	11.2
가구소득(균등화 소득)	낮음	83.7	16.3
	높음	85.6	14.4
주생계부양자	본인	87.5	12.5
	그 외(부모/배우자 등)	83.4	16.6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는 주로 경제적 요인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가족 생계 부양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 더욱 아르바이트 경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빈곤 집단(개인소득 140만원 미만)보다 비빈곤 집단(개인소득 140만원 이상)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이 높았다. 이는 개인소득의 경우 140만원 미만인 집단에 학생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빈곤 계층에 해당하는 집단보다 비빈곤 집단의 아르바이트 경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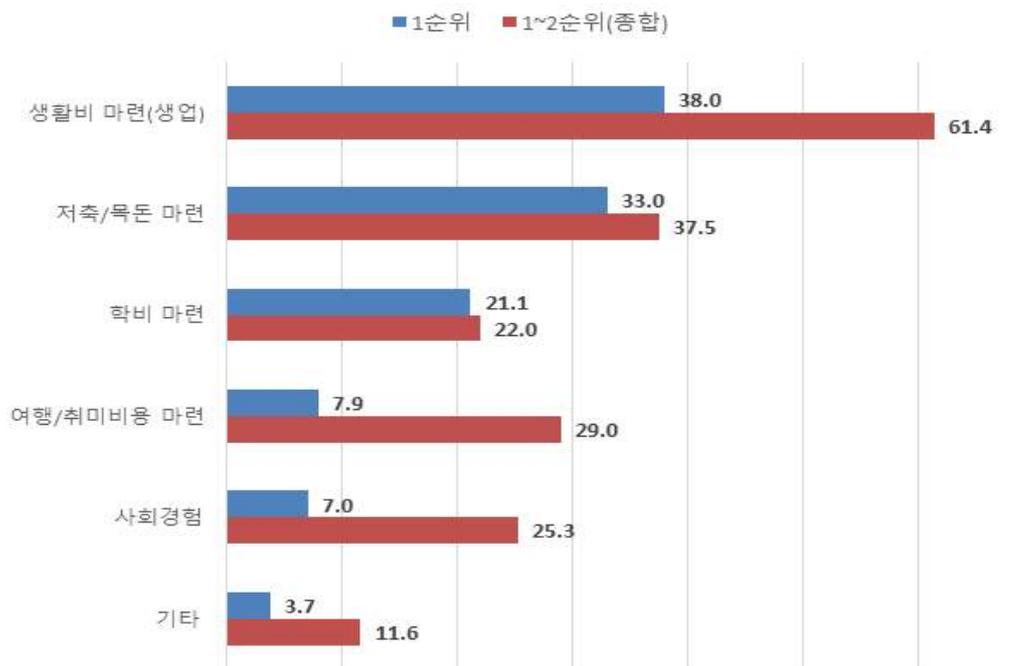
## 2) 아르바이트 경험 이유

아르바이트를 하는/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n=845)를 대상으로 아르바이트한 이유가 무엇인지 우선순위대로 2순위(중복응답)까지 응답하게 하였다.

1순위의 경우 ‘생활비 마련(생업)’이 45.8%로 가장 많고, ‘저축/목돈 마련’ 17.8%, ‘학비마련’ 13.0%, ‘여행/취미비용 마련’ 12.8%, ‘사회경험’ 7.0% 등의 순이었다. 1~2순위를 종합한 결과도 1순위와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생활비 마련(생업)’이 61.4%로 가장 많고, ‘저축/목돈 마련’ 37.5%, ‘여행/취미비용마련’ 29.0%, ‘사회경험’ 25.3%, ‘학비마련’ 22.0% 등의 순이었다.

<그림 IV-1-12> 아르바이트 하는 이유(n=845)

(단위 : %)



종합하면 아르바이트하는 주된 이유는 여가활동을 위한 비용이나 사회경험 축적을 위한 여가/생활 경험형 아르바이트보다는 생활비, 목돈 마련, 학비마련

과 같은 생계형 아르바이트가 더 많은 특징을 보인다.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직장과 일자리를 통해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없으므로 아르바이트와 같은 임시적인 소득원을 통해서라도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1순위)가 성별, 연령별, 거주지역별, 혼인지위별, 부모동거여부, 소득수준(균등화 개인소득), 주생계부양자별로 차이가 있는지 살펴 보았다. 아르바이트 하는 이유의 상위 4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표 IV-1-12>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1순위, n=845)

(단위 : %)

항목		생활비 마련	저축/목돈 마련	학비 마련	여행 및 취미비용 마련
전체		45.8	17.8	13.0	12.8
성별	남성	44.7	19.1	15.1	10.2
	여성	47.1	16.2	10.6	15.7
연령별	19~24세	38.1	21.5	11.5	19.2
	25~29세	52.4	16.9	11.6	9.0
	30~34세	48.1	14.3	16.2	9.0
동/읍면별	동지역	47.0	17.9	12.5	12.9
	읍면지역	39.7	17.0	15.6	12.1
혼인지위별	미혼	44.7	18.5	12.5	13.7
	기혼/사실혼	51.5	13.8	15.4	7.7
	이혼/사별	50.0	0.0	50.0	0.0
부모동거 여부	동거	39.8	20.8	12.5	14.9
	독립	55.4	12.8	13.8	9.5
개인소득	140만원미만	41.1	20.7	12.3	15.5
	140만원이상	49.4	15.5	13.6	10.7
가구소득 (균등화 소득)	낮음	48.0	18.9	12.6	11.1
	높음	42.9	16.3	13.6	14.9
주생계부양자	본인	50.0	14.7	18.1	6.9
	그 외(부모/형제 등)	44.2	18.9	11.1	15.0

분석결과 연령별, 거주지역별, 부모동거유무, 주생계부양자에 따른 집단별 차이다 확인하였다. 19~24세 구간에 해당하는 초기 청년은 저축/목돈마련(21.5%) 및 여행 및 취미비용 마련(19.2%)을 목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여타의 집단보다 많았다. 25~29세 구간의 중기 청년은 생활비 마련(52.4%)을 위한 목적이 두드러졌다. 30~34세 후기 청년은 학비 마련(16.2%)을

위한 목적이 여타의 집단(19~24세 11.5%, 25~29세 11.6%)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는 동단위 지역 거주자(47.0%)가 읍/면 단위 거주자(39.7%)보다 많았다. 하지만 학비 마련을 위한 목적은 그 반대 양상을 보였다.

부모동거 여부 별로 살펴보면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는 부모에게서 독립한 집단(55.4%)이 부모와 함께 사는 집단(39.8%)보다 많은 반면 저축/목돈마련과 여행 및 취미비용 마련을 위해서는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많았다. 다음으로 본인이 주생계부양자인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더 많이 하고 있지만 여행 및 취미 비용 마련 목적은 여타의 집단보다 낮았다.

### 3) 직업훈련 및 교육프로그램 참여 경험

학교 교육 이외에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운영하는 직업훈련 및 교육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내일배움카드 등) 참여 경험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참여 경험 없다’가 73.1%, ‘참여 경험 있다’가 26.9%였다. 이는 응답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청년들만 이용하는 것으로 참여율은 저조하다.

직업훈련 및 교육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성별, 연령별, 거주지역별(동지역, 읍/면 지역), 혼인지위별, 부모동거, 소득수준(개인소득, 가구소득), 주생계부양자별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대체로 연령별로는 초기 청년(19~24세)(15.3%)보다 중기와 후기 청년(25~29세 35.6%, 30~34세 32.7%)이 참여 경험이 더욱 많았다. 그리고 개인소득이 140만원이상(34.8%)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17.7%)보다 참여 경험이 2배가량 많았다. 그리고 주생계부양자가 본인일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참여 비율이 높았다.

결과를 종합하면 학교 졸업 이후에 해당하는 중기 청년층이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본인이 생계부양자면 더욱 직업훈련과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 특징을 보였다. 이는 학교 졸업 여부에 따른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즉 학생일 때보다 졸업 이후 진로와 직업이 시급한 청년들이 진로 관련 훈련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초기 청년보다 중기/후기 청년의 참여 경험 빈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140만원미만의 저임금 수준인 경우가 학생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140만원이상인 경우가 더욱 참여 경험이 많다고 볼 수 있다.

&lt;표 IV-1-13&gt; 직업훈련 및 교육프로그램 참여 경험 유무

(단위 : %)

항목		있음	없음
전체		26.9	73.1
성별	남성	25.6	74.4
	여성	28.4	71.6
연령별	19~24세	15.3	84.7
	25~29세	35.6	64.4
	30~34세	32.7	67.3
동/읍면별	동지역	26.3	73.7
	읍면지역	30.1	69.9
혼인지위별	미혼	26.4	73.6
	기혼/사실혼	29.9	70.1
	이혼/사별	0.0	100.0
부모동거	동거	26.4	73.6
	독립	27.8	72.2
개인소득	140만원미만	17.7	82.3
	140만원이상	34.8	65.2
가구소득(균등화 소득)	낮음	26.5	73.5
	높음	27.4	72.6
주생계부양자	본인	30.9	69.1
	그 외(부모/배우자 등)	25.4	74.6

#### 4) 직업훈련 및 교육프로그램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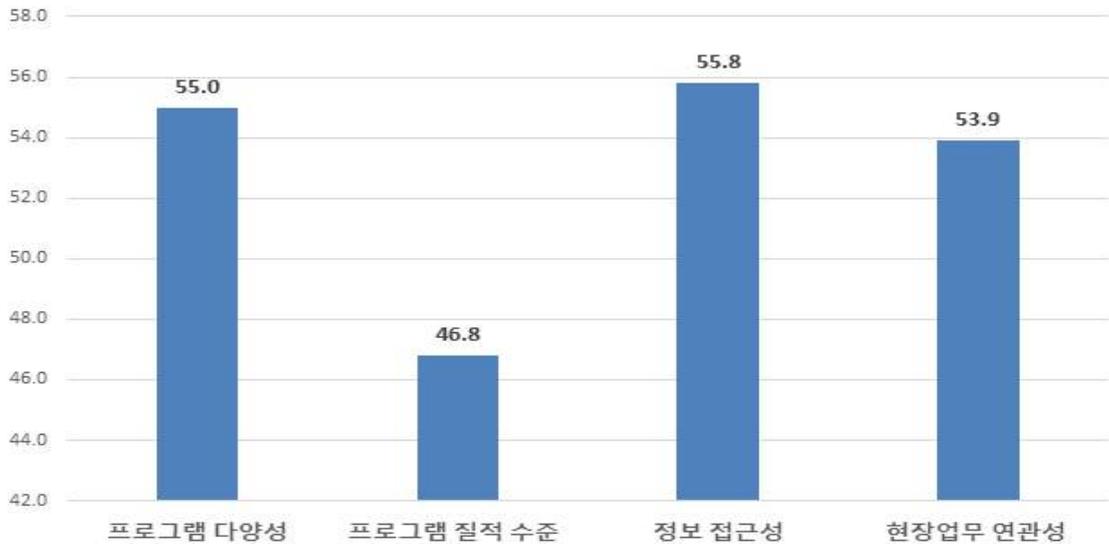
직업훈련 또는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응답자(n=269)만을 대상으로 4가지 항목을 제시하고 평가를 하도록 하였다. 평가 항목은 1) 프로그램 다양성, 2) 프로그램 질적 수준, 3) 정보 접근성, 4) 현장 활용 가능성이다. 긍정/부정(그렇다/아니다)에 대한 2분 변수로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정부나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청년 관련 사업과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양분되고 있다. ‘프로그램 다양성’ 55.0%, ‘정보 접근성’ 55.8%, ‘현장 업무 연관성’ 53.9% 3가지의 지표에서 긍정 응답의 비율은 절반을 상회하는 수준이지만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은 46.8%로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이 결과를 볼 때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이나 교육프로그램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즉 직업훈련이나 교육프로그램을 참가하는 청년이 일부이고, 이에 대한 평가도 호의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실효성을 높일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림 IV-1-13> 직업훈련 및 교육프로그램 평가(n=269)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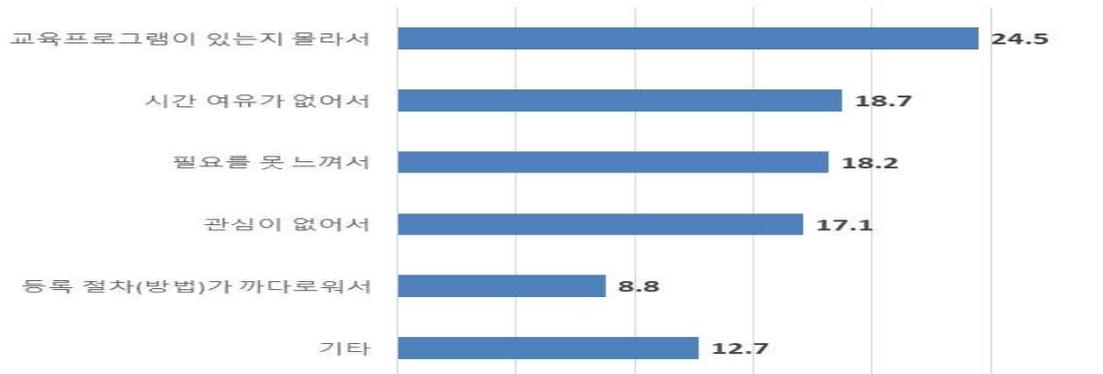
### 5) 직업훈련 및 교육프로그램 참여 못 하는 이유

직업훈련 또는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응답자(n=731)만을 대상으로 참여 못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교육프로그램이 있는지 몰라서’가 24.5%로 가장 많았으며, ‘시간 여유가 없어서’(18.7%), ‘필요를 못 느껴서’ (18.2%), ‘관심이 없어서’(17.1%), ‘등록 절차가 까다로워서’(8.8%) 등의 순이었다. 응답자들은 훈련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를 못 했거나 알더라도 필요성을 못 느끼고, 심지어 관심이 없어서 참여를 안 한 경우가 다수이다. 이러한 점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지만, 직업훈련이나 교육프로그램 자체가 청년들에게 큰 유인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청년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나 프로그램의 내용이 청년의 수요를 채워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lt;그림 IV-1-14&gt; 직업훈련 및 교육프로그램 참여못하는 이유(n=731)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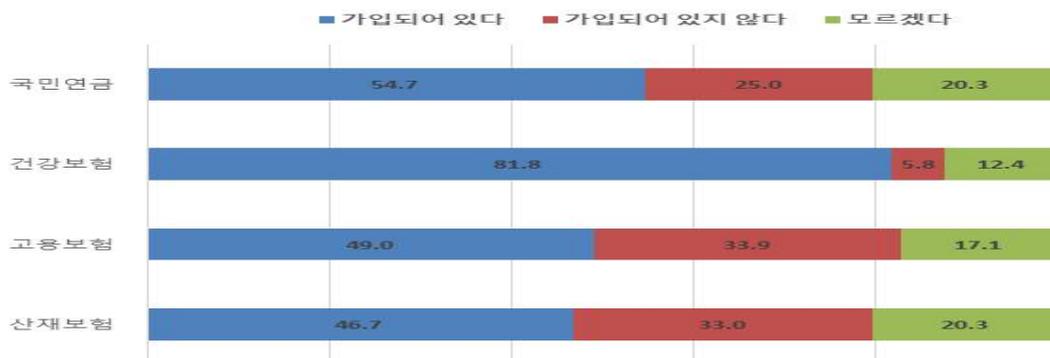


## 6) 사회보험 가입 유무

현재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소득보장제도인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살펴보았다. ‘가입되어 있다’, ‘가입되어 있지 않다’, ‘모르겠다’의 3가지 범주로 측정하였다. 가입 비율을 기준으로 볼 때 국민연금은 54.7%, 건강보험 81.8%, 고용보험 49.0%, 산재보험 46.7%가 가입되어 있다고 응답하였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경제활동(고용)과 연동되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경제활동 중 ‘일하고 있음’이 50.6%인 점을 고려하면 경제활동 인구비율과 유사한 수치로 현재 일하고 있는 응답자가 가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건강보험은 의무 가입인 점을 고려하면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나머지 20%(5.8%+α)는 건강 보장성에 취약한 위치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크다.

&lt;그림 IV-1-15&gt; 사회보험 가입 여부

(단위 : %)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성별, 연령별, 거주지역별(동지역, 읍/면 지역), 혼인지위별, 부모동거, 소득수준(개인소득, 가구소득), 주생계부양자별로 그 특성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건강보험 가입은 연령이 19~24세인 초기 청년, 미혼(78.8%), 부모님과 동거(76.6%), 개인소득이 140만원미만(66.5%)인 경우, 가계 균등화소득이 낮은 경우(76.8%), 주생계부양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가입률이 낮은 특징을 보였다.

<표 IV-1-14> 건강보험 가입 여부

(단위 : %)

항목		가입되어 있다	가입되어 있지 않다	모르겠다
전체		81.8	5.8	12.4
성별	남성	78.8	7.6	13.6
	여성	85.2	3.8	11.0
연령별	19~24세	68.3	8.3	23.4
	25~29세	84.0	6.5	9.5
	30~34세	96.4	1.9	1.6
동/읍면별	동지역	82.1	6.1	11.8
	읍면지역	80.1	4.2	15.7
혼인지위별	미혼	78.8	6.7	14.5
	기혼/사실혼	98.6	.7	.7
	이혼/사별	100.0	0.0	0.0
부모동거	동거	76.0	7.2	16.7
	독립	91.3	3.4	5.3
개인소득	140만원미만	66.5	8.9	24.7
	140만원이상	95.0	3.2	1.9
가구소득(균등화 소득)	낮음	76.8	7.2	16.0
	높음	88.4	4.0	7.7
주생계부양자	본인	92.8	3.8	3.4
	그 외(부모/배우자 등)	77.8	6.5	15.6

## 마. 문화 및 여가 관련 사항

### 1) 휴가 경험 유무

지난 1년간 휴가를 보낸 적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휴가를 보낸 적이 있다’(58.3%)가 ‘휴가를 보낸 적이 없다’(41.7%)보다 16.6%p 많았다.

휴가 경험 유무가 성별, 연령별, 거주지역별(동지역, 읍/면 지역), 혼인지위별, 부모동거, 소득수준(개인소득, 가구소득), 주생계부양자별로 살펴보았다. 대체로 경제적 요인인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주생계부양자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졌다. 즉 개인소득이 140만원 이상(75.7%)이 140만원 미만(38.1%)보다 약 2배 가량 많았다. 그리고 균등화소득이 높은 경우가 낮은 경우보다 18.1%p 정도 많았다. 주생계부양자가 본인인 경우 아르바이트 경험은 75.1%로 그 외 가구 구성원이 생계부양자인 경우(52.2%)보다 22.9%p 높았다. 그리고 부모동거 유무에 따라 동거 51.3%, 독립 69.8%로 휴가를 다녀온 비율에 차이를 보인다. 주로 경제 수준에 따른 격차가 두드러졌으며, 부모와 함께 사는 것보다 독립한 경우에 휴가 경험이 많은 특징을 보인다.

<표 IV-1-15> 휴가 경험 유무

(단위 : %)

항목	있음	없음
전체	58.3	41.7
성별	남성	43.4
	여성	39.8
연령별	19~24세	56.1
	25~29세	39.5
	30~34세	25.9
동/읍면별	동지역	42.0
	읍면지역	40.4
혼인지위별	미혼	44.5
	기혼/사실혼	25.9
	이혼/사별	0.0
부모동거	동거	48.7
	독립	30.2
개인소득	140만원미만	61.9
	140만원이상	24.3
가구소득(균등화 소득)	낮음	49.5
	높음	31.4
주생계부양자	본인	24.9
	그 외(부모/배우자 등)	47.8

## 2) 여가활동 경험 유무

지난 1년간 여가활동을 한 번이라도 참여한 적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여가활동은 총 8개 항목(문화예술 관람, 문화예술참여, 스포츠 관람, 스포츠 참여, 관광활동, 취미오락활동, 휴식활동, 사회 및 기타활동)으로 구분하여 그 참여 여부로 응답하게 하였다. 여가활동에 참여한 비율을 지표로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휴식활동이 94.5%로 가장 많고, 취미오락 활동 85.1%, 문화예술관람 83.8%, 스포츠 관람활동 68.2%, 관광활동 67.6%, 사회 및 기타활동 55.9%, 스포츠참여활동 44.0%, 문화예술 참여 31.0% 순이었다. 여가활동은 대체로 ‘참여형’ 활동보다 ‘관람형’ 활동 비율이 더욱 높았다. 이는 개인이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소극적인 여가활동 비율이 여럿이 참여하는 적극적 여가활동보다 높은 특징을 보였다.

<그림 IV-1-16> 여가활동 참여 여부

(단위 : %)



여가활동 참여 유무를 성별, 연령별, 거주지역별(동지역, 읍/면 지역), 혼인지위별, 부모동거, 소득수준(개인소득, 가구소득), 주생계부양자별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가구소득(균등화소득)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졌다. 특히 문화예술관람, 문화예술 참여, 스포츠 관람활동, 스포츠 참여활동, 관광활동에서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여가활동 참여가 많았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관광활동의 경우 연령별(19~24세 59.0%, 25~29세 69.0%, 30~34세 77.0%), 부모동거유무(동거 64.6%, 독립 72.5%), 개인소득별(140만원 미만 56.7%, 140만원이상 77.0%), 가구소득(낮음 58.8%, 높음 79.3%), 주생계부양자(본인 71.7%, 그 외 66.1%의 항목에서 집단 간 격차가 컸다. 즉 문화예술, 스포츠 관련 여가활동이 소득수준에 따라 큰 영향을 받지만, 관광활동은 다차원적인 요인에 의해 집단 간 차이가 분명한 특징이 있다.

<표 IV-1-16> 청년유형별 휴가 경험 유무

(단위 : %)

항목		1	2	3	4	5	6	7	8
전체		83.8	31.0	68.2	44.0	67.6	85.1	94.5	55.9
성별	남성	79.2	31.8	72.9	53.8	64.8	83.5	92.0	57.4
	여성	89.0	30.1	62.9	33.1	70.8	86.9	97.2	54.2
연령별	19~24세	85.5	33.8	69.6	43.4	59.0	86.5	94.8	56.4
	25~29세	86.9	32.0	68.3	47.7	69.0	83.3	94.4	57.5
	30~34세	78.6	26.5	66.3	41.1	77.0	85.1	94.2	53.7
동/읍면별	동지역	84.9	31.8	68.5	43.8	66.8	85.1	94.6	55.6
	읍면지역	78.3	27.1	66.9	45.2	71.7	84.9	94.0	57.2
혼인지위별	미혼	85.1	30.7	67.9	45.0	65.0	85.4	94.8	55.5
	기혼/사실혼	76.9	33.3	70.1	38.1	82.3	83.7	92.5	59.2
	이혼/사별	50.0	0.0	50.0	50.0	100.	50.0	100.	0.0
부모동거	동거	83.4	30.2	68.5	43.9	64.6	83.8	94.2	55.1
	독립	84.4	32.3	67.7	44.2	72.5	87.3	95.0	57.1
개인소득	140만원미만	81.6	28.8	67.7	39.8	56.7	83.8	92.9	53.2
	140만원이상	85.7	32.9	68.6	47.6	77.0	86.2	95.9	58.2
가구소득 (균등화 소득)	낮음	79.6	27.2	66.3	38.2	58.8	83.2	94.4	50.4
	높음	89.3	36.0	70.7	51.6	79.3	87.7	94.7	63.3
주생계부양자	본인	81.9	31.3	68.3	49.1	71.7	83.4	92.5	56.2
	그 외	84.5	30.9	68.2	42.2	66.1	85.7	95.2	55.8

주 : 1) 문화예술관람, 2) 문화예술참여, 3) 스포츠 관람활동, 4) 스포츠 참여활동, 5) 관광활동, 6)취미오락활동, 7) 휴식활동, 8) 사회 및 기타활동

### 3) 또래 대비 여가활동 빈도 비교

또래와 비교할 때 여가활동의 정도가 많은지 적은지를 응답하게 하였다. ‘또래들보다 훨씬 적다’부터 ‘또래보다 훨씬 많다’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분석결과 평균 2.56점으로 또래들보다 여가활동 빈도가 낮았다. ‘또래들보다 적다’가 48.9%, ‘또래들과 비슷하다’ 35.2%, ‘또래들보다 많다’가 15.9%

이었다. 앞서 제시된 여가활동 경험 비율은 모든 항목이 대체로 80%를 웃도는 높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여가활동을 또래보다 적게 참여한다는 응답 비율도 높았다. 두 가지 점을 고려하면 청년들은 다양한 여가활동에 참여하였지만, 이벤트성으로 그 지속적인 활동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또래 대비 여가활동 빈도를 성별, 연령별, 거주지역별(동지역, 읍/면 지역), 혼인지위별, 부모동거, 소득수준(개인소득, 가구소득), 주생계부양자별로 비교하였다. 또래보다 적다고 응답한 수치를 기준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연령이 증가할수록 여가활동 빈도가 줄었다고 한 응답(19~24세 41.3%, 25~29세 51.6%, 30~34세 55.7%)은 많고, 특히 주생계부양자가 본인일 경우(60.8%)가 그렇지 않은 경우(44.6%)에 비하여 여가활동이 또래에 비하여 적다고 응답한 비율이 특히 높았다.

<표 IV-1-17> 또래 대비 휴가 빈도

(단위 : %)

항목		적다	비슷하다	많다
전체		48.9	35.2	15.9
성별	남성	47.5	36.7	15.7
	여성	50.4	33.5	16.1
연령별	19~24세	41.3	40.8	17.9
	25~29세	51.6	34.3	14.1
	30~34세	55.7	29.1	15.2
동/읍면별	동지역	49.5	34.7	15.8
	읍면지역	45.8	38.0	16.3
혼인지위별	미혼	46.9	37.0	16.1
	기혼/사실혼	59.9	25.2	15.0
	이혼/사별	100.0	0.0	0.0
부모동거	동거	44.9	39.1	16.1
	독립	55.6	28.8	15.6
개인소득	140만원미만	43.3	38.5	18.2
	140만원이상	53.7	32.3	13.9
가구소득(균등화 소득)	낮음	50.2	35.1	14.7
	높음	47.2	35.3	17.4
주생계부양자	본인	60.8	27.5	11.7
	그 외(부모/배우자 등)	44.6	38.0	17.4

## 바. 건강 관련 사항

### 1) 신체적 건강상태

현재 건강상태를 주관적 건강 인식 수준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전혀 건강하지 않다’부터 ‘매우 건강하다’ 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주관적 건강 인식은 평균 3.15점으로 보통 정도의 건강 수준이다. ‘건강하지 않은 편’이 23.6%, ‘보통’ 40.0%, ‘건강한 편’ 34.6%이었다.

주관적 건강 인식 수준을 성별, 연령별, 거주지역별(동지역, 읍/면 지역), 혼인지위별, 부모동거, 소득수준(개인소득, 가구소득), 주생계부양자별로 살펴보았다.

연령별로는 25~29세 중기 청년이 3.07점으로 여타의 연령대보다 낮았다. 그리고 가구소득(균등화소득)이 낮은 경우(3.08점)가 높은 경우(3.25점)보다 건강 수준이 좋지 않았다. 즉 대학교 졸업 이후 사회 진출이 시작되는 시기의 중기 청년의 건강이 가장 열악하고,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가 명확하여 저소득 계층의 청년들이 더욱 건강이 취약하였다.

<표 IV-1-18> 주관적 인식 수준

(단위 : 5점 척도)

항목		주관적 건강 수준
전체		3.15
성별	남성	3.22
	여성	3.08
연령별	19~24세	3.26
	25~29세	3.07
	30~34세	3.11
동/읍면별	동지역	3.16
	읍면지역	3.12
혼인지위별	미혼	3.14
	기혼/사실혼	3.24
	이혼/사별	3.01
부모동거	동거	3.16
	독립	3.15
개인소득	140만원미만	3.18
	140만원이상	3.13
가구소득(균등화 소득)	낮음	3.08
	높음	3.25
주생계부양자	본인	3.05
	그 외(부모/배우자 등)	3.19

## 2) 정신건강 상태

정신건강 상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우울 척도와 불안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우울은 cesd-10<sup>35)</sup> 척도를 사용하였고, 불안은 GAD-7<sup>36)</sup>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척도의 합산 값을 사용하여 우울과 불안의 정도를 판단하였다. 점수가 많을수록 부정적 방향으로 우울과 불안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두 척도의 최솟값에서 최댓값까지 범위는 우울은 0~30점, 불안은 0~21점이다.

분석결과 우울은 평균 9.76점(30점 척도)이었으며, 불안은 5.39점(21점 척도)이었다. 우울의 경우 우울 판정 기준인 10점에 근사한 값이다. 반면 불안은 판정 기준인 10점에 못 미치는 정도이다.

우울과 불안 수준이 성별, 연령별, 거주지역별(동지역, 읍/면 지역), 혼인지위별, 부모동거, 소득수준(개인소득, 가구소득), 주생계부양자별로 살펴보았다.

먼저 우울의 경우 성별로는 여성(10.38점)이 남성(9.20)보다 우울하고, 연령별로는 25~29세(10.45점)가 여타의 집단보다 우울 수준이 높았다. 혼인지위별로는 이혼/사별의 경우가 14.50점으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개인소득이 140만원미만(10.06점)인 반면 그 반대의 경우는 9.50점이었다. 가구소득(균등화소득)이 낮은 집단(10.58점)과 높은 집단(8.67점)간의 격차도 상당하였다. 주생계부양자가 본인(10.55점)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9.47점)보다 우울 수준이 더욱 높았다.

다음으로 불안의 경우 경제적 요인 중에서는 가구소득(균등화소득)에 따른 격차가 가장 컸다. 즉 가구소득이 낮은 집단(5.86점)이 높은 집단(4.76점)보다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성(5.81점)이 남성(5.01점)보다, 중기 청년층(25~29세 5.60점), 이혼 및 사별한 경우(9.50점)가 여타의 집단보다 불안을 더욱 많이 느끼고 있다.

종합하면 우울과 불안 모두 경제적 요인(개인소득, 가구소득, 주생계부양자)에 따라 심리적, 정신적 상태인 우울과 불안의 정도가 차이를 보였다. 특히 우울의 경우 우울 증세의 판별기준인 10점을 넘어서는 집단은 여성, 중기 청년, 이혼/사별, 개인소득이 140만원미만, 가구소득이 낮은 집단, 본인이 주생계부

35) 우울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는 Radloff 등이 1977년 우울 증상의 평가를 위하여 개발한 척도이다. cesd-10은 지난 한 주 동안 우울 증상을 얼마나 경험했는지를 묻는 10개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각 질문의 답은 '극히 드물었다'(1일 이하), '가끔 있었다'(2~3일 정도), '종종 있었다'(4~5일), '항상 그렇다'(6일이상)의 네 가지로 구성된다.

36) 범불안장애 척도(Generalized anxiety disorder scale: GAD-7)는 일반적인 불안과 범불안장애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 4점 리커트 척도의 7문항으로 구성된다.

양자인 경우이다. 이들 집단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표 IV-1-19> 정신건강(우울, 불안)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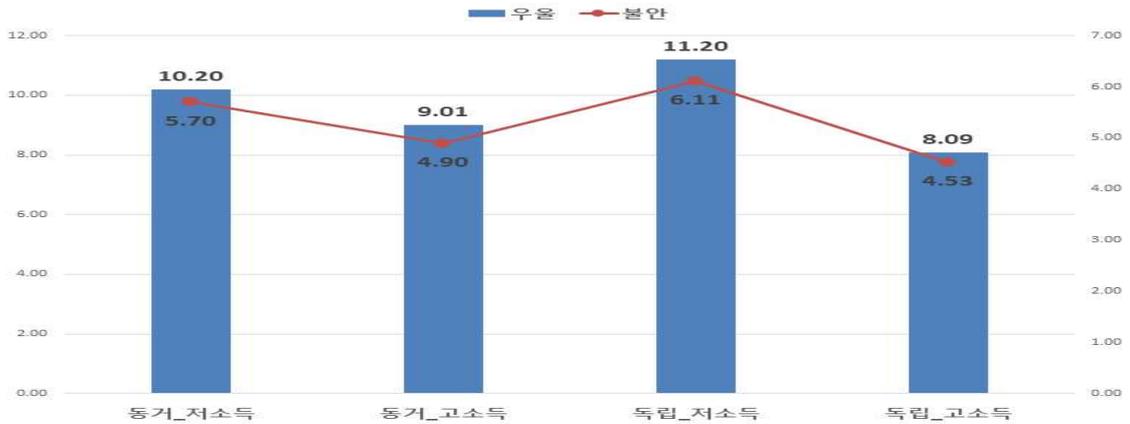
항목		우울 (30점 척도)	불안 (21점 척도)
전체		9.76	5.39
성별	남성	9.20	5.01
	여성	10.38	5.81
연령별	19~24세	9.49	5.16
	25~29세	10.45	5.60
	30~34세	9.40	5.46
동/읍면별	동지역	9.81	5.46
	읍면지역	9.51	5.02
혼인지위별	미혼	9.90	5.44
	기혼/사실혼	8.84	4.99
	이혼/사별	14.50	9.50
부모동거	동거	9.68	5.35
	독립	9.88	5.44
개인소득	140만원미만	10.06	5.49
	140만원이상	9.50	5.30
가구소득(균등화 소득)	낮음	10.58	5.86
	높음	8.67	4.76
주생계부양자	본인	10.55	5.81
	그 외(부모/배우자 등)	9.47	5.23

우울과 불안 수준이 부모동거 여부(동거/독립)와 가구소득(낮음/높음)을 교차하여 만든 4가지 유형(동거-저소득, 동거-고소득, 독립-저소득, 독립-고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우울과 불안 모두 <부모에게서 독립하였지만 가구소득이 낮음(독립-저소득)> 유형이 가장 높은 수준(우울 11.20점, 불안 6.11점)이었다. 반면 <부모에게서 독립하고 가구소득이 높음(독립-고소득)> 유형이 가장 낮은 수준(우울 8.09점, 불안 4.53점)이었다.

<그림 IV-1-17> 청년유형별(부모동거-균등화소득) 정신건강 수준 비교

(단위 : 30점척도, 21점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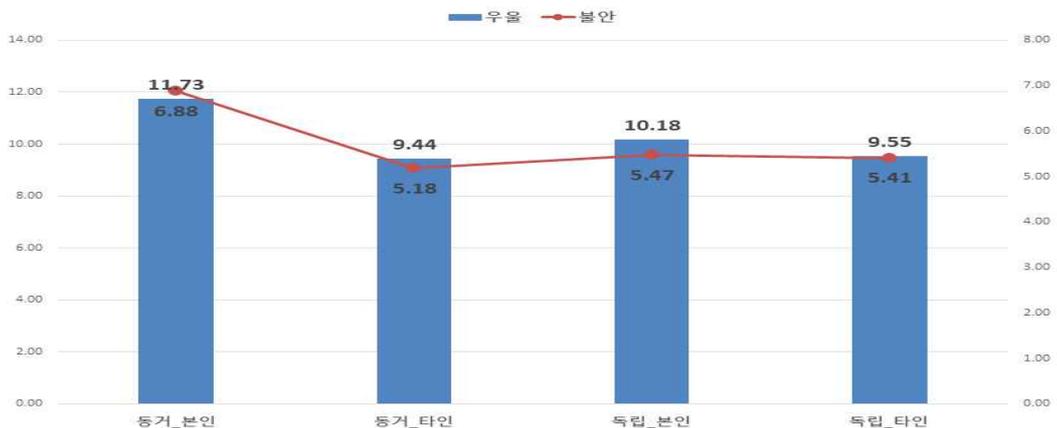


다음으로 부모동거 여부(동거/독립)와 주생계부양자(본인/그 외 가구원)를 교차한 4가지 유형별(동거-본인, 동거-타인, 독립-본인, 독립-타인)로 우울과 불안 수준을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우울의 경우 <부모와 함께 살고 생계부양자가 본인(동거-본인)> 유형(11.73점)과 <부모에게서 독립하고 생계부양자가 본인(독립-본인)> 유형(10.18점)이 우울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부모와 동거하고 본인이 생계부양자(동거-타인)> 유형(9.44점)과 <부모에게서 독립하고 생계부양자가 타인(독립-타인)> 유형(9.55점)이 낮았다.

<그림 IV-1-18> 청년유형별(부모동거\_주생계부양자) 정신건강 수준 비교

(단위 : 점)



불안의 경우 <부모와 동거하고 생계부양자가 본인(동거-본인)>인 유형이 6.88점으로 가장 높았고, <부모와 동거하고 생계부양자가 타인(동거-타인)>인 유형이 5.18점으로 가장 낮았다. 즉 본인이 경제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특히 더 불안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의료 관련 빈곤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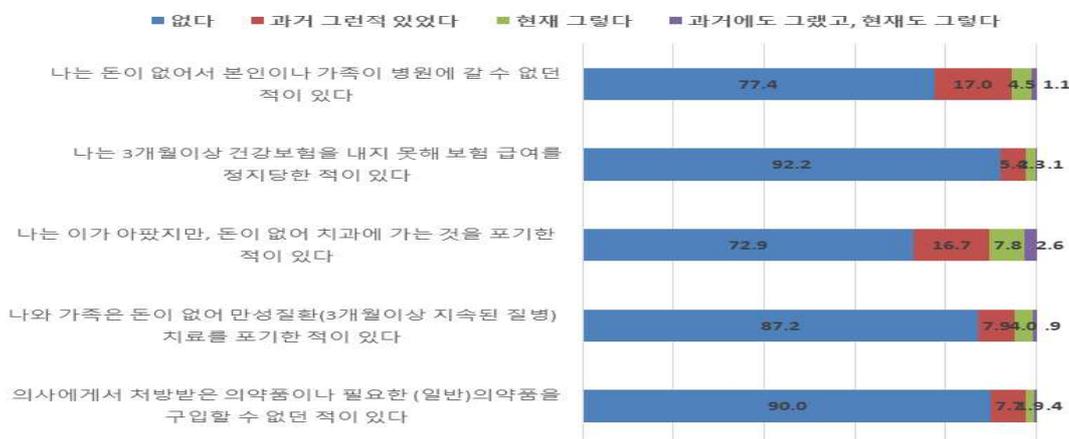
최근 3개월을 기준으로 건강 및 의료 관련 빈곤 정도를 측정하였다. 총 5가지의 상황을 제시하고 경험 여부를 4가지(경험한 적 없다, 과거 그런 적 있었다, 현재 그렇다, 과거와 현재 모두 그렇다) 중 하나로 응답하게 하였다.

분석결과 ‘나는 이가 아팠지만, 돈이 없어 치과에 가는 것을 포기한 적이 있다’가 27.1%로 긍정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나는 돈이 없어서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갈 수 없던 적이 있다’가 22.6%, ‘나와 가족은 돈이 없어 만성 질환(3개월이상 지속된 질병) 치료를 포기한 적이 있다’ 12.9%, ‘의사에게서 처방받은 의약품이나 필요한 (일반)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던 적이 있다’ 10.0% 등의 순이었다. 전반적으로 경제적 빈곤으로 통증을 참거나 의료(치과 포함) 기관 방문을 포기한 경험은 22~27% 정도이다. 반면 위급한 상황이나 만성 질환 치료를 포기한 경우는 10% 내외로 나타났다.

그리고 의료 빈곤 경험 시점이 최근 3개월 이전인 경우가 현재 빈곤 경험을 경험하고 있다는 비율보다 많았다. 더욱 빈곤 경험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하는 예도 3% 이내로 드물었다.

<그림 IV-1-19> 건강 관련 빈곤 경험 정도

(단위 : %)



종합하면 10명 중 3명이 치과 치료를 포기하거나 병원 방문을 가지 못하였다. 빈곤 경험도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보다 과거에 경험했던 것이 다수를 차지한다. 이러한 수치는 경제적 생활고 경험 비율보다 낮은 수치이다. 그러나 예방적 치료 측면에서 의료 서비스에서 제외되고 있는 계층에 대한 돌봄과 의료접근성을 높일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의료 빈곤 경험이 성별, 연령별, 거주지역별, 혼인지위별, 부모동거여부, 소득수준(균등화 개인소득), 주생계부양자별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의료 빈곤 경험 비율이 가장 높은 상위 2가지(돈이 없어서 병원 방문 못 함, 돈이 없어 치과 치료 포기함)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의료 관련 빈곤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수치를 기준으로 하였다.

<표 IV-1-20> 의료 관련 빈곤 경험 수준(경험 비율)

(단위 : %)

항목		돈 때문에 병원 방문 포기	돈 때문에 치과 치료 포기
전체		22.6	27.1
성별	남성	22.7	25.8
	여성	22.5	28.6
연령별	19~24세	19.2	22.6
	25~29세	27.8	31.4
	30~34세	21.7	28.5
동/읍면별	동지역	23.1	26.7
	읍면지역	19.9	28.9
혼인지위별	미혼	22.2	25.5
	기혼/사실혼	24.5	36.1
	이혼/사별	50.0	50.0
부모동거 여부	동거	19.9	23.6
	독립	27.0	32.8
개인소득	140만원미만	21.2	23.8
	140만원이상	23.8	29.9
가구소득 (균등화 소득)	낮음	25.1	31.1
	높음	19.3	21.9
주생계부양자	본인	30.6	38.1
	그 외(부모/형제 등)	19.7	23.1

분석결과 ‘돈 때문에 병원 방문 포기’의 경우 중기 청년의 여타의 청년보다, 부모에게 독립한 경우(27.0%)가 그렇지 못한 경우(19.9%)보다, 가구소득이 낮은 경우(25.1%)가 높은 경우(19.3%)보다, 주생계부양자가 본인(30.6%)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19.7%)보다 돈 때문에 병원 방문을 포기한 비율이 더 높았다.

특히 주생계부양자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졌다. 다음으로 ‘돈 때문에 치과 치료 포기’한 경험도 돈 때문에 병원 방문을 포기한 경우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의료 빈곤 경험(병원 방문 포기, 치과 치료 포기)을 부모동거 여부(동거/독립)와 가구소득(낮음/높음)을 교차하여 4가지 유형화(동거-저소득, 동거-고소득, 독립-저소득, 독립-고소득)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먼저 병원 방문 포기의 경우 <독립-저소득> 유형이 36.7%로 가장 높았다. 이는 전체 평균치(22.6%)보다 14%p 정도 높아 의료 관련 서비스 접근에서 그 취약성이 높은 집단이다. 다음으로 <동거-저소득> 유형(27.7%)과 <독립-고소득> 유형(27.5%) 비슷하였으며, <동거-고소득> 유형(18.5%)이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치과 치료 포기’의 경우 <동거-저소득> 유형(39.1%)과 <독립-저소득> 유형(37.8%)이 유사한 수준으로 빈도가 높았다. 그리고 <동거-고소득> 유형(21.9%)이 가장 낮았다. 종합하면 부모에게서 독립했을 경우 위급한 상황에 경제적 지원을 받을 가족이 저소득층이면 의료 빈곤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림 IV-1-20> 청년유형별(부모동거-균등화소득) 경제 빈곤 경험 정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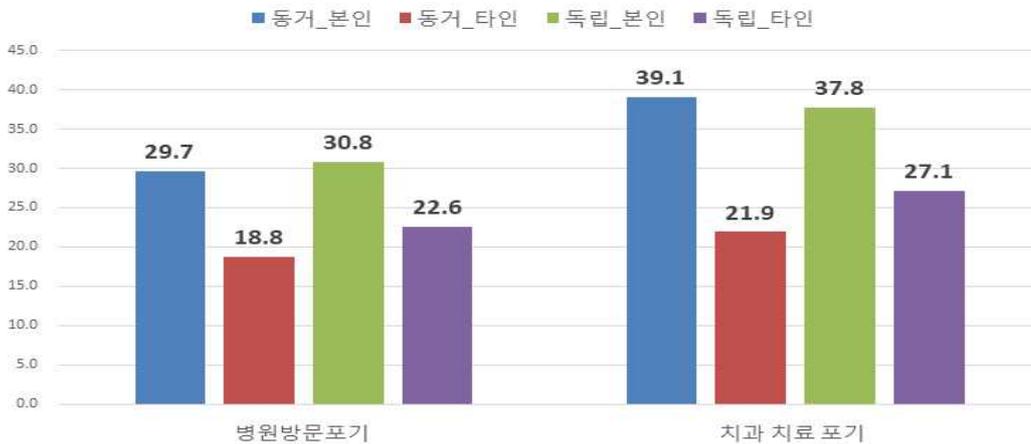


다음으로 부모동거 여부(동거/독립)와 주생계부양자(본인/그 외 가구원)를 교차한 4가지 유형별(동거-본인, 동거-타인, 독립-본인, 독립-타인)로 의료 빈곤 경험 수준을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병원 방문 포기’와 ‘치과 치료 포기’ 모두 <동거-본인> 유형과 <독립-본인> 유형이 의료 빈곤을 경험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리고 <동거-타인> 유형이 의료 빈곤을 경험하는 정도가 가장 낮았다. 즉 부모와 함께 살면서 주거가 안정되고 생계 부양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의료 빈곤을 가장 적게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의료 빈곤과 관련한 두 가지 경우 모두 부모동거보다 생계부양자에 따른 차이가 더욱 크게 작용한다.

<그림 IV-1-21> 청년유형별(부모동거\_주생계부양자) 의료 빈곤 경험 수준

(단위 : %)



## 사. 청년지원 정책 욕구

### 1) 정부나 지자체 청년지원금 수혜 여부

정부나 지자체가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청년수당, 청년배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을 수혜 받은 경험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응답자 중 ‘혜택 받은 적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6%, ‘혜택을 받은 적 없다’가 91.4%이었다. 혜택을 받은 경우가 10명 중 1명에도 못 미칠 정도로 미비하였다.

청년지원금 수혜여부를 성별, 연령별, 거주지역별(동지역, 읍/면 지역), 혼인 지위별, 부모동거, 소득수준(개인소득, 가구소득), 주생계부양자별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연령별로는 25~29세에 해당하는 중기 청년이 여타의 집단보다 수혜 비율(14.7%)이 많았다. 다음으로 거주지별로는 동지역 거주자(9.5%)가 읍면 지역 거주자(4.2%)보다 수혜 비율이 높았다. 여타의 항목별로는 집단 간 차이

가 크지 않았다. 이는 청년지원금 자체에 대한 수혜 비율이 낮은 것으로 이 제도가 꼭 필요한 집단에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서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혜 비율이 낮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지원금 신청에 따르는 자격과 사후관리가 까다롭거나, 지원금의 실효성이 높지 않아서 청년들이 오히려 외면하는 경우 때문일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지원금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효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과 제도가 수정될 필요가 있음을 함의한다고 볼 수 있다.

<표 IV-1-21> 정부나 지자체의 청년지원금 수혜 여부

(단위 : %)

항목		있음	없음
전체		8.6	91.4
성별	남성	8.0	92.0
	여성	9.3	90.7
연령별	19~24세	6.0	94.0
	25~29세	14.7	85.3
	30~34세	5.8	94.2
동/읍면별	동지역	9.5	90.5
	읍면지역	4.2	95.8
혼인지위별	미혼	8.8	91.2
	기혼/사실혼	7.5	92.5
	이혼/사별	0.0	100.0
부모동거	동거	9.2	90.8
	독립	7.7	92.3
개인소득	140만원미만	9.1	90.9
	140만원이상	8.2	91.8
가구소득(균등화 소득)	낮음	9.3	90.7
	높음	7.7	92.3
주생계부양자	본인	8.7	91.3
	그 외(부모/배우자 등)	8.6	91.4

## 2) 정부나 지자체 청년지원금 찬반 여부

정부나 지자체가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청년수당, 청년배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에 지원금 정책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살펴보았다. ‘찬성’(매우 찬성+다소 찬성), ‘반대’(매우 반대+ 다소 반대), ‘잘 모르겠음’으로 구분하여 그 여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찬성(74.0%)이 반대(17.6%)보다 4배가량 많았다. 본인이 혜택을 받은 경험은 10% 이하로 미비하지만 이에 대한 찬성 비율이 70%를 웃돌고 있다. 즉 응답자들은 본인이 직접 혜택을 받지 못했어도 제도나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청년지원금 정책에 대한 찬반을 성별, 연령별, 거주지역별(동지역, 읍/면 지역), 혼인지위별, 부모동거, 소득수준(개인소득, 가구소득), 주생계부양자별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연령이 젊을수록, 동지역 거주자가 읍면지역 거주자보다 찬성 비율이 다소 높았다. 그리고 미혼자가 기혼/사실혼보다, 소득수준(개인소득, 가구소득)이 낮은 집단이 청년지원금 정책에 대한 찬성이 더욱 많은 특징을 보였다. 즉 청년지원금은 더욱 젊은 초기 청년층이나 소득수준이 열악한 처지에 있는 응답자가 더 많이 선호하고 지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집단이 제대로 지원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표 IV-1-22> 청년지원금 정책 찬반 여부

(단위 : %)

항목		찬성	반대
전체		74.0	17.6
성별	남성	76.5	15.9
	여성	71.2	19.5
연령별	19~24세	81.0	7.5
	25~29세	74.2	19.0
	30~34세	65.0	28.8
동/읍면별	동지역	74.9	16.8
	읍면지역	69.3	21.7
혼인지위별	미혼	76.6	14.2
	기혼/사실혼	59.9	36.7
	이혼/사별	0.0	50.0
부모동거	동거	74.8	14.8
	독립	72.8	22.2
개인소득	140만원미만	79.0	9.1
	140만원이상	69.7	24.9
가구소득(균등화 소득)	낮음	77.0	12.8
	높음	70.0	24.0
주생계부양자	본인	72.1	23.4
	그 외(부모/배우자 등)	74.7	15.5

주 : 청년지원금 정책의 찬반 비율을 비교하기 위해 '잘 모르겠음'의 항목은 표에서는 제시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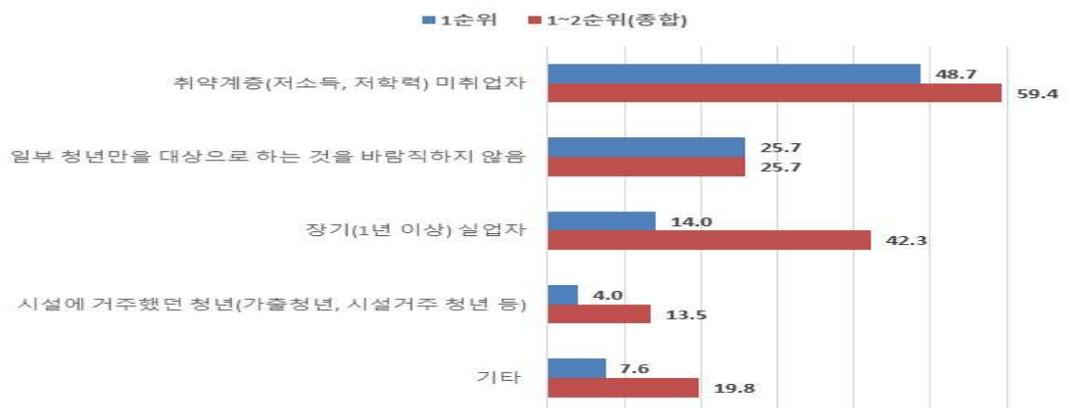
### 3) 청년지원정책의 우선 대상

청년지원정책의 우선적 대상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살펴보았다. 우선순위대로 2개까지 응답하게 하였다. 1순위의 경우 ‘취약계층(저소득, 저학력) 미취업자’가 48.7%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일부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음’이 25.7%, ‘장기(1년 이상) 실업자’ 14.0% 등의 순이었다. 1순위와 2순위를 종합한 결과는 ‘취약계층(저소득, 저학력) 미취업자’가 59.4%로 가장 높고, ‘장기(1년 이상) 실업자’ 35.0%, ‘일부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음’ 25.7%, ‘시설에 거주했던 청년(가출청년, 시설거주 청년 등)’ 13.5%, ‘구직단념자’ 8.1% 등의 순이다.

결과를 종합하면 청년지원정책이 미취업자, 실업자, 구직단념자 등과 같이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았다. 하지만 보편 복지의 관점에서 청년층 모두를 대상으로 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응답도 4명 중 1명꼴로 분포한다.

<그림 IV-1-22> 청년지원정책 우선 대상자(중복응답)

(단위 : %)



청년지원정책의 우선 대상자에 대한 의견(1순위)이 성별, 연령별, 거주지역별, 혼인지위별, 부모동거여부, 소득수준(균등화 개인소득), 주생계부양자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였다. ‘취약계층 미취업자’, ‘일부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의 2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성별, 연령별, 경제 요인별로 차이가 있었다. ‘취약계층(저소득, 저학력) 미취업자’에 대한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여성(53.0%)이 남

성(44.9%)보다 많았다. 그리고 주생계부양자가 본인(44.2%)보다 타인(50.3%)일 경우 그 비율이 더 높았다.

반면 ‘일부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의 경우는 연령이 25~29세(30.1%), 부모에게서 독립(27.2%)한 경우가 동거(24.8%)하고 있는 경우보다, 개인소득이 140만원이상(28.1%)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22.9%)보다, 가구소득(균등화 소득)이 높음(29.8%)이 낮음(22.6%)보다 동의하는 비중이 더 컸다.

<표 IV-1-23> 청년지원정책의 우선 대상

(단위 : %)

항목		취약계층 (저소득, 저학력) 미취업자	일부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음
전체		84.5	25.7
성별	남성	44.9	24.8
	여성	53.0	26.7
연령별	19~24세	49.4	21.6
	25~29세	46.7	30.1
	30~34세	49.8	26.5
동/읍면별	동지역	48.8	26.4
	읍면지역	48.2	22.3
혼인지위별	미혼	48.8	25.6
	기혼/사실혼	47.6	26.5
	이혼/사별	100.0	0.0
부모동거	동거	49.4	24.8
	독립	47.6	27.2
개인소득	140만원미만	48.5	22.9
	140만원이상	48.9	28.1
가구소득(균등화 소득)	낮음	48.8	22.6
	높음	48.6	29.8
주생계부양자	본인	44.2	27.5
	그 외(부모/배우자 등)	50.3	25.0

#### 4) 청년으로서 어려움/ 불편함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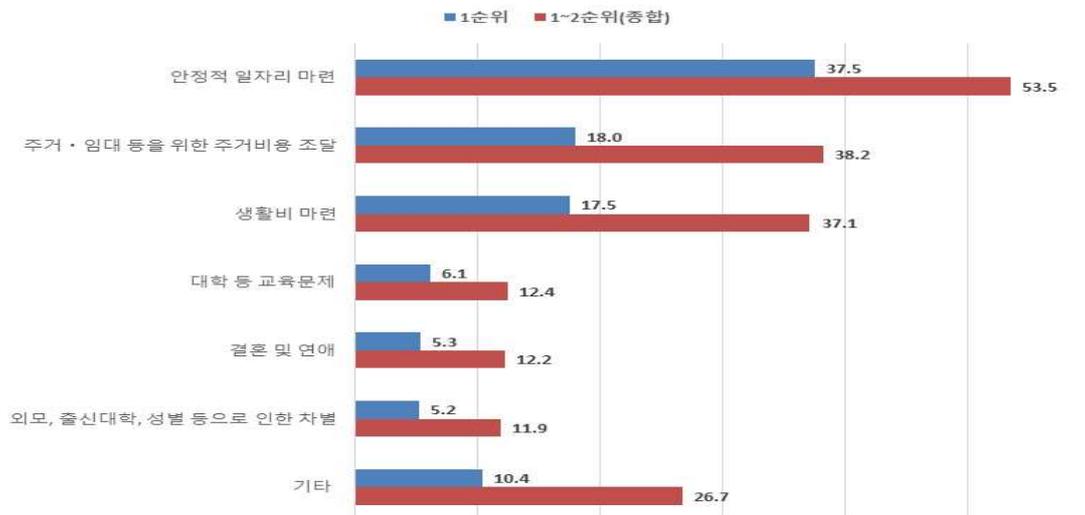
현재 일상에서 청년으로서 가장 어렵거나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불편한 점을 우선순위대로 2개까지 선택하게 하였다.

1순위의 경우 ‘안정적 일자리 마련’이 37.5%로 가장 많고, ‘주거·임대 등을 위한 주거비용 조달’ 18.0%, ‘생활비 마련’ 17.5%, ‘대학 등 교육문제’ 6.1%,

‘결혼 및 연애’ 5.3%, ‘외모, 출신대학, 성별 등으로 인한 차별’ 5.2% 등의 순이었다. 1순위와 2순위를 종합한 결과도 1순위의 결과와 대동소이하다. ‘안정적 일자리 마련’ 53.5%, ‘생활비 마련’ 38.2%, ‘주거·임대 등을 위한 주거비용 조달’ 37.1%, ‘대학 등 교육문제’ 12.4%, ‘결혼 및 연애’ 12.2%, ‘외모, 출신대학, 성별 등으로 인한 차별’ 11.9% 등의 순이었다. 종합하면 생활안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일자리, 주거, 생활비 마련 등의 어려움이 상위를 차지한다. 이는 일상에서 불안정한 위치로 인해 느끼는 불편함보다 당장 생계와 생존을 위한 어려움이 더 크게 다가온다고 볼 수 있다.

<그림 IV-1-23> 청년으로서 어려움/불편한 점(중복응답)

(단위 : %)



일상생활에서 청년으로서 불편하거나 어려운 점(1순위)을 성별, 연령별, 거주지역별, 혼인지위별, 부모동거여부, 소득수준(균등화 개인소득), 주생계부양자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였다. ‘일자리 마련’, ‘생활비 마련’, ‘주거비 마련’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안정적 일자리 마련’은 연령대(19~24세 43.6%, 25~29세 37.3%, 30~34세 30.1%)가 젊을수록, 동지역(38.6%)이 읍면지역(31.9%)에 비해서,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43.1%)가 그렇지 못한 경우(28.3%)보다,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주생계부양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안정적 일자리 마련이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생활비 마련’의 경우 주로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였다. 개인소득(140만원미만 20.1%, 140만원이상 15.2%)과 가구소득이 낮음(20.0%)이 높음(14.2%)보다 생활비 마련에 따른 불편함과 어려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주거비용 조달’의 경우도 소득수준(개인소득, 가구소득, 주생계 부양자) 요인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냈다. 개인소득이 140만원이상(26.4%)이 140만원미만(8.2%)보다, 가구소득(균등화소득)이 높음(24.2%)이 낮음(13.3%)보다, 주생계부양자가 본인(30.6%)인 경우가 그 외 경우(13.5%)보다 주거비 마련에 따르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개인소득의 경우 140만원미만에 부모와 함께 사는 학생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보다 높은 경우가 오히려 주거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고 풀이된다.

<표 IV-1-24> 청년으로서 겪는 어려움/불편함(1순위)

(단위 : %)

항목		안정적 일자리 마련	생활비 마련	주거 비용 조달
전체		37.5	17.5	18.0
성별	남성	36.2	20.1	17.0
	여성	39.0	14.6	19.1
연령별	19~24세	43.6	20.8	7.3
	25~29세	37.3	17.6	23.9
	30~34세	30.1	13.3	25.6
동/읍면별	동지역	38.6	17.6	18.2
	읍면지역	31.9	16.9	16.9
혼인지위별	미혼	39.6	18.1	16.3
	기혼/사실혼	25.2	14.3	27.9
	이혼/사별	50.0	0.0	0.0
부모동거	동거	43.1	16.7	12.2
	독립	28.3	18.8	27.5
개인소득	140만원미만	47.8	20.1	8.2
	140만원이상	28.6	15.2	26.4
가구소득 (균등화 소득)	낮음	43.7	20.0	13.3
	높음	29.3	14.2	24.2
주생계부양자	본인	27.2	17.7	30.6
	그 외(부모/배우자 등)	41.2	17.4	13.5

## 5) 정부가 청년에게 지원해야 할 사항

정부가 청년에게 지원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살펴보았다. 우선순위로 2개까지 선택하게 하였다.

1순위의 경우 ‘주거 안정’(32.1%)이 가장 많았고, ‘일자리 창출’ 17.5%, ‘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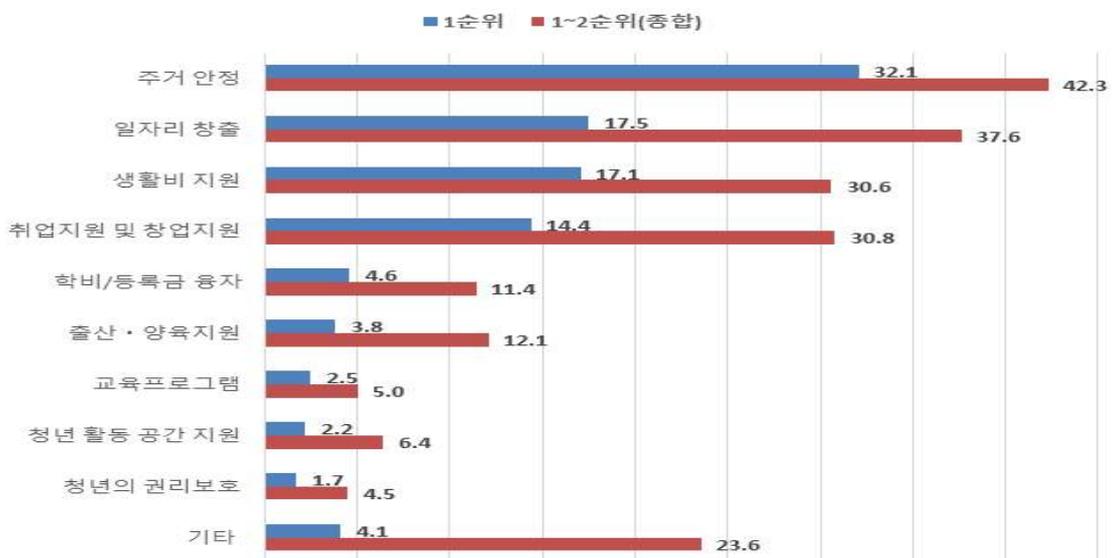
‘출산 및 양육 지원’ 17.1%, ‘취업 및 창업 지원’ 4.4%, ‘학비/등록금 대출’ 4.6%, ‘출산 및 양육 지원’ 3.8% 등의 순이었다.

1순위와 2순위를 종합한 결과는 ‘주거 안정’ 42.3%로 가장 많았고, ‘일자리 창출’ 37.6%, ‘취업 및 창업 지원’ 30.8%, ‘생활비 지원’ 30.6%, 출산 및 양육 지원 12.1%, ‘학비/등록금 대출’ 11.4% 등의 순이었다.

종합하면 응답자들은 청년층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로서 주거 안정, 일자리 창출, 생활비 지원 등의 기본적인 여건 제공이 정부가 시급히 시행해야 할 생각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사회구성원으로 교류를 위한 공간(여가, 문화 등) 과 사회참여의 기회도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림 IV-1-24> 정부가 청년에게 지원해야 할 사항(중복응답)

(단위 : %)



정부가 청년에게 지원해야 할 사항(1순위)을 성별, 연령별, 거주지역별, 혼인 지위별, 부모동거여부, 소득수준(균등화 개인소득), 주생계부양자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였다. ‘주거안정’, ‘일자리 창출’, ‘생활비 지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앞서 살펴본 청년으로서 어려움이나 불편함의 결과와 대동소이하다. 먼저 ‘주거 안정’의 경우 부모에게서 독립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주거 안정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소득수준이 개인소득이 140만원이상(26.4%)인 경우가 그렇지 못한 경우(41.5%)보다 주거 안정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았

다. 그리고 주생계부양자가 본인(45.7%)이면 더욱 주거 안정을 원하였다. 일자리 안정에 대한 사항은 주거안정의 경우와 대체로 반대의 경향성을 보인다. 생활비 지원의 경우는 소득 관련 요인에 따른 차이가 확인하였다.

<표 IV-1-25> 정부가 청년에게 지원해야 할 사항(1순위)

(단위 : %)

항목		주거안정	일자리 창출	생활비 지원
전체		32.1	17.5	17.1
성별	남성	34.5	17.0	17.0
	여성	29.4	18.0	17.2
연령별	19~24세	19.7	19.2	23.6
	25~29세	40.5	19.0	13.7
	30~34세	39.2	13.9	12.3
동/읍면별	동지역	31.4	17.7	18.0
	읍면지역	35.5	16.3	12.7
혼인지위별	미혼	30.9	19.0	18.2
	기혼/사실혼	38.8	8.8	10.9
	이혼/사별	50.0	0.0	0.0
부모동거	동거	26.4	21.1	17.5
	독립	41.5	11.6	16.4
개인소득	140만원미만	21.6	20.3	21.4
	140만원이상	41.1	15.1	13.4
가구소득 (균등화 소득)	낮음	30.0	17.7	20.9
	높음	34.9	17.2	12.1
주생계부양자	본인	45.7	10.9	13.6
	그 외(부모/배우자 등)	27.2	19.9	18.4

## 아. 소결 및 시사점

이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할 때 조사에 참여한 청년층은 주거비, 일자리, 생활비로 인한 어려움과 불편함을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과 지원을 요구하는 정책적 건의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청년들의 일상은 주로 부모동거 여부, 가구소득, 주생계부양자 여부의 경제적 요인에 따른 격차가 확인하였다.

### 1) 주거 빈곤 관련 사항

조사에 참여한 청년층 다수가 부모와 동거하고 있었다. 가족의 생계도 부모나 그 외 가구원이 책임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 청년들은 독립에 필요한

주거비 마련이나 독립 이후 생활비부담 등의 경제적 이유로 분가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 역시 주거비와 생활비부담에 따른 어려움이 가장 크다. 분가 이후에도 경제적 여유가 충분치 않아 주거비와 생활비로 인한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환경에 대한 빈곤 정도는 대체로 양호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거주지의 물리적 조건과 내부 쾌적성에 대한 평가는 상반된다. 즉 현재 사는 거주지의 물리적 조건(교통 접근성, 난방, 온수 등)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반면 거주지 내부 쾌적성(방음, 채광, 환기, 벽이나 바닥 상태 등)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주거환경은 대체로 <부모와 따로 살고 가구소득이 낮은 유형(독립-저소득)>과 <부모와 따로 살고 주생계부양자가 본인(독립-본인)>인 유형이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반면 <부모와 같이 살고 가구소득이 높은 유형(동거-고소득)>와 <부모와 동거하면서 주생계부양자가 본인이 아닌 유형(동거-타인)>이 거주지 환경이 가장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2) 경제 관련 사항

다음으로 경제적 빈곤 상황은 다음과 같다. 지난 10년간의 생활 수준은 나빠졌거나 차이가 없는 경우(67.3%)가 좋아진 경우(32.7%)보다 두 배 정도 많았다. 지난 10년간의 경제 불황기와 맞물려 생활 수준도 정체되거나 더 악화한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10명 중 3명 정도가 현재 부채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부채의 주된 원인은 주거비, 학자금 대출, 생활비 때문으로 파악된다. 부채의 이유는 연령별로 상이한 특징을 보이는데 19~24세의 초기 청년의 경우 학자금 대출(60.3%)이, 25~29세는 생활비(25.0%)가, 30~34세 후기 청년은 주거비(53.9%) 때문에 빚을 지게 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경제적 빈곤 경험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돈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것이 꺼려지거나(66.9%), 돈 때문에 식사를 거르거나 양을 줄인 경험이 있다(49.5%)고 하여 심각한 수준의 경제적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두 가지 경우 모두 빈곤 경험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되는 경우는 5% 이내로 '빈곤의 일상화'를 경험하는 비율은 드물었다. 이러한 빈곤 경험은 대체로 <부모와 따로 살고 가구소득이 낮은 유형>에서 특히 높았다. 반대로 <부모와 동거하고 가구소득이 높은 유형>은 빈곤 경험 비율이 가

장 낮았다. 그리고 <부모와 따로 살지만 주생계부양자가 본인>인 경우가 돈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만나기가 꺼려지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부모와 따로 살고 주생계부양자가 본인이 아닌 유형>에서 돈 때문에 식사를 거르거나 양을 줄인 경험이 많았다.

### 3) 고용 관련 사항

아르바이트 경험은 응답자의 대다수가 과거 아르바이트 경험했거나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생활비, 목돈 마련, 학비 마련과 같은 생계형 목적이 여가활동을 위한 비용마련이나 사회경험 축적과 같은 여가/생활 경험정보보다 많은 특징을 보인다. 이 목적은 연령별과 주생계부양자 여부에 따라 확연히 다른 특징을 보인다. 초기 청년(19~24세)은 저축/목돈마련 및 여행 및 취미비용 마련 때문에, 중기 청년(25~29세)은 생활비 마련을 위한 목적이 두드러졌다. 그리고 본인이 주생계부양자인 경우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반대의 경우는 여행 및 취미비용 마련 목적이 더 많았다.

다음으로 학교 교육 이외의 직업훈련 및 교육프로그램을 응답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청년들만 이용하였고, 응답자들의 절반 정도만 직업훈련 및 프로그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응답자들은 주로 훈련이나 프로그램이 있는지 몰라서 참여하지 못한 것이었다.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은 상대적으로 초기 청년, 부모와 동거(76.6%), 개인소득이 140만원미만(66.5%)인 경우, 가구균등화소득이 낮은 경우(76.8%), 주생계부양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가입률이 낮은 특징을 보였다.

### 4) 여가 및 건강 관련 사항

먼저 여가 관련 사항은 조사에 참여한 청년의 절반가량만 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 수준에 따른 격차가 두드러졌으며,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보다 독립한 경우에 휴가 경험이 많은 특징을 보였다. 그리고 여가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휴식과 취미 오락 활동이 80%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대체로 여가활동은 문화예술활동 관람, 스포츠 관람과 같은 '관람형' 활동이 문화예술활동 참여, 스포츠활동 참여와 같은 '참여형' 활동보다 많았다. 하지만 또래보다 여가활동이 적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볼 때 여가활동의 종류는 많지만, 그 빈도는 높지 않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현재 신체적 건강상태는 건강한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응답한 비율보다 많았다. 정신건강은 우울 수준은 평균 9.76점(30점척도)로 우울 판정 기준인 10점에 육박하여 관심이 필요한 수준이다. 반면 불안은 5.39점(21점척도)으로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이러한 우울과 불안 모두 <부모와 따로 살지만 가구소득이 낮은 유형(독립-저소득)>과 <부모와 함께 살고 본인이 주생계부양자인 유형(동거-본인)>에서 특히 높았다. 즉 주거안정성과 생활 안정성에서 취약한 집단이 더욱 정신건강이 좋지 않았다.

의료 관련 빈곤 경험도 돈 때문에 통증을 참거나 의료(치과 포함) 병원 방문을 포기한 경험이 22~27% 정도이다. 하지만 위급한 상황이나 만성질환 치료를 포기한 경우는 10% 내외로 나타났다. 즉 참을만한 정도의 질병이나 질환을 참고 견디는 청년이 10명 중 2~3명 정도 되는 셈이다. 의료 관련 빈곤 경험은 <부모와 따로 살고 가구소득이 낮은 유형>이거나 <부모와 함께 살고 본인이 주생계부양자>인 경우에 가장 높았다.

## 5) 청년지원정책 관련 사항

정부나 지자체가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청년수당, 청년배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을 수혜받은 경험은 8.6%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청년지원금을 찬성하는 비율이 반대보다 4배가량 많았다. 프로그램에 대한 수혜가 낮다고 저항감도 높은 것은 아니었다.

청년들은 지원의 우선 대상자에 대한 의견은 미취업자, 실업자, 구직단념자 등과 같이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고 응답이 한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 하지만 보편 복지의 관점에서 청년층 모두를 대상으로 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응답도 4명 중 1명꼴로 분포한다.

청년으로서 어려움과 불편함을 살펴보면 생활안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일자리, 주거, 생활비 마련 등의 어려움이 교육문제, 결혼연애, 차별로 인한 불편함보다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정부가 청년에게 지원해야 할 사항도 주거안정, 일자리 창출, 생활비 지원에 대한 의견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 6) 시사점

그 어느 때보다 청년층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청년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이 범정부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청년 관련 이슈도 주거와 일자리, 여가, 건강 등

기본권과 관련한 사항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상의 조사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먼저 청년층을 하나의 집합체로 범주화하기보다는 다양한 범주로 유형화하여 취약계층 정도에 따라 정책의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청년층은 부모동거, 가구소득, 주생계부양자 여부 등의 경제적 형편과 자원에 따라 서열화되고 계층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경제활동 인구에 편입되지 못해 여전히 부모와 동거하면서 ‘연장된 청소년기’나 ‘청소년화 된 청년’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경우 가장 열악한 빈곤 경험을 하고 있다. 청년의 권능화(empowerment)를 통한 독립과 자립은 사회적인 목표이자 과제가 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부모와 동거하고 있지만, 본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와 부모에게서 독립하였지만, 저소득층인 경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청년층 지원을 위한 고용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대상 직업훈련과 프로그램은 많지만, 참여율이 저조하다. 이는 대다수 청년이 몰라서 참여하지 못한 것이다. 관련 프로그램과 정책이 청년층에게 잘 홍보되도록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훈련이나 프로그램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청년층의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할 상담 지원 프로그램의 인프라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청년층 우울 수준이 우울 증세 판정 기준에 근접하여 이에 대한 시급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못지않게 정신적인 안녕감을 높일 방안이 필요하다. 만성화된 불안정성으로 취약해진 정신건강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특히 중기 청년, 이혼/사별, 소득이 낮은 집단, 본인이 주생계부양자인 경우 우울 수준이 높았다. 이들 집단을 대상으로 생활 안정성과 심리적 안녕감을 높일 수 있는 정책과 프로그램이 먼저 제공될 필요가 있다.

## 2. 심층면접 및 FGI 조사 결과

### 가. 조사개요 및 분석방법

빈곤청년 대상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심층면접 및 FGI를 진행하였다.

청년층의 상황에 따른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성별, 나이가 골고루 분포되도록 선정하였고, 소득, 직업, 거주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별하였다. 섭외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조사 의향을 파악하여, 총 271명의 명단을 입수하였다. 이 대상자 중 연구의 목적에 맞게 일차적으로 대상자를 분류했다. 사전조사로 면접조사 2건을 진행하여 청년층의 주요 이슈를 파악했고, 이것을 바탕으로 2회의 FGI를 실시했다. FGI는 전반적인 청년문제 인식과 빈곤, 권리의 영역에 집중했다. FGI 이후, 청년들의 개별 사례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면접조사 의향자 중 저소득자 청년층을 중심으로 개별면접을 하였다. 또한, 면접 진행 중 면접참여자들이 자신들의 주변인들 사례를 소개해 주는 경우가 있었다. 이 사례들이 본 연구의 목적과 부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들의 소개를 받아 추가 면접을 진행하였다.

면접은 청년들에게 이미 친밀감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서 실시하였으며, 면접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유선상으로 설명을 시행하고, 면접의 취지에 따라 성실하게 임하도록 유도하였다. 면접자는 피면접자에게 면접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비밀보장 및 익명성에 관해 확인해 주었으며, 녹음에 대한 동의를 구두로 받고 면접내용을 녹취하였다. 심층 면접 결과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내용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모든 면접의 내용을 녹취하여 전사하였으며, 전사된 인터뷰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어가며 유목화 작업을 시행하였다. 각 유목화 내용에서 도출된 주제에 맞는 분석 용어 및 단위를 결정하고 지속해서 찾아내어 최종적으로 내용을 정리하였다. 개인별로 유사한 내용의 진술을 모두 발췌하여 수록할 수 없으므로 대표적인 진술 내용을 선별하여 보고서에 기술하였다.

### 나. 조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심층면접 및 FGI 참여자의 일반적 심층면접 참여자의 주요 특성은 아래

<표 IV-2-1>과 같다. 총 참여자는 20명이며, 연령은 19-32세까지 분포되어 있다(19-24: 8명, 25-29세: 8명, 30-34세: 4명). 학력별로는 고졸부터 대학원 졸업(고졸: 2명, 대퇴: 1명, 대재: 7명, 대졸: 9명, 대학원졸:1명)까지 다양하였으며, 현재 대학생부터 구직 활동 중에 있는 참여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프리랜서, 기타 취업성공패키지 등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거주상태는 대부분 부모와 동거하고 있으며(14명), 독립해서 월세를 내는 청년(3명), 전세로 사는 청년(1명), 기타 선배와 함께 살면서 주거비를 내고 있지 않은 경우, 조모와 동거하고 있는 청년 등 거주상태도 다양했다. 소득별로는 개인소득 320만원 1명, 200만원 2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저소득층으로 나타났다.

<표 IV-2-1> 심층면접 및 FGI 대상자

피면접자	연령	성별	학력	현직업 (정규직/ 비정규직)	거주상태 (부모동거/ 독립)	결혼 여부	개인소득 (가구소득)	비고
1	24	여	대졸	구직 중	부모동거	×	30(220)	
2	26	남	대재	학생	부모동거	×	60(350)	취업준비
3	20	남	대재	학생	부모동거	×	30(350)	
4	28	여	대졸	정규직	독립(월세)	×	320(320)	
5	34	남	대졸	정규직	독립(전세)	×	200(200)	
6	19	여	대재	학생	부모동거	×	0(400)	
7	30	여	대졸	구직 중	부모동거	×	100(300)	아르바이트
8	24	남	대졸	프리랜서 작곡가	부모동거	×	50(300)	
9	25	남	대퇴	취업성공 패키지	선배와 동거	×	70(500)	
10	28	남	대재	학생	부모동거	×	150(350)	
11	23	남	대재	학생	부모동거	×	50(200)	
12	25	남	대재	학생	부모동거	×	100(700)	
13	34	남	대학원졸	학생	부모동거	0	200(500)	
14	24	남	대재	학생	부모동거	×	10(150)	
15	32	여	대졸	정규직	부모동거	x	80(250)	시간제
16	23	여	대졸	정규직	독립(월세)	x	180(180)	
17	23	여	대졸	구직중	부모동거	x	-(300)	청년구직 지원금
18	29	여	대졸	정규직	부모동거	x	165(300)	
19	25	여	고졸	비정규직	조모동거	x	130(180)	
20	23	남	고졸	정규직	독립(월세)	x	180(180)	

## 다. 주요 분석결과

### 1) 청년문제 인식

저성장과 함께 청년들은 실업, 빈곤 등 다양한 사회문제와 결합하면서 ‘청년 문제’가 화두가 되기 시작했다. 유럽의 경우 청년의 사회문제화가 1990년대 저성장과 함께 본격화되었다면 한국은 2000년대 초, 청년 실업률의 심각성이 제기되면서부터 꾸준히 청년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과연 당사자인 청년들은 청년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면접조사에 나타난 이들의 인식은 크게 3가지로 나뉘었다. 먼저 청년문제를 한국의 다른 사회문제 중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이다.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는 청년 실업과 이어지는 삼포 세대, 그리고 미래성장 동력이라는 청년들이 오히려 한국사회의 문제로 자리 잡아 한국사회 미래를 부정적으로 전망할 수밖에 없다. 청년은 앞으로 노인 등을 부양해야 할 세대이기 때문에 청년의 어려움은 더욱더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해석이다. 두 번째는 청년문제가 심각하기는 하지만 다른 사회문제와 비슷한 정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문제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기보다 본인들 스스로 가치관 변화로 보는 경우이다. 이전세대들이 취업->결혼->출산과 같은 생의 과정을 과정으로 인식하기보다 개인의 “선택”으로 보는 것이다. 자신들은 오히려 높은 연봉과 안정된 일자리를 찾기보다는 개인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미래를 위해 현재의 시간과 여유를 포기하기보다는 오히려 현재의 “순간”들에 초점을 맞춘다.

청년문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청년문제 때문에 포기, 삼포세대라고, 결혼도 포기, 출산도 포기. 그래서 우리나라 미래가 너무 어두운 것 같습니다. 【사례2/남/26세/학생/부모와 동거】

저는 일단 청년층 문제가 차지하는 심각성 정도에 관해서는 솔직히 그래도 어느 정도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노인층 복지나 영유아층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보육 서비스 같은 거는 조금 잘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은 해요. 【사례1/여/24세/구직 중/부모와 동거】

청년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들이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요즘 제 또래 친구들은 굳이 일을 꼭 해야 돼? 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즐길 수 있을 정도로만 돈 벌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면 되지. 뭐하러 굳이 돈을 그렇게 많이 모아야 돼? 그런 생각으로 사는 거 같아요. 【사례16/여/23세/정규직/독립】

인간은 현재에 비추어 미래를 판단하게 되는데, 현재의 한국사회를 바라보는 청년들은 미래를 낙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들의 부모 세대에서는 당연하게 여겼던 결혼과 출산을 이들은 “선택”이라는 옵션으로 비워두게 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청년 세대들이 겪고 있는 고용 불안, 노동환경의 불안정성은 가족을 형성하고 유지하기에 벽차다. 전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는 현재 본인들의 불안정성을 더욱더 증폭시키고, 결국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가치관 변화는 경제적 불안정성과 미래 삶에 대한 불신에서부터 온다고 볼 수 있다. 청년 세대들의 삶의 문제는 결국 경제적 불안정성에서 오는 것이며, 이들은 생존을 위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청년들의 삶은 나름대로 생존을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으며, 결혼하지 않는 것이 이들이 생존하는 방식이다. 결혼과 출산의 자발적인 거부라기보다는 이를 거부하게 만드는 사회 구조적인 원인을 보다 다각적으로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삶에 대한 불안은 결국 청년층의 새로운 가족 형성을 향한 두려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빈곤청년의 경우 결혼을 “탈출구”로 여기기도 한다. 학자금 대출과 부모의 대출로 경제적 빈곤상태에 빠진 【사례18】의 경우 현재 집에서 빨리 나갈 수 있다는 생각에 막연히 “결혼을 해야 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곧 현실적인 문제, 결혼 후의 삶과 연결되어 더 막막한 현실이 두렵기도 하다.

결혼에 대한 생각... 아직은 없어요. 지금은 제 코가 석자라서... 계획들을 해 나가는 것도 되게 버거울 것 같아요... 먼저 제가 해야 될게 많아서 신경을 못 쓸 거 같은 느낌【사례15/여/32세/정규직/부모와 동거】

결혼문제인데 내가 결혼을 해가지고 내집 마련을 할 수 있을까. 예전에는 조건이 좀 차이가 나도 그냥 결혼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조건이 안 맞으면 아예 만날 생각도 안 하고. 그런게 있다 보니까 그런거 조금 걱정이 돼요. 저로서는. 굳이 해야 하나 하는게 20, 하고 싶다는게 80정도,, 내가 결혼을 해야 여기서 빨리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래야 완전히 독립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례18/여/29세/정규직/부모와 동거】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도 기성세대 같은 경우는 뭐 좋은 사람 있으면 결혼해서 애 낳고, 그렇게 사는 거지. 당연시했던 사회문화가 지금 세대에서는 이걸 선택의 문제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일을 얼마나 할지도 좀 더 개인의 선택으로 환원되는 게 지금의 세대인 거 같아요. 【사례11/남/23세/학생/부모와 동거】

## 2) 사회·경제적 빈곤 및 불평등에 관한 인식 및 경험

### 가) 경제적 빈곤

청년 실업과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청년들의 삶은 더욱더 궁지로 몰리고 있다<sup>37)</sup>. 경제적 빈곤은 주로 부모 세대로부터 대물림 되는 부채, 학자금 대출 등에서 시작된다. 청년들의 경제적 빈곤은 한국사회의 불공정한 분배 문제와 맞닿아 있다. 경제활동 경험, 경력 차, 부동산 시장의 기형적 구조, 수직적이고 경직적인 사회조직 문화로 인한 재산 축적의 차이로 인해 청년들이 기성세대 에 비해 더 빈곤한 처지에 놓였다.

【사례18】은 대학 입학과 동시에 학자금 대출이 시작되었고, 8학기 내내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고 했다. 게다가 가구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가족 생활비를 카드 대출을 받아 충당하였다. 이후, 학자금 대출 상환과 기타 가족 생활비 대출 상환으로 생활고를 겪었다. 졸업과 동시에 수많은 부채로 마이너스부터 시작한 【사례18】의 경우 165만원의 월급으로 모든 것을 충당하기에는 버거웠다. 【사례15】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가족생활비를 마이너스 통장으로 충당했던 경험이 있었다. 당시 부모님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고, 본인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 더욱 더 부담은 가중되었다. 비싼 등록금을 내고 대학을 다니지만 졸업 이후 “스펙 쌓기”라는 전쟁터에 들어가 성공적으로 취업을 한다고 해도 그때까지 쌓인 부채를 상환하기 바쁘다. 경제적 빈곤에 대해 개인들의 처한 상황은 전부 부모의 경제적 빈곤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이것이 청년인 자녀세대들에게 대물림 되면서 부담은 몇 배로 커지게 된다. 대학 졸업 전부터 경제적 빈곤을 경험한 이들에게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현재의 삶을 벗어나기 위한 “경제력”이고, 무엇보다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가 되기도 한다.

제가 필요한 건 진짜 1초도 망설임 없이 돈이고요. 집안 사정도 그렇고.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돈에 대한 갈망, 애착 이런 게 더 커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고. 【사례14/남/24세/학생/부모와 동거】

제가 1학기 빼고 다 받았거든요. 7학기를. 지금 절반정도 갚은 거 같아요....다른 대출도 있어요...그러니까 제 신용으로 해 가지고 카드를 많이 발급하셨는데...현금 서비스 쓰고. 그러면서 제 신용 계속 내려가고.....그 때 독촉 전화하시던 분이 저한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제가 빚진 게 아니라 저희 가족 생활비 쓴 거니까 【사례18/여/29세/정규직/부모와 동거】

37) <http://www.asiatim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790>(아시아타임즈, 2017년 2월29일)

엄마도 공공근로? 그거 하실 때여 가지고 수입이 50만원? 60만원 이거 밖에 안 될 때고. 그러니까 돈 쓰는 사람이 3명이나 있는데 버는 사람이 오빠 하나여가지고. 그 때는 계속 마이너스 상태인 거죠. 마이너스 통장 있으면 한 달 있으면 또 올라가고, 올라가고, 이걸 또 어떻게 갚나. 【사례15/여/32세/정규직/부모와 동거】

## 나) 고용불안 및 차별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본인의 개인적 경험에 비추어 질문했을 때, 면접대상자들의 전원이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고용과 관련된 것이었다. 졸업 후, 1-2년 정도 구직활동을 한 청년들의 경우에는 취업난이 심각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다. 막연하게 ‘내가 원하는 일자리는 그렇게 고스펙을 원하는 것이 아니니까 취업이 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했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또한, ‘어디든’ 취업이 되었다고 해도 대부분 본인의 급여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현재 취업을 한 청년들도 계속해서 구직활동을 하거나 다른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었다. 본인들이 받는 임금이 ‘터무니’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일자리들은 쉽게 접근이 가능한 일자리였다. 따라서 대졸자인 자신들이 정당한 임금과 대우를 받는 일자리들이 없다는 것, 이것이 고용과 관련한 가장 큰 문제였다. 청년들은 기성세대들이 본인들을 비판할 때, “눈이 높다.”, “편한 것만 찾으려고 한다”라는 시각으로 비판한다고 했지만 정작 본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어느 정도일까? 구체적인 질문을 했을 때, 이들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았다. “연봉 3000만원 수준, 4대보험 가입, 정시 출퇴근” 오히려 여기서 연봉이 어느 정도 맞으면 정시 출퇴근이 지켜지지 않고, 역으로 정시 출퇴근이 지켜지면 연봉이 맞지 않았다.

면접참여자 중 예술 분야 종사자들의 경우 앞에 논의된 내용이 훨씬 더 심각하게 나타났다. 소위 논란이 되었던 열정페이가 이 분야에서는 여전히 흔하게 발생하고 있었고, “최소한의 수면”도 보장되지 않는 노동환경 또한 여전했다. 고용과정에서 소위 남성들이 많이 포진된 직군의 경우 여성들에게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고【사례17】, 고용과정에서 부모님의 학력과 직업을 요구하는【사례1】 사례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네, 아르바이트 같은건 많이 해봤는데. 요새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력서 쓰라고 할때가 있어요. 제가 난감했던 거는 부모님 학력이랑, 직업 쓰라는 거. 【사례1/여/24세/구직중/독립】

그냥 공공기관. 그래서 직장에서 여자라서 부당대우 받거나 그런건 거의 없어요. 【사례4/여/28세/정규직/독립】

취업이요. 아무래도 너무 자리도 별로 없는데【사례7/여/30세/구직 중/부모와 동거】

중소기업에 갔다고 하더라도 급여가 많이 안 맞아요【사례8/남/24세/프리랜서 작곡가/부모와 동거】

양질의 일자리가 적다라는 것.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자리는 많은데 그걸로 인해 내가 더 그 분야에 대해서 성장하고 더 오래 일할 수 있고 그런 일자리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청년이 힘든 것은 새로 일자리를 찾아야 하고, 이걸 유지해 나가는 과정인데 그 시작부터 너무 팍팍해서요. 【사례15/여/32세/정규직/부모와 동거】

지금 정해진 거만 지켜도 진짜 좋은 일자리인거 같아요. 52시간 지켜주고. 출퇴근 시간 지켜주고. 야근해도 야근 수당 주면 받으면서 일하는거니까. 딱 정해진 거만 지켜주면 제대로 된. 【사례16/여/23세/정규직/독립】

요즘 문제되는 남녀차별, 말했듯이 세트팀도 남자만 뽑는다. 정말 여자를 안 뽑는단 말이예요... 너는 잘 하는데 여자는 안 뽑아. 우리가 왜 여자라는 이유로 시도도 못하고 접근하지도 못하고 그냥 포기해야 되지? 【사례17/여/23세/구직중/부모와 동거】

일이 많으면 끝나고 남아서 하고 주말에 나와서 하라고, 그리고 주말에 계속 나오라고 했었거든요. 토요일날에... 잘 안나갔는데 네가 공무원인줄 아냐고. 그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일하고 싶으면 공무원을 하라고 이러면서... 【사례17/여/23세/구직중/부모와 동거】

청년들의 고용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 가장 많이 지적된 내용들은 고용불안과 관련된 사항이었다. 2019년 현재, 한국사회 청년들에게 있어 안정적인 삶과 여유를 주는 직종은 공무원이었다. 이들은 오히려 대기업의 고연봉을 포기하더라도 청년과 근로시간이 보장되고, 자신의 삶을 즐길 수 있는 것을 더 선호했다. 면접에 참여한 청년들은 이러한 이유로 공무원 시험을 시도하기도 하고, 1-3년까지 소위 “공시 준비생”이었으나 포기하고, 다른 일자리를 찾아 일하고 있었다. 그러나 고시 준비생의 신분이었던 청년들이 다시 노동시장으로 돌아왔

을 때 상황은 더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 시험 준비 이외에 다른 ‘스펙’을 갖추지 못했고, 이러한 상황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청년들의 공무원 선호현상은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것은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와 맞물려 고용 불안정(비정규직 양산)의 문제에서 해결책으로 여겨졌다. 사회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청년들의 공무원 선호현상도 더해져 갔다. 안타깝게도 한국사회에서 청년들의 삶의 질을 보장해주는 일 자리는 이렇게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또한 사회 양극화와 계층화 현상이 심화되고, 계층이동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회에서 청년들은 “성공” 신화를 만들기보다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게 된다. 일반 기업의 직장문화 또한 마찬가지로 청년들이 기업을 기피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원인이 된다.

자유시간이 보장되니까, 공무원은 확실하게 보장되니까. 사실 20살 될 때까지 자기가 뭐 하고 싶은지 모르는 애들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럴 바에는 공무원하면서 자기 시간 갖고 돈도 착실히 들어오잖아요. 안 밀리고 그런거에 매력을 느끼는게 아닐까 싶어요. 【사례8/남/24세/프리랜서 작곡가/부모와 동거】

공무원 자체가 임신, 출산 이쪽으로도 훨씬 좋고 자유시간도 확실히 보장되어 있고 육아휴직 같은 경우도 100% 되잖아요. 【사례7/여/30세/구직중/부모와 동거】

제가 원래는 공무원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친구가 대부분이 스펙이나 뭐 내세울게 없거든요. 【사례15/여/32세/정규직/부모와 동거】

저는 전공 때문에 아무래도 공공분야 취직을 알아보다가 공기업에 더 관심이 가고, 조직문화가 어느 정도 수평적이었으면 좋겠다는게 있고, 그다음에 연봉이나 이런 건 조금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 같아요. 사기업 같은 경우는 경쟁이 심하고 성과나 아니면 정치 이런 부수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주기 때문에 【사례11/남/23세/학생/부모와 동거】

제 의견은 이를테면 기성세대 같은 경우는 직장에 갔으면 뻑세게 일하는게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였다면 지금의 세대는 이에 대해서 한발 떨어져서 이게 왜 당연한거지? 생각하는 세대인거 같아요. 【사례11/남/23세/학생/부모와 동거】

#### 다) 주거 문제

청년 고용뿐만 아니라 주거의 문제도 청년문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일 자리와 거의 비슷하게 청년들은 주거문제가 심각하다고 반응했다. 수도권에 집

중해 있는 일자리로 인해 청년들은 수도권에 집중해 있는 경향을 보이는데, 면접 대상자들 대부분은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다. 청년들은 경제적 독립뿐만 아니라 주거 독립을 원하고 있었으나 주거비의 문제로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

부모의 자가 주택이 서울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혜택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따로 주거비로 드는 비용이 전체 소득의 3-40%를 차지한다. 주거비를 다달이 따로 내는 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하는데 전세 주택에 들어가기 또한 만만치 않다. 대출상품과 정부 지원 등 많은 것들을 고려하기는 전세의 경우 본인이 목돈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다음에야 불가능하다. 사회초년생의 경우 대부분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본인들이 원하는 전세 주택에 들어가기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주거비용 부담 때문에 또래 친구와 함께 반반씩 월세를 부담하며 함께 거주하는 사례도 있었는데【사례17】, 주거환경은 열악했다. 시세에 비해 월세가 낮다는 이유로 다른 불편한 점은 감수하고 ‘당분간’ 살고는 있지만 【사례17】의 경우에는 월급의 반 이상을 저축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다른 아닌 전세 대출이 가능한 자금 모으기였다. 정부의 청년주거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반응들이 대부분이었다. 일단 지원사업에 선정될 가능성도 높지 않은데, 복잡한 절차에 따라 지원하기보다 당분간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감내하고, 부지런히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금액을 모으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또한, 청년 임대주택의 경우 중심지로부터의 접근성과 주거 환경이 좋지 않아 선호하지는 않았다.

대출도 뭐 80% 맥시멈 땡겨야 그거밖에 안 나오는데 목돈이 몇 천씩 5-6천씩 있어야 한다는 애긴데. 그건 사실상 사회초년생한테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고요. 【사례5/남/34세/정규직/독립】

주거 관련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례8/남/24세/프리랜서 작곡가/부모와 동거】

종속된 존재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거의 독립이 활동에 있어서도 독립을 보장하지 않나. 제 친구들 같은 경우도 LH에서 임대주택지원사업에 겨우겨우 됐는데 다 반지하 방에서 살고 있거든요...청년주택이라는 곳이 대부분 위치가 안 좋은 것들 이에요.【사례11, 23, 남, 학생, 부모동거】

일단 제방은 제방이니까 제가 깨끗하게 하는데 다른 데 화장실이나 이런 곳은 너무 안 좋고, 베란다. 다용도실이라고 해야 하나? 거기 문이 하나 있거든요. 그 문 하나 열면 바로 바깥이에요. 청년 주택은 알아보는데 그게 내가 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례16/여/23세/정규직/독립】

어떻게 보면 제가 서울에서 일하는데 서울에 집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장점이잖아요..... 숨만 쉬고 있어도 월세 나가고, 공과금 나가고.... 고시원 들어갔었는데, 그때가 6.7년 전인데도 창문이 없는데 35만원, 창문이 없는게 42만원 이런식이었거든요. 그니까 옆방에서 뭐 하는지 다 들리고 그러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이러느니 그냥 집에 있는 게 낫겠다. 【사례15/여/32세/정규직/부모와 동거】

보증금은 부모님이 어느 정도 해준다고 치면 괜찮지만, 월세하고 관리비만 생각하면 30% 되는 것 같아요. 【사례19/여/25세/비정규직/조모와 동거】

### 3)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사회권에 대한 인식

#### 가) 교육·문화권

청년 정책은 주로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그러나 변화된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사회권적 관점에서 청년의 권리 중 교육(취업 교육 제외)과 문화권 또한 중요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본인의 상황과 상관없이 청년들에게 있어 교육받을 권리, 문화와 여가활동을 할 권리는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례1】의 경우처럼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기타 활동은 보장받기 어렵다. 이들에게 있어 현재의 시간은 그저 “유예된 시간”이기 때문이다. 비교적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례4】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 정부 지원 교육프로그램의 참여 의향은 있으나, 아직 적극적으로 찾아보거나 하지는 않았다. 【사례15】의 경우는 대학원 박사 과정 중에 있으나, 교내외에서 학생으로서 혜택이 제한된다는 데에 큰 불만을 제기하였다. 교내의 많은 프로그램은 학부생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학원생의 경우 따로 비용을 내거나 아니면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기타 문화프로그램에서도 학생 요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등 대학원생이 학생의 권리를 제약받는다고도 했다.

또한, 청년센터 또는 기타 청년을 위한 공간에 관해서 대부분 인지하고는 있었으나 이용하는 청년들은 거의 없었다. 청년들만의 공간에 대해서 크게 감흥이 없었으며, 오히려 카페라는 공간이 있는 상태에서 굳이 청년만을 위한 공간을 만들 필요는 없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청년들만을 위한 이러한 공간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 첫째, 공간만을 위한 시설은 별로 필

요가 없다, 둘째, 이러한 공간은 접근성이 떨어진다. 셋째, 홍보가 너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여행은 솔직히 꿈도 못 꾸죠. 영화는 그래도 작년에 하편 보고 올해 한 편 봤네요. 【사례1/여/24세/구직 중/부모와 동거】
시간은 있어도 여행을 못 가는거 같고요. 정부에서 20대들에게 내일로라고 해서 기차여행 3일, 5일, 7일 자유 이용권? 그런 거 팔고 있어서 그런거 이용해요 【사례2/남/26세/학생/부모동거】
피곤해서 왜냐하면 주말이나 이럴 때 쉬고 싶은게 더 커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 이런 건 하고 싶은데 사실 뭐가 있는지 잘 몰라서. 【사례4/여/28세/정규직/독립】
공간은 잘 나뉘어 있던데, 룸도 잘 되어 있고.. 이미 카페라는 공간이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 봤자죠. 【사례7/여/30세/구직 중/부모동거】
청년센터? 공간? 이런데 보긴 봤는데, 시설은 잘 되어있는데 홍보가 너무 부족한거예요. 【사례10/남/28세/학생/부모와 동거】
학생증만 있으면 되는데 대학원생은 혜택이 없죠. 대부분 대학원생은 혜택이 없어요. 대학생까지만. 학부생... 【사례15/여/32세/정규직/부모와 동거】
저 문화센터 다녀봤는데 다 연령대가 너무 높아요.【사례16/여/23세/정규직/독립】

## 나) 건강권

직장인이나 4대 보험 가입자가 아닌 장기 취업준비생, 자영업자 청년 등은 건강검진은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청년은 사회에서 일자로 연결이 되어야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2016년 전주시의회가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면서 ‘청년 건강권’을 조례에 명시했고, 2019년부터 국가 정책으로 확대돼 20~39세 비정규직과 대학생, 영세사업자 등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면접조사에서 나타난 청년들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부정적이었다. 취업준비 등의 이유로 금전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청년들의 주된 식사는 “편의점”이었다. 경제적이고, 간편하고, 혼자 쉽게 먹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청년들은 “편의점”을 애용하고 있었다. 물론 본인들 스스로도 이러한 인스턴트 때문에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었다.

우울, 스트레스, 비만, 음주, 흡연 등 많은 건강 위험요소에 노출되어 있으나 상대적으로 건강을 챙기는 데 있어 소홀하다. 게다가 진학과 진로, 취업 등의 이유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정신 건강 상태도 좋지 않은 사례들이 발견되었다.

청년수당 등 청년 정책으로 인해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이고, 그 시간을 활용하여 운동을 시작했다고 밝힌 【사례1】의 경우에서처럼, 결국 시간과 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어떠한 지원이든 지원을 받으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유예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있어 특히나 정신 및 신체 건강 관리는 중요하지만, 본인들의 건강을 관리하며, 규칙적인 식습관과 생활을 유지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사례19】 경우는 건강 불평등의 문제를 제기했는데, 규칙적인 식습관과 운동, 근로 시간 등이 유지되는 것은 한국의 경우 대기업 직원들만이 누릴 수 있다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생활 리듬이 어쩔 수 없이 깨지기 마련이라고, 그리고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는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사회권으로 마땅히 누려야 할 건강한 삶과 관련해서도 계층의 차이는 현격히 나타났다. 결국 최소한의 인간의 권리인 건강권조차도 한국사회에서는 누구나에게 인정되는 평등한 권리가 아니라, 소수의 계층에게만 보장된다.

저는 일단 지금 청년수당을 받고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도 받는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은 해요. 왜냐면 아르바이트하던 시간을 제가 지금 운동하는 데 쓰고 있어요. 안 그래도 건강이 안 좋아서. 아르바이트하던데 쓰던 체력을 운동하는 데 쓰니까 훨씬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사례1/여/24세/구직중/부모와 동거】

밖에 물가도 비싸고. 밖에서 사 먹게 되면 간단히 삼각김밥 그런거 【사례2/남/26세/학생/부모동거】

근데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공황장애가 와서요. 결국, 신경정신과 가보니까 공황장애다. 약물치료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치료를 했죠. 약값까지 1만4천 원? 처음에는 어머니가 해주셨는데, 그다음에는 그냥 제돈으로 요즘은 진짜 거의 쓰러지지 않는 이상은 그냥 안 가요. 【사례14/남/24세/학생/부모와 동거】

밥을 안 해 먹으니까 거의 다 사 먹으니까. 거의 다 편의점 음식 먹으니까. 그래서 안 좋을 거 같아요. 편하기도 하고. 근데 제 친구 중에는 편의점 음식 너무 많이 먹어서 병원 다녔던 애 있어요. 인스턴트만 먹어서 몸이 나빠졌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사례16/여/23세/정규직/독립】

제가 얼마 전에 보건소에서 하는 간단한 건강검진을 했는데 근육량이 표준의 절반이라고. 【사례17/여/23세/구직중/부모와 동거】

아 그때 몸이 좀 많이 안 좋았어요. 그때 당시에 스트레스로 하혈하고. 힘드니까 좀 그렇게. 저혈압이 와서.... 근데 제가 작년에 재취업을 해서 아직 건강검진은 한번도 받은 적 없어요. 【사례18/여/29세/정규직/부모와 동거】

대기업 같은 경우는 휴게시간도 딱딱 정해져 있고 그렇지만 그게 아닌 회사들은 점심시간 아닌 시간 중다고 해도 눈치줘서 허겁지겁 먹어야 되고, 그러면 패스트푸드 먹어야 되고 건강이 안 좋아지고, 악순환의 연결고리 같아요. 【사례19/여/25세/비정규직/조모와 동거】

#### 다) 사회적지지

일반적으로 사람을 둘러싼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얻어지는 여러 가지 형태의 지지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받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해 주고, 대인관계로부터 얻는 긍정적 자원을 사회적 지지로 볼 수 있다. 청년들의 사회적 지지는 어떠한가? 특히나 취업준비 중이거나 무언가를 준비 중인 청년들의 경우 사회적 지지의 역할이 중요하다. 면접에 참여한 청년들은 대부분 사회적 지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다. 부모의 경우 청년들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예도 있었는데, 청년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미디어에서 많이 보도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바뀌기도 한다고 했다. 본인들이 어떤 미래를 꿈꾸든, 취업이 다소 늦어지든, 시험 준비를 몇 년째 하고 있든, 청년들이 부모로 받는 지지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는 많이 지지를 받고 있는데. 【사례3/남/20세/학생/부모와 동거】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은 별걱정은 안 해요. 어떻게든 먹고살 거 같으니까 지지를 해주는 편이고. 【사례8/남/24세/프리랜서 작곡가/부모와 동거】

누구는 취업했네. 동네 누구는 할머니한테 용돈을 주네 마네 이런거. 【사례17/여/23세/구직중/부모와 동거】

부모님은 저 믿고, 공부한다고 했을 때도 그래, 공부해라. 이렇게 하셨는데. 【사례18/여/29세/정규직/부모와 동거】

#### 4) 현행 청년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정책욕구

면접에 참여한 청년들은 취업성공패키지(이하 취성패),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수당 등 정책을 지원받고 있었다. 이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는데,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았다. 일단 청년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별로 없었으며, 주변인(주로 친구)들의 경험담으로 시도조차 하지 않은 예도 있다. 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질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는데, 학원과 연계된 프로그램 같은 경우 학생 유치에만 급급하므로 프로그램 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프로그램 이름만 봐서는 다양한 교육이 제공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막상 실상을 들여다보면 여전 교육프로그램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개발자 양성과정이라는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사례14】의 경우 일반 프로그래밍 교육과 차이가 없다고 했다. 또한, 취성패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지원금이 충분하지 않은 데다, 아르바이트도 시간을 제한하기 때문에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청년들도 있었다.

<표 IV-3-2> 정부 프로그램 참여경험 및 평가

긍정적	부정적
취성패 하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괜찮다고 나쁘지 않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례9/남/25세/취업성공패키지/선배와 동거】	취업지원센터라고 해야 하나? 그런거 많았는데 있어도... 별로 큰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해서.. 재직자 카드 있잖아요? 가르치는 것도 다르고, 제 친구는 저한테 그거 하지 말고 그냥 네 돈 들여서 하는게 훨씬 낫다고 【사례20/남/23세/정규직/독립】
희망플랜 시험사업, 이것이 전략적으로 괜찮고 많은 청년들을 유도할 수 있겠다고 해서 참여한 청년으로서 괜찮다고 봤어요. 퀄리티를 높이면 홍보가 자연스럽게 돼요. 【사례20/남/23세/정규직/독립】	이게 시스템이 별로예요. 돈도 적고, 이것도 국가가 하는 거면 좀 시스템이 잘 되어있어야 하는데. 기준점이 명확해야 하는데 센터마다 기준도 다 다르고. 【사례17/여/23세/구직중/부모동거】
	재직자 카드 알아보고 있는데 제 친구는 저한테 그거 하지 말고 그냥 네 돈 들여서 하는게 훨씬 낫다고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해가지고. 【사례16/여/23세/정규직/독립】
	정보통신부 산하에서 하는 인공지능개발자 양성 과정 듣고 있거든요... 근데 그냥 프로그래밍인거예요..이름만 그럴싸하게 했지 안에 내용은 전혀 변한게 없어요. 취성패 있는 학원도 다녀봤는데, 이게 진짜 학생 유치에만 목매더라구요. 【사례14/남/24세/학생/부모 동거】
	취성패.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배우고 취업한 다음에는 그렇게 썩 큰 도움은 안됐어요. 용어만 익히고 나오는 정도?【사례15/여/32세/정규직/부모 동거】

한편 청년 정책에 대한 평가 및 개선점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청년 정책 및 지원프로그램은 지난 몇 년간 양적으로 많이 성장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 청년들이 느끼는 정책의 실효성은 크지 않다.

첫 번째, 정부 지원 교육 및 취업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이에 대한 개선점은 프로그램 내실화 및 기존 프로그램 환류 및 평가 시스템 구축이다. 기존의 학원과 연계되어 교육을 시행하다 보니, 학원으로서 는 청년들의 등록 여부가 학원 운영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청년들은 정부 지원프로그램 질에 대해서는 매우 낮게 인식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오히려 유료 학원을 등록하는 편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청년들에게 퍼져있는 정부 지원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불신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교육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보가 필요하다. 예술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들의 경우 본인들의 수요를 만족할만한 프로그램을 찾아보기 힘들다고도 했다. 따라서 다양한 청년의 수요를 고려하여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주거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청년 공공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다. 또한, 경쟁이 치열하므로 지원하는 데에 시간을 들이지 않고, 얼른 가능한 “전세금”을 마련하는 것이 더 낫다는 평가이다. 마찬가지로 청년 공공주택의 지역 및 주거 환경이 청년층이 선호하지 않는 환경이라는 의견이다. 청년 공공주택도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층의 취향과 생활 방식이 제대로 반영되어 청년 공공주택이 청년들의 개인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이 확보되어야 한다.

정책 대상과 관련해서 정부의 지원 정책이 주로 사회초년생에 맞춰져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오히려 20대 후반이 지나서 구직활동을 하면 상황은 사회초년생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나 각종 정책에 있어서 나이 제한은 이러한 후기 청년들을 배제한다. 따라서 청년 대상 정책에서 나이 제한보다는 오히려 현재 상황에 맞추어 정책대상자를 선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 지원을 받는 청년들의 경우 그간 참여한 프로그램 및 정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의견들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취업 성공패키지에서 지원받는 금액으로는 본인들의 생계를 책임지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주로 청년들의 아르바이트를 제한하기 때문에 아쉽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실제로 이러한 제한 때문에 아예 지원하지 않는 예도 있었다. 각종 수당이 실제 청년 생계에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100%는 아니므로 청년들이 자유롭게 아르바이트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제한을 풀어주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기타의견으로는 발급 및 지원절차 간소화, 해당 정책 및 프로그램의 다양한 홍보 채널 필요 등이 나왔다.

<표 IV-4-3> 정부 프로그램 개선점에 대한 의견

정책영역	개선점
주거 및 취업교육	-청년 공공주택의 접근성 및 주거환경 개선 -고등학교 졸업 후 1년간의 유예기간 -취성패 등 취업교육 프로그램 내실화 -기존 프로그램 환류 및 평가 시스템 구축
교육 및 문화권	-문화 및 여가 플랫폼 구축 -예술 분야 지원 -문화 프로그램 등 청년 요금제 확대
건강권	-심리정서지원, 상담 카운슬러 필요 -청년층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금
정책대상	-대상자 선별 정교화 -후기 청년층에 대한 지원 확대
기타	-보다 근본적인 대책 필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인상 -각종 수당 등 수혜자 아르바이트 병행 가능 -발급 및 지원절차 간소화 -홍보 부족(다양한 채널 필요, 유튜브 활용)

## 라. 소결 및 시사점

본 절에서는 청년 FGI 및 심층 면접을 통해 청년들의 현재 생활실태 및 향후 정책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았다. 청년들은 이전세대들보다 취업 등으로 본인들이 훨씬 더 어려운 세대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과 맞물려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기대보다도 오히려 전체 경제상황이 나아지는 것을 기대했다. 이들은 부모세대 보다 본인들의 현재 삶과 개인의 행복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현재”의 삶을 희생하고, 직장에 몰입하기보다는 개인의 삶의 영역이 자유롭게 확보되기 바란다. 따라서 짧게 경험한 직장에서 과도한 노동시간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며,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개인의 행복 추구에 방점을 두기 때문에 “고소득” 보다는도 직업 안정성과 개인시간 확보에 더 많은 가치를 느낀다.

최근 90년대생에 대한 논의가 새롭게 나오기 시작했는데, 90년대생들의 의식은 기본적인 자아실현의 충족을 위해 힘쓰는 ‘유희 정신’에 기울어져 있다고 분석하였다. 물론 이들도 앞선 세대들과 마찬가지로 적자생존의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이전세대들과 다른 욕구가 있다는 점, 유희를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점은 이들의 세계를 다르게 만든다<sup>38)</sup>. 청년세대에게 최고가치는 삶의 안정성이고 이러한 것은 9급 공무원 시험의 경쟁을 상승으로 반증된다.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와 낮은 계층 이동의 가능성들은 청년세대에게 “지나친 꿈”을 강요하기보다 가장 공정한 시험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빈곤 청년층의 경우, 대학 졸업과 동시에 등록금 상환의 의무를 지게 되는데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 당연시되지 않고, “취업준비” 기간을 거쳐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이들에게 있어 마이너스 인생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들의 부채는 가족의 생활비로 가중되며, 취업이 되어도 현상유지 하기 에도 힘이 든다. 이들은 “취업준비” 기간을 될 수 있으면 짧게 가지려고 하므로 바로 취업이 가능한 직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취업은 바로 할 수 있지만, 고용 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현재 한국사회 청년 세대에게 청년 정책은 익숙하다. 이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며, 이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충분하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청년 정책은 이들에게 매력적이지만은 않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비해 정부 지원프로그램들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다는 인식이 강하다. 청년들은 오히려 “자비”를 들어서 질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의 경우 청년들의 불만이 컸다. 정부 지원프로그램의 후진성에 대한 불명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청년 세대의 욕구와 수요가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수당, 구직활동지원금 등도 마찬가지이다. 여러 제한과

38) 임흥택, 90년대생이 온다, 웨일북, 2018.

계약들은 청년들이 이러한 수당과 지원금의 수혜자가 되지 못하는 장애가 된다. 청년수당 등은 기본생활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와 병행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아르바이트 시간제한 등 때문에 오히려 청년수당을 가장 받아야 하는 빈곤청년들이 수당을 포기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주거정책에서도 마찬가지로 청년임대 주택의 접근성과 주거환경이 개선되어야 하며, 절차와 조건상의 제약을 최소화하여, 청년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공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층의 취향과 생활 방식이 제대로 반영되어 청년 임대주택이 청년들의 개인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이 확보되어야 한다. 주거환경과 질을 높여 청년들의 삶의 질 제고에 부합하는 주택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교육 및 문화권의 영역에 있어서 주목할만한 점은 예술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특화된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일반 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은 모두 일반 청년들 중심에 맞추어져 있으므로 이들은 자동으로 배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특화된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사회 청년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청년문제가 누구나 겪고 있는 보편적인 문제라는 접근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청년들이 요구하는 정부 정책은 한시적인 현금성 지원은 아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청년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의 측면과 그다음에 소득 및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선별적 지원이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다양한 청년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선도적으로 “삶의 질”에 대한 최소 기준을 확보해야 해야 청년들이 한국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 3. 현장관계자 조사 결과

#### 가. 조사대상 및 내용

현장관계자 조사는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광역 시도 및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5명과 지자체 청년위원회 혹은 민간 청년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활동가 5명을 대상으로 각 집단별로 총 2회 초점집단면접(FGI)을 실시하였다. 서면자료를 통해 집단면접에서 논의될 사안을 정리하여 사전에 배포한 후 의견이나 생각을 정리해 오도록 하여 면접조사의 효율성을 높였다. 간담회 방식으로 진행된 초점집단면접은 각 그룹별로 약 2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주어진 주제에 응답자의 의견이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하였다. 초점집단면접의 참여자 현황은 아래 <표 IV-3-1>과 같다.

<표 IV-3-1> 현장관계자 초점집단면접(FGI) 참여자 현황

구 분	성 명	소 속 및 직 위
공무원	○○○	경인지역 광역시도 청년기획팀장
	○○○	경인지역 광역시도 청년정책팀장
	○○○	경인지역 광역시도 청년기획팀장
	○○○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청년정책팀장
	○○○	충남 기초자치단체 대학청년팀장
청년활동가	○○○	광역시도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청년단체 사무처장
	○○○	기초자치단체 청년위원회 위원장
	○○○	청년협동조합 대표
	○○○	청년단체 대표

공무원 대상 간담회의 주요 논의내용은 각 지역에서 제기되고 있는 청년층의 현안문제와 역점사업 소개, 중앙정부의 현행 청년정책에 대한 평가, 향후 청년정책의 방향 및 추진전략에 대한 의견 등으로 하여 각 영역에서 다양한 세부 사안들이 토의될 수 있도록 논의내용을 구성하였다. 공무원 대상 간담회의 주요 논의내용은 <표 IV-3-2>과 같다.

<표 IV-3-2> 공무원 대상 초점집단면접 주요내용

구 분	논의내용
각 지역 청년층의 현안문제와 역점사업 소개	- 귀 지역 청년층의 현안문제 및 역점사업은?
	- 2018년/2019년 지자체 청년예산은? 전체 예산 중 비중은?
	- 청년정책에 대한 지자체장의 관심도는?
	- 지자체 특화사업 소개(예산규모, 대상, 추진방식 등)
	- 향후 계획하고 있는 청년정책 및 사업이 있다면?
중앙정부의 현행 청년정책에 대한 견해 및 평가	- 현재 추진 중인 정부의 청년 정책에 대한 의견 / 개선·보완점?
	- 정부 청년 정책의 성과 및 최우수사례를 꼽는다면?
	- 서울시, 경기도, 성남시 등의 청년(수당/배당) 정책에 대한 견해?
향후 청년정책의 방향 및 추진전략에 대한 의견	- 청년들이 가장 희망하는 청년정책?
	- 향후 중앙정부의 청년 정책 수립 시 추구해야 할 방향과 추진전략?
	-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청년정책 및 사업을 제안한다면?
	- 청년정책 수립 및 추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청년활동가 대상 초점집단면접의 주요 논의내용은 이들 역시 정책대상인 청년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청년문제에 대한 인식, 청년층이 직면하고 있는 현안 문제,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문제 중 청년층 문제가 다른 세대와 비교하여 특별히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 청년들이 겪고 있는 고용, 주거, 건강 문제의 실태는 어떠하며 대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의견을 중점적으로 수렴하고자 하였다. 또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현행 청년정책에 대한 평가, 청년들이 희망하는 정책, 청년활동가 혹은 청년단체의 입장에서 요구하는 청년정책의 방향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청년활동가 대상 초점집단면접의 주요 논의내용은 <표 IV-3-3>과 같다.

공무원 및 청년활동가 대상 초점집단면접에서 논의된 내용은 각 영역의 주제 별로 피력된 개인별 의견들을 종합하여 주요내용을 정리할 것이다.

&lt;표 IV-3-3&gt; 청년활동가 대상 초점집단면접 주요내용

구 분	논의내용
청년문제 인식 / 청년층의 현안문제와 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층이 직면한 현안문제, 대표적인 어려움 및 고민거리는?</li> <li>- 한국사회의 사회문제 중 청년층(다른 세대와 비교하여) 문제는 특별히 심각하다고 생각하는가?</li> <li>- 한국사회에서 청년층의 소득 불평등과 부채 문제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li> <li>- 청년층은 고용의 안정성을 어느 정도 보장받고 있는가?</li> <li>- 청년층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대안을 제안한다면?</li> <li>- 청년층의 기본적 건강권(의료보험, 의료 접근성 등)은 보장되고 있는가?</li> <li>- 청년층이 겪고 있는 문제해결을 위한 핵심적 정책대안을 제안한다면?</li> </ul>
정부의 현행 청년정책에 대한 견해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추진 중인 정부의 청년 정책에 대한 의견 / 개선·보완점?</li> <li>- 정부 혹은 지자체 청년 정책의 성과 및 최우수 사례?</li> <li>- 서울시, 경기도, 성남시 등의 청년(수당/배당) 정책에 대한 견해?</li> </ul>
정책욕구 및 청년정책의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들이 가장 희망하는 청년정책?</li> <li>- 향후 정부의 청년 정책 수립 시 추구해야 할 방향과 추진전략?</li> <li>-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청년정책 및 사업 제안?</li> <li>- 청년활동가 혹은 청년단체의 입장에서 정책적으로 바라는 점?</li> </ul>

## 나. 청년업무 담당 공무원 대상 간담회의 주요 논의결과

### 1) 각 지역 청년층의 현안문제와 역점사업

#### ○ 청년정책을 선도하는 서울시는 청년자치정부 운영에 주력

청년정책 및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서울시는 2012년부터 청년관련 조직을 구성하여 사업을 시행해 오다 2019년 1월 청년청으로 독립부서를 신설하고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다. 청년자치정부를 운영하겠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청년청을 두었고, 입법적인 측면에서는 청년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청년청 산하에 일반 공무원 20명, 임기제 공무원 27명 등 총 47명의 공무원 조직을 두고 있으며, 27명의 임기제 공무원은 모두 청년으로 구성된 점이 특징적이다.

대표사업에는 청년자율예산제, 청년인지예산제, 청년인재개발사업 등이 포함된다. 청년자율예산제는 2020년 청년이 자율적으로 500억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주민참여예산제와 차이점은 사업공모를 통한 선정방식이 아니라 청년 자치적으로 현안문제를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사업의 실행가능성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사업을 만들어가는 방식이라는 점이다. 청년인지예산제는 ‘성인지예산’ 편성과 유사한 방식으로 청년의 관점에서 배제됨이 없이 균형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다만, 차별의 관점이 아닌 세대간·정책간 연계, 갈등이 아닌 연대의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 한편 청년인재개발사업은 청년 1,000명으로 풀을 구성하여 각 실국에서 전문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외 지역교류사업(연간 14억 규모) 및 희망두배통장(경기도의 일하는 청년통장과 유사) 등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 **광활한 지역특성을 지닌 경기도 청년정책의 핵심은 기본소득 보장**

경기도의 경우는 2017년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내에 청년팀을 두어 청년 사업을 실시해 오다 2018년 복지건강국 내 청년복지정책과를 신설하여 복지정책의 관점에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지역은 매우 넓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하여 청년사업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31개 시군의 격차가 매우 큰데, 도시지역 청년들도 있지만 포천이나 연천 등의 지역은 대다수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아닐 수 있고, 또한 경기도에서 거주하고 있는 청년이라 할지라도 서울에 나가 생활하는 청년들도 상당수 있어 청년정책 추진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은 지역이다.

대표사업으로는 서울시 청년수당과 함께 잘 알려져 있는 기본소득사업(청년배당)과 일하는 청년통장, 군복무청년 상해보험가입 등이 있다. 청년배당 사업은 지역에 따라 청년들의 욕구나 주요이슈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모든 청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한다는 점에서 경기도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연간 100만원 지급으로 기본소득이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으나 경기도의 경우 일자리와 주거에서 취약한 청년을 대상으로 실험적으로 시도해 본다는 취지이다. 군복무청년 상해보험 사업은 군인이 되면 누구나 자동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연간 30억 정도 규모이다.

## ○ 기초자치단체도 지역의 특성과 요구에 부합하는 특성화 사업 추진

그 외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최근 청년조례를 제정하고 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정책추진 초기단계이나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영역으로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광명시의 경우 경기도 매칭사업으로 ‘산후조리원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동 사업은 경기도 청년배당 사업 확장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청년이 출산했을 경우 산후조리원지원비로 50만원을 지원한다.

한편, 천안시의 경우는 작은 규모의 도시이지만 11개 대학이 밀집해 있고 대학생이 전체 인구의 37%로 비중이 높은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여 대학생 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전까지는 주로 청년일자리 지원에 집중하였다면 문화지원 및 정주여건 조성 등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계획 중인 ‘스마트 도시센터’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낙후된 도시에 청년센터를 설치하여 청년공간으로 활용하면서 청년 간 상호교류를 지원하며 외지로 떠나는 청년들도 연결의 고리가 이어지도록 하는 사업이다. 청년뿐만 아니라 청장년을 핵심대상으로 하며 소통과 만남의 장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외, 한 개의 동에 대학이 5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있어 이를 중심으로 ‘대학인의 거리’ 조성사업을 약 320억 정도 예산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각 지자체와 기초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특성과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앞서 청년 대상 면접조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년들이 체감하는 정책효과는 일정부분 괴리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 2) 중앙정부 현행 정책에 대한 견해 및 평가

## ○ 부처 간 연계 및 민관 협력을 기초로 한 정책 거버넌스 구축 필요

서울시에서 가장 성공한 정책은 정책추진의 기초가 되었던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의견이 피력되었다. 현행법이나 제도로 풀 수 없는 문제를 거버넌스를 통해 해결하기도 하고 중앙정부가 풀 수 없는 규제를 풀어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물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 청년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안은 국토교통부가 관할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나 담당부서가 의지를 갖고 다양한 통로를 통해 해결점을 찾는다면 대안이 모색되기도 하고 담당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장이 누구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기도 한다. 서울시가 개방형 공무원을 두는 이유이기도 한데, 청년들과 소통이 가능하고 의견과 목소리를 직접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정책추진에 있어 용이하기도 하다는 의견이다.

○ 청년의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청년허브 등 청년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매우 분석적이고 합리적인 경우가 많은데 청년층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자료를 철저히 분석하고 준비한다. 그 중심에 전국 혹은 지역단위로 구축되어 있는 청년 네트워크가 매우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므로 정책참여 유도에 적극 활용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의 활동을 통해 집에서 나오지 않는 청년들을 발굴하여 프로그램에 참여를 유도하는 일도 가능하다. 청년층의 관심사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욕구를 어떻게 잘 조합하고 조정하여 정책화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관점이다.

○ 정책추진 부서에 컨트롤타워 기능 탑재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부서 단독으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관련부서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다양한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의 기능이 탑재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서울시 청년청의 경우 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어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하기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러한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면 정책의 성과가 높아질 것으로 보았다.

한편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관점이 달라지고 권한이 축소되기도 하고 확대되기도 하는 등 영향력이 달라지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행정력을 가질 수 있는 미래전략실 혹은 기획조정실 등의 영향력 있는 부서 산하에 청년정책을 수행하는 조직을 구성하는 편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았다. 최근에는 청년정책에 관심을 두는 지자체장이 대다수이므로 시장이나 도지사 직속으로 두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청년업무는 중간단계가 많아지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이다.

서울시 청년청이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중간관리자(실국장)의 컨트롤 없이 시장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결정하는 방식이므로 정책추진의 효율성이 담보된다고 볼 수 있다.

### 3) 향후 청년정책의 방향 및 추진전략

#### ○ 사업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의 정책 수립 및 추진

서울시의 경우 일자리 정책은 현재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청년문제의 핵심은 일자리라고 하더라도 고용문제는 일자리정책국에서 담당하는 것이고 청년청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한다. 일자리 창출로는 청년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으므로 의기소침해 있는 청년들의 자존감과 역량 강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청년을 수혜 대상으로 바라볼 경우 청년정책은 실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청년정책을 수행해서 어떤 성과를 도출해 낼 것이며, 궁극적으로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를 생각할 때 사업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다. 청년들이 자생적으로 커 나갈 수 있도록 토대를 형성해 주는 것이 청년정책의 핵심이라 보았다.

서울시가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은 Youth Center와 같은 자치구 단위의 청년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청년들이 필요한 예산(회의비, 사업 운영비 등)을 배정하고 스스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자생력을 키우도록 하는 구조이다. 자치구에서는 업무 부담을 인식하여 반대하는 입장이 있을 수 있으나 서울시의 기본방침은 청년들로 하여금 리더십을 발휘하고 정책을 이끌어가는 당사자임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정책목표이기도 하다. 서울시가 그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관주도로 시행해 온 것에 대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찾은 해답이기도 한데 일종의 정책 패러다임 변화이기도 하다.

#### ○ 일자리 정책을 넘어서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개발

청년정책을 일자리 정책의 하위범주로 넣어서 추진하다 보니 진전이 오히려 안 된다는 의견이다. 사회문화 전반적인 영역으로 확대하여 넓은 시각에서 풀어가야 할 문제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천안시는 일자리를 벗어나 생활안전, 문화나 여가 등에 관심을 두어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최근 정책 전환을

시도하였다. 일자리가 궁극적인 문제해결은 아닐 수 있고, 결혼, 저출산까지 연결되는 문제가 바로 청년문제이므로 우선 중앙정부는 사회구조적인 문제해결에 집중해야 하고 지방정부는 이와 같은 구체적인 사안과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 다. 청년활동가 대상 초점집단면접(FGI)의 주요 조사결과

### 1) 청년문제에 대한 인식

#### ○ 경제적 의존상태와 경제적 취약성이라는 이중고

빈곤문제 자체가 경제적 취약성에 대한 문제인데 청년층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상황에서 경제적 취약성을 이중으로 겪는 점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나아가 가족들이 중산층이라고 해서 그 청년들이 빈곤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취업을 하거나 자립할 수 있는 상황에서 독립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 가족을 떠나게 되는 경우 사회구조상 경제적 취약성을 벗어나기 어려우며 이 경우 중산층의 청년조차도 빈곤상황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흔하다.

#### ○ 만연한 사회·경제적 불평등

청년세대에서 회자되는 부모의 대물림에 따른 격차, 수저계급론, 학력 혹은 학벌, 특히 고졸과 대졸의 격차, 성별에 따라서 여성 청년들이 겪는 차별의 문제,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우리사회에 만연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문제의식이 컸다. 고졸청년들이 겪는 문제의 경우 대학을 가지 않는 결정을 보통 특성화고 학생은 중학생 때, 일반계고 학생들은 고등학교 때 하게 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집안의 경제적 상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노동시장에서의 이행에서 더욱 열악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취업진입 시기와 학교 졸업 시기가 맞물리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도 상황을 악화시키게 되며, 정보 접근, 인적 네트워크, 기회의 한계 등이 연결되기도 한다. 이처럼 노동시장 이행기에 성별, 지역에 따른 격차에서 오는 불평등 경험과 그로 인한 사회적 자본의 차이를 경험하게 된다는 문제의식이 강했다.

### ○ 결핍된 세대라는 사회적 인식

청년들은 무언가 복지혜택을 받아야 하는 부족한 사람들, 빈곤한 사람들처럼 사회적 프레임이 잡혀가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다. 청년에 대한 이미지는 전 세계 어디서나 도전을 통해서 성공하고 실패하기도 하며, 또 어떤 사회든 실패가 있고 빈곤층이 생겨나기 마련인데 그 빈곤이 본인의 탓이 아니고 국가의 탓이라고 프레임을 만들어가는 사회적 현상을 지적하며, 여기에서 일부 청년 단체들도 한 번은 성찰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 2) 현행 청년정책에 대한 평가

### ○ 일자리 정책 개선의 필요성 제기

서울/수도권 중심의 일자리, 서울 지역의 기회 요인이 다른 지역보다 많을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청년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된다고 보았다. 경기도 지역의 청년들도 거의 대다수가 근로환경의 쾌적성,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편리한 교통 등을 이유로 서울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직업을 찾으려하기 때문에 미취업 상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청년들이 원하는 직업군이 제한적이라는 것도 문제라는 인식이 있다. 모두 한정된 직업군에 취업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데, 미취업 청년과 빈곤청년이 늘어나는 것은 실제로 일자리 부족의 문제라기보다 극히 한정된 괜찮은 일자리에만 매달리기 때문이라는 의견이었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많아져 경쟁이 심해지고 다양한 진로에 대한 고민보다 스스로를 자격증으로 증명하려는 시도들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서울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소도시에서도 좋은 일자리가 있다는 믿음을 주거나 실제로 양질의 일자리가 지역으로 분산되도록 정책이 추진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 ○ 삶과 직업군의 다양성을 조망할 수 있는 기회부족

청년들은 사회생활에 첫 발을 디딜 때 중소기업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소기업에 입사했다는 것은 그 회사의 가치를 보고 입사했다기보다는 적성에 맞는가를 고민하고 탐색한 후 근속여부를 결정하기도 한다.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3~4개월 만에 적응 못하고 퇴사하는 청년을 질책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는 지적이다. 적성에 맞는 직업을 체험해 볼 기회가 교육과정에

없었기 때문에 학교 커리큘럼을 한 번 더 점검해 보아 전반적인 교육과정의 개선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고민해야 하고 청년들이 직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대안들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 청년들의 생활양식과 가치관을 반영하지 않은 주거정책

세어하우스나 공동주택 등이 해결책인 것처럼 대안으로 나오고 무언가 매력적인 것처럼 프레임을 잡아가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다. 직장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과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처럼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청년들의 소비 구조 속에서 공동체 생활 자체가 대안인 것처럼 사회적으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지만 실상은 개인의 사생활과 자유를 중시여기는 대다수 청년에게 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 사회의 유희공간을 활용한 청년주거단지를 조성하여 저비용으로 임대하는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한편 주거정책과 일자리정책을 연계하여 지역의 유희공간을 청년에게 오픈하여 리모델링하게 하고 지역의 로컬상품을 판매하도록 하는 방안과 예술가들을 정착시켜서 리모델링하게 하여 안정적인 거주지가 되도록 하는 방안은 도시재생의 측면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모델이라는 의견이다. 유희공간과 소외된 계층을 연결하려는 측면에서 참신하고 효과적인 정책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3) 청년정책의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

○ 취약청년을 중심으로 공정한 기회 제공 및 정보의 공유

청년층의 사회경제적 상황은 격차가 심해 사회출발점에서의 기회도 차이가 있으므로 출발을 비슷하게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책 욕구가 높은 니트 청년이나 취약계층 청년들에게 오히려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지 않고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 구직수당 50만원을 지급하는 어느 지역의 사업공모에 신청한 청년의 대다수가 공시생이거나 경제적 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청년으로 정작 정책수혜가 필요한 니트 청년과 취약계층 청년은 정보공유가 누락되어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불합리한 현상이 발견되기도 한다. 정책은 만들어지고 확대되고 있지만 정보의 접근성이 낮거나 활용방법을 모르는 청년들은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고 정보습

특에 유능한 청년, 정책수혜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청년들에게 지원이 돌아가는 불합리한 상황이 전개되기도 한다. 시작점에서 불리한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부여되고 정보의 누락이 없도록 세심한 정책설계가 요구된다.

#### ○ 청년들의 참여가 용이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정책추진

청년들이 가장 쉽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이 지역이고, 가장 청년들을 필요로 하는 것도 지역이므로 청년들이 지역에서 자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지역과 청년을 밀접하게 연계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참여기회를 만드는 시도가 청년문제를 해결하는 주요한 통로이므로 중앙단위가 아니라 지역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청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정책 및 제도개선의 핵심은 전달체계라는 의견도 있다. 일자리 부족과 직업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성 등 다양한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사회의 사회복지정책 전달체계 자체의 문제점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사나 직업상담사 등 직접적인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고, 직업상담사 한 명이 담당해야 되는 정책 대상자가 효율적인 업무처리의 범위를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아 기대 이상의 사업성과를 내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

빈곤청년 지원 정책

1. 연구결과 논의
2. 정책제언



본 연구에서는 청년과 관련한 주요 현안과 이슈, 정책 환경을 분석하고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및 사업을 개괄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주요 외국의 취약계층 청년 관련 우수 프로그램 사례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정책적용의 가능성을 탐색해 보았다. 청년 대상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 및 현장관계자 대상 초점집단면접(FGI)을 통해 청년들이 직면한 현안문제와 정책욕구에 관한 실증적 자료를 수집하고 정책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청년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 1. 연구결과 논의

### 가. 청년층의 현안문제와 정책적 대응의 과제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 청년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제기되고 있는 주요 이슈와 특징을 선행연구를 통해 파악하고 청년 및 청년정책에 관한 각종 통계와 현황자료를 검토하였다. 정책적 함의를 갖는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청년 빈곤문제의 대두와 사회적 배제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 대학등록금의 가파른 상승으로 인한 학자금 대출의 증가와 청년층의 신용부실, 주거비를 부담할 능력의 한계로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 등 일자리 빈곤, 경제적 빈곤, 주거 빈곤 등을 포괄하는 청년 빈곤의 문제는 사회적·정치적 현안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청년 빈곤, 실업, 저소득과 같은 경제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보장, 공공제도, 사회적 관계, 사회심리적 차원에 이르는 포괄적인 차원에서 청년층의 문제를 접근하는 ‘사회적 배제’ 관점이 주목받고 있다. 안정된 일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구직 활동 자체를 포기하는 청년들은 노동시장에서 배제되는 것이며, 사회보험제도는 취업 상태와 임금수준과 같은 노동시장의 지위와 연결되어 노동시장에서의 지위가 불안정하거나 임금수준이 낮은 청년층은 공공제도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낮아 결국 제도로부터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나아가 경제적 자원의 배제, 문화적 기

회의 배제, 사회적 관계의 배제로 이어져 결국 사회적으로 낙오된 집단으로 인식 될 위기에 처해 있다. 따라서 청년 빈곤의 문제는 일부 소수 청년을 위한 복지적 측면만이 아니라 다수 청년의 전반적인 삶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며, 청년들의 빈곤화는 다수 청년이 직면한 사회문제라는 인식의 확산과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 ○ 통계수치로 본 청년층의 빈곤화

본 연구 제 2장에서 분석한 각종 공식통계 자료에 의하면, 청년 실업률의 증가,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 고학력 니트청년의 증가, 청년 1인가구의 빈곤율, 청년층의 채무액, 주거 빈곤 등의 수치는 최고조에 달해 있다.

청년의 실업률을 살펴보면, 2018년 20~24세 청년 실업률이 10.7%로, 20-24세(8.8%)와 30-34세(3.4%) 실업률과 비교하여 가장 높았다(<표 II-3-1>참조). 청년층(15~29세)의 첫 일자리 평균임금은 200만원 미만의 일자리가 전체의 79.4%로 매우 취약하며(<표 II-3-8>참조), 오랜 기간을 준비하여 취업한 일자리의 평균 근속기간은 1년 5개월 정도이다(<표 II-3-6>참조). 2019년 현재 계약기간 1년 이하 일자리가 25.3%, 시간제 일자리의 비중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며 2019년 19.8%에 달해 청년층 근로여건의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II-3-2>참조).

니트 청년층 규모도 2008년 76만 2천명에서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16년에는 93만 4천명에 달했고, 이는 전체 청년(15-29세) 인구 중 9.9%에 해당하여 2008년 7.8% 대비 2.1%p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표 II-3-9>참조). 특징적 현상은 구직니트의 고학력화 및 고졸이하 청년의 비구직 니트화이다(<그림 II-3-4>와 <그림 II-3-5>참조). 비정규직 고용비중이 확대되면서 청년들이 원하는 안정된 일자리가 부족하게 되었고, 대학을 졸업하여도 좋은 일자리로의 이행이 어려워져 대졸이상 구직니트 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영향에 따른 빈곤의 대물림과 역량개발의 기회부족으로 고졸이하 청년의 비구직니트화가 심화 되고 있는 현상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청년가구 중 청년 1인가구의 빈곤율은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2018년 17.7%로 다른 가구유형에 비해 최고치이고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의 빈곤율(9.3%)과 비교하여 월등히 높았으며(<표 II-3-12>참조), 19-24세 청년 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29.7%로 다른 연령대(25-29세(16.1%)와 30-34세(12.8%))에 비하여

큰 폭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II-3-13>참조). 30대 미만 청년의 평균 채무액도 2017년 기준 5,000만원 수준으로 5년 전 2,300만원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여(<표 II-3-15>참조) 청년층의 경제적 빈곤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청년(20-30세)의 주거점유 형태는 월세가 1995년 19.7%에서 2015년 37.9%를 기록하여 최근 10년 사이 월세 비중이 두 배 가량 증가한 반면, 전세의 비율은 1995년 44.5%에서 2015년 25.2%로 크게 줄었으며(<표 II-3-19>참조), 최저주거기준(시설, 면적, 방수 등)과 지하 및 옥탑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는 주거빈곤율은 2015년 청년 1인가구가 22.6%로 나타나 청년가구(17.6%) 및 전체가구(12.0%)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았다(<표 II-3-25>참조).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청년 주거 빈곤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는 결과이다.

이 외, 20대 청년 우울증 환자의 지속적인 증가, 건강증진을 위한 여건 부족, 문화·여가 활동에서의 소외 등도 정책적 관심과 대책마련을 필요로 하는 영역이라는 점을 각종 공식통계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정책추진의 한계와 향후과제

청년문제가 사회적 현안과 이슈가 되면서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정책적 관심을 집중해 왔다. 2009년 청년(15~29세) 미취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청년관련 의안은 2019년 6월 20일 현재 총 18건에 이른다. 전국 17개 광역시도에도 총 52개 청년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시군구 단위의 기초자치단체에는 총 294건이나 된다. 경기도의 경우 30개 시·군에 총 81개 조례가 제정되어 있을 정도로 자치단체장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청년지원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고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 운영의 여건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성과이다.

그러나 정부 정책이 청년 일자리와 취업지원 정책에 집중되어 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과 프로그램이 정책수요자인 청년의 욕구를 충족하기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청년들이 체감하는 정책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대안이 모색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보고에 따르면, 2019년 5월 29일 현재 중앙정부의 정책 및 사업은 총 166건 등록되어 있으며, 그 중 취업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은 105건으로 전체의 약 2/3(63.3%)에 해당된다. 다음으로 주거와 금융 지원 37건, 창업지원 19건, 생활복지 5건으로 생활복지 영역의 사업이 상대적으로 미흡함을 알 수 있다. 광역시·도의 경우는 총 766개의 사업(중복포함) 가운데 취·창업지원 관련 사업이 401건으로 전체의 3/4정도를 차

지하여 취·창업 비중이 중앙정부와 비교하여 더 높았다.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도 개선이 필요하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근로인센티브,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희망키움통장,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 경감, 주거안정 월세대출 등의 사업이 있으나 양적으로 부족할 뿐더러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가 낮은 수준이다.

## 나. 해외사례의 정책시사점

앞서 제3장에서는 니트 청년을 정책 대상으로 하고 있는 EU의 청년보장제도 (Youth Guarantee)와 오스트리아, 핀란드,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의 니트 청년 대상 특정 정책을 검토하였다. 선진 해외사례에서 우리나라에 청년정책 수립에 참고가 될 만한 주요 정책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 청년고용문제 해결에서 정책대상의 명확한 설정

대부분의 EU 국가들은 니트를 청년고용문제 해결의 주요 정책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때 니트는 취약계층부터 보통의 실업자까지 다양한 청년층을 포괄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이나 공공부문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졸 고학력 청년도 모두 니트로 분류되지만 여기엔 교육이나 훈련 기회의 부족이 아니라 미스매치라는 구조적 문제에 근원을 두고 있어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며, 한정된 재원으로 가장 취약한 청년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취약한 특정 계층에 정책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구의 소득계층을 기준으로 저소득 청년층에게 우선적인 기회를 제공하거나 순수고졸자의 니트화 확률이 특히 높으므로 고졸자를 특별 지원하는 방안이 합리적일 수 있다. 추가적으로 대기업이나 공공부문 취업준비를 중단하고 눈높이를 현실화하여 중소기업에 취업하려는 대졸 고학력 취업준비생의 경우 정책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 ○ 정책추진체계 정비 및 민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

청년 빈곤문제는 일자리, 주거, 교육·훈련, 건강, 사회복지 등 다양한 영역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특정 부처의 노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부처

간 협력체계를 통해 정책과 사업의 중복으로 인한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를 차단하고 각 부처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 공통의 정책기조 하에 여러 부처들을 하나의 조직아래 둔 미국사례와 여러 부처가 협업할 수밖에 없도록 공통의 플랫폼을 구축한 핀란드의 원스톱센터는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참고할만한 유용한 사례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분담과 파트너십 구축도 중요하다. 최근 핀란드에서는 ‘청년보장에서 지역보장으로’라는 슬로건을 강조하여 지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청년정책은 궁극적으로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정책설계와 집행이 중요하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법과 제도라는 거시적인 틀을 모든 것에 일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정책전달의 유연성을 발휘하여 지방정부 자체적으로 실행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기업과 노동조합, NGO와 청년단체 등 민간부분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민관 합동의 정책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핀란드 사례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핀란드 청년보장은 공무원, 민간 기업, 시민조직, 청년들의 협력을 토대로 하는 민·관 참여 모델로 교육문화부, 고용경제부 등 중앙 부처뿐 아니라 전국교육위원회, 노조, 고용주 협회, NGO, 청년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보다 실제적인 정책 대응 방안이 모색될 수 있었다.

#### ○ 원스톱서비스센터 설치·운영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핀란드, 프랑스, 룩셈부르크, 루마니아, 일본 등은 청년전용 원스톱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 청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50개 지방자치단체에 센터를 두고 있으며, 프랑스도 지역 청년센터를 설치해서 고용, 훈련, 건강, 주거 문제 등에 대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고 룩셈부르크나 루마니아도 청년 전용 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한편 일본의 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과 히키코모리 지역지원센터도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출입 대상자가 니트나 히키코모리로 명확히 정해져있다는 점에서 유럽 사례와 차이가 있다. 핀란드를 포함한 유럽의 사례는 반드시 니트 청년만이 아니라 모든 청년들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오히려 니트 청년들이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니트 청년들에게 어느 방식이 편의성과 접근성 측면에서 더욱 효과적일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나 원스톱서비스센터 내에 특별히 니트 청년을 포함한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서비스가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 조기개입과 발굴시스템 구축

선진외국의 다수 국가들은 니트 상태가 장기화되어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이 어려워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니트가 된 시점부터 바로 정책개입을 하는 예방적 대응에 주력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니트 위험성 지수’(가칭)를 개발하여 중고등학교에서 니트화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을 진단·파악하고 니트가 되기 전에 학교 교육을 통해 개입하려는 시도는 조기개입의 효과성 측면에서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니트 청년을 직접 찾아가는 발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도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도와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청년들은 특성 상 외부와 단절하고 사회활동 자체를 기피하는 성향이 강하므로 정책 안으로 유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U 청년보장제도에 등록된 청년은 전체 니트의 37.5%에 불과하며(2015년), 특히 가장 취약한 청년들의 등록이 더 미흡한 상황인데 반해, 핀란드의 경우 전체 니트의 70% 이상이 정책 지원을 받고 있다. 이는 니트 청년을 찾아가는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 니트 청년 발굴에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으로 정보와 정책 접근성이 취약한 니트 청년을 먼저 찾아가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 다. 청년 인권상황 실태조사의 정책적 함의

전국의 19~34세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청년 20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 및 초점집단면접조사(FGI)의 주요 분석결과가 갖는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 ○ 취약계층 정도에 따른 정책 우선순위 선정

본 연구수행의 일환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청년층을 하나의 집단으로 범주화하기보다 다양한 범주로 유형화하여 취약계층 정도에 따라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차별화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조사대상 청년은 부모동거, 주생계부양자 여부, 가구소득 등의 경제적 형편과 자원에 따라 계층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부모와 동거하고 있지만 본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와 부모에게서 독립하였지만 저소득층인 경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음이 여러 조사결과 입증되었다. 또한 주거환경의

열악성 정도, 부채 보유, 돈 때문에 식사를 거르거나 사람 만나는 것을 꺼리는 등의 경제적 빈곤 경험은 <부모와 따로 살고 가구소득이 낮은 유형(독립-저소득)>과 <부모와 따로 살고 주생계부양자가 본인(독립-본인)>인 유형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청년 1인 가구에 정책적 관심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 ○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에 대한 고충 심화

청년들은 부모로부터 독립여부와 상관없이 주거비와 생활비로 인한 어려움을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독립에 필요한 주거비 마련이나 독립 이후 생활비 부담 등의 경제적 이유로 분가를 미루고 있고,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 역시 주거비와 생활비부담에 따른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다. 거주지의 물리적 조건(교통 접근성, 난방, 온수 등)이나 거주지 내부 쾌적성(방음, 채광, 환기, 벽이나 바닥상태 등)으로 측정한 주거환경의 열악성 정도 역시 <부모와 따로 살고 가구소득이 낮은 유형(독립-저소득)>과 <부모와 따로 살고 주생계부양자가 본인(독립-본인)>인 유형에서 가장 높아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빈곤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IV-1-6>과 <그림 IV-1-7>참조).

주거지원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정책대상자의 수요와 욕구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 청년 대상 심층인터뷰 결과, 정부의 청년주거 지원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대다수로 절차와 조건의 복잡성 외에 청년임대주택의 경우 낮은 접근성과 주거환경의 열악성 문제를 제기하며 선호하지 않았다. 공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층의 취향과 생활 방식이 제대로 반영되어 청년들의 삶의 질 제고에 부합하는 주택을 제공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 ○ 청년의 30%가 부채 보유, 경제적 빈곤의 심각성 고조

조사대상 청년의 10명 중 3명 정도가 현재 부채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부채의 주된 원인은 주거비, 학자금 대출, 생활비 때문으로 파악되었다. 부채의 이유는 연령별로 상이한 특징을 보이는데, 19~24세의 초기 청년의 경우 학자금 대출(60.3%)이, 25~29세는 생활비(25.0%)가, 30~34세 후기 청년은 주거비(53.9%) 때문에 빚을 지게 된 경우가 가장 많은 것도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표 IV-1-8>참조). 지난 10년간의 생활수준의 변화 정도를 묻는 질문에 나빠졌거나 차이가 없는 경우(67.3%)가 좋아진 경우(32.7%)보다 두 배 정도 많았으며,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돈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것이 꺼려지거

나(66.9%), 식사를 거르거나 양을 줄인 경험이 있다(49.5%)고 하여 심각한 수준의 경제적 빈곤을 경험하고 있었다(<그림 IV-1-9>참조). 이러한 경제적 빈곤 경험은 대체로 부모동거 여부와 주생계부양자에 따른 차이가 공통으로 발견되는데 부모에게서 독립한 경우가 더욱 열악한 경제 상태에 있어 주거 독립이 곧바로 경제적인 자립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시사했다. 가구소득이 낮은 상태에서 독립한 경우가 가장 열악한 상황으로 독립한 청년 중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그림 IV-1-10>과 <그림 IV-1-11>참조).

### ○ 정부의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개선 필요성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하여 운영하는 직업훈련 및 교육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내일배움카드 등)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년의 비중은 26.9%로 상대적으로 낮고, 참여자의 절반 정도만(프로그램 다양성 55.0%, 정보 접근성 55.8%, 현장 업무 연관성 53.9%,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46.8%)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그림 IV-1-13>참조).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로는 인지를 못 했거나 알더라도 필요성을 못 느끼고, 심지어 관심이 없어서 참여를 안 한 경우도 상당수다.

이러한 불만족은 청년 대상 심층인터뷰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빠른 사회 변화에 정부 지원프로그램들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므로 오히려 “자비”를 들여서 질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대표적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 청년들의 불만이 컸다. 직업훈련이나 교육프로그램 자체가 청년들에게 큰 유인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 ○ 우울 정도가 높은 경제적 취약집단의 정신건강 증진 방안 마련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우울(cesd-10)과 불안(GAD-7) 지표를 통해 측정한 결과, 우울은 평균 9.76점(30점 척도), 불안은 5.39점(21점 척도)으로 나타났다(<표 IV-1-19>참조). 우울의 경우 우울증세 판정 기준인 10점에 근사한 값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울과 불안 모두 경제적 요인(개인소득, 가구소득, 주생계부양자)에 따라 정도의 차이를 보였는데, <부모와 따로 살지만 가구소득이 낮음(독립-저소득)> 유형이 가장 높은 수준(우울 11.20점, 불안 6.11점)이었다(<그림 IV-1-17>참조). 특히 여성, 중기 청년, 개인소득이 140만원미만,

가구소득이 낮은 집단, 본인이 주생계부양자인 경우 우울 증세의 판별기준인 10점을 넘어섰다. 이들 집단을 대상으로 만성화된 불안과 취약해진 정신건강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경제적 빈곤으로 통증을 참거나 의료(치과 포함) 기관 방문을 포기한 경험이 22~27% 정도이며, 위급한 상황이나 만성질환 치료를 포기한 경우도 10% 내외로 나타나 의료 관련 빈곤을 경험하는 청년도 상당수에 달했다(<표 IV-1-20>참조). ‘병원 방문 포기’와 ‘치과 치료 포기’ 경험 모두 <부모와 동거하지만 본인이 주생계부양자(동거-본인)> 유형과 <부모에게서 독립하였지만 본인이 주생계부양자(독립-본인)> 유형이 의료 빈곤을 경험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그림 IV-1-20>참조). 즉 주거안정성과 생활안정성에서 취약한 집단의 건강상태가 더욱 좋지 않은 점에 주목하여 의료 빈곤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 ○ 주거안정, 일자리, 생활비 지원에 대한 높은 정책적 욕구

일상생활에서 청년으로서 가장 어렵거나 불편한 점 1순위로 청년들은 ‘안정적 일자리 마련(37.5%)’을 꼽았고, ‘주거·임대 등을 위한 주거비용 조달’ 18.0%, ‘생활비 마련’ 17.5%, ‘대학 등 교육문제’ 6.1%, ‘결혼 및 연애’ 5.3%, ‘외모, 출신대학, 성별 등으로 인한 차별’ 5.2% 등의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그림 IV-23>참조). 이는 생계와 생존을 위한 어려움과 고충이 무엇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사한 맥락에서 청년들은 정부가 지원해야 할 정책으로 ‘주거 안정’(32.1%)을 1순위로 꼽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 17.5%, ‘생활비 지원’ 17.1% 순으로 응답하고 있어(<그림 IV-1-24>참조)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이 청년정책에서 우선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 라. 청년활동가 및 현장실무자 조사결과의 정책시사점

청년활동가 및 청년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초점집단면접조사 결과로부터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정책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각종 통계 데이터 구축

집단 내 다양성과 역동성이 큰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정확한 실태파악이 정책수립에 반영되어야 한다. 청년정책의 경우 지역단위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고, 지역마다 청년들의 수요와 욕구 영역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일자리와 주거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 있는가 하면, 청년 공간이나 여가·문화 활동, 청년자치활동 등에 대한 수요가 많은 지역이 있는 등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주기적인 욕구조사나 실태조사를 통해 기초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책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 청년업무를 가장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 전달체계 확립

현재 각 지역에서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는 매우 다양하다. 서울시처럼 시장 직속으로 청년청을 두어 청년업무를 총괄하며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갖고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과 단위 혹은 ○○팀 단위에 두어 사업추진이 매우 제한적이고 어려움이 가중되는 경우도 흔하다.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부서 단독으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관련부서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다양한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려면 행정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획조정실 등 영향력 있는 부서 산하에 청년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여기에 전국 혹은 지역단위로 구축되어 있는 청년 네트워크를 정책수립과 개발에 적극 활용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청년층의 기본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일자리정책과 취업지원 정책 중심에서 사회문화 전반적인 영역으로 확대하여 정책 전환을 시도해야 할 시점이다. 일자리가 궁극적인 문제해결은 아닐 수 있고, 결혼기피 및 저출산 등 사회문제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는 이슈가 바로 청년 문제이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사회구조적인 문제해결에 집중하고 지방정부는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정책개발과 추진에 주력해야 한다. 나아가 현행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청년빈곤 극복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며 경기도 청년배당도 기본소득이라고 보기엔 액수가 적고 정책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

기되고 있다. 청년정책은 경제적 지원과 일자리 창출이 아닌 다른 다양한 측면의 접근이 필요한데, 졸업 이후 경제활동을 시작하기 전까지 준비기간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안, 특히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에 대한 금융지원을 포함하여 적성과의 부합성을 탐색하는 과정에 대한 정책적 고려도 요구된다. 일자리 제공을 통해 취업에 성공했다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속성을 갖기 위한 대안이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 ○ 34세 이후 후기 청년층에 대한 정책적 고려

34세 이후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법과 제도가 유일하고 그것도 창업하는 청년들에게만 적용된다. 취업을 희망하는 후기 청년 연령대의 일반청년들은 공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기업에 취업하기란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미취업 상태가 장기화된 후기 청년층은 취업 실패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현실인데 반해 현행 정부의 청년지원 정책은 주로 사회초년생 지원에 맞춰져 있으므로 후기 청년층까지 정책대상을 확대하거나 후기 청년층에 대한 신규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 ○ 니트 청년을 포함한 하위 10~20% 청년층에 집중적인 지원

정책 욕구가 높은 니트 청년이나 사회경제적으로 취약계층인 청년들에게 오히려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지 않고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불합리성을 개선해야 한다. 정보의 접근성이 낮거나 정책의 활용방법을 인지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오히려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시작점에서 불리한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부여되고 정보의 누락이 없도록 정책소외 우려 대상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정책 홍보의 확대 및 홍보방법의 다각화 등 세심한 정책설계가 요구된다.

## 2. 정책제언

### 가. 기본방향

위에서 분석된 연구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추진되어야 할 빈곤청년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정책의 핵심가치를 상생, 자립, 안정, 도약으로 정하고, 각 핵심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방향성을 청년정책의 추진기반 구축, 청년의 기본생활 보장, 청년 삶의 질제고와 사회적 관계망 형성, 청년의 원활한 미래준비로 설정하였다. 정책의 핵심가치를 실현하는 정책목표이자 정책추진의 전략목표가 되는 청년지원 정책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인프라를 구축한다.** 청년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제정을 조속히 실현하며, 새로이 제정될 청년기본법(안)에 취약계층 청년 지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한다. 현재 청년정책과 사업이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어 정책의 효율성과 체감도가 낮은 현실을 고려하여 부처 간 정책을 조정하고 공통의 정책기조 하에 청년정책을 주도해 나갈 정부 정책 총괄기구를 마련하며, 핀란드 원스톱센터와 유사한 취약계층 청년지원을 위한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대상자를 발굴하고 밀착사례관리 한다. 청년정책이 지역 중심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며,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하되, 정책전달의 유연성을 발휘하여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정책추진의 실행력을 확보하도록 한다. 나아가 기업, NGO, 청년 단체 등 민간부분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민관 합동의 정책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실제적인 정책 대응이 실현되도록 한다.

**둘째, 최소한의 기본생활권 보장을 위한 대안을 마련한다.** 특히 니트 청년과 저소득 청년 등 취약계층 청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미취업 문제, 학자금 대출의 증가와 신용부실, 주거비 부담으로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 등 일자리 빈곤, 경제적 빈곤, 주거 빈곤 등을 포괄하는 청년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한다. 니트 청년을 포함한 빈곤청년의 경우 정책대상 내부의 이질성이 매우 큰 집단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며, 각각의 유형에 대한 정확한 실태와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주기적인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청년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한다.** 최근에는 청년 실업과 주거문제, 저소득과 같은 사회·경제적 차원뿐만 아니라 공공의료제도, 사회보장, 개인의 사회적 관계 및 심리적 차원에 이르는 포괄적인 영역에서 청년층이 배제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과 같이 노동시장 지위가 불안정하거나 임금수준이 낮은 청년층은 사회보험이나 공공제도의 수혜가능성이 낮아 결국 제도로부터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나아가 문화적 기회의 배제와 사회적 관계의 배제로 이어져 결국 사회적으로 낙오된 집단으로 전락하게 되므로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한다.

**넷째, 미래준비를 위한 혁신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한다.** 장기적 미취업 상태의 청년을 포함하여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형성하는데 일정 수준 성공한 청년들이 원만하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한다.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장기적인 꿈과 진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일정 한도의 목돈 금융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적 활력을 부여하고 미래의 자립기반을 형성하도록 지원한다. 일하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도와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미래준비의 토대를 제공하며 중소기업 연금제도 도입을 검토하여 청년고용의 구조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현실화한다.

<그림 V-2-1> 빈곤청년 지원정책의 핵심가치와 전략목표



## 나. 정책추진과제

위에서 제시한 정책방향에 따라 향후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정책목표는 정책기반 구축, 기본생활 보장, 삶의 질제고, 원활한 미래준비의 4개영역으로 구분하고 총 13개의 정책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정책기반구축 영역에서는 아직까지 법정비와 청년정책을 주도하는 정부의 추진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법정비와 정부 거버넌스 구조 확립을 위한 신규과제 위주로 제안하였으며, 그 외 영역에서는 현행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과제를 개선·보완하거나 확대·강화하는 과제가 주를 이루고 있고, 청년 채무변제 지원기관 시범운영, 미래투자기금사업 운영, 중소기업 연금제도 도입 등 중장기적 신규과제도 포함하고 있다.

<표 V-2-1> 빈곤청년 지원정책의 목표 및 추진과제

정책목표 (추진전략)	추진과제	정책 유형 <sup>1)</sup>	추진 기간 <sup>2)</sup>	우선 순위 <sup>3)</sup>	주관부처
상 생 (정책기반구축)	1) 취약계층 청년 지원을 위한 법 정비	신규	단기	★★★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2) 니트청년 발굴 시스템 및 원스톱서비스지원체계 구축	신규	단기	★★★	고용노동부
	3) 청년빈곤 대응 정부 거버넌스 구조 확립	신규	단기	★★	국무총리
자 립 (기본생활보장)	4) 청년 미취업자 지원 사업 보완 및 확대 (실업부조/구직지원금/자활프로그램)	개편	단기	★★	고용노동부
	5) 전월세보증금 지원 대상 확대	개편	단기	★	국토건설부
	6) 청년 공공주택 보급 확대 및 첨단 주거복합단지 조성	개편	장기	★★★	국토건설부
	7) 청년 채무변제 지원기관 시범운영	신규	중기	★★	금융감독원
안 정 (삶의 질제고/ 관계망 형성)	8) 정신건강검진 확대 및 상담전문기관의 접근성 제고	개편	단기	★★	보건복지부
	9) 청년층 문화여가 활동비 지원 및 해외교류 참여 확대	기존	단기	★	문화체육 관광부
	10) 청년 생활나눔 프로젝트 및 청년협동조합 활성화	개편	중기	★★	국토건설부/ 고용노동부
도 약 (원활한 미래준비)	11) 청년 미래투자기금사업 시범운영	신규	중기	★★	청년위원회 (가칭)
	12) 청년자산형성계좌제도 운영 확대	개편	중기	★★★	고용노동부
	13) 중소기업 연금제도 도입	신규	장기	★★	중소벤처 기업부

주 1: 기존(현행 정부추진과제), 개편(현행 정부 정책과제 중 개선·보완 및 확대·강화 과제), 신규(신규 추진과제)

주 2: 단기(1~2년), 중기(2~3년), 장기(4~5년)

주 3: ★ 보통, ★★ 중요, ★★★ 최우선 추진을 의미함

각 영역에 제시된 세부 정책추진과제의 중점대상, 주관부처, 정책유형, 추진기간, 예산확보방안, 사업의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상 생 (정책기반구축) ▶▶▶**

**1) 취약계층 청년 지원을 위한 법정비**

우선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점대상 : 미취업, 장기실업, 니트, 고졸이하, 저소득 청년</li> <li>■ 추진체계 :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국회</li> <li>■ 정책유형/추진기간/재원마련 : 신규 / 단기 / 비예산</li> <li>■ 주요내용 : 청년 기본법(안) 수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개정</li> </ul>
★★★ (최우선)	

○ **청년기본법(안) 수정**

- 제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제19조(청년 능력개발 지원), 제20조(청년 주거지원), 제21조(청년 복지증진) 조항 수정
- 각 조항에서 취약계층 청년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내용 추가
- 취약계층 청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여 명시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개정**

- 시행령 제7조제5항 “취업애로청년”에 대한 인정범위 수정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의 장이 취업애로 청년으로 인정한 사람으로 제한한다는 조항 삭제를 통해 취업 취약계층의 포괄적 선정 가능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5항 개정(안)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하 “취업애로 청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한다

1. 고등학교 졸업이하의 학력인 실업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학교를 중퇴한 사람을 포함하며, 재학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2.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청소년
4.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5.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며 미취업 상태에 있는 사람(이하 삭제: **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취업애로 청년으로 인정한 사람**)
  - 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경우
  - 나.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수강하고 있지 않는 경우
  - 다.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을 위한 학원 등에서 수강하고 있지 않은 경우

## 2) 니트청년 발굴 시스템 및 원스톱 서비스지원체계 구축

우선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점대상 : 미취업, 장기실업, 니트, 고졸이하, 저소득 청년</li> <li>■ 추진체계 : 고용노동부/청년원스톱지원센터(가칭)</li> </ul>
★★★ (최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유형/추진기간/재원마련 : 신규 / 단기 / 신규예산 확보</li> <li>■ 주요내용 : 한국형 청년보장제 도입, 부처간 연계·협력을 통한 지원 대상자 발굴, 원스톱 서비스 제공 및 찾아가는 서비스 운영</li> </ul>

### ○ 한국형 청년보장제 도입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확대·개편하고, EU처럼 지원 대상을 ‘청년 니트’ 혹은 ‘장기실업 및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명확히 하여 지속적인 밀착 사례관리체계를 통해 니트 및 빈곤 탈출 실현
- 민간참여 활성화, 개인의 책임감 강화, 개인과 국가 간 상호의무 원칙 준수
- 명확한 가이드라인 혹은 지침에 따른 사업추진
-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를 통한 환류체계 구축

### ○ 부처 간 연계·협력을 통한 지원대상자 발굴

-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협력하여 고교 및 대학 졸업예정자 대상 안내문 발송을 통해 청년 내일채움공제, 취업성공패키지, 구직활동지원금 등의 사업안내 및 참여유도
- 대학 내의 일자리센터 및 창업보육센터 등의 전달체계 활용을 통한 사업 운영의 효율성 확보
- 고용노동부와 국방부가 연계하여 군 제대 예정자 대상 고용노동부 취업 지원사업 안내를 통해 니트 예방 및 대응

### ○ 원스톱서비스 제공 및 찾아가는 서비스의 적극적 운영

- 고졸자 및 대학중퇴자 등 은둔형 니트의 적극적 발굴을 통한 밀착사례관리
- 취약계층 청년 특성별(고학력 구직 청년 니트/저학력 비구직 청년 니트) 맞춤형 사업개발 및 원스톱서비스 제공
- ‘청년원스톱서비스센터’(가칭) 운영을 통해 사업수행 및 서비스 수혜의 효율성 제고
- 니트 상태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 운영

### 3) 청년빈곤 대응 정부 거버넌스 구조 확립

우선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점대상 : 일반청년 및 취약계층 청년</li> <li>■ 추진체계 : 국무총리실/청년위원회(가칭)</li> </ul>
★★ (중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유형/추진기간/재원마련 : 신규 / 단기 / 비예산</li> <li>■ 주요내용 : 정책 컨트롤타워 지정, 정책전달체계 확립, 중앙정부-지자체 협력체계 구축, 정책홍보의 다각화</li> </ul>

- **청년문제 대응과 지원을 위한 중앙 단위의 정책 컨트롤타워 지정**
  - 청년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정부 총괄조정기구인 청년위원회(가칭) 설치
  -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기획재정부 장관 혹은 국무조정실장을 간사로 하는 조직을 구성하여 청년 기본계획 수립, 예산 및 사업 심의, 사업평가 및 조정, 청년포털 운영, 정책홍보 등의 역할 수행
- **취약계층 청년 정책전달체계 확립**
  - 청년 니트를 포함한 취약계층 청년지원을 위한 정책추진 조직 별도 구성
  - 일본의 서포스테, 핀란드의 원스톱센터 등과 같은 취약계층 청년 정책 전달체계 구축 고려
  - 온라인청년센터(청년포털)의 취약계층 청년 접근성 제고 방안 강구
  - 오프라인청년센터 ‘청년원스톱서비스센터’(가칭) 운영을 통한 청년유형별 맞춤형 서비스(상담, 교육,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등) 제공
- **중앙정부-지자체 협력체계 구축**
  - 중앙정부는 재정보호, 지방정부는 서비스 제공으로 역할을 구분하여 정책 추진의 효율성 제고
  - 청년 니트 및 취약계층 청년의 경우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지자체 역할의 중요성 부각
- **정책홍보 전략수립 및 홍보수단의 다각화**
  - 정부의 청년정책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여 청년의 정책 접근성 제고
  - 청년층 생활환경에 적합한 홍보수단(TV 공익광고, 인터넷, SNS, 유튜브 등)의 다각적으로 활용
  - 특히 취약계층 청년에게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정보가 잘 전달되어 서비스 수혜가 가능하도록 효과적인 홍보전략 마련

## ■ 짜 립 (기본생활보장) ▶▶▶

### 4) 청년 미취업자 지원사업 보완 및 확대

우선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점대상 : 미취업, 장기실업, 니트, 고졸이하, 저소득 청년</li> <li>■ 추진체계 : 고용노동부</li> </ul>
★★ (중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유형/추진기간/재원마련 : 개편 / 단기 / 기존증액</li> <li>■ 주요내용 :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운영개선, 청년 미취업자 대상 직업 훈련프로그램 자격기준 완화, 실업부조제도개선</li> </ul>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운영개선 및 사각지대 해소
  - 지원금 규모 확대 및 파트타임 근로시간 제한 완화
  - 정보 사각지대 청년 대상 접근성 제고 및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운영
- 청년 미취업자 대상 전문 직업훈련 프로그램 자격기준 완화
  - 취업성공패키지 지원대상인 니트청년의 경우 2년 이상 장기 니트 상태로 제한하기 보다는 6개월 등으로 기준 완화
- 청년 미취업자 실업부조 선정기준 완화 및 수혜절차 간소화
  -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포기하지 않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상자 선정 규모 확대를 통해 정책성과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제도설계

### 5) 전월세보증금 지원 대상 확대

우선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점대상 : 미취업 청년 1인 가구, 비정규직 근로자</li> <li>■ 추진체계 : 국토건설부</li> </ul>
★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유형/추진기간/재원마련 : 개편 / 단기 / 기존증액</li> <li>■ 주요내용 : 주거지원 사각지대 청년 대상 전월세보증금 지원, 미취업 청년 1인 가구, 비정규직 근로자로 지원대상 확대</li> </ul>

- 주거지원 사각지대 청년을 위한 전월세보증금 지원
  - 주거비용의 점진적 상승과 열악한 주거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주거지원 사각지대 청년을 위한 주거자금 지원
- 미취업 청년 1인 가구,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 지원대상 확대
  - 취업준비생, 중소기업 취업 청년 및 청년창업자 대상의 현행 전월세자금 지원을 일정한 소득이 없는 청년 1인 가구 대학원생, 예술인 및 목돈마련이 어려운 알바생, 비정규직 근로자 등 소득취약계층으로 확대하여 지원

## 6) 청년 공공주택 보급 확대 및 첨단 주거복합단지 조성

우선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점대상 : 주거 취약계층 청년(청년 1인 가구) 및 일반청년</li> <li>■ 추진체계 : 국토건설부</li> <li>■ 정책유형/추진기간/재원마련 : 개편 / 장기 / 기존증액</li> <li>■ 주요내용 : 청년 공공주택 보급 확대, 청년 주거복합단지 조성</li> </ul>
★★★ (최우선)	

### ○ 청년 공공주택 보급 확대

- 현행 정부 청년 대상 주택공급 사업 확대 및 지원 대상 자격조건 완화
- 청년 대상 주택공급정책의 체감도 제고를 위한 대안 마련

### ○ 청년 주거복합단지 건립

- 대학가 근처 및 교통 접근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양질의 청년 공유 주거복합단지 조성
- 청년 활동공간 설치계획에 공유 주거공간을 결합한 복합단지 건립 고려
- 청년 창업 및 문화예술 활동을 겸비할 수 있는 생산활동의 공간으로 기능하는 방안 마련을 통해 효과성 제고

## 7) 청년 채무변제 지원기관 시범운영

우선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점대상 : 미취업, 장기실업, 니트, 저소득 청년</li> <li>■ 추진체계 : 금융감독원</li> <li>■ 정책유형/추진기간/재원마련 : 신규 / 중기 / 신규확보</li> <li>■ 주요내용 : 채무변제 상담 및 개인회생 지원을 전문기관 지정 운영</li> </ul>
★★ (중요)	

### ○ 채무변제 상담 및 개인회생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운영

-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는 청년들의 부채는 정상적인 사회 진입과 정착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대안 마련
- 일정액 이상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변제를 위한 상담 과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설치 운영

### ○ 공신력 확보를 위해 시범운영 초기단계에는 공공기관 직영체제 고려

- 정책추진의 효율성과 용이성을 고려하면 금융기관의 감독권을 가진 금융 감독원 내에 설치하는 것이 이상적
- 각 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정 운영 방식으로 확산하는 방안 고려

■ 안 정 (삶의질 제고/관계망 형성) ▶ ▶ ▶

8) 정신건강검진 확대 및 상담전문기관의 접근성 제고

우선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점대상 : 정신건강 고위험군 청년 및 일반청년</li> <li>■ 추진체계 : 보건복지부</li> </ul>
★★ (중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유형/추진기간/재원마련 : 개편 / 단기 / 기존증액</li> <li>■ 주요내용 : 20대 정신건강검진 제도화, 고위험군 청년 상담전문기관 서비스 연계, 상담 전문기관 운영 확대 및 이용 접근성 제고</li> </ul>

○ 20대 정신건강검진 제도화

- 본 연구의 설문조사결과에서도 20대 청년의 정신건강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우울증세 판정 기준 10점을 초과한 집단은 20대 중반의 가구소득이 낮고 본인이 주생계부양자인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 차지
- 20대 청년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악화에 대한 정책방안으로 2019년부터 신체건강 증진을 위한 일반건강검진이 제도화된 것과 병행하여 우울증의 조기발견 등을 목적으로 한 정신검진항목을 추가하여 실시
- 우울증 외에도 스트레스, 불안, 중독 등 다양한 검사항목의 추가로 정신건강이 취약하거나 위험군에 속한 청년을 조기에 발굴하여 치료로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

○ 고위험군 청년에 대한 상담전문기관 서비스 연계 강화

- 청년 대상 자가진단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치료가 필요한 청년들의 경우 서비스 기관으로 연계가 용이하도록 접근성 확대
- 스트레스, 우울 지수 등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는 고위험군 청년은 자발적인 정신건강 서비스 수혜의 가능성이 낮으므로 발굴 및 전문기관 연계, 사후관리 방안 강구

○ 상담 전문기관 운영 확대 및 이용 편의성 제고

- 지역의 정신건강증진센터 등을 활용하여 청년들의 고민상담 및 스트레스 해소가 용이하도록 상담전문기관 설치 운영 확대
- 청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고위험군으로 판정된 청년의 경우 전문치료기관으로 연계되어 지속적인 사후관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조치

### 9) 청년층 문화·여가 활동비 지원 및 해외교류 참여 확대

우선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점대상 : 취약계층 청년 및 일반청년</li> <li>■ 추진체계 : 문화체육관광부</li> <li>■ 정책유형/추진기간/재원마련 : 기존 / 단기 / 기존증액</li> <li>■ 주요내용 : 청년 문화 빈곤세대를 위한 활동비용 지원, 국제기구와 협력을 통한 해외교류 활동지원</li> </ul>
★ (보통)	

#### ○ 청년층 문화 빈곤 세대를 위한 활동비용 지원

-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학업 및 주거비용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 문화 및 여가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영화 및 연극, 미술관, 박물관 등의 공연·예술 관람에서 할인혜택 제공
- 경제적 취약계층에게는 선별적으로 월별 혹은 연간 문화·여가 바우처 제공을 통해 문화예술 활동의 적극적 향유 및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

#### ○ 국제기구와 협력을 통한 해외교류 활동 지원

- UN Habitat 협력사업 및 국제개발협력(ODA) 사업 등 해외봉사활동을 청년층에 대폭 확대하여 국제적 역량강화와 해외문화체험의 기회 제공
- 도시재생사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 등의 해외봉사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세계시민의식 함양 및 해외문화 체험을 통한 국제적 감각 신장

### 10) 청년 생활나눔 프로젝트 및 청년협동조합 활성화

우선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점대상 : 청년 1인 가구, 취약계층 청년 및 일반청년</li> <li>■ 추진체계 : 국토건설부/고용노동부</li> <li>■ 정책유형/추진기간/재원마련 : 개편 / 중기 / 기존증액</li> <li>■ 주요내용 : 소셜 다이닝(공유부엌) 프로젝트 확대, 전국단위 청년협동조합 설치·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li> </ul>
★★ (중요)	

#### ○ 소셜 다이닝(공유부엌) 프로젝트 확대

- 청년 1인가구의 심리적 결핍 해소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 일회성 혹은 이벤트성을 지양하고 함께 건강한 식사를 하면서 사회적 이슈에 대한 토론과 영화감상 등 문화예술 활동을 결합한 청년활동으로 정착
- 청년단체가 주축이 되는 청년자치활동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 전국 단위 청년협동조합 설치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

- 청년세대의 연대성 확립을 통한 청년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연결망 구축
- 청년이 활동주체가 되어 사회적 경제 구축뿐만 아니라 공공일자리 마련의 일환으로써 부가적인 효과 창출
- 문화예술지원, 심리·정서지원, 평생교육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기업 육성방안 마련 고려

■ 도 약 (미래준비) ▶▶▶

11) 청년 미래투자기금사업 시범운영

우선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점대상 : 저소득 미취업 청년 및 사회초년생</li> <li>■ 추진체계 : 청년위원회(가칭)</li> <li>■ 정책유형/추진기간/재원마련 : 신규 / 중기 / 신규확보</li> <li>■ 주요내용 : 장기금융대출 및 발생이자 지원</li> </ul>
★★ (중요)	

○ 원활한 미래설계와 투자를 위한 마중물 지원

- 적극적인 진로활동이나 창업 등 구체적인 진로설계와 계획이 있는 저소득 미취업 청년층을 대상으로 일정한도의 목돈 금융지원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 장기금융대출 및 발생이자 지원을 통한 미래 자립기반 구축

- 저소득층 청년 1인당 최대 5,000만원을 기준으로 상환능력 및 필요금액에 따라 차등지원하며,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비용, 창업 자금, 임차보증금 등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침 마련
- 거치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여 이자액과 보증료 전액 지원
- 미취업청년 및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목돈 금융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적 활력을 제공하고 미래의 자립기반 마련

○ 청년수당 및 청년기본소득과 차별화 운영

- 지원기간이 6개월 혹은 1년이 아니라 5년 이상 장기적이라는 점에서 서울시 청년수당이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과 차이
- 지원액 규모도 300만원 혹은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최대 5,000만원까지 금융대출과 이자지원 후 원금 상환하는 방식의 차이

## 12) 청년자산형성계좌제도 운영 확대

우선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점대상 : 취약계층 사회초년생</li> <li>■ 추진체계 : 고용노동부</li> <li>■ 정책유형/추진기간/재원마련 : 개편 / 중기 / 기존증액</li> <li>■ 주요내용 : 일하는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li> </ul>
★★★ (최우선)	

- 일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는 수요자 중심의 직접지원
  -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대체하여 기업이 아닌 청년 취업자를 지원하는 방식
  - 현행 정부의 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
  - 신규 진입자와 재직자 모두를 고려한 세심한 설계로 상호간 갈등 완화
- 내일채움공제 사업과 차별화 운영
  -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으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사업장에서 정규직·비정규직 구분없이 일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차별화하고 신청절차 간소화
  - 매년 예산범위 내에서 소규모 인원을 선정하는 방식에서 선정규모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일하는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전환

## 13) 중소기업 연금제도 도입

우선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점대상 : 일반청년 및 취약계층 청년</li> <li>■ 추진체계 : 중소벤처기업부</li> <li>■ 정책유형/추진기간/재원마련 : 신규 / 장기 / 신규확보</li> <li>■ 주요내용 : 중소기업연금법 제정을 통한 제도 도입</li> </ul>
★★ (중요)	

- 중소기업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근무격차, 고용 불안정과 열악한 복지수준 등으로 중소기업 취업 기피현상에 대한 대안 마련을 통해 중소기업 취업 유도
- 중소기업연금법 제정을 통한 제도 도입
  - 연금관리 주체, 기능, 퇴직급여, 비용부담, 중소기업직원 후생복지 등의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연금법(안)을 마련하여 퇴직 이후 안정적 생활 보장
  -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고용불안정 문제 해소와 낮은 급여수준 보전을 통해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 도모



## 참고문헌

---



## 참고문헌

- 강정석·권지은·이성은·황은교. 2014. 이행기 청년이 걸어갈 길. 서울시청년일자리허브 연구.
- 고용노동부. 2017. 한권으로 통하는 대한민국 청년지원 프로그램.
- 금재호. 2007. 청년실업의 현황과 원인 및 대책. 사회과학논총, 9: 27-54.
- 김기현·이윤주·유설희. 2017.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Ⅱ.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기현·배상률·성재민. 2018.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I : 청년 니트(NEET).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문길·김태환·박창렬·여유진·우선희. 2013. 기회의 불평등 측정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문길·이주미. 2017. 청년 고용 및 빈곤의 국제적 조망과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244: 20-37.
- 김문길·김성아. 2018. 다차원 빈곤의 변화와 세대 간 비교. 한국사회보장학회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자료집, 1-39.
- 김문길·김태완·임완섭·정은희·김재호·안주영·김성아·이주미·정희선·최준영. 2017. 청년빈곤의 다차원적 특성 분석과 정책대응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수정. 2010. 청년층의 빈곤과 이행의 곤란. 사회보장연구, 26(3): 49-72.
- 김수정·김영. 2013. 한국과 일본 청년층의 빈곤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정책, 20(1): 223-47.
- 김안나·홍현우. 2018. 청년 빈곤 및 고용실태 분석. 사회복지연구, 49(2): 93-124.
- 김종욱. (2017). 최근 청년층 니트 (NEET) 의 특징과 변화. 노동리뷰, 97-110.
- 김태완·최준영. 2017. 청년의 빈곤 실태: 청년, 누가 가난한가. 보건복지포럼 244: 6-19.
- 김태완·이주미. 2018. 아동 빈곤 경험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보장학회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자료집, 41-66.
- 김태완·이주미. 2017. 아동 빈곤 특성과 청년기 영향. 보건복지포럼, 254(12).
- 김태완·김문길·정진욱·강성호·윤상용·이주미·정희선. 2012. 청년층 근로빈곤 실태

- 및 지원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홍중. 2016. 사회학적 파상력, 파주: 문학동네.
- 나승호·조범준·최보라·임준혁. 2013. 청년층 고용현황 및 시사점. 한국은행.
- 노혜진. 2012. 빈곤가구 자녀의 노동시장 진입과정 유형화. 사회복지정책, 39(4): 109-134
- 박권일. 2009. 청년빈곤 세대의 문제나 성장의 단계나. 황해문화. 63-76.
- 박미희·이봉주·노혜진·박호준. 2018. 청년니트 지원사업의 초기 성과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9(3): 331-366.
- 반정호. 2010. 청년고용과 소득불평등(빈곤), 노동리뷰, 11: 53-64.
- 변금선. 2011. 청년층의 근로빈곤 요인에 관한 연구: 고용특성과 고용불안정이 빈곤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4: 415-38.
- \_\_\_\_\_. 2012. 청년층의 근로빈곤 요인에 관한 연구: 고용불안정과 고용상태가 빈곤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4(3): 257-279.
- \_\_\_\_\_. 2013. 청소년기 빈곤이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40(4): 345-73.
- 변창흠. 2014. 행복과 공간적 정의. 환경논총, 53: 45-51.
- 석상훈. 2007. 빈곤의 지속-상태의존성 검증. 사회보장연구, 23(3): 79-99.
- 신윤정·권지웅·김민수·황서연·한영섭·송효원. 2015. 서울이 만드는 다음 세대의 여지 청년이 만드는 다음 사회의 공공. 서울시 청년허브.
- 안수찬. 2011. 가난한 청년은 왜 눈에 보이지 않는가. 민주정책연구원.
- 양서영. 2019. 청년 니트(NEET)의 증가와 과제.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이슈브리프.
- 여유진·김미곤·정은희·이주미·정희선·권지성·김광혁·김은지·조준용·황정미. 2016. 아동의 빈곤예방을 위한 실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오찬호. 2015. 진격의 대학교. 파주: 문학동네.
- 우석훈·박권일. 2007. 88만원 세대: 절망의 시대에 쓰는 희망의 경제학. 서울: 레디앙
- 윤혜준·민숙원·유한구·금예진. (2017). 우리나라 청년 니트 현황 분석과 시사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슈브리프, 135.
- 이광석. 2018. 도쿄와 서울을 잇는 청년들의 위태로운 삶. 언론과 사회, 26(4): 140-215.

- 이상은. 2008. 한국에서의 빈곤의 세대간 이전. 한국사회복지학, 60(2): 53-76.
- 이성균. 2009. 한국사회 청년층의 사회적 배제: 청년실업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 569-581.
- 이태진·김태완·정의철·최은영·임덕영·윤여선·최준영·우선희. 2016. 청년빈곤해소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임덕영·이경애·진미윤·이의중. 2017. 청년 주거 문제와 정책 방안 연구. 토지주택연구원.
- 전상진. 2004. 학교위기에 대한 세대이론적 접근-교육학적 모라토리움의 세대이론적인 재구성. 교육사회학연구, 14(2): 195-218
- \_\_\_\_\_. 2011. 미래예측, 복고, 청소년-후기근대 청소년의 위험과 도전 과제에 대한 시간사회학적 고찰-. 청소년문화포럼, 27: 152-178.
- \_\_\_\_\_. 2013. 세대통합을 위한 또는 세대통합에 관한 교육체계의역할: 교육체계는 문제의해결책일까, 아니면 원인일까. 한국교육개발원.
- \_\_\_\_\_. 2013. 연금을 둘러싼 세대들의 전쟁, 세대 커뮤니케이션의 탈영웅화?. 한국사회학회 2013 특별 심포지엄.
- 정성미. 2017. 가구소득계층별 미취업 청년 특성. 노동리뷰, 7-21.
- 정수남·권영인·박건·은기수. 2012. '청춘' 밖의 청춘, 그들의 성인기 이행과 자아 정체성. 문화와 사회, 12: 35-103.
- 채창균·민주홍·양정승·정지운. 2015. 청년 니트(NEET)의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HRD review, 18(6).
- 채창균·최영섭·오호영·정재호. 2017. 한국형 청년보장제도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최은영·김기태·문규성·김두겸·최영은. 2017.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및 주거빈곤 가구 실태 분석, 한국도시연구소.
- 황서연. 2014. 서울지역 주거부문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사업 모델과 당면과제: 청년주거빈곤을 중심으로. 도시와 빈곤, 106.

- Baltes, Margaret M., and Carstensen, Laura L., 1999. Social-Psychological Theories and Their Application to Aging: From Individual to Collective, in Bengtson and Schaie (ed.)
- Berghman, J. 1995. Social Exclusion in Europe : Policy Context and Analytical Framework. 10-28. in Beyond the Threshold : the Measurement and Analysis of Social Exclusion, edited by G. Room. Bristol: Policy Press.
- Blau, P. M., and Duncan, O. D. 1967. The American occupational structure.
- Eurofound. 2017. Long-term unemployed youth: Characteristics and policy responses,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Luxembourg.
- EUROPEAN COMMISSION. 2014. European Employment Strategy and Governance, DG Employment, Social Affairs and Inclusion Host Country Discussion Paper Mutual Learning Programme Host Country Discussion Paper The implementation of the Emplois d'Avenir in France: the role of local actors Peer Review on 'Emplois d'avenir' - 'jobs with a future' scheme' Paris (France) 10-11 February 2014.
- EUROPEAN COMMISSION. 2014. Mutual Learning Programme DG Employment, Social Affairs and Inclusion Peer Country Comments Paper- France The French Youth Guarantee Experience in the Light of the Finnish Approach Peer Review on "Youth guarantee" Helsinki (Finland), 18-19 September 2014.
- EUROPEAN COMMISSION. 2015. Mutual Learning Programme DG Employment, Social Affairs and Inclusion Peer Review on 'Targeting NEETs - Key ingredients for successful partnerships in improving labour market participation' Oslo (Norway), 24-25 September, 2015.
- EUROPEAN COMMISSION. 2015. Peer Review on "Targeting NEETs -

- key ingredients for successful partnerships in improving labour market participation” (Oslo), 24-25 September, 2015.
- EUROPEAN COMMISSION. 2016. Mutual Learning Programme DG Employment, Social Affairs and Inclusion. Directorate-General for Employment, Social Affairs and Inclusion Peer Review on ‘Youth Guarantee’ Paris (France), 7 - 8 April 2016.
- EUROPEAN. 2016. CASE STUDY Regional active labour market policy in Italy: The Employment Unified Endowment, Giancarlo Dente and Alberto Vergani Fondazione Giacomo Brodolini May 2016.
- EUROPEAN Commission. 2018. Employment, Social Affairs & Inclusion The Youth Guarantee country by country - Austria.
- EUROPEAN COMMISSION. 2018. Employment, Social Affairs & Inclusion The Youth Guarantee country by country - Finland.
- EUROPEAN COMMISSION. 2018. Employment, Social Affairs & Inclusion The Youth Guarantee country by country - France.
- EUROPEAN Commission. 2018. Employment, Social Affairs & Inclusion The Youth Guarantee country by country - Italy.
- EUROPEAN Commission. 2018. Mutual Learning Programme DG Employment, Social Affairs and Inclusion Peer Review on “Targeting NEETs - key ingredients for successful partnerships in improving labour market participation” Oslo (Norway), 24-25 September, 2015.
- European Union. 2018. Addressing youth unemployment through outreach, activation and service integration, ESF Youth Employment Thematic Network, Technical Dossier no. 9.
- Bengtson, V. L., and Settersten Jr, R. (Eds.). 2016. Handbook of theories of aging. 209-226,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Pierson, J. 2002. Tackling social exclusion. Routledge.
- Silver, H. 1994. Social Exclusion and Social Solidarity: Three

Paradigms. International Labour Review. 133, 531~578.

<https://www.sozialministerium.at/cms/siteEN/attachments/8/0/1/CH3839/CMS1459340234319/youth-garantee-implementation-plan.pdf>

<https://ec.europa.eu/social/search.jsp?advSearchKey=Production+Schools&mode=advancedSubmit&langId=en>

[https://spacelab.cc/fileadmin/storage/Seiten/Projekt/Project%20Description\\_2017\\_20170109\\_w](https://spacelab.cc/fileadmin/storage/Seiten/Projekt/Project%20Description_2017_20170109_w)

## 부 록

---

### 1. 설문지



# 1. 설문지

## 2019 빈곤청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평택대학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빈곤청년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청년이 경험하는 어려움과 사회적 배제의 맥락(경제/고용, 주거, 교육, 사회적 관계망, 건강권 등)을 분석하고, 다중적 격차와 누적된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청년 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다른 분들의 의견과 함께 집계·분석되어 청년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무기명으로(이름을 밝히지 않고) 처리되고 통계법 제33조에 규정되어 개인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연구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성실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

▣ 조사 관련 문의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수행 기관: (주)엠브레인 권민오 팀장

(02-3406-3989, E-mail : mokwon@embrain.com )

응답자 특성	거주지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거주지 구분	① 동단위 지역    ② 읍단위 지역    ③ 면단위 지역					
	성별 (gender)	① 남성 ② 여성		가구원 수	총 _____명 (본인 포함) *주거를 같이 하지 않더라도 소득을 공유하는 가족은 포함해서 기 입		
	혼인상 태	① 미혼 ② 기혼(재혼 포함) ③ 사실혼 ④ 이혼·사별		주생계 부양자	① 본인    ② 배우자    ③ 부모 ④ 형제/자매    ⑤ 기타( )		
	자녀 유무	① 있음 ② 없음		출생년도	( _____ )년 * 만18세 이하, 만35세 이상 조사 중단		
학력	① 중학교 ② 고등학교 ③ 2·3년제 대학교 ④ 4·5년제 대학교 ⑤ 대학원(석사) ⑥ 대학원(박사)	① 재학 ② 휴학 ③ 중퇴 ④ 수료 ⑤ 졸업	주 거 형태	① 자가(본인 또는 아내 명의의 집) ② 자가(부모 명의의 집) ③ 보증부 월세(반전세 포함) ④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⑤ 기타			

## 주거 관련 사항

[문1] 귀하는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 ① 현재 같이 살고 있다 [문1-1]로 이동
- ② 현재 따로 살고 있다 [문1-4]로 이동

[[문1]에서 '① 현재 같이 살고 있다'인 경우에만 응답]

[문1-1] 귀하가 분가를 못 하는(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대로 3개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 )

- ① 취사·세탁 등 가사 부담이 힘들어서
- ② 독립하는데 필요한 주거비를 부담할 능력이 안 돼서
- ③ 생활비(식비, 공과금 등)가 부담돼서
- ④ 목돈 마련을 위해서
- ⑤ 본인의 빚이 있어서
- ⑥ 본인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 ⑦ 부모님 등 가족의 경제적 부양을 위해서
- ⑧ 부모님 등 가족의 건강을 돌봐야 해서
- ⑨ 부모님 등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좋아서
- ⑩ 부모님이 여유가 있어서
- ⑪ 결혼 계획이 없어서
- ⑫ 기타(적을 것 : \_\_\_\_\_)
- ⑬ 분가할 생각을 해본 적 없음

[문1-2] 귀하는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금전적 지원(생활비, 용돈 등)을 받고 있습니까?

- ① 그렇다
- ② 아니다

[문1-3] 귀하는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금전적 지원(생활비, 용돈 등)을 하고 있습니까?

- ① 그렇다
- ② 아니다

[[문1]에서 '② 현재 따로 살고 있다'인 경우에만 응답]

[문1-4] 귀하가 분가한 이후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대로 2개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 ① 없음
- ② 세탁, 청소 등 가사일
- ③ 열악한 주택 여건(설비, 주방/화장실/욕실 등)
- ④ 생활비와 주거비 등 경제적 부담
- ⑤ 협소한 거주 공간
- ⑥ 문화/편의시설 접근성 문제
- ⑦ 보안이나 치안 문제로 두려움
- ⑧ 외로움과 고독감
- ⑨ 식사 마련과 끼니 해결
- ⑩ 기타

[문1-5] 귀하는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금전적 지원(생활비, 주거비, 용돈 등)을 받고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문1-6] 귀하는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금전적 지원(생활비, 용돈 등)을 하고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문2] 귀하가 현재 거주하는 주택 및 주거지는 다음과 같은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까?

항목	하고(갖고) 있다	못 하고(갖고) 있다
1 흡지 않도록 난방이 적절히 갖춰진 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①	②
2 가족 수나 구성원의 연령에 맞게 적절한 방을 나누어 사용하고 있다	①	②
3 걸어서 10분 안의 거리에 버스 정거장이나 전철역이 있다	①	②
4 옥탑방이나 (반)지하가 아닌 지상에 거주하고 있다	①	②
5 전용 수세식의 화장실 및 온수 목욕시설을 갖추고 있다	①	②
6 방음, 환기, 채광이 적절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①	②
7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습기가 차지 않거나 이로 인해 벽이나 바닥에 손상이 없다	①	②

### 경제 관련 사항

[문3] 귀하 가구와 귀하의 한달 평균 소득과 지출 규모는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총 소득 = 가구원 전체 근로소득+재산소득+사적 이전소득+공적 이전소득

항목	금액
1) 가구 전체 소득(한달 평균)	<input type="text"/> 만원
- 본인 소득(월급, 용돈 모두 포함)	<input type="text"/> 만원
2) 총 지출액	<input type="text"/> 만원

[문4] 귀하의 월 지출액 중에서 지출 비중이 높은 순서대로 두 가지를 골라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 ① 식료품, 외식비
- ② 주거비(전/월세, 관리비 등)
- ③ 본인학비/자기계발비(학원비 등)
- ④ 의류/미용비
- ⑤ 교통/통신비
- ⑥ 문화/여가비
- ⑦ 부채 상환비(원금, 이자)
- ⑧ 보건의료비
- ⑨ 교류 활동비
- ⑩ 기타

[문5] 귀하는 은행이나 제2금융권, 대부업체, 또는 개인에게 갚아야 할 부채(대출, 카드연체 포함)가 있습니까?

- ① 있다 [문5-1]로 이동
- ② 없다 [문6]로 이동



- ① 학생
- ② 취업 준비 중
- ③ 창업 준비 중
- ④ 진학 준비 중
- ⑤ 가사/육아 중
- ⑥ 가족 간호/간병 중

[문7-1]

귀하는 지금까지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없다 [문8]로 이동
- ② 있다 [문7-2]로 이동

\* "일"은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직장 근무 또는 직업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7-2]

일을 한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_\_\_\_\_년 \_\_\_\_\_개월

- ⑦ 구직활동 없이 쉬는 중

[문7-3]

귀하가 구직활동 없이 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구직활동에 대한 의욕을 상실
- ② 구직에 필요한 능력(스펙, 대인관계기술 등)부족
- ③ 본인의 건강상 이유
- ④ 현재는 좋은 구직 기회가 없음
- ⑤ 문화, 예술이나 오락과 같은 자기만족을 위한 자발적 선택
- ⑥ 기타 ( )

[문7-4]

구직활동 없이 쉬 기간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_\_\_\_\_년 \_\_\_\_\_개월

- ⑧ 일하고 있음

[문7-5]

귀하의 현재 고용지위는 어떻게 됩니까?

- ① 정규직 임금근로(상용직, 무기계약 포함)
- ② 비정규직(임시직/일용직/계약직)
- ③ 비정규직(시간제, 인턴, 아르바이트)
- ④ 고용주(유급고용원(직원)을 채용한 자영업자)
- ⑤ 자영업자: 고용원 없이 혼자 혹은 무급가족과 함께 운영
- ⑥ 무급가족종사자
- ⑦ 기타 종사자

[문7-6]

귀하는 일주일에 일을 며칠 합니까?

\_\_\_\_\_일

([문기에서 '⑧ 일하고 있음' 또는 [문7-1]에서 '① 있다' 인 경우에만 응답)

[문8] 귀하가 구직(취업/창업) 활동 기간 중에 겪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대로 2개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 ① 취업할만한 일자리 부족
- ② 관련 정보 부족
- ③ 취(창)업에 적합한 훈련이나 교육을 찾기 어려움
- ④ 취(창)업 준비 기간의 생계 어려움
- ⑤ 심리적 좌절감 및 무력감(미래에 대한 불안함 등)
- ⑥ 관련 일 경험의 부족 또는 부재
- ⑦ 자격조건(스펙) 맞추기
- ⑧ 취(창)업준비를 위한 비용/자금 부족
- ⑩ 주변 사람과 관계 단절
- ⑪ 가족과의 마찰
- ⑫ 기타 ( )

[문9] 귀하는 아르바이트를 현재 하고 있거나 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 [문9-1]로 이동
- ② 아니오 [문10]으로 이동

[문9-1] 귀하가 아르바이트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대로 2개만 골라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 ① 학비 마련                      ② 생활비 마련(생업)                      ③ 어학연수비용 마련
- ④ 여행/취미비용 마련        ⑤ 저축/목돈 마련                      ⑥ 사회경험
- ⑦ 취업/창업 스펙              ⑧ 주위 친구들이 하니까                  ⑨ 기타(     )

[문9-2] 귀하는 아르바이트가 미래의 취업/이직/창업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쳤)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부정적    ② 약간 부정적    ③ 영향 없음    ④ 약간 긍정적                      ⑤ 매우 긍정

[문10] 귀하는 학교 교육 이외의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운영하는 직업훈련 및 교육프로그램(청년취업성공패키지, 내일배움카드 등)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     [문10-1]로 이동                      ② 아니오     [문10-2]로 이동

[문10-1] 귀하가 참여하였던 직업훈련 및 교육프로그램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그렇다	아니다
1) 직업훈련 및 교육프로그램이 다양한 편이다	①	②
2) 직업훈련 및 교육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이 높은 편이다	①	②
3) 진로 관련 정보를 취득할 기회에 대한 접근성이 좋은 편이다	①	②
4) 직업훈련 및 교육프로그램은 노동현장에서 필요한 내용과 연관성이 높은 편이다	①	②

[문10-2] 귀하가 직업훈련 및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시간 여유가 없어서                      ② 교육프로그램이 있는지 몰라서
- ③ 교육 장소가 멀어서                      ④ 관심이 없어서
- ⑤ 필요를 못 느껴서                      ⑥ 어려울 것 같아서
- ⑦ 등록 절차(방법)가 까다로워서        ⑧ 기타

[문10-3] 귀하는 향후 직업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문11] 최근 1년 동안, 귀하는 평소 다음의 활동을 위해 사용한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혹은 많다고 느끼십니까?

항목	사용시간에 대한 주관적 느낌				
	매우 부족	부족	적절	많음	매우 많음
1) 소득을 위한 노동시간	①	②	③	④	⑤
2) 학업 또는 취업을 위한 자기개발 시간	①	②	③	④	⑤
3) 여가활동(취미활동 포함) 시간	①	②	③	④	⑤
4) 봉사 또는 사회·정치 활동 참여 시간	①	②	③	④	⑤
5) 가족 간 교제/교류시간	①	②	③	④	⑤
6) 수면 시간	①	②	③	④	⑤

## 교육·문화/사회적 권리 사항

[문12] 귀하는 지난 1년간 휴가를 가진 적(보낸 적)이 있습니까?

☞ 휴가는 공휴일을 제외한 날에 여가활동의 목적으로 사업장(직장) 또는 학교를 이를 이상 지속적으로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 ① 예(\_\_\_\_\_일)
- ② 아니오

[문13] 귀하는 지난 1년간 다음에 제시된 여가활동(공연, 영화, 박물관과 미술관, 스포츠 등) 중 한 번이라도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 여가란 일하고 남은 시간에 생리적 필수시간(취침, 식사시간)을 제외한 자유시간을 의미합니다.

항목	그렇다	아니다
1) 문화예술 관람(문학, 미술, 음악, 연극/뮤지컬, 무용, 영화관람, 연예 공연 등)	①	②
2) 문화예술 참여(문화행사 참여, 미술활동, 악기연주/노래교실, 사진촬영 등)	①	②
3) 스포츠 관람 활동(스포츠 경기 직접 관람, TV/인터넷 활용한 간접 관람 등)	①	②
4) 스포츠 참여 활동(농구, 축구, 야구, 당구, 배드민턴, 수영, 탁구, 볼링 등)	①	②
5) 관광활동(문화유적지 방문, 캠핑, 해외여행, 온천/해수욕, 축제 참가 등)	①	②
6) 취미오락활동(수집활동, 생활공예, 요리하기, 등산, 낚시, 게임, 외모관리, 쇼핑/외식 등)	①	②
7) 휴식활동(산책 및 걷기, 낮잠, TV 시청, 라디오 청취, 음악 감상 등)	①	②
8) 사회 및 기타활동(봉사활동, 종교활동, 동창회/동호회 모임, 친지 방문 등)	①	②

[문14] 귀하 또래와 비교할 때, 귀하는 여가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 ① 또래보다 훨씬 적음
- ② 또래보다 다소 적음
- ③ 또래들과 비슷함
- ④ 또래보다 다소 많음
- ⑤ 또래보다 훨씬 많음

[문15] 귀하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때 누구에게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하겠습니까?

항목	도움받을 사람 없음	도움받을 사람 있음					
		가족 친지	직 장 동료	이웃	친구/동창/선후배	종교 기관	전문 직업인 (예: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
1) 몸이 아파서 집안일을 부탁할 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갑자기 많은 돈을 빌려야 할 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22]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일생동안 노력을 한다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높다	약간 높다	약간 낮다	매우 낮다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 건강 관련 사항

[문23] 귀하는 현재 어느 정도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건강하지 않다                      ②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건강한 편이다                              ⑤ 매우 건강한 편이다

[문24] 귀하는 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느끼고 있습니까?

- ① 전혀 느끼지 않는다                      ② 별로 느끼지 않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느끼는 편이다                      ⑤ 매우 많이 느낀다

[문25] 귀하는 편의점 또는 분식점에서 세끼 중 한 끼라도 해결하는 날은 일주일에 며칠이나 됩니까?

- ① 없음                      ② 1~2일                      ③ 3~4일                      ④ 5~6일                      ⑤ 매일

[문26] 귀하는 지난 1주일간 얼마나 자주 다음과 같이 느끼셨습니까?

항목	극히 드물었다 (1일이하)	가끔 있었다 (2~3일)	종종 있었다 (4~5일)	대부분 그랬다 (6일이상)
1)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괴롭고 귀찮게 느껴졌다.	①	②	③	④
2) 무슨 일을 하든 정신을 집중하기가 힘들었다.	①	②	③	④
3) 상당히 우울했다	①	②	③	④
4)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①	②	③	④
5) 비교적 잘 지냈다	①	②	③	④
6) 두려움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7) 잠을 설쳤다(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①	②	③	④
8)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①	②	③	④
9)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10)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문27] 귀하는 지난 2주 동안 다음의 문제들로 인해서 얼마나 자주 방해를 받았습니까?

항목	전혀 방해받지 않았다	며칠 동안 방해받았다	2주 중 절반 이상 방해받았다	거의 매일 방해 받았다
1) 초조하거나 불안하거나 조마조마하게 느낀다.	①	②	③	④
2) 걱정하는 것을 멈추거나 조절할 수가 없다.	①	②	③	④
3)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 걱정을 너무 많이 한다.	①	②	③	④
4) 편하게 있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5) 너무 안절부절 못해서 가만히 있기가 힘들다.	①	②	③	④
6) 쉽게 짜증이 나거나 쉽게 성을 내게 된다.	①	②	③	④
7) 마치 끔찍한 일이 생길 것처럼 두렵게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문28] 귀하는 다음과 같은 일(상황)을 겪고(겪은 적이) 있습니까?

최근 3개월을 기준으로 경험 여부를 과거와 현재 모두 표기해 주세요.

항목	경험상태		
	없다	과거 그런적 있었다	현재 그렇다
1) 나는 돈이 없어서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갈 수 없던 적이 있다	①	②	③
2) 나는 3개월이상 건강보험을 내지 못해 보험 급여를 정지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3) 나는 이가 아팠지만, 돈이 없어 치과에 가는 것을 포기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4) 나와 가족은 돈이 없어 만성질환(3개월이상 지속된 질병) 치료를 포기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5) 의사에게서 처방받은 의약품이나 필요한 (일반)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던 적이 있다	①	②	③

## 청년지원 정책

[문29] 귀하는 아래의 내용 중 현재 취업난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포기하였거나 향후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해당 사항을 모두 골라주십시오.

- ① 연애                      ② 결혼                      ③ 출산                      ④ 내 집 마련  
 ⑤ 대인관계                      ⑥ 취업                      ⑦ 학업                      ⑧ 취미/여가생활  
 ⑨ 자기계발                      ⑩ 건강관리                      ⑪ 외모관리                      ⑫ 기타





---

---

## 빈곤청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

---

발행인 **최 영 애**  
발행일 2019년 11월 15일  
발행처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 (저동 1가) 나라키움 저동빌딩  
Tel. 02)2125-9838 Fax. 02)2125-0933  
인 쇄 디자인 채움 (Tel. 02-786-0929)

---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ISBN 978-89-6114-709-5 93330